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4호 2019. 6

차례

논문

- 박대재 ▣ 『본조통감』의 상대(上代) 기년(紀年)과 외국 사서의 수용
- 『일본서기』 기년론과 관련하여 7
- 유미림 ▣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도와 『울릉도』의 ‘우산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변석(辯析) 49
- 박걸순 ▣ 이회영(李會榮)과 이상설(李相畲)의 독립운동론과 독립운동 비교 91
- 정상우 ▣ 식민주의 역사학으로서 만주건국대학에서의 역사 연구 125
- 하중문 ▣ 진중일지 속의 부대 운용과 일본군 위안소 제도 171

서평

- 김형목 ▣ 3·1운동에서 민주주의 시민문화 원류를 찾다
- 『오늘과 마주한 3·1운동-민주주의의 눈으로 새롭게 읽다』, 김정인,
책과함께, 2019 221

자료소개

- 이근우 ▣ 『조선표류일기』의 회화자료에 대하여 239

-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259



Contents

Articles

Park Daejae ■ *Honcho tsugan's* Calendar Era for the Ancient Times and the Acceptance of Foreign History Books: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Nihon Shoki's* Calendar Era 7

Yoo Mirim ■ An Explanatory Study of the Controversy Over the Copy-written Year of *Ulleungdo sajeok* and Usando in *Ulleungdo* 49

Park Gulsun ■ A Comparison between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ory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Hoeyeong Lee and Sangseol Lee 91

Jeong Sangwoo ■ A Study on the History in Manchu Genkoku University as the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125

Ha Jongmoon ■ Japanese Military Actions in War Diaries and the Comfort Station System 171

Book Review

Kim Hyungmog ■ March 1st Movement of Today: A Reappraisal in the Age of Democracy 221

Introduction to Documents

Rhee Kuenwoo ■ An analysis of the Paintings in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to Joseon* 239



『본조통감』의 상대(上代) 기년(紀年)과 외국 사서의 수용

– 『일본서기』 기년론과 관련하여

박대재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본조통감』 정편(正編)의 편찬 과정과 전거 자료
- III. 백제 왕대(王代) 기록의 기년 비정과 『동국통감』
- IV. 중국 관계 기록의 기년과 『송서』의 왜(倭) 5왕
- V. 맺음말



I. 머리말

1차 사료가 부족한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일본서기(日本書紀)』는 주요한 참고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신라나 고구려에 비해 기본 사료가 부족한 백제사 연구에서 『일본서기』는 최근 비교적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서기』의 5세기 이전 기록은 설화성과 기년 문제라는 사료적 흠결을 갖고 있다. 메이지시기가 나가 미치요[那珂通世, 1851~1908]의 『일본서기』 상세(上世) 기년(紀年)에 대한 실증적 연구¹ 이후 대체로 5세기 후반 웅략기(雄略紀) 이전 기록의 기년은 대부분 연장 소급된 것이며, 신공기(神功紀)와 응신기(應神紀)의 기록은 2주갑(周甲, 120년) 인하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² 특히 신공기의 기년은 더욱 논란이 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예로 백제의 마한 병합과도 관련된 『일본서기』 신공(神功) 49년조의 실연대는 통설(2주갑 인하, 369년)³ 외에 6세기설,⁴ 3주갑 인하(429년)설⁵ 등으로 논의가 나뉘어 있다. 최근에는 아예 신공기의 기록을 모두 후대에 부회된 지역설화로 보아 역사성을 부인하기도 한다.⁶

* 투고: 2019년 2월 10일, 심사 완료: 2019년 5월 13일, 게재 확정: 2019년 5월 17일

1 那珂通世, 1878, 「上古年代考」, 『洋々社談』 38; 1897, 「上世年紀考」, 『史學雜誌』 8-8·9·12; 1958, 「上世年紀考」, 『外交譯史』, 岩波書店.

2 那珂通世·三品彰英, 1948, 『増補上世年紀考』, 養徳社.

3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4 池内宏, 1947, 『日本上代史の一研究』, 近藤出版;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 吉川弘文館.

5 山尾幸久, 1977, 『日本國家の形成』, 岩波書店.

6 『日本書紀』紀年論에 대해선 小林敏男, 2002·2003, 「日本書紀の紀年論(1)·(2)―初期ヤマト王權解明のための方法論の検討―」, 『大東文化大學紀要(人文科學)』 40·41; 2006, 「日本書紀の紀年論(上)·(下)」, 『日本古代國家形成

『일본서기』의 기년에 문제가 있음은 이미 에도시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먼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는 『일본서기』에서 일본 무존(日本武尊)의 아들 중애천황(仲哀天皇)은 아버지가 죽은 지 35년 후에 태어난 문제가 있고, 신대(神代)는 실제로 주말(周末) 진초(秦初)인데 200~300년 올려 기록되었다고 하였다. 도 데이칸[藤貞幹, 1732~1797]도 『충구발(衝口發)』에서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의 기록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으며, 신무천황(神武天皇) 연대가 600년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는 『겸광인(鉗狂人)』을 지어 도 데이칸의 설이 근거 없음을 반박하면서도 『고사기전(古事記傳)』에서 『일본서기』 응신기의 연대가 조선의 『동국통감(東國通鑑)』과 비교해 120년 소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⁷

메이지시기의 나카 미치요가 『일본서기』의 기년을 조정한 것도 『동국통감』 등 외국 사서와의 비교를 통해 가능하였다. 나카는 『동국통감』과 『삼국사기』에 기재되어 있는 역대 백제 왕의 즉위년과 붕년(崩年), 『송서(宋書)』, 『남제서(南齊書)』, 『남사(南史)』 등에 기재된 왜(倭) 5왕(王)의 견사(遣使) 연대, 진복사본(眞福寺本) 『고사기』 분주(分註)에 부기된 역대 천황의 붕년 간지 등과의 대비를 통해 『일본서기』 기년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서기』의 기년에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한 에도시대의 아라이 하쿠세키도, 『고사통혹문(古史通或問)』(1716)에서 『동국통감』이나 중국 정사 등 외국 사서와 『일본서기』의 비교를 통해 『일본서기』의 기년이 인상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⁸

그런데 아라이 하쿠세키보다 먼저 『동국통감』 등 외국 사서를 일본사 편찬

史考』, 校倉書房, 199~329쪽 참조.

7 山田英雄, 1979, 『日本書紀』, 教育社; 2014, 『日本書紀の世界』, 講談社, 67~68쪽.

8 倉西裕子, 2002, 「『日本書紀』における紀年の編成をめぐる一考察」,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12; 2003, 『日本書紀の眞實—紀年論を解く—』, 講談社, 17~19쪽.

에 이용하며, 『일본서기』의 기년과 비교한 에도시대 초기의 역사서가 있어 주목된다. 에도막부 초기의 대학두(大學頭)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이 막부의 명을 받고 편찬한 『본조편년록(本朝編年錄)』, 즉 『본조통감(本朝通鑑)』의 정편(正編)이 그것이다.

하야시 라잔은 1644년 『본조편년록』 신무기(神武紀)부터 편찬을 시작해 1650년 우다기(宇多紀)까지 완성하여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에게 헌상하였다. 『본조편년록』의 마지막 부분은 라잔의 와병으로 불완전한 데다가 제호기(醍醐紀) 이후는 자료를 더 수집할 필요가 있어 편찬이 중단되었다. 라잔의 사후 1662년 그 3남으로 대학두를 승계한 하야시 가호[林鶯峰, 1618~1680]가 다시 막부로부터 속찬(續撰)의 명을 받고 1670년 『본조통감』이라는 바뀐 서명으로 편찬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었다.⁹

그렇다면 『동국통감』 등의 외국 사서를 참고해 편찬된 『본조통감』에서는 『일본서기』의 기년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이 글에서는 『일본서기』 기년론의 주요 대상인 웅략기 이전 상대(上代)의 대외관계 기사를 중심으로 『본조통감』의 기년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에도시대 초기에 『동국통감』 등의 외국 사서가 일본 학자들의 『일본서기』 기년 인식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본조통감』 정편(正編)의 편찬 과정과 전거 자료

1670년 편찬이 완료된 『본조통감』은 하야시 라잔이 먼저 편찬했던 『본조편년록』을 속찬한 에도 막부 최초의 편년체 국사였다. 1644년 10월 14일 라잔은 신무기부터 지통기(持統紀)까지의 『본조편년록』과 『본조왕대계도(本朝王代系

9 揖斐高, 2014, 「『本朝通鑑』の編纂」, 『江戸幕府と儒學者－林羅山・鶯峰・鳳岡三代の闘い』, 中央公論新社, 117~130쪽.

圖)를 편찬하여 막부에 헌상하였다. 당시 발문에는 『구사기(舊事記)』, 『고사기』, 『일본서기』 등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방외(方外) 사서, 즉 외국 사서를 포함해 70여 종의 서책을 참조했다고 한다. 1645년 『본조편년록』의 문무기(文武紀)부터 순화기(淳和紀)까지가 하야시 세이[林靖, 라잔의 4남]의 조력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에 『일본후기(日本後紀)』, 『유취국사(類聚國史)』, 『유취삼대격(類聚三代格)』 등이 자료로 이용되었다. 5년 뒤 1650년 인명기(仁明紀)부터 우다기까지 완성되어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츠에게 헌상하였다. 이상 라잔의 『본조편년록』 고본(稿本)은 현재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다.¹⁰

『본조통감』은 정편(正編) 40권, 속편(續編) 230권, 전편(前編) 3권(이상 본편), 제요(提要) 30권, 부록 5권, 수(首) 2권 총 31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신무기부터 우다기까지 60대 천황과 1대 섭정황후(神功)의 기록에 해당하는 정편이 바로 라잔이 원래 『본조편년록』으로 편찬한 부분이며, 나머지는 가호가 추가 편찬한 것이다.

〈표 1〉 『본조통감』 본편의 체제와 찬자

구분	전편	정편(本朝編年錄)	속편
왕대	神代紀(上·中·下)	神武紀~宇多紀	醍醐紀~後陽成紀
권	권1~권3	권1~권40	권1~권230
찬자	弘文院 學士 林恕(鸞峰)	民部卿 羅山 林道春	弘文院 學士 林恕

『본조통감』의 찬자(撰者) 표기와 가호의 서문(序文)¹¹에 따르면, 정편 40권

10 鈴木健一, 2012, 『林羅山一書を讀みて未だ倦まず』, ミネルヴァ書房, 152쪽.

11 『本朝通鑑』序, “正保年中先大君大猷公公務之暇 命儒臣侍讀民部卿林道春 參考日本紀來國史 刪繁取要 補闕拾遺 且加宇多一朝 纂集爲四十卷 號本朝編年錄 就久世大和守源廣之 獻呈之.” 이하 『본조통감』 원문은 內閣文庫本을 저본으로 國書刊行會에서 1918년 발행한 활자본을 참고했다.

이 라잔의 『본조편년록』을 그대로 수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본조편년록』 고본(36권)과 『본조통감』 정편(40권)을 비교해 보면, 가호가 라잔의 초고를 일부 가보(加補)·개정(改正)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호가 『본조편년록』을 개수했음은 『본조통감』의 편찬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국사관일록(國史館日錄)』¹²에서 확인된다.

가호에 의한 『본조편년록』의 교합(校合)은 1664년 11월에 시작해 1667년 9월에 완료되어 『본조통감』의 정편으로 편입되었다. 가호의 『본조편년록』 개정은 주로 왕대계도(王代系圖), 황통보(皇統譜), 신공약보(功臣略譜) 등 도보(圖譜)의 제거와 생략된 간지(干支)의 추가 등 범례의 통일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라잔이 와병으로 편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인명기(仁明紀)부터 광효기(光孝紀)까지의 개수에 힘을 쏟았다.¹³

옹랴기 이전 상대 기록에서는 신무 원년(辛酉) 아래에 “周惠王十七年”이라고 주서(朱書)된 중국 연호를 삭제한 것 외에 특별히 개수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¹⁴ 『본조편년록』의 여러 곳에는 중국 왕조의 연호를 해당 연대 아래에 주서로 추기(追記)한 것이 보이는데, 이는 중국사와 일본사를 대조해 보고자 한 라잔의 식견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조통감』의 편찬에 참고한 주요 전거 자료는 단연 『일본서기』와 『속일본기』 등 일본의 국사(國史)였다. 하지만 『본조통감』은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 및 주희(朱熹)의 『통감강목(通鑑綱目)』을 모범으로 하고 두 사서의 사관(史觀)을 절충해 편찬한 에도막부의 국사였던 만큼 중국 사서의 영향도

12 『國史館日錄』 18권은 『본조통감』의 편찬을 위해 에도 우에노(上野)의林家 別邸에 설치되었던 國史館의 日記이다. 찬자인 鶯峰은 국사관의 사료 수집과 편수의 상황을 매일 상세히 기록했는데, 당시 막부 당국자의 정책이나 정치 동향, 학문 관련 기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사료 가치가 높다. 1918년 國書刊行會 간행 『本朝通鑑』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13 安川實, 1980, 『本朝通鑑の研究』, 言叢社, 77~82쪽.

14 安川實, 1980, 위의 책, 86쪽.

적지 않았다. 또한 『본조통감』은 조선의 『동국통감』까지 참조해 편찬된 일본의 통감으로서 동아시아 통감 사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동국통감』이 일본에 전해진 것은 임진왜란 시기이며, 『본조통감』의 편찬이 완료되기 3년 전인 1667년에는 미토[水戸] 번주(藩主) 도쿠가와 미쓰쿠니(徳川光圀)의 주도로 교토[京都] 송백당(松柏堂)에서 목판본 『동국통감』(『신간동국통감(新刊東國通鑑)』)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라잔은 『동국통감』을 참조해 『조선고(朝鮮考)』라는 책을 짓기도 했으며, 가호는 미토 번주의 부탁을 받고 『신간동국통감』의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¹⁵ 그 서문에서 가호는 『동국통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조선의 역사서 가운데 가장 상세하고 참고할 만하다고 높게 평가하였다.¹⁶

이처럼 『동국통감』은 하야시가[林家]에게 익숙한 자료였던 것이다. 『본조통

15 李裕利, 2016, 「朝鮮本『東國通鑑』の日本での流通及び刊行」, 『海を渡る史書—東アジアの「通鑑」—』, 勉誠出版, 85~91쪽.

16 鶯峰가 찬한 서문은 『신간동국통감』의 卷首에 실려 간행되지 못했다. 鶯峰의 서문에서 중국 吳 泰伯의 至德이 일본 왕실의 기초가 되었다고 한 “泰伯至德而基我王跡” 9자가 천황 중심의 皇國史觀을 지향한 水戸 藩主 미쓰쿠니의 의중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일화는 나중에 水戸藩의 史臣 安藤爲章이 쓴 『年山紀聞(年山打聞)』에서 와전되어, 미쓰쿠니가 『본조통감』에서 일본의 시조를 “吳 泰伯”으로 서술한 것을 보고 이 책이 간행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부회되었다. 이 와전된 이야기는 오랜 기간 국학자들에 의해 『본조통감』을 힐난하는 소재로 널리 회자되었다. 『본조통감』에서는 그 神代紀 跋文에서 서술한 것처럼 少康·泰伯의 고사와 같이 異域에서 傳稱된 이야기는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吳 泰伯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아마도 『동국통감』과 『본조통감』의 서명이 비슷한 데서 유래된 부회일 것으로 추정된다. 鶯峰가 쓴 『신간동국통감』의 서문은 『鶯峰集』에 실려 있다. 이상에 대해서는 日下寛, 1890, 「本朝通鑑考」, 『史學會雜誌』 3, 40~42쪽; 1896, 「本朝通鑑爲に辨して世の識者に質す」, 『史學雜誌』 7-3, 21~37쪽 참조. 『본조통감』에 일본 시조 吳泰伯說이 실려 있었다고 한 誣罔의 說은 『동국통감』과 『본조통감』을 착각한 「年山打聞」의 와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 日下寛의 설명에 대해, 栗田寛는 『史學雜誌』 7-4, 1~13쪽에 반박의 논설을 실었다. 이에 대해 日下寛는 다시 『史學雜誌』 7-5, 15~24쪽에 栗田寛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논설을 발표했다. 『본조통감』의 吳泰伯說을 둘러싼 논쟁은 國學派(水戸史學)와 修史局學派(實證史學) 사이의 『본조통감』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도 맞물린 일본 근대 사학사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감』은 중국의 『자치통감』, 『통감강목』과 조선의 『동국통감』을 참고하여, 막부의 후원을 받아 하야시가의 가업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통감(通鑑)’이라 할 수 있다.¹⁷

사실 미토번(水戸藩)에서 『동국통감』을 직접 간행한 것은 번주 미쓰쿠니의 주도로 편찬하고 있던 『본조사기(本朝史記)』의 자료로 쓰기 위해서였다. 『본조사기』는 여러 면에서 『본조통감』과 대비되는 사서였다.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모범으로 한 기전체(紀傳體) 사서인 『본조사기』는 애초부터 하야시가의 『본조통감』에 필적할 사서로 기획되었다. 1657년부터 미쓰쿠니는 에도의 미토 번저(藩邸)에 사국(史局)을 열어 아사카 단과쿠[安積澹泊]·미야케 간란[三宅觀瀾] 등 미토번의 유신(儒臣)들을 모아 『본조사기』의 편찬을 개시하였다. 편찬이 지지부진하던 중 1670년 『본조통감』의 완성에 자극을 받아 1672년부터는 번저에 창고관(彰考館)을 설치해 박차를 더욱 가하였다. 본기와 열전 부분인 「신간기전(新撰紀傳)」 104권이 1683년에 이루어졌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수찬(修撰)이 계속되었으며, 1700년 미쓰쿠니 사망 때까지 완성되지 못하였다. 결국 『대일본사(大日本史)』라는 바뀐 서명으로 본기와 열전이 완성된 것은 1720년에 이르러서였다.¹⁸

『대일본사』의 편찬을 위해 1667년 간행된 『신간동국통감』은 『본조통감』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일본사』는 『본조통감』의 애매한 명분사관에 불만을 품고, 『통감강목』의 명분사관(名分史觀, 正閏史觀)과 제실(帝室)을 높이고 패부(覇府)를 낮추는 황조주의(皇朝主義)에 보다 철저한 방향에서

17 『본조통감』이 가지는 동아시아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澤井啓一, 2016, 「林家の學問と『本朝通鑑』」, 『海を渡る史書—東アジアの「通鑑」—」, 勉誠出版, 123~134쪽; 藤實久美子, 2016, 「『本朝通鑑』の編修とその時代」, 『海を渡る史書—東アジアの「通鑑』』, 勉誠出版, 136~148쪽 참조.

18 野口武彦, 1979, 「水戸史學と大日本史—前期水戸學の歴史思惟—」, 『江戸の歴史家—歴史という名の毒』, 筑摩書房, 115~144쪽; 揖斐高, 2014, 앞의 책, 126~128쪽.

1720년 『大日本史』 본기와 열전 250권이 막부에 현상된 후 오랜 시기 나머지 부분의 편찬이 중단되었다가, 1909년에 水戸藩에서 다시 志 126권과 表 28권이 완성되어, 최종적으로 『대일본사』는 총 397권 226책의 거질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편찬된 사서였다. 『대일본사』의 철저한 명분사관은 이른바 3대 특필(特筆)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신공황후(神功皇后)를 제기(帝紀)에 넣지 않고 황비전(皇妃傳)에 넣은 것, 대우황자(大友皇子)를 홍문천황(弘文天皇)으로 표기해 제기에 넣은 것, 일본의 남북조(南北朝) 가운데 남조를 정통으로 평가한 것 등이다.

이처럼 『대일본사』는 철저하게 천황 중심의 명분사관에 입각하다 보니,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년 체계에서도 『본조통감』과 다른 부분이 있다. 『대일본사』는 『본조통감』과 일종의 경합 관계 속에서 거기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편찬한 기년체 사서였다. 『대일본사』 역시 『동국통감』을 주요 자료로 참조하였지만 『본조통감』이 편년체 사서라는 점에서 『일본서기』의 기년에 대한 고민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조통감』 인용서목(引用書目) 화한(華韓) 한서부(韓書部)에는 『동국통감』을 위시하여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문수(東文粹)』, 『포은집(圃隱集)』, 『양촌문집(陽村文集)』, 『무릉잡고(武陵雜稿)』, 『목은집(牧隱集)』, 『진산세고(晉山世稿)』, 『하서집(河西集)』, 『모재집(慕齋集)』, 『점필재문집(佔畢齋文集)』, 『도은집(陶隱集)』, 『회재집(晦齋集)』, 『노포당집(老圃堂集)』, 『고사촬요(故事撮要)』, 『필원잡기(筆苑雜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한서(韓書)는 임진왜란 시기 일본에 유입된 것인데, 특히 『동국통감』은 1667년 미토 번주 미쓰쿠니의 주도로 교토 송백당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면서 에도시대 학자들에게 널리 읽히게 되었다. 『동국통감』은 『본조통감』 이래 일본에서 제1의 조선 사서로 널리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1688년 교토의 유의(儒醫) 마쓰시타 겐린[松下見林, 1637~1703]이 편찬한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에서도 조선 서적 가운데 『동국통감』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한편 『본조통감』 인용서목 화서부(華書部)에는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 『송서』, 『남제서』 등의 정사(正史) 외에 기사(記事)·시문(詩文)·승사류(僧事類) 등 총 75종의 서적이 나열되어 있다.¹⁹ 『일본서기』 분

19 『三國志』와 『魏志』가 중복되어 나오는데, 『魏志』는 『魏書』, 즉 『北魏書』의 잘못

주에서 인용한 중국 사서가 『위지(魏志)』, 『진기거주(晉起居注)』에 그친 반면, 『본조통감』에서는 훨씬 많고 다양한 중국 서적을 참조한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정사와 『자치통감』, 『통감강목』 등에 집중되어 있다.

〈표 2〉 『일본서기』와 『본조통감』 인용 중국 사서

『日本書紀』	『本朝通鑑』(神武紀~持統紀)
『魏志』(神功 39·40·43년) 『晉起居注』(神功 66년)	『後漢書』(成務 60년) 『三國志』(神功 34·39·40·43년) 『宋書』(允恭 14년, 雄略 22년) 『南史』(雄略 2·6년, 武烈 1년) 『隋書』(推古 8·15년) 『唐書』(舒明 2·4·5년, 孝德 5년, 齊明 6년, 天智 1·2·3·5·6년) 『資治通鑑』(應神 16년, 孝德 1년) 『通鑑綱目』(孝德 1년, 天智 1·2·3·5·6·7년)

물론 『일본서기』에서 직접 서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기』, 『한서』, 『후한서』(『동관한기』), 『삼국지』 등이 본문의 전거 자료였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²⁰ 또한 『일본서기』 분주 말미에 상투적으로 쓰인 “他皆效此” 표현도 두예(杜預, 222~284)의 『춘추좌씨경전집해(春秋左氏經傳集解)]를 참조한 것이고, 배송지(裴松之, 372~451)의 『삼국지주(三國志注)]에 인용된 문장을 채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서기』 분주의 작성 방침이나 형식도 『삼국지주』를 모방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²¹

으로 보인다.

- 20 小島憲之, 1962,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上), 塙書房, 322~358쪽.
한편 최근 池田昌廣, 2008, 「范曄『後漢書』の傳來と『日本書紀』」, 『日本漢文學研究』 3, 9~17쪽에서는 『일본서기』가 范曄의 『後漢書』나 『東觀漢記』를 직접 참조 인용한 것이 아니라, 類書인 『華林遍略』에 인용된 문장을 재인용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 21 遠藤慶太, 2015, 「日本書紀の分註—傳承の複數性から」, 『日本書紀の形成と諸資料』, 塙書房, 81~89쪽.

하지만 『일본서기』에 비해 『본조통감』에서 인용된 중국 사서의 항목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도적으로 다양하다. 『일본서기』가 신공기에 초점을 맞춰 중국 사서를 집중 인용한 것과 달리 『본조통감』에서는 전반적으로 참조해 관련 기사를 보충하고 있다.

『일본서기』의 찬자들은 신공황후를 『삼국지』 동이전에 등장하는 3세기의 역사적 존재인 왜(倭) 여왕(女王) 비미호(卑彌呼)에 비정하기 위해 신공기의 분주에서 『위지』와 『진기거주』를 인용하였다. 신공황후를 비미호로 보는 시각은 『일본서기』 편찬 당시의 인식이었다. 나이토 코난[內藤湖南, 1866~1934] 이래 여러 연구를 통해 반증되었듯이 신공황후 시대가 『일본서기』 편찬 초기부터 기년 설정의 기준이 되었고 비미호에 비정하려는 의도가 당시부터 있었다고 이해되고 있다.²²

한편 『본조통감』에서는 신공황후뿐만 아니라 다른 천황에 대해서도 다수의 중국 사서를 인용해 『일본서기』의 기년을 중국사의 연대와 나란하게 비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서기』의 연대 기록에 중국사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Ⅲ. 백제 왕대(王代) 기록의 기년 비정과 『동국통감』

『본조통감』의 기년을 살펴보기 위해 신무기부터 웅락기까지의 기록 가운데 한국 관계 기록의 전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2 神田秀夫, 1957, 「古事記の崩御年干支と書紀の干支—古事記中卷研究の前提として—」, 『國語國文』 26-2, 122~136쪽.

〈표 3〉 『본조통감』(신무기~응락기)의 한국 관계 기록의 전거

기년	관련국(왕대 기록)	전거	비고
崇神 65	任那	『日本書紀』	
垂仁 2	任那	『日本書紀』	
3	新羅	『日本書紀』	
88	新羅	『日本書紀』	
仲哀 8	新羅	『日本書紀』	
9	新羅	『日本書紀』/『新撰姓氏錄』	
神功 5	新羅	『日本書紀』	
46	卓淳國, 百濟	『日本書紀』	
47	百濟, 新羅	『日本書紀』	
49	百濟, 新羅, 加羅	『日本書紀』	
50	百濟	『日本書紀』	
51	百濟	『日本書紀』	
52	百濟	『日本書紀』	
55	百濟(背古王薨)	『日本書紀』	肖古王
56	百濟(皇子貴須立爲王)	『日本書紀』	王子貴須
62	新羅, 加羅, 百濟	『日本書紀』(『百濟記』)	
64	百濟(貴須王薨)	『日本書紀』	
65	百濟(枕流王薨)	『日本書紀』	
應神 3	百濟(阿花王立)	『日本書紀』	
7	高麗, 百濟, 任那, 新羅	『日本書紀』	韓人池
8	百濟	『日本書紀』(『百濟記』)	
9	三韓 ²³	『日本書紀』	
14	百濟, 新羅, 加羅	『日本書紀』/『新撰姓氏錄』	

23 『本朝通鑑』에서는 『日本書紀』의 용례에 따라, 신라·고려(고구려)·백제를 총칭해 ‘三韓’이라 부르고 있다(『本朝通鑑』 권1, 仲哀天皇 9年 冬10月, “高麗百濟爲西蕃永稱不絶朝貢[新羅高麗百濟號三韓]”).

	15	百濟	『日本書紀』/『古事記』	
	16.2	百濟(阿花王薨/直支王立)	『日本書紀』/『古事記』	★(低書)
	16.8	加羅, 新羅	『日本書紀』	
	16.冬	扶餘	『資治通鑑』	
	25	百濟(直支王薨/久爾辛王立)	『日本書紀』	
	28	高麗	『日本書紀』	
	31	新羅	『日本書紀』	
	37	高麗	『日本書紀』	
	39	百濟	『日本書紀』	
仁德	1	百濟	『古今集』	王仁獻倭歌
	11	新羅	『日本書紀』	
	12	高麗	『日本書紀』	
	17	新羅	『日本書紀』	
	41	百濟	『日本書紀』	
	43	百濟	『日本書紀』	
	53	新羅	『日本書紀』	
	58	高麗	『日本書紀』	
	85	百濟(太子腆支)	『東國通鑑』*	腆或作映
履中	6	百濟(王阿華薨…立腆支爲王) 新羅(朴堤上)	『東國通鑑』*	★(本文)
允恭	3	新羅/新良	『日本書紀』/『古事記』	
	42	新羅	『日本書紀』	
雄略	5	任那, 新羅, 百濟	『日本書紀』	
	8	新羅, 高麗, 任那	『日本書紀』	
	9	新羅, 百濟	『日本書紀』	
	11	百濟	『日本書紀』	
	20	高麗, 百濟(蓋鹵王/汶洲王)	『日本書紀』	
	21	百濟	『日本書紀』	
	23	百濟(文斤王薨/末多王立), 高麗	『日本書紀』	

〈표 3〉에 의하면 한국 관련 기록은 『일본서기』를 주로 참고하였으며, 그 외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 『고사기』, 『고금집(古今集)』²⁴ 등 일본 문헌과 『자치통감』, 『동국통감』 등의 외국 사서가 이용되었다.

이 가운데 『동국통감』이 인용된 곳은 인덕(仁德) 85년과 이중(履中) 6년조다. 두 기사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고, 우선 『자치통감』을 참조한 응신(應神) 16년조의 기록을 먼저 검토해 보자.

A. (應神 16년) 이해 겨울 倭 鮮卑 慕容廆가 扶餘國을 공격해 그 왕 依慮를 살해하고 만여 인을 잡아갔다. 우리 서쪽 변경을 넘보았으나 이기지 못하고 遼東으로 돌아갔다.²⁵

A 기록은 『일본서기』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자치통감』 진(晉) 무제(武帝) 태강(太康) 6년(285)조²⁶의 내용을 참고하여 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조통감』 인용서목에 『자치통감』 대신 『통감강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후자를 참고했을 것이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태강 6년(285) 모용외(慕容廆)가 부여를 공격하자 그 왕 의려(依慮)가 자살하고 자제들은 옥저로 도망갔으며, 모용외는 부여의 국성(國城)을 유린한 뒤 1만여 인을 이끌고 돌아갔다. 그런데 『본조통감』에서는 이 기록을 일본(我)의 서쪽 변경(西鄙)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모용외가 부

24 『本朝通鑑』 권2, 仁德天皇 元年(癸酉), “百濟王仁獻倭歌[詠難波津之花]” 기록의 전거는 『古今集』으로 추정된다. 『古今集』, 즉 『古今和歌集』은 醍醐天皇의 명에 의해 延喜 5~8년(905~908) 편찬된 최초의 勅撰和歌集으로, 『본조통감』 인용서목의 歌書 부분에 그 서명이 보인다.

25 『本朝通鑑』 권2, 應神天皇 16년, “是歲冬 倭 鮮卑慕容廆擊扶餘國 殺其王依慮 驅兵萬餘人 以窺我西鄙 不克歸遼東.”

26 『資治通鑑』 권81, 晉紀3 武帝 太康 6년, “是歲 … 帝遣幽州軍討廆 戰于肥如 廆衆大敗 自是每歲犯邊 又東擊扶餘 扶餘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廆夷其國城 驅萬餘人而歸.”

여국을 침공해 일본의 서쪽 변경을 넘보았으나 이기지 못하고 요동으로 돌아갔다고 서술한 것이다. 『자치통감』의 기록을 일본의 서비(西鄙)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부여를 백제와 관련된 지역으로 이해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백제의 왕성(王姓)인 부여씨(扶餘氏)나 백제의 이칭인 남부여(南扶餘)로 인해, 부여를 백제의 지역으로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튼 기년과 관련하여 진 태강 6년(285)의 기록을 응신 16년에 위치시켜 놓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응신 16년을 285년에 비정한 것은 『일본서기』의 본래 기년과 일치하는 것이다. 응신기를 3세기 후반에 비정한 것은 그의 모(母)인 신공황후의 시기를 3세기 전반에 위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공기는 『일본서기』 기년론의 핵심이 되는 시기로 『일본서기』 편찬 당시부터 기년 설정의 기준이 되었다. 라잔도 『일본서기』의 찬자들과 마찬가지로 신공황후를 『후한서』와 『삼국지』에 등장하는 비미호에 비정하였다. 성무기(成務紀) 말미의 저서(低書)에서 『후한서』의 환·영지간(桓靈之間) 왜국이 혼란하자 여주(女主) 비미호를 세웠다고 한 기록을 신공황후의 섭정(201~269)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²⁷ 후한의 환제(桓帝, 재위 147~167)·영제(靈帝, 재위 168~188)는 『일본서기』의 기년에 따르면 성무천황(成務天皇) 시기(131~190)에 해당하지만, 왜국의 정황상 『후한서』에서 언급한 비미호는 신공황후를 가리킨다고 본 것이다.

『본조통감』에서 『일본서기』의 연대에 의문을 드러낸 것은 신공황후의 남편인 족중언존(足仲彦尊), 즉 중애천황의 출생과 관련한 성무(成務) 48년조 기록부터다.

27 『本朝通鑑』 권1, 成務天皇[低書], “今按 後漢書云 桓靈間倭國大亂 更相攻伐 歷年無主 立女子卑彌呼爲主云云 考之則當成務御宇 此時百姓安居天下無事 且非女主則皆不合焉 蓋仲哀御宇 熊襲謀反 神功西征之後 國中無爲也 然則范曄之所記者 謂神功之時呼.”

B. 聖武 48년 봄 3월 천황의 조카 足仲彦尊을 황태자로 삼았다.[日本武尊의 둘째 아들로 당시 나이 31세였다. 지금 살펴보니 景行 43년 日本武尊이 사망하고 이제(聖武 48)까지 66년이 경과했다. 여기서 足仲彦이 31세라고 했으니 聖武 18년에 탄생한 것이다. 살피건대 日本武尊 사망 후 36년이 지난 것이니, 어찌 사후에 아들을 낳는 자가 있겠는가. 비록 의심이 있지만 옛 기록에서 모두 이르니 지금은 살필 만한 근거가 없다.]²⁸

이 기록은 물론 『일본서기』를 참고한 것이다. 그런데 『본조통감』의 분주에서는 족중언존이 일본무존의 2남으로 황태자로 책봉될 당시 31세였으므로 성무 18년에 태어난 것인데, 그때는 이미 일본무존이 사망한 지 36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족중언존은 이후 중애천황이 되며, 신공황후가 바로 그의 비(妃)다. 중애의 출생 연대에 의문이 있다는 『본조통감』의 지적은 이후 1716년 아라이 하쿠세키의 『고사통혹문』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하쿠세키는 『구사기』, 『일본서기』에는 구문(舊聞)에 의해 기록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의문이 적지 않다고 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중애의 나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중애는 31세에 성무천황(成務天皇)의 태자가 되고, 44세에 즉위하여 9년간 재위하다가 52세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중애가 경행천황(景行天皇) 43년 사망한 일본무존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경행(景行) 43년부터 중애 말년까지 88년이 되기 때문에 앞의 기록과 나이가 서로 맞지 않게 된다. 일본무존이 사망한 후 30여 년 후에 중애가 출생한 것도 문제이고, 일본무존의 아들이라면 그 나이가 90세에 이르기 때문에 52세에 사망했다는 기록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행과 성무의 재위 연대가 모두 60년으로 동일한 것이

28 『本朝通鑑』 권1, 成務天皇 48년, “春三月 皇姪足仲彦尊爲皇太子[日本武尊第二子 時年三十一 今按景行四十三年 日本武尊薨 至今歲六十六年也 此曰足仲彦 三十一歲 則以成務十八年 誕生也 考之則日本武尊薨後三十六年 豈有死後生子者乎 雖有疑焉 舊記皆云爾 則今無可據考焉.]”

나, 일본무존과 중애의 봉년도 모두 의문이라는 것이다.²⁹

그동안 『일본서기』 중애천황의 생몰 기록에 대해 하쿠세키가 처음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많이 언급되었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 1644년 라잔이 『본조편년록』(『본조통감』 정편)에서 그 문제를 먼저 지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본조통감』에서 상대 인물의 생몰 연대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몇 군데 더 있다. 먼저 응신 14년조의 갈성습진언(葛城襲津彦, 沙至比跪)은 『일본서기』 신공기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인물인데 응신기에 그가 다시 등장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였다.³⁰ 또한 인덕(仁德) 55년조에서는 무내숙이(武内宿禰)의 사망 기록과 함께 그 연대에 관한 여러 설을 소개하였다.³¹ 『일본서기』 인덕기 55년조에 무내숙이의 사망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기록은 다른 자료를 참조한 것이다. 무내숙이가 『일본서기』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인덕 50년조 그의 장수를 찬양한 노래에서다. 『본조통감』에서는 무내숙이가 인덕 55년 280세로 사망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설(異說)을 소개하였다. 과도한 수명에 대한 찬자의 의견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지만 분주를 통해 기록에 의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헤이안시대의 『공경보임(公卿補任)』과 가마쿠라시대의 『수경(水鏡)』에서도 무내숙이가 인덕 55년에 죽었다고 하여 『본조통감』의 기록과 일치한다.³² 한편

29 新井白石, 『古史通或問』中; 1977, 『新井白石全集』3, 國書刊行會, 370~371쪽.

30 『本朝通鑑』 권2, 應神天皇 14年, “弓月王自百濟來朝 奏曰 臣領己國之人夫百二十縣而歸化 然爲新羅人被拘留 在加羅國 爰遣葛城襲津彦 而召弓月之人夫於加羅 然經三年 而襲津彦不來[今按神功紀 則襲津彦已死 再見於此 未詳].”

31 『本朝通鑑』 권2, 仁德天皇 55年, “大臣武内宿禰薨[時年二百八十 歷仕景行成務仲哀神功應神仁德六朝 在大臣位二百四十四年 或曰 仁德七十八年 武内薨 壽三百十餘歲云云 孝元帝之曾孫 屋主忍男武雄心命之子也 紀氏譜曰 武内薨時三百三十歲 或曰 三百七歲].”

32 헤이안시대의 公卿官員錄인 『公卿補任』과 가마쿠라시대의 史話集(歷史物語)인 『水鏡』에 대한 자세한 해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무로마치시대의 『제왕편년기(帝王編年記)』에서는 무내숙이의 사망 연대가 인덕 78년이며, 당시 310여 세였다고도 하였다.³³ 무내숙이가 시조로 나오는 『기씨보(紀氏譜)』에서는 무내가 330세로 사망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무내숙이가 300세 넘게 장수했다고 하는 여러 기록은 유교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라잔에게 옛 기록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본조통감』에서 『일본서기』의 기년과 관련해 가장 적나라하게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부분은 백제의 왕대(王代) 기록이다. 『본조통감』에서는 백제 아신왕(阿莘王)과 전지왕(腆支王)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응신기와 이증기에 중복된 기록이 보인다.

C-1. 백제왕 阿花가薨하였다. 直支王을 백제에 돌아가 왕위를 잇게 하고 東韓의 땅을 내렸다.³⁴

2. 이 해에 백제왕 阿華가薨하였다. 태자 腆支가 우리나라에서 백제로 귀국했다. 전지의 동생 訓解가 섭정을 하며 전지를 기다렸는데 막내 동생 磔禮가 혼해를 살해하고 자립했다. 우리 병사가 전지를 호송하여 설레를 살해하고 전지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³⁵

‘阿花’와 ‘阿華’로 ‘화’의 한자 표기가 다르지만, 모두 백제 아신왕(阿莘王)

美川圭, 2001, 「公卿補任」, 『國史大系書目解題』(下), 吉川弘文館, 881~906쪽;
益田宗, 2001, 「水鏡」, 『國史大系書目解題』(下), 吉川弘文館, 407~430쪽.

33 南北朝시기인 1363~1368년에 편찬된 연대기인 『帝王編年記』에 대한 자세한 해제는 田島公, 2001, 「帝王編年記」, 『國史大系書目解題』(下), 吉川弘文館, 371~406쪽 참조.

34 『本朝通鑑』 권2, 應神天皇 16년[低書], “百濟王阿花薨 詔返直支王於國 嗣位賜東韓之地.”

35 『本朝通鑑』 권2, 履中天皇 6년, “是年 百濟王阿華薨 太子腆支自我國歸百濟 腆支弟訓解攝政 待腆支 季弟磔禮殺訓解自立 我兵護送腆支 殺磔禮 立腆支爲王.”

을 가리킨다. 직지 역시 전지왕의 다른 이름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아신왕은 ‘아방(阿芳)’이라고도 하며, 전지왕은 ‘직지(直支)’라고도 불렀다.³⁶

C-1 기록은 『일본서기』 응신 16년조를 참고한 것이다. 반면 C-2 기록은 『일본서기』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동국통감』의 기록³⁷을 참고해 보충한 것이다.

그런데 『본조통감』의 기록 범례를 살펴보면 두 기록 사이에 형식의 차이가 있다. 응신 16년조에서는 아신왕의 사망 기사를 본문보다 한 칸 내려서 쓰는 ‘저서(低書)’ 형식으로 기록한 반면, 이중 6년조에서는 본문에 기록하였다.

『본조통감』의 범례에 따르면 일이 괴탄하여 비록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것은 ‘저서(低書)’하여 각 단의 끝에 따로 기록하였다고 한다.³⁸ 기록의 내용에 의문이 있는 속설(俗說)은 본문과 구분해 한 칸 내려쓰는 저서의 형식으로 부기한 것이다. 저서는 역사 인식의 합리성을 존중하면서도 고전(古傳)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절충된 서술 형식이었다.³⁹ 앞서 본 『후한서』의 비미호를 신공황후에 비정한 찬자 라잔의 견해도 성무기 말미의 저서 형식으로 서술된 것이다. 이처럼 저서는 본문과 다른 이설(異說)이나 찬자의 견해를 부기하는 데 이용되었다.

『본조통감』 응신 16년조의 본문에선 왕인(王仁)의 도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본서기』를 참조한 것이다. 『일본서기』에서는 왕인 기록에 이어, 이해에 백제 아화왕(阿花王, 阿莘王)이 흥(薨)하자 직지왕(直支王, 腆支王)을 귀국시켜

36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或云阿芳] 枕流王之元子; 腆支王[或云直支] 梁書名映 阿莘王之元子.”

37 『東國通鑑』 권4, 三國紀 腆支王 元年, “百濟王阿莘薨 太子腆支質倭國不還 太子仲弟訓解攝國政 以待太子之還 季弟磔禮殺訓解 自立爲王 腆支聞王訃 痛哭請歸 倭主以兵百人衛送 腆支既至國界 漢城人解忠迎謂曰 大王棄世 磔禮殺兄自立 願太子早爲之計 腆支以倭兵自衛 依海島備之 國人殺磔禮 迎立爲王.”

38 『本朝通鑑』 凡例, “一事涉怪誕 雖不可信 然膾炙人口者 低書之 姑貽疑 聊辨其故 分書於各段之末.”

39 坂本太郎, 1958, 『日本の修史と史學』, 至文堂(박인호·임상선 역, 1991, 『일본사학사』, 첨성대, 146쪽).

왕위를 잇게 했다고 한 C-1 관련 기록이 실려 있다. 그런데 『본조통감』에서는 왕인 기록만 본문에 기록하고, 아화왕-직지왕 기록은 따로 떼어 저서(低書)로 기록한 것이다. 저서의 맨 앞에는 『고사기』에 전하는 왕인에 대한 다른 이설을 먼저 소개하고, 그 뒤에 아화왕-직지왕 기록을 덧붙여 놓았다. 『일본서기』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은 취사선택해서 저서로 부기하였다.

이러한 응신 16년조의 기록 방식은 이중 6년조에서 아화왕의 사망과 전지왕의 즉위를 본문에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결국 『본조통감』에서는 백제 아신왕과 전지왕의 왕대와 관련해서 『일본서기』보다 『동국통감』의 기록을 더 신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조통감』에서는 아신왕의 태자 전지가 왜에 질자로 간 사실을 이중기 바로 앞의 인덕 85년조 본문에서 기록하였다.⁴⁰ 이 기록 역시 『일본서기』에 없는 것으로, 『동국통감』의 기록⁴¹을 참고해 보충한 것이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아신왕과 태자 전지는 인덕조(仁德朝)가 아니라 그 앞 시대인 응신조(應神朝)에 기록되어야 한다. 『일본서기』에는 아화왕이 응신 3년에 즉위하였고, 8년에 왕자 직지를 보내왔다고 하였다. 또한 응신 25년에 직지왕이 죽고, 아들 구이신왕(久爾辛王)이 즉위했다고도 하였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아신왕이나 전지왕은 모두 응신조에 왜와 통교한 백제의 왕들이었다.

그런데 『본조통감』에서는 『일본서기』의 백제 왕대 기록보다 『동국통감』의 기록을 더 신뢰하여 인덕조에 관련 기록을 서술한 것이다. 『동국통감』의 백제 왕대 기록이 『일본서기』의 기년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전지(腆支)의 “腆”을 또는 ‘映’이라고도 한다”는 분주 역시 『동국통감』을 참조한 것이다.⁴²

40 『本朝通鑑』권2, 仁德天皇 85년, “百濟太子腆支[腆或作映]質於我結好”.
 41 『東國通鑑』권4, 三國紀 百濟 阿莘王 6년, “夏五月 百濟與倭結好 遣太子腆支爲質”.
 42 映은 『宋史』 및 『梁書』 百濟傳 등 중국 사서에 보이는 전지왕의 이름으로 『삼국사기』에도 언급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映은 腆의 誤寫 내지 誤刊으로 이해되어 왔

『동국통감』의 백제 왕대 기록을 참고한 결과 『본조통감』에서 진지가 왜에 인질로 온 인덕 85년은 백제 아신왕 6년(397), 아화왕이 사망한 이증 6년은 아신왕 14년(405)에 각각 비정되었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아화왕은 응신 16년에 사망했고, 그 기년에 따르면 서기 285년에 해당한다. 285년과 405년은 모두 을사년(乙巳年)으로 간지상 정확히 2주갑(120년) 떨어져 있다. 『일본서기』와 『동국통감』의 기년에 2주갑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백제 왕대의 차이를 통해 『본조통감』의 찬자는 『일본서기』의 기년이 인상되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본조통감』에서는 아신왕과 진지왕에 대해 기록한 뒤에 『동국통감』과 『일본서기』 사이의 기록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D. 신라인 朴堤上은 반란을 일으켰다고 사칭한 자로 우리나라에 도망해 왔다. 먼저 몰래 신라의 質子 未斯欣을 도주시켰다가 欣이 멀리 간 후에 일이 발각되어 제상을 가두고 불에 태워 죽였다. 신라에서는 충신이라 생각해 그의 관직을 추증하고 기렸다.[제상의 일은 『동국통감』에 상세히 보인다. 무릇 『동국통감』에 기록된 본국과 삼한의 통교 후 전쟁은 國史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다.]⁴³

말미의 분주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증 6년조의 박제상(朴堤上) 기록은 『동국통감』을 참조한 것이다. 박제상 기록은 『동국통감』(권4) 삼국기(三國紀) 신라 놀

다. 실제로 梁 大同(535~545) 연간에 작성된 『梁職貢圖』의 百濟國 題記에는 “義熙中其王餘臆”이라 되어 있다(李成市, 2014, 「『梁職貢圖』 高句麗·百濟·新羅の題記について」, 鈴木靖民·金子修一 編, 『梁職貢圖と東部ユーラシア世界』, 勉誠出版, 441쪽).

43 『本朝通鑑』 권2, 履中天皇 6년, “新羅人朴堤上 詐稱叛者 來奔於我國 既而竊使其質子未斯欣逃去 欣行既遠 事覺 卽囚堤上燒殺之 新羅以爲忠臣贈榮之[堤上事 詳見東國通鑑 凡東國通鑑所載 本國三韓或交通或戰爭 多與國史不合].” 『本朝通鑑』 第3, 88쪽(國書刊行會 간행, 1918)에는 이 기록 分註에 “堤上事”로 되어 있지만 본문에서 “朴堤上”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아 “堤上事”의 잘못이다.

지왕(訥祗王) 2년(418)조에 보인다. 눌지왕 2년은 백제 전지왕 14년으로 박제상이 왜에 인질로 가 있던 미사흔을 구하러 갔다가 사망한 해다. 미사흔이 왜에 인질로 간 것은 실성왕(實聖王) 원년(402)이었다.

『동국통감』에는 박제상이 왜에 파견된 시기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⁴⁴ 『본조통감』에서는 이중 6년, 즉 아신왕 말년 기사에 부기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동국통감』에 실려 있는 왜와 삼한의 관계 기사는 국사(國史)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국사는 바로 일본 육국사(六國史)의 첫 번째 사서인 『일본서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따르면 박제상(朴堤上, 金堤上)은 신라 내물왕(356~402)과 실성왕(402~417)대의 인물로 나타난다. 『일본서기』 신공황후 5년 3월조에는 신라에서 온 질자(質子) 미질기지파진간기(微叱己知波珍干岐)가 신라 사신 모마리질지(毛麻里叱智) 등의 조력으로 무사히 탈출·귀국하게 된 이야기와 모마리질지 등이 잡혀 처형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신공 5년의 모마리질지 기록은 박(검)제상(毛末) 설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⁴⁵

『일본서기』의 신공 5년은 서기 205년에 해당하여 『삼국사기』의 연대와 비교하면 20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연대 차이를 감안하면 신공 49년의 기록을 2주갑이 아니라 3주갑(180년) 인하여 보아야 한다는 주장⁴⁶도 일리가 있

44 『三國史記』에서는 實聖王 원년(402), 『三國遺事』에서는 奈勿王 36년(391)에 堤上을 왜에 파견하였다고 하여 기록에 차이가 있다.

45 三品彰英, 1962, 앞의 책, 77쪽; 김현구 외, 2002,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1)』, 일지사, 77~78쪽.

46 山尾幸久, 1977, 앞의 책; 1989, 「任那成立記事の史料批判」, 『古代の朝日關係』, 塙書房; 2003, 「皇國史觀の克服と『日本書紀』批判」, 『古代王權の原像—東アジア史上の古墳時代—』, 學生社, 17~18쪽. 山尾幸久는 『일본서기』 神功紀 46년, 49년, 52년조 중 46년과 52년의 기사는 통설과 같이 2주갑 인하여 보는 반면, 49년조의 加羅 7國 평정 기사는 七支刀와 七子鏡의 緣起에 근거해 3주갑 인하여 429년의 사실로 보고 있다. 최근 仁藤敦史, 2018, 「神功紀外交記事の基礎的考察」,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211, 225~226쪽에서도 『일

다고 하겠다.

『본조통감』에서도 『일본서기』를 참조하여 신공 5년에 미사흔으로 추정되는 미질허지(微叱許智)의 신라 귀국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박제상의 일과는 연결시켜 보지는 못하였다. 『동국통감』에는 박제상의 왜 파견 기록이 자세히 보이는데 『일본서기』에서는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박제상 기사를 대표적으로 거론하며 『동국통감』과 『일본서기』의 기록에 차이가 많다고 했지만, 백제 왕대 기록에서 보이는 2주갑 차이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조통감』의 편찬 과정에서 『일본서기』의 기록이 『동국통감』과 비교해 2주갑 소급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인지되었을 것이다.

『일본서기』와 『동국통감』의 기록을 모두 따르면 아신왕의 사망과 전지왕의 사위(嗣位)가 중복 기록되는 모순이 생긴다. 이 때문에 『본조통감』에서는 『일본서기』의 백제 왕대 기록을 본문이 아니라 저서(低書)로 한 단 낮추어 분서(分書)한 것이다. 이에 반해 『본조통감』과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대일본사』에서는 『일본서기』를 그대로 좇아 아신왕에서 전지왕으로의 왕위 계승 기사를 응신 16년조에 기록하고, 이중 6년조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⁴⁷ 『본조통감』이나 『대일본사』나 모두 『동국통감』을 참고하였으면서도 그 기록의 수용 여부에서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지왕의 사망 연도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전지왕 16년(420)으로 나온다. 『일본서기』의 응신 25년은 서기 294년이며, 통설에 따라 2주갑 인하해 계산하면 414년이 된다. 『삼국사기』의 연대와 6년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 『송서』 백제전에 의하면 경평(景平) 2년(424)에 여영(餘映), 즉 전지왕이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424년에도 전지왕이 생존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송서』 기록을 존중해 전지왕의 재위 기간을 424년까지로 보거나 구이신왕 즉위 이후

본서기』 인용 「百濟記」 기사 분석을 통해 가라 7국 평정 기사를 3주갑 인하해 백제 毗有王 3년(429)의 사실로 파악하고 있다.

47 『大日本史』 권3, 本紀3 應神天皇 16년, “是歲 百濟王阿花卒 勅直支 環國嗣位 賜所削東韓之地.”

에도 전지왕의 이름으로 송에 견사했다고 보기도 한다.⁴⁸

그런데 『일본서기』에서도 응신 39년에 아직 직지왕(전지왕)이 생존해 있으면서 왜에 누이동생을 사신으로 보냈다고 한다. 『일본서기』의 응신 39년은 308년으로 수정 연대를 적용하면 428년이 되며 백제 비유왕(毗有王) 2년에 해당한다. 『일본서기』에는 백제 전지왕-구이신왕 다음 비유왕에 대한 기록이 아예 보이지 않으며 이어서 개로왕(蓋鹵王)이 나타나는 왕대 기록의 공백이 있다.

『본조통감』 응신 39년조에서는 『일본서기』와 같이 “百濟 直支王”이라 하지 않고 “百濟王”이라고만 표기했는데, 이는 『일본서기』 기록의 모순을 파악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라잔은 『본조편년록』(『본조통감』 정편)의 편찬에 『동국통감』을 참조하면서 이상과 같은 『일본서기』 백제 왕대 기록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을 것이다.

『동국통감』에는 아신왕-전지왕 이전 초고왕(肖古王, 近肖古王)-귀수왕(貴須王, 近仇首王)-침류왕(枕流王)-진사왕(辰斯王) 등의 왕대 기록도 자세히 실려 있다. 초고왕 이하 백제 왕들은 『일본서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본조통감』에서는 아신왕-전지왕의 왕위 계승 기록만 선택하여 『일본서기』의 기록을 보완하였다(〈표 4〉 참조).

전지왕은 왜(倭)에 인질로 와 있다가 백제에 귀국해 왜의 군사적 도움을 받고 즉위한 왕이었다. 왜와 긴밀한 관련이 있었던 전지왕의 즉위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동국통감』을 참조하면서 그 연대도 따른 것이다.⁴⁹

그러나 이렇게 기록의 구체성만으로 취사선택하다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대 기록이 착종되는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편년체 사서인

48 笠井倭人, 2000, 「中國史書における百濟王統譜」, 『古代の日朝關係と日本書紀』, 吉川弘文館, 105쪽.

49 『본조통감』에서 東城王의 즉위와 관련해 『동국통감』의 기록을 취하지 않고, 末多王(동성왕)이 왜의 군사적 도움을 받고 즉위한 과정이 자세히 서술된 『일본서기』 雄略 23년조의 기사를 채록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4〉 『본조통감』의 백제 왕대 기록

왕명	기록	전거(연도)	실연도
背古王(近肖古王)	(神功 55) 薨	『日本書紀』(255)	375
貴須王(近仇首王)	(神功 56) 立	『日本書紀』(256)	375
	(神功 64) 薨	『日本書紀』(264)	384
枕流王	(神功 64) 立	『日本書紀』(264)	384
	(神功 65) 薨	『日本書紀』(265)	385
辰斯王	(神功 65) 奪位	『日本書紀』(265)	385
	(應神 3) 被殺	『日本書紀』(272)	392
阿花王	(應神 3) 立	『日本書紀』(272)	392
	[低書](應神 16) 薨	『日本書紀』(285)	405
直支王	(應神 25) 薨	『日本書紀』(295)	420
久爾辛王	(應神 25) 嗣	『日本書紀』(295)	420
阿華王(阿莘王)	(履中 6) 薨	『東國通鑑』(405)	405
腆支王	(履中 6) 立	『東國通鑑』(405)	405

『본조통감』의 치명적인 한계다. 그럼에도 일본 사서 가운데 처음으로 『동국통감』을 활용하면서 『일본서기』 백제 관계 기록의 기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근대에 『일본서기』 기년 연구의 방법론을 확립한 나가도 『삼국사기』나 『동국통감』의 연대와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일본서기』 기년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본조통감』 이래 에도시대 학자들이 『일본서기』의 기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계기도 『동국통감』에 나타난 삼국과 왜의 교류 기록을 참고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본조통감』에서 『동국통감』과 『일본서기』의 기록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지적한 D 기록의 이중 6년은 『일본서기』의 기년에 의하면 서기 405년이다. 이 무렵 이후가 되면 『일본서기』와 『동국통감』의 기년이 서로 나란

하게 일치하게 된다. 『일본서기』의 기년 문제가 해소되고 실연대와 일치하게 되는 것은 웅략천황(雄略天皇) 말년, 즉 5세기 후반부터다. 역사 자료로서 『일본서기』의 가치가 발휘되는 것도 제21대 웅략천황기부터라고 이해된다.⁵⁰

『본조통감』에서 『일본서기』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한 찬자의 의견을 이중(履中) 말년의 분주(分註)에 넣은 것도 이전 기록을 모두 포괄해 총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초고왕 이후 구이신왕까지 『일본서기』의 백제 왕대 기록은 『동국통감』과 비교해 2주갑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 시기 백제와 왜의 교류 기록은, 『동국통감』을 따르면 모두 그 연대가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록의 차이를 일일이 지적하면 국사인 『일본서기』의 체계가 해체될 수도 있는 부담이 따른다. 이 점을 감안해 『본조통감』에서 『일본서기』와 『동국통감』의 기록 차이를 이중 말년조에 일괄하여 언급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동국통감』을 이용한 기년 비정 방식은 『본조통감』보다 조금 뒤 1688년에 편찬된 마쓰시타 겐린의 『이칭일본전』에서 더욱 가시화된다. 『이칭일본전』에서는 인덕천황 34년을 『동국통감』의 신라 내물왕 9년 및 백제 근초고왕 원년(丙午, 346)에 비정하고 있다.⁵¹ 『일본서기』에서 근초고왕의 말년(375)을 신공 55년(255)에 비정한 것과 2주갑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일본서기』가 아니라 『동국통감』의 기년 체계에 따라 일본 천황의 연대를 새롭게 비정한 것이다.

50 遠藤慶太, 2016, 「日本最初の歴史書」, 『六國史－日本書紀に始まる古代の「正史」－』, 中央公論新社, 39쪽.

51 『異稱日本傳』 卷下, 東國通鑑卷之四 丙午 晉永和 2年[仁德天皇 34年](1975, 國書刊行會, 1116쪽).

IV. 중국 관계 기록의 기년과 『송서』의 왜(倭) 5왕

『본조통감』의 기년 인식은 중국 정사를 참고하여 기사를 보충한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서기』에서도 신공기의 분주(分註)에서 『삼국지』 왜인전(倭人傳)을 참조하여, 신공황후를 경초(景初) 3년(239) 위(魏)에 견사(遣使)한 왜 여왕 비미호에 비정한 바 있다. 그런데 『본조통감』에서는 더 많은 중국 사서를 참고하여 중국과 일본의 왕대를 나란하게 비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옹략기까지 『본조통감』에서 중국 정사(正史)를 직접 인용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본조통감』의 중국 정사 관련 기록

기년	『本朝通鑑』	중국 정사	『日本書紀』
成務 60	後漢書云 桓靈間倭國大亂 更相攻伐 歷年無主 立女子卑彌呼爲主云云	『後漢書』 ⁵²	
神功 34	魏山陽公劉協薨 [卽漢獻帝也]	『三國志』 ⁵³	
39	遣大夫難升米赴魏 [去年魏司馬懿平遼東公孫淵 故我國遣使至於帶方 遂到魏都云云 淵子孫有來奔於我者]	『三國志』 ⁵⁴ 『三國志』 ⁵⁵	神功 39 ⁵⁶

52 『後漢書』 권85, 東夷列傳 倭, “桓靈間 倭國大亂 更相攻伐 歷年無主 有一女子名曰卑彌呼 年長不嫁 事鬼神道 能以妖惑眾 於是共立爲王.”

53 『三國志』 권3, 魏書 明帝 青龍 2年(234), “三月庚寅 山陽公薨 帝素服發哀 遣使持節典護喪事.”

54 『三國志』 권30, 東夷傳 倭人, “景初二年六月 倭女王遣大夫難升米等詣郡 求詣天子朝獻 太守劉夏遣吏將送詣京都.”

55 『三國志』 권3, 魏書 明帝 景初 2年(238), “二年春正月 詔太尉司馬宣王帥眾討遼東(秋八月) 丙寅 司馬宣王圍公孫淵於襄平 大破之 傳淵首于京都 海東諸郡平.”

56 『日本書紀』 권9, 神功皇后 39年, “是年太歲己未[魏志云 明帝景初三年六月 倭女王遣大夫難斗米等詣郡 求詣天子朝獻 太守鄧夏遣使將送詣京都也].” “景

40	魏建忠校尉梯携來聘	『三國志』 ⁵⁷	神功 40 ⁵⁸
43	使大夫伊聲等八人赴魏	『三國志』 ⁵⁹	神功 43 ⁶⁰
允恭 14	遣使者於宋贈方物 [其書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辰韓 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云云 時宋文帝元嘉二年也]	『宋書』 ⁶¹	
雄略 6	夏四月 吳國遣使貢獻 [南史曰 宋孝武大明六年 倭國王武自稱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 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云云 考之 當此年 然則此言吳國者蓋其宋使 來聘歟 此時無斥言吳國者 宋帝都建康 乃吳國舊地也]	『南史』 ⁶²	

『본조통감』 성무 60년조 저서(低書)에서 『후한서』와 『일본서기』의 기록 차이를 지적한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삼국지』 동이전 왜인조에는 경초 2년

初 3年, “大夫 難升米”, “太守 劉夏” 등의 표기에서 『三國志』와 차이가 있다.

- 57 『三國志』 권30, 東夷傳 倭人, “正始元年 太守弓遺遣建中校尉梯携等奉詔書印綬詣倭國 拜假倭王 并齎詔賜金帛錦罽刀鏡采物 倭王因使上表答謝恩詔.”
- 58 『日本書紀』 권9, 神功皇后 40年, “[魏志云 正始元年 遣建忠校尉梯携等 奉詔書印綬 詣倭國也].” 『三國志』에는 “建中校尉梯携”라고 표기되어 차이가 있다.
- 59 『三國志』 권30, 東夷傳 倭人, “其(正始)四年 倭王復遣使大夫伊聲者掖邪狗等八人 上獻生口倭錦絳青縑緜衣帛布丹木狝短弓矢 掖邪狗等壹拜率善中郎將印綬.”
- 60 『日本書紀』 권9, 神功皇后 43年, “[魏志云 正始四年 倭王復遣使大夫伊聲者掖耶約等八人上獻].” 『三國志』에는 “伊聲者掖邪狗”라고 표기되어 차이가 있다.
- 61 『宋書』 권97, 東夷傳 倭國, “太祖元嘉二年 讚又遣司馬曹達奉表獻方物 讚死弟珍立 遣使貢獻 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表求除正 詔除安東將軍倭國王 珍又求除正倭隋等十三人平西征虜冠軍輔國將軍號 詔並聽.”
- 62 『南史』 권79, 東夷傳 倭國, “孝武大明六年 詔授興安東將軍 倭國王 興死 弟武立 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238)에 난승미(難升米)가 위(魏)에 견사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일본서기』 신공 39년(己未)조의 분주(分註)⁶³에서는, 명제(明帝) 경초 3년(239) 6월에 왜 여왕이 대부(大夫) 난두미 등을 위에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전하는 『삼국지』 판본에는 “경초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서기』 신공 39년조 인용 『위지(魏志)』나 『양서(梁書)』에는 모두 “경초 3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삼국지』의 경초 2년은 경초 3년의 오기(誤記)로 파악된다.⁶⁴

『본조통감』에서는 『삼국지』가 아니라 『일본서기』의 분주를 따라 경초 3년에 이 기록을 기재하였다. 그러면서 그 분주에서 전년(경초 2년)에 사마의(司馬懿)가 요동의 공손씨(公孫氏)를 평정했기 때문에 왜가 위에 견사할 수 있었다고 찬자의 의견을 덧붙여 놓고 있다. 위가 238년에 요동 공손씨를 평정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왜의 사신 파견이 가능하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이해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본조통감』의 중국 정사 기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윤공천황(允恭天皇)을 『송서』 왜국전에 나오는 왜왕 찬(讚)에 비정하고 있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송서』에는 송에 견사한 왜 5왕, 즉 찬·진(珍)·제(濟)·흥(興)·무(武) 등 5인의 왜왕이 보인다.

그동안 왜 5왕의 비정에 대하여 다양한 설이 제기되었다. 무에 대해서는 제

63 그동안 『일본서기』의 分註 가운데 後人이 덧붙인 것이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서기』 古寫本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헤이안시대 寫本에서도 현행본과 같이 분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분주를 편찬 당시(720년)의 本註로 보는 것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다(坂本太郎, 1955, 「日本書紀の分註について」, 『史學雜誌』 64-10; 1988, 『古事記と日本書紀』, 吉川弘文館, 151~177쪽; 遠藤慶太, 2015, 앞의 글, 75쪽). 특히 神功 39년조 본문의 ‘太歲’는 대개 원년과 같은 중요한 연도의 간지 앞에 보이는 이례적인 표기로서 이에 대응하는 분주가 없다면 ‘태세’를 붙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분주만큼은 『일본서기』의 편찬자가 직접 붙인 것이라고 이해된다. 神功 39년에 “太歲 己未”라고 특기한 것은, 이해에 처음 倭國이 중국에 사신을 파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奥田尚, 1986, 「神功・應神條の實年代について」, 『東洋文化學科年報』 1, 40쪽).

64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三國志·晉書 外國傳 譯註』(譯註 中國正史 外國傳 4), 동북아역사재단, 99쪽.

21대 웅략천황으로 보는 데 이론(異論)이 없지만, 나머지 4왕에 대해서는 여러 비정이 있다. 찬(17대 履中, 16대 仁德, 15대 應神), 진(18대 反正, 16대 仁德, 17대 履中), 제(19대 允恭, 18대 反正), 흥(20대 安康, 19대 允恭) 등으로 의견이 다양하다.⁶⁵

특히 찬에 대해서는 『일본서기』의 15대 응신천황, 16대 인덕천황, 17대 이충천황 등이 거론되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대체로 인덕설(仁德說)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진은 18대 반정천황(反正天皇), 제는 19대 윤공천황, 흥은 20대 안강천황(安康天皇), 무는 21대 웅략천황에 비정하는 것⁶⁶이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⁶⁷

『송서』의 왜 5왕을 『일본서기』의 천왕에 처음 비정한 것은 무로마치시대 선승(禪僧) 즈이케이슈호[瑞溪周鳳, 1391~1473]이었다. 그의 『선린국보기(善隣國寶記)』에서 왜왕이 남조(南朝)에 외교 사절을 파견했던 사실을 중국 정사로부터 인용했는데, 동진(東晉)으로의 파견을 이중·반정천황대라 하고, 찬을 윤공천황에 비정하였다. 이러한 비정은 『일본서기』의 기년을 그대로 믿고 중국 정사의 연대와 기계적으로 일치시킨 것이다.⁶⁸ 『일본서기』의 기년에 따라 윤공 원년(壬子)을 동진 의희(義熙) 8년(412)에 비정하고, 송 원가(元嘉) 30년(453)까지를 윤공의 재위 기간으로 본 것이다.

『본조통감』에서도 이와 같은 연대 비교에 따라 윤공천황을 송 원가 2년에 견사한 왜왕 찬에 비정하였다. 『일본서기』의 연대를 그대로 따르면 윤공 14년은 송 원가 2년(425)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웅략 6년 오국(吳國)이 왜국(倭國)에

65 石原道博 編譯, 1985, 『新訂 魏志倭人傳·後漢書倭傳·宋書倭國傳·隋書倭國傳』(中國正史 日本傳 1), 岩波書店, 29~30쪽.

66 志水正司, 1966, 「倭の五王に關する基礎的考察」, 『史學』 39-2, 41~45쪽; 1994, 『日本古代史の檢証』, 東京堂出版.

67 坂元義種, 1981, 『倭の五王-空白の五世紀』, 教育社, 76~81쪽; 河内春人, 2018, 『倭の五王-王位繼承と五世紀の東アジア』, 中央公論新社, 163쪽.

68 河内春人, 2018, 앞의 책, 165~166쪽.

견사한 것을 『남사(南史)』의 송 효무제(孝武帝) 대명(大明) 6년(462) 왜국 왕 무(武)의 책봉과 관련시켜 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본조통감』은 5세기 이후 중국 관계 기록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서기』의 기년을 따르고 있다.

사실 『일본서기』의 기년과 『송서』의 왜 5왕 기록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대상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 『일본서기』 윤공-안강-용락 3천황의 시기인 421~479년 사이에, 『송서』에는 찬, 진, 제, 흥, 무 등 5인의 왜왕이 보인다. 이런 모순 때문에 『본조통감』에서는 찬을 윤공천황에, 무를 용락천황에 각각 비정하고, 나머지 진, 제, 흥 등 3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와 중국 정사의 기록 간에 모순이 있음을 인지한 것이다.

앞서 『동국통감』의 백제 왕대 기록을 참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송서』 기록을 모두 취신해서 보충하게 되면 국사인 『일본서기』의 기년 체계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찬과 무에 대해서만 비정하는 데 그쳤던 것으로 이해된다.

〈표 6〉 왜(倭) 5왕의 대송(對宋) 견사(遣使) 기록

서기	송 연호	왜왕 명	출전(『宋書』)	『日本書紀』 기년
421	永初 2	讚	倭國傳	允恭(412~452)
425	元嘉 2	讚	倭國傳	
430	元嘉 7		文帝紀	
438	元嘉 15	珍	文帝紀	
443	元嘉 20	濟	倭國傳	
451	元嘉 28	濟	文帝紀	
				安康(453~456)
460	大明 4	興	孝武帝紀	雄略(457~479)
462	大明 6		孝武帝紀·倭國傳	
477	昇明 1		順帝紀	
478	昇明 2		順帝紀	

반면 18세기 초의 아라이 하쿠세키는 왜 5왕에 대해 찬=이중, 진=반정, 제=윤공, 흥=안강, 무=옹락에 각각 비정하였다.⁶⁹ 이는 『일본서기』의 기년 체계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근대 이후의 왜 5왕 비정과 매우 가까운 견해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서기』의 왕대를 따르는 한 왜 5왕을 역사적으로 비정하기는 어렵다. 왜 5왕의 이름에 따라 비정하든, 그들의 계보 관계에 의해 비정하든, 421~478년 사이에 5명의 왜왕이 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서기』에서 옹락 이전 천황의 재위 연대를 연장·소급 기록하면서 『송서』의 기록과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통설처럼 왜 5왕을 비정하게 되면 옹락천황(무)을 제외한 나머지 인덕·반정·윤공·안강 4천황(찬·진·제·흥)의 『일본서기』 기년은 모두 축소·인하 조정되어야만 한다. 옹락기를 기준으로 『일본서기』 기년에 대한 신뢰도가 나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서기』의 기년은 옹락기부터 백제 관계 사료와 실연대가 일치하게 된다. 옹락기 5년(461) 6월조에 백제의 도군(烏君, 武寧王)이 축자(筑紫)의 각라도(各羅島)에서 태어났다는 기사가 있다. 공주 무령왕릉(武寧王陵) 출토 묘지명에 “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年六十二歲 癸卯年五月丙戌朔七日壬辰崩”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봉년인 계묘년(523)으로부터 62년을 역산하면 무령왕의 출생 연도는 461년이 되어 옹락기의 연대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 이전 『일본서기』의 천황 봉년 연대는 『송서』 왜국전에 보이는 왜왕의 건사 연대와 차이가 나고 부정확하지만, 옹락(무)기부터는 건사 연대와 봉년 연대가 서로 조응하게 된다.⁷⁰

『송서』에 보이는 왜 5왕(찬, 진, 제, 흥, 무)의 건사 기록은 『일본서기』의 기년 비정에서 중요한 근거 기준이 된다. 왜 5왕 가운데 마지막 무가 바로 옹락천황의 이름 ‘大泊瀨幼武’의 ‘武’에 해당하며, 승명(昇明) 2년(478) 무가 송 순제(順帝)에 건사상표(遣使上表)하였다는 『송서』의 기록과 『일본서기』의 옹락 8년

69 新井白石, 『古史通或問』(『新井白石全集』 3, 392~393쪽).

70 小林敏男, 2006, 앞의 책, 301쪽.

(464) 오(吳, 南朝)에 견사한 기록이 서로 조응되고, 또 웅략의 말년이 479년으로 견사 시기가 재위 기간에 포함되어 서로 부합한다. 이나리아마고분[稻荷山古墳] 출토 금촉명철검(金錯銘鐵劍) 명문을 통해서도 무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점에서⁷¹ 5세기 후반 웅략조는 일본 고대사에서 중요한 ‘획기(劃期)’로 평가되고 있다. 『본조통감』에서도 5세기 이후 『일본서기』의 기년을 대체로 신뢰하며 『송서』 등 중국 정사를 참조해 왜왕 찬과 무를 각각 윤공과 웅략에 비정한 것이다.

『일본서기』의 초대 신무천황~21대 웅략천황까지의 재위 연대를 합산하면 1,132년이 되지만, 중간에 공위였던 7년을 가산하면 총 1,139년의 적년 수가 나온다. 웅략의 말년인 서기 479~1,139년을 적산하면 신무천황의 즉위년은 기원전 660년에 비정된다.

『일본서기』에서 신무 원년을 기원전 660년(辛酉)에 소급 비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논증이 있었다. 이미 에도시대 국학자 이시하라 마사야키[石原正明, 1760~1821]는 『연년수필(年年隨筆)』에서 신무기원(神武紀元)은 신유혁명설(辛酉革命說)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학자 반 노부토모(伴信友, 1773~1846)도 『일본기년력고(日本紀年曆考)』를 저술하여 신무천황 즉위년은 신유혁명설에 의해 제명천황(齊明天皇) 7년(661) 신유년에서 1부(部, 1,320년)를 소급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논증하였다.⁷²

근대에 들어와 나가 미치요[那河通世]도 초대 신무천황의 신유즉위년(辛酉即位年)은 중국의 신유혁명설에 기초해 추고천황(推古天皇) 9년(601) 신유로부터 21원(元, 1元=60년, 즉 1,260년) 소급되어 결정된 작위적인 기록이라는 점을

71 왜왕 武의 이름은 『일본서기』 雄略天皇의 이름인 오호하즈세노와카다케루[大泊瀨幼武]의 ‘다케루(武)’를 의역한 것인데, 埼玉縣 行田市 稻荷山古墳 출토 金錯銘鐵劍에 보이는 ‘와카다케루[獲加多支爾]大王’과 熊本縣 菊水町 江田船山古墳 출토 銀錯銘大刀의 ‘獲□□□爾大王’이 武의 실제 왕호로 이해되고 있다(吉村武彦 編著, 2005, 『古代史の基礎智識』, 角川學藝出版, 78~85쪽).

72 山田英雄, 2014, 앞의 책, 68쪽.

〈표 7〉 『일본서기』의 상대(上代) 천황 재위 연수

천황	간지	재위 연수
(1) 神武	辛酉~丙子	76
	丁丑~己卯	3(공위)
(2) 綏靖	庚辰~壬子	33
(3) 安寧	癸丑~庚寅	38
(4) 懿德	辛卯~甲子	34
	乙丑	1(공위)
(5) 孝昭	丙寅~戊子	83
(6) 孝安	己丑~庚午	102
(7) 孝靈	辛未~丙戌	76
(8) 孝元	丁亥~癸未	57
(9) 開化	甲申~癸未	60
(10) 崇神	甲申~辛卯	68
(11) 垂仁	壬辰~庚午	99
(12) 景行	辛未~庚午	60
(13) 成務	辛未~庚午	60
	辛未	1(공위)
(14) 仲哀	壬申~庚辰	9
神功皇后	辛巳~己丑	69(攝政)
(15) 應神	庚寅~庚午	41
	辛未~壬申	2(공위)
(16) 仁德	癸酉~己亥	87
(17) 履中	庚子~乙巳	6
(18) 反正	丙午~辛亥	6
(19) 允恭	壬子~癸巳	42
(20) 安康	甲午~丙申	3
(21) 雄略	丁酉~己未	23
積年	기원전 660~기원후 479	1,139

지적하였다.⁷³ 에도시대까지는 헤이안시대 미요시노 기요유키[三善清行]의 『혁명勘文(革命勘文)』 참위설을 따라 21원 1부(部)를 1,320년으로 보았으나, 나카는 1부(部)를 1,260년으로 새롭게 파악하여 제명 말년, 즉 천지 원년(661)이 아니라 그보다 60년 전인 추고 9년 신유를 기준년으로 본 것이다. 하시모토 마사키치[橋本増吉, 1880~1932] 역시 나카의 기년조정설을 받아들여 상대 기년과 참위사상(讖緯思想)의 관계를 상세히 논하였다.⁷⁴ 그 후 1부를 1,260년으로 볼 것인가 1,320년으로 볼 것인가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안되어 학계의 논의가 아직 결착되지 않고 있지만 『일본서기』의 기년이 인위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없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⁷⁵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조통감』에서는 라잔의 『본조편년록』 고본(稿本)에서 신무 원년을 “周惠王十七年” 즉 기원전 660년에 비정한 주서(朱書) 기록을 삭제하였다.⁷⁶ 이는 가호가 가지고 있던 『일본서기』의 신무 원년 비정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시사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백제 왕대 관련 기년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본조통감』에서 신무 원년을 주혜왕 17년에 비정한 라잔의 주서를 삭제한 것은 『일본서기』의 천황 재위 연대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표 7>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서기』의 천황 재위 연수를 모두 그대로 따라 적산해야 신무 원년이 기원전 660년에 설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조통감』의 신무 원년 비정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발전하여 아라이 하쿠세키의 2, 3백 년 소급설, 도 데이칸의 6백 년 소급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또한 『본조통감』에서 『송서』에 나오는 왜 5왕 가운데 찬과 무의 두 왕만을

73 那珂通世, 1958, 앞의 책, 40~50쪽.

74 橋本増吉, 1932, 『東洋史上より觀たる日本上古史研究』 1(邪馬台國論考), 大岡山書店; 1956, 『改訂増補 東洋史上より觀たる日本上古史研究』, 東洋文庫, 635~637쪽.

75 吉田一彦, 2016, 『『日本書紀』の呪縛』, 集英社, 57쪽.

76 安川實, 1980, 앞의 책, 86쪽.

천황에 비정한 것도 『일본서기』의 왕대 기록에 모순이 있음을 드러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본서기』와 중국 사서의 연대 비교를 통해 역대 천황의 재위 연수와 계보에 문제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된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70년 편찬된 『본조통감』에서는 『일본서기』를 주요 전거 자료를 이용하면서도, 『동국통감』이나 『송서』 등의 외국 사서를 참고하여 『일본서기』의 기록과 나란하게 연결시켜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서기』의 기년 체계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외국 사서를 참조해 새로 보충한 기사에서는 『일본서기』 기년의 모순을 인식하고 조정된 기년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서기』의 백제 왕대 기록이 『동국통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본조통감』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송서』 등 중국 정사를 참고해 왜 5왕 중 찬과 무를 각각 윤공천황과 윤락천황에 비정한 것도 『일본서기』의 기년 문제를 잘 드러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서기』의 기년 체계와 『송서』의 왜 5왕 기록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서기』 기년의 문제점은 『본조통감』의 편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되고 노정되었다. 하지만 『일본서기』를 일차 자료로 존중한 『본조통감』의 기본 방침에 따라 기년 체계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하지는 못하였다.

『일본서기』를 존중한 『본조통감』의 입장은 범례에서 나타나지만 대화(大化) 원년(645)을 황극천황(皇極天皇) 말년에 기록한 이유에 대해 서술한 사론(史論)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희의 『통감강목』에 따르면 유년칭원법에 따라 효덕천황(孝德天皇)이 즉위한 다음해가 대화 원년이 되지만 『일본서기』에 따라 효덕이 즉위한 당해인 황극 말년부터 대화 원년으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조통감』에서는 『일본서기』의 기년 체계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있지만 『동국통감』과 『송서』 등의 중국 정사를 참조하면서 불가피하게 『일본서기』의 기년 문제를 노정시키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동국통감』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서기』의 기년과 비교·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되었다. 『동국통감』이 에도시대 『일본서기』 기년의 재인식에 미친 영향을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바로 『본조통감』이다. 『동국통감』을 이용한 『본조통감』의 기년 비정 방식은 이후 18세기 아라이 하쿠세키의 회의적인 『일본서기』 기년론에 발판을 제공하였다. 또한 19세기 말 나가 미치요의 기년수정론 역시 『동국통감』의 연대와 비교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조통감』의 기년 비정과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보면 『본조통감』에서 비롯된 『일본서기』 기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18세기의 아라이 하쿠세키를 거쳐 근대의 나가 미치요, 스가 마사토모[菅政友, 1824~1897], 호시노 히사시[星野恒, 1839~1917] 등 수사국학파(修史局學派, 실증사학)의 기년수정론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일본사』의 편찬 과정에서 나타난 미토학파[水戸學派]의 『일본서기』 기년을 존중한 시각은 근세 황국사관(皇國史觀)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근대에는 나가 등의 기년수정론을 비판한 오치아이 나오즈미[落合直澄, 1840~1891], 이케베 요시타카[池邊義象, 1864~1923] 등의 국학파(國學派) 학자들에게 계승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사학사에서 보면 『본조통감』이 『일본서기』 기년수정론에 단서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계기는 바로 『동국통감』과 『송서』 등의 외국 사서를 수용한 결과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구 외, 2002,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Ⅰ)』, 일지사.
- 橋本増吉, 1956, 『改訂増補 東洋史上より観たる日本上古史研究』, 東洋文庫.
- 吉田一彦, 2016, 『『日本書紀』の呪縛』, 集英社.
- 那珂通世, 1958, 「上世紀考」, 『外交繹史』, 岩波書店.
- 那珂通世·三品彰英, 1948, 『増補上世紀考』, 養徳社.
- 藤實久美子, 2016, 「『本朝通鑑』の編修とその時代」, 『海を渡る史書－東アジアの「通鑑」』, 勉誠出版.
- 笠井倭人, 2000, 「中國史書における百濟王統譜」, 『古代の日朝關係と日本書紀』, 吉川弘文館.
-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 山尾幸久, 1977, 『日本國家の形成』, 岩波書店.
- _____, 1989, 「任那成立記事の史料批判」, 『古代の朝日關係』, 塙書房.
- _____, 2003, 「皇國史觀の克服と『日本書紀』批判」, 『古代王權の原像－東アジア史上の古墳時代－』, 學生社.
- 山田英雄, 1979, 『日本書紀』, 教育社; 2014, 『日本書紀の世界』, 講談社.
-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 吉川弘文館.
- 小島憲之, 1962,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上), 塙書房.
- 小林敏男, 2006, 「日本書紀の紀年論(上)·(下)」, 『日本古代國家形成史考』, 校倉書房.
- 神田秀夫, 1957, 「古事記の崩御年干支と書紀の干支－古事記中卷研究の前提として－」, 『國語國文』26-2.
- 安川實, 1980, 『本朝通鑑の研究』, 言叢社.
- 奧田尙, 1986, 「神功·應神條の實年代について」, 『東洋文化學科年報』1.
- 遠藤慶太, 2015, 「日本書紀の分註－傳承の複數性から」, 『日本書紀の形成と諸資料』, 塙書房.

- _____, 2016, 「日本最初の歴史書」, 『六國史－日本書紀に始まる古代の「正史」－』, 中央公論新社.
- 鈴木健一, 2012, 『林羅山－書を讀みて未だ倦まず』, ミネルヴァ書房.
- 揖斐高, 2014, 「『本朝通鑑』の編纂」, 『江戸幕府と儒學者－林羅山・鴛峰・鳳岡三代の闘い』, 中央公論新社.
-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李裕利, 2016, 「朝鮮本『東國通鑑』の日本での流通及び刊行」, 『海を渡る史書－東アジアの「通鑑」－』, 勉誠出版.
- 仁藤敦史, 2018, 「神功紀外交記事の基礎的考察」,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211.
- 池内宏, 1947, 『日本上代史の一研究』, 近藤出版.
- 志水正司, 1966, 「倭の五王に關する基礎的考察」, 『史學』 39-2; 1994, 『日本古代史の檢証』, 東京堂出版.
- 池田昌廣, 2008, 「范曄『後漢書』の傳來と『日本書紀』」, 『日本漢文學研究』 3.
- 倉西裕子, 2003, 『日本書紀の眞實－紀年論を解く－』, 講談社.
- 澤井啓一, 2016, 「林家の學問と『本朝通鑑』」, 『海を渡る史書－東アジアの「通鑑」－』, 勉誠出版.
- 坂本太郎, 1955, 「日本書紀の分註について」, 『史學雜誌』 64-10; 1988, 『古事記と日本書紀』, 吉川弘文館.
- _____, 1958, 『日本の修史と史學』, 至文堂.
- 坂元義種, 1981, 『倭の五王－空白の五世紀』, 教育社.
- 河内春人, 2018, 『倭の五王－王位繼承と五世紀の東アジア－』, 中央公論新社.

『본조통감』의 상대(上代) 기년(紀年)과 외국 사서의 수용

— 『일본서기』 기년론과 관련하여 —

박대재

1670년 편찬된 『본조통감』에서 『일본서기』와 『동국통감』이나 『송서』 등 외국 사서의 기록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본서기』 기년상의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노정되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동국통감』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서기』의 기년과 비교·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되었다. 에도시대 초기 『일본서기』의 기년을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동국통감』이 일본 학계에 미친 영향을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바로 『본조통감』이다. 『일본서기』와 『동국통감』을 비교한 『본조통감』의 기년 비정 방식은 18세기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등의 『일본서기』 기년회의론의 발판이 되었고, 19세기 말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의 기년수정론으로 발전하였다는 데 사학사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본조통감(本朝通鑑)』, 『일본서기(日本書紀)』, 『동국통감(東國通鑑)』, 『송서(宋書)』, 기년론(紀年論), 하야시 라잔[林羅山], 하야시 가호[林鷲峰],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백제(百濟)

ABSTRACT

Honcho tsugan's Calendar Era for the Ancient Times and the Acceptance of Foreign History Books: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Nihon Shoki's* Calendar Era

Park Daejae

Comparisons between the records in the *Nihon shoki* (日本書紀) and foreign history books such as *Dongguk tonggam* (東國通鑑) or *Songshu* (宋書) in *Honcho tsugan* (本朝通鑑) published in 1670 have naturally revealed the problems in the *Nihon shoki's* calendar era. When *Dongguk tonggam* was introduced in Japan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t was used as a material to compare and check the calendar era of the *Nihon shoki*. *Honcho tsugan* is the first evidence to show the influence of *Dongguk tonggam* to the Japanese academic circle in the process of reconsidering the *Nihon shoki's* calendar during the early Edo period. The method of *Honcho tsugan* that estimated the date by comparing the *Nihon shoki* and *Dongguk tonggam* became a groundwork for Arai Hakuseki (新井白石)'s skeptical theories about the

Nihon shoki's calendar era. Considering that these theories evolved into Naka Michiyo (那珂通世)'s proposal to adjust the calendar (by adding two sexagenary cycles) later, the significance of this method in historiography cannot be neglected.

Keywords: *Honcho tsugan*, *Nihon shoki*, *Dongguk tonggam*, *Songshu*, theory on calendar era, Hayashi Razan, Hayashi Gahou, Naka Michiyo, Baekje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도와 『울릉도』의 ‘우산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변석(辯析)

유미림 |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 I. 머리말
- II. 『울릉도 사적』과 이본의 발굴
- III. 『울릉도 사적』과 『울릉도』
- IV. 맺음말



I. 머리말

1693년, 울릉도에서 어로하던 조선인들이 일본인에게 연행되어 일본으로 들어간 사건을 계기로 조선 조정에서 울릉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694년 가을, 숙종은 삼척영장 장한상에게 울릉도 및 주변 도서를 조사해오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조사 후 장한상은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이른바 장계(狀啟)를 비변사에 제출했으나 그 장계와 별단(別單)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외후손 신광박이 필사한 것으로 알려진 『울릉도 사적(蔚陵島事蹟)』이라는 제목의 문서만 전해지고 있다. 이 『울릉도 사적』에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는 듯한 언급이 있어, 독도에 대해 논할 때 이 문서가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은 이본이 장한상의 가장(家藏) 문헌으로 여럿 존재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¹ 즉 『교동 수사공 만제록(喬桐水使公輓祭錄)』과 『절도공 양세 실록(節度公兩世實錄)』에도 『울릉도 사적』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이본을 소개한 이원택 박사는 기존의 『울릉도 사적』이 포함되어 있는 『절도공 양세 비명(節度公兩世碑銘)』 등 세 문헌을 비교하여 『교동 수사공 만제록』이 나머지 2종보다 가장 먼저 필사되었으며, 『절도공 양세 비명』이 『절도공 양세 실록』을 재편집·필사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박세당의 『울릉도』가 남구만의 아들 남학명이 편찬한 『와유록(臥遊錄)』에도 실려 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양자를 문헌학적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그는 박세당의 글을 장한상의 글과 연관시켜 박세당이 ‘우산도’라고 한 섬을 독도로 해석한 필자의 논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이원택 박사의 논지는 박세당의 『울릉도』에서 보이는 우산도 관련

* 투고: 2019년 2월 7일, 심사 완료: 2019년 5월 11일, 게재 확정: 2019년 5월 17일

1 이원택, 2018,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16호, 동북아역사재단.

내용이 『동국여지승람』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우산도’를 울릉도에서 맑은 날 보이는 섬으로 해석한 필자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² 이에 이 글은 이원택 박사의 문헌학적 검토 및 필자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울릉도 사적』과 이본의 발굴

1. 『울릉도 사적』의 발굴 경위

필자는 2007년에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과 박세당의 『울릉도』를 번역하여, 『『울릉도』와 『울릉도 사적』 역주 및 관련 기록의 비교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때 번역의 저본으로 삼은 장한상의 글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이고, 박세당의 글은 장서각 소장본이었다. 그런데 필자는 『울릉도 사적』을 번역할 당시 이 문서가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가 펴낸 『독도연구』(1985)에 따르면, 『울릉도 사적』은 1978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이 울릉도에서 입수한 『절도공 양세 비명』이라는 소책자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송병기도 1978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이 울릉도에서 입수한 『울릉도 사적』이 삼척첨사 장한상이 조사한 기록으로서 외훈손 신광박이 정리한 것이라고 하였다.³ 필자는 이 문서가 1977년 11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한 울릉도·독도학술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장한상 후손가에서 발굴되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이 파견된 해는 1977년 10월이다.⁴ 《경향신

2 이원택, 2018, 위의 글, 7쪽.

3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121쪽.

4 《동아일보》 1977년 10월 25일자 기사, 10월 19일부터 조사하여 23일 돌아온 것으

문》⁵은 “학술조사단은 울릉도교육청 이종렬 장학사가 최근에 찾아낸 강원도 삼척영장의 울릉도사적기에서 독도가 언급되고 있음을 발견, 독도 자료를 삼척 지방의 고문서에서도 찾아낼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냈다. 문제의 울릉도사적기는 삼척영장 장한상이 숙종 20년 관할 도서인 울릉도를 시찰한 기록으로 12대손 장재수 씨(울릉서중 교장)에 의해 공개된 귀중한 자료다”라고 좀 더 자세히 보도하였다.

필자는 울릉도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이종렬 선생⁶에게서 몇 년 전에 이 사료의 발굴 경위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다. 『도지(島誌)』⁷의 필사자이기도 한 그는 1970년대 중반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장재수 교감에게서 그의 집안에 울릉도 관련 사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학 때 원본을 가져올 것을 부탁하여 전달 받아 필사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울릉도 사적』인데, 이를 1977년 학술조사단이 왔을 때 제공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복사한 뒤에 되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술조사단의 일행이었던 이근택 선생의 기억에 따르면, 사료의 존재를 확인한 뒤에 그 다음해인 1978년에 자신이 직접 의성으로 가서 원본을 가져와 다시 복사한 뒤에 장한상 집안에 반환했다는 것이다. 『독도연구』에서 1978년에 발견했다고 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⁸에

로 되어 있다. 『독도연구』에는 최문형의 글도 실려 있는데 최문형은 사료의 발굴 연도를 1977년으로 보았다.

- 5 《경향신문》 1977년 10월 25일자 기사.
- 6 1932년생이다. 울릉도에서 장학사와 장학관, 교감, 교장, 교육장 등을 역임한 뒤 1997년 퇴직했다. 1989년 울릉군지 편찬에도 관계했다. 현재 대구에 거주 중이다.
- 7 원제는 『島誌』(1950)로 개척민 손순섭이 쓴 것인데, 이종렬이 1970년대 중반에 다시 필사하여 『島誌: 鬱陵島史』라고 제목을 붙였다. 필자는 손순섭의 원본을 저본으로 하고 이종렬의 필사본을 참고하여 번역했다(유미림 번역 및 해제, 2016, 『島誌: 울릉도史』, 울릉문화원).
- 8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두 가지로 검색 가능하다. 하나는 『節度公兩世碑銘』이고, 다른 하나는 『독도 자료: 동양편 2, 鬱島記, 鬱陵島紀事 外』(2011)이다. 둘 다 『울릉도 사적』이 실려 있다. 『節度公兩世碑銘』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되어 있고, 『독도 자료』는 책자인데 2008년경 제본된 듯하다. 두 문서의 입수 경위에 대한 기록은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마이크로필름 상태로 소장되어 있고, 1977년에 제작된 것으로 되어 있어 약간의 오차가 있다.⁹ 여러 사람의 기억이 다르다 보니 발굴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종렬 선생이 의성 장한상 집안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를 후손 장재수를 통해 획득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 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장한상의 사당인 경덕사를 관리하는 장자진 선생에 따르면,¹⁰ 자신이 경덕사를 관리하게 된 시기는 15년 전부터라고 한다. 의성조문국박물관의 최강국 학예연구사에 따르면,¹¹ 장한상 관련 고문서 215점은 경덕사에 소장되었다가 2010년 의성군청에 기탁되었고 다시 2012년 12월에 경상북도 도지정 유형 문화재 제443호로 지정(204집)되었다. 215점은 2013년에 개관한 의성조문국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번에 이원택 박사가 발표한 자료는 의성조문국박물관 소장의 이본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원택 박사가 확인했다는 이본, 즉 『교동수사공 만제록』과 『절도공 양세 실록』은 필자도 의성조문국박물관으로부터 원본 이미지 파일을 제공받아 확인하였다.

없다. 다만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자료는 의성조문국박물관에서 입수한 『節度公兩世碑銘』과 같은 판본의 사본으로 보인다.

- 9 이근택 선생은 자신은 원본을 복사했을 뿐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든 시기는 모른다고 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서지사항에는 1977년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든 것으로 되어 있다. 2018년 11월경에 통화했다.
- 10 2018년 10월 30일 장자진 선생과 통화했다. 장자진 선생은 몇 년 전 문화원 경북지회장 김중우에게 문서를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 11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 주관으로 “수도제도에 대한 재조명”을 할 때 연합회 경북지회장 김중우가 “운암 장한상 공의 행장과 독도를 발표”한 적이 있으므로 장자진 선생이 몇 년 전이라고 한 것은 착오일 것이다. 장자진 선생에 따르면, 김중우가 이 대회를 준비하던 중 『절도공 양세 실록』에 『울릉도 사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 11 2018년 10월 24일,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장한상과 울릉도·독도’, 최강국 발표 내용.

2.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도 문제

필자는 『울릉도 사적』의 끝에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는 열두 글자가 있는 것을 보고, 조선 시대에는 노년에 자신의 글을 정리하기 위해 가족에게 옮겨 쓰게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울릉도 사적』도 장한상이 후손을 시켜 정리·필사하게 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임인년을 1722년으로 보았다.¹² 그런데 『울릉도 사적』이 포함되어 있는 『절도공 양세 비명』에는 장한상의 사제문과 비명이 함께 실려 있어 장한상 사후 필사된 것이 분명하므로 장한상 생전인 1722년에 비명을 필사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임인년은 1782, 1842, 1902년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¹³ 『울릉도 사적』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려 있어 사후에 필사된 것이 맞다면 임인년을 1722년으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 점은 필자의 오류다.

그럼에도 필자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장한상의 후손이 비명과 사제문을 모아 『절도공 양세 비명』과 같은 책자 형태로 엮었다면, 사후 50년이 훨씬 지난 1782년 혹은 그 이후에 비명과 관계없는 1694년의 보고서를 다시 필사·삽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그때 삽입된 『울릉도 사적』은 1694년경 필사했던 것을 삽입한 것인가, 아니면 1782년경 다시 필사·삽입한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은 이원택 박사가 『절도공 양세 비명』 외에 다른 두 문헌을 새로 소개했으므로 이들을 비교해 보면 풀릴 것이다.

필자본인 『교동 수사공 만제록』, 『절도공 양세 실록』, 『절도공 양세 비명』은 연도와 편찬자를 추정할 만한 단서, 이를테면 발문이나 서문이 없다. 이원택 박사는 『교동 수사공 만제록』, 『절도공 양세 실록』, 『절도공 양세 비명』 순서로 나왔을 것으로 보았다. 『절도공 양세 실록』의 「울릉도 사적」에 교정할 곳이 표시

12 유미림, 2007, 『「울릉도」와 「울릉도 사적」 역주 및 관련 기록의 비교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 이원택, 2018, 앞의 글, 10쪽.

되어 있는데, 『절도공 양세 비명』이 그 교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절도공 양세 비명』이 『절도공 양세 실록』을 필사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경우 『절도공 양세 실록』과 『절도공 양세 비명』 간의 시간적 간격은 어느 정도인가? 『절도공 양세 실록』은 장한상 사후 얼마 안 되어 엮은 것이고, 『절도공 양세 비명』은 1782년 혹은 그 이후에 엮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절도공 양세 실록』의 교정 표시는 1782년 이후 『절도공 양세 비명』을 엮을 당시 누군가가 표시한 것임을 의미하는가?¹⁴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원택 박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교동 수사공 만제록』, 『절도공 양세 실록』, 『절도공 양세 비명』 세 문헌을 비교해보면, 『교동 수사공 만제록』에는 만사와 치제문, 묘갈명, 『울릉도 사적』이, 『절도공 양세 실록』에는 사제문과 만사, 비명, 『울릉도 사적』이, 『절도공 양세 비명』에는 비명과 사제문, 『울릉도 사적』이 실려 있다. 『절도공 양세 비명』에 만사는 실려 있지 않다. 세 문헌 모두 『울릉도 사적』을 싣고 있지만, ‘壬寅春 外後裔 永陽 申光璞 書’라는 열두 글자는 『절도공 양세 비명』에만 부기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열두 글자의 서체가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글들의 서체와 다르다는 점이다. 『절도공 양세 비명』에는 『양대 비명(兩大碑銘)』, 『사제문(賜祭文)』, 『울릉도 사적(蔚陵島事蹟)』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다른 글이 실려 있다. 『양대 비명』은 교동공(喬桐公, 후에 절도공) 장시규와 북병사공(北兵使公) 장한상의 비명을 가리킨다. 장시규에 대한 비명에는 ‘息山居士延城李萬敷 撰, 外曾孫昌寧後人成爾洞書’라고 쓰여 있는 반면, 장한상에 대한 비명에는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蔡獻徵撰, 崇禎後再周乙巳八月日立’이라고 쓰여 있다. 장한상 비명이 세워진 을사년은 그가 사망한 다음 해인 1725년을 말한다.

그런데 ‘壬寅春 外後裔 永陽 申光璞 書’라는 열두 글자가 『절도공 양세 비명』에만 부기되어 있다면, 이 안에 실린 세 가지 유형의 다른 글은 같은 시기에

14 『절도공 양세 실록』에 교정 표시를 하고 삽입할 글자를 써넣은 것의 서체는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울릉도 사적』의 서체와 유사하다.

필사되었음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의 다른 글이 같은 시기에 필사되었다면 임인년에 신광박이 필사했다는 것이므로 그중 하나인 『울릉도 사적』도 임인년 이후 필사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 점이 입증된다면 1694년의 보고서인 『울릉도 사적』이 임인년에 다시 필사되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렸다는 사실이 성립될 것이다.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은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세 가지 유형의 글들을 동일인이 동일한 시기에 필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글 가운데 『사제문』과 『울릉도 사적』은 서체가 같아 보이지만, 『양대 비명』은 서체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의 농도도 다르다. 서체가 같아 보이는 『사제문』과 『울릉도 사적』도 『울릉도 사적』의 맨 끝에 쓰여 있는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 열두 글자는 본문의 서체와 다르며 먹의 농도도 다르다.

그렇다면 이는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사제문』과 『울릉도 사적』의 본문 필사자와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의 필사자가 동일인이 아님을 시사한다. 물론 필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문서의 필사 시기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필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박사는 “『절도공 양세 비명』의 끝에 필사자 신광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체로 보아 「울릉도 사적」만이 아니라 책 전체를 신광박이 필사한 것으로 여겨진다”¹⁵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울릉도 사적」 사진만 보고 『절도공 양세 비명』이라는 책 전체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울릉도 사적」에 바짝 붙여 필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광박이 「울릉도 사적」만 쓴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필사 연도와 이름을 쓴 줄이 앞줄에 바짝 붙여 쓰여 있지만, 그것이 「울릉도 사적」만을 필사했다는 표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¹⁶고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양대 비명』은 『사제

15 이원택, 2018, 앞의 글, 10쪽.

16 위와 같음.

문』이나 『울릉도 사적』의 서체와 다르다. 또한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울릉도 사적』은 한 면에 모두 8행의 문장이 들어가 있다.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는 열두 자는 다른 행과 간격을 맞춰 한 행을 차지해도 될 만큼 행간의 여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열두 자만 본문에 바짝 붙여 써서 앞면의 행간과 달라 의문을 자아낸다.

『절도공 양세 실록』은 ‘節度公兩世實錄終’이라는 여덟 글자를 맨 뒤에 써 주되 면을 바꿔 다음 면에서 새로 썼다. 이는 『절도공 양세 실록』 전체 내용이 끝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듯하다. 이에 비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울릉도 사적』에는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는 열두 글자만 『울릉도 사적』 끝에 바짝 붙여 있다. 이원택 박사는 이것이 『울릉도 사적』만을 필사했다는 표시는 아니라고 했지만 『절도공 양세 실록』의 체재와 비교하면 맞지 않는다. 따라서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는 열두 글자가 『절도공 양세 비명』 전체를 필사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울릉도 사적』만을 필사했다는 의미인지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세 가지 유형의 글을 누가 필사했는가를 보기 위해 서체에 따라 편의상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 (1) 『양대 비명』의 필사자(A)
- (2) 절도공·북병사공 『사제문』의 필사자(B)
- (3) 『울릉도 사적』의 필사자(A)
- (4)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의 필사자(C)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문서는 서체가 다른 문서가 함께 들어가 있긴 하

17 서지학적 사항에 관해서는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사업본부장 최채기 박사에게, 서체에 관해서는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원이자 서예가인 최병준 선생에게 자문하였다.

지만 전체 종이의 질이나 바랜 상태로 보아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서체가 다른 문서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1. 『사제문』의 서체(B)가 『양대 비명』과 『울릉도 사적』의 서체(A) 및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의 서체(C)와 다르다는 것은 신광박이 세 문서의 필사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2. 『울릉도 사적』 필사자(A)가 있는데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를 쓴 필사자(C)가 따로 있다면, 이는 임인년이 반드시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3. 그렇다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세 문서는 신광박이 편집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먼저 필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울릉도 사적』도 임인년과 무관하게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신광박이 임인년에 『절도공 양세 비명』을 엮었다는 사실은 성립하지만 이런 사실로 인해 임인년이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도임이 자동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원택 박사는 『절도공 양세 실록』에서 교정할 부분을 표시한 것이 『절도공 양세 비명』에서 바로잡혔다고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절도공 양세 실록』에 실린 『울릉도 사적』에서는 ‘黑雲自北蔽天 電光閃爍’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울릉도 사적』에서는 ‘黑雲自北蔽天 而電光閃爍’으로 ‘而’자가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절도공 양세 실록』의 『울릉도 사적』에서는 ‘排擠錯絕 卒非人所可通逕’으로 쓰고 ‘絕’자를 ‘卒’자 앞에 삽입하도록 표시해 놓았는데, 이것이 『절도공 양세 비명』의 『울릉도 사적』에서는 ‘排擠錯絕 卒非人所可通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교정할 내용인 ‘而’와 ‘絕’자는 도리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울릉도 사적』의 서체와 유사하다.

『절도공 양세 실록』에 표시해 둔 글자가 『절도공 양세 비명』에서 고쳐져 있으므로 『절도공 양세 비명』이 『절도공 양세 실록』보다 뒤에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성립한다고 하자. 그럴 경우 『절도공 양세 실록』에 실린 비명은 1725년 장한

상 사후 바로 만들어졌으므로 『절도공 양세 실록』(1725년 이후)과 『절도공 양세 비명』(1782년 이후)의 시간적 격차는 50년 이상이 벌어진다. 『절도공 양세 실록』을 펴낼 당시 교정 표시를 해두었다가 50여 년이 지난 1782년 이후에야 바로잡은 것일까? 이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없다. 『절도공 양세 실록』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제문과 만사, 비명이 실려 있어 제목과도 맞지 않는다. 『절도공 양세 비명』은 그 안에 수록한 내용에 비춰보면 오히려 이 제목이 더 부합된다. 그럼에도 두 서책 모두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울릉도 사적』을 신고 있다.

신광박이 『절도공 양세 비명』을 편집했다고 한다면, 그는 누구이며 언제 편집했을까? 신광박의 생몰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사료가 있다. 조선 후기 무반의 한 사람인 노상추(1746~1829)가 남긴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에 ‘신광박(申光璞)’이라는 인물이 보인다. 정조 2년(1778) 5월 7일자 일기에 “尙州道湖申光璞, 來訪告歸”가 보이고, 순조 15년(1815) 1월 28일자 일기에 “晚蛇浦申光璞來訪, 卽辛巳生云”¹⁸이 보인다. 경상도 선산이 고향인 노상추는 청년기와 노년기를 고향에서 보냈지만, 관직 생활을 하는 30여 년은 한양·삭주·홍주 등지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일기에 방문객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신광박의 이름이 있으므로 신광박이 동향인 노상추의 임지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일기에 따르면, 신광박이 상주 도호를 지냈으며 신사년, 즉 1761년생이고 사포(蛇浦),¹⁹ 즉 의성 사람임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노상추를 방문한 신광박은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울릉도 사적』의 신광박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이로써 신광박이 말한 임인년 봄은 1782년이고, 그의 나이 22세에 『절도공 양세 비명』의 편집에 관계했다는 사실이 성립한다.

『절도공 양세 비명』이 『절도공 양세 실록』을 필사한 것이라면 『절도공 양세 비명』이 나왔을 시기(1725)와 신광박이 『절도공 양세 비명』을 편집한 시기

18 『盧尙樞日記』(『한국사료총서』 제49집).

19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를 말한다. 1914년에 龍蛇라는 지명으로 통합되었다. 현재 용사1리에 下蛇, 下蛇浦가, 용사2리에 상사, 상사포, 간제, 상제가, 용사3리에 龍申이 속해 있다.

(1782)의 간격이 너무 크다. 그런데 두 문헌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세 문서는 신광박 이전, 즉 1782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는 그 이전에 필사되어 있던 세 문서를 1782년에 『절도공 양세 비명』으로 엮으면서 기입한 것이 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는 열두 글자를 신광박이 임인년에 쓴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사실을 밝혀 놓기 위해 기입했을 수 있다. 조상의 행적에 관한 문헌은 통상 사후 얼마 안 돼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절도공 양세 실록』이 있는데 50년이 지나 『절도공 양세 비명』을 다시 엮었다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이다. 장한상 후손이 『승평문헌록(昇平文獻錄)』의 발문에서 “聖上踐阼後三十七年流火月后孫奎燮敬誌”, 즉 고종 37년(1900)에 만들어졌음을 밝힌 점²⁰에 비춰보면, 『절도공 양세 비명』에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고 부기한 것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렇듯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논의는 억단이고 추론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울릉도 사적』이 1782년에 신광박이 필사한 것인지, 그 전에 필사되어 있던 비명과 사제문예다 『울릉도 사적』을 1782년에 끼워 넣은 것인지, 아니면 신광박이 1782년에 필사했음을 제3자가 다시 밝힌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이본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울릉도 사적』이 1694년의 보고서에서 유래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대가 언제인지, 신광박이 세 문서의 필사 당사자인지, 아니면 신광박이 편집자임을 밝힌 것인지를 따지는 일은 크게 의미가 없다. 더구나 『교동 수사공 만제록』과 『절도공 양세 실록』에도 『울릉도 사적』이 실려 있지만, 두 문헌에는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

20 이원택 박사는 초간본에 “聖上踐阼後三十七年壬戌流火月后孫奎燮敬誌”라고 쓰여 있던 것이 복간본의 동일한 발문에서는 간지 ‘임술’만 삭제했다고 했는데(앞의 글, 14쪽), 성상 37년은 임술년이 아니라 경자년이다. 복간본에서 ‘임술’을 삭제한 이유는 이 때문으로 보인다.

리는 열두 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신광박의 필사 여부는 더더욱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신광박본 외에 다른 이본이 두 가지 더 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으나 이들 문서에서 신광박을 운운하지 않았으므로, 장한상의 1694년 보고서에 의거하여 작성한 『울릉도 사적』이 장한상 가문에 여러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교동 수사공 만제록』과 『절도공 양세 실록』, 『절도공 양세 비명』 중 어느 것도 『울릉도 사적』을 포괄하는 표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세 문헌은 장한상이 비변사에 보고한 장계대로 신지 않았고, 군관의 사전 답사도 신지 않았다. 이에 비해 박세당의 『울릉도』는 장한상이 비변사에 보고한 장계는 물론 군관의 사전 답사까지 신고 있다. 다음은 박세당의 『울릉도』와 『와유록』에 실린 『울릉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Ⅲ. 『울릉도 사적』과 『울릉도』

1.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울릉도』 내용의 비교

『와유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²¹과 규장각 소장본²² 두 종류가 있는데 박세당의 글 『울릉도』는 장서각 소장본에 실려 있다. 이원택 박사는 한국

21 『와유록』은 17세기 중반 산수벽이 있던 사람이 편찬한 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낸 해제에 따르면, 12책의 필사본으로 된 유일본으로서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의 산수 유람에 대한 시문을 모은 것으로 되어 있다. 권마다 앞에 글의 저자를 실은 것도 있으나 빠뜨린 것도 있다(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55쪽).

22 규장각 해제에 따르면, 7책의 필사본인 와유록(古 4790-48)은 18세기 후반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말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松都, 關東, 關北 지방을 여행한 李穀, 金時習, 李珥, 李廷龜, 金昌翁 등 44명이 쓴 73편의 기행문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와유록』의 편자가 남학명(1654~1722)으로 최근 밝혀졌음을 기술하였다. 남학명은 남구만의 아들이고, 남구만(1629~1711)과 박세당(1629~1703)은 처남과 매부 사이이므로, 박세당은 남학명의 고모부가 된다. 이 때문인지 남학명은 『와유록』 서문(『와유록서』)²³을 박세당에게서 받았다. 이원택 박사는 박세당의 아들 박태보의 여행기가 『와유록』에 실려 있고, 그 내용이 박세당의 『울릉도』에 일부 실려 있는 사실에 의거하여 박세당이 『와유록』에 실린 『울릉도』를 필사했을 것으로 보았다.²⁴ 그리고 후에 장한상의 수토 기록 입수 후 이미 필사해 놓은 『울릉도』에 붙여서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필자는 이 부분을 서지학적으로 검증할 능력은 없다. 하지만 박세당의 『울릉도』를 보면, 내용에 따라 몇 가지 주제로 나눌 수는 있으나 서체는 박세당 한 사람의 것으로 보인다. 글자 사이의 여백이나 먹의 농도로 볼 때 그러하다. 이원택 박사는 박세당이 『와유록』의 『울릉도』를 필사한 뒤 장한상의 수토 기록을 입수하게 되자 이미 필사해 놓은 『울릉도』에 붙여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²⁵ 그랬다면 먹의 농도가 달라야 하고 다른 면에 쓰여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울릉도』는 먹의 농도와 종이의 질이 균질하고 내용도 한 면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 이원택 박사는 『와유록』 서문이 쓰인 시기를 1692~1694년 사이로 보았는데, 그랬다면 『와유록』에 장한상의 보고서(1694년 10월)가 실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점은 이원택 박사도 인정한 바이다. 따라서 이런 추정은 성립되기 어렵다. 게다가 박세당의 『울릉도』에는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에는 없는 군관 최세철의 조사가 더 실려 있다. 군관의 보고는 장한상의 보고에 앞서 조정에 보고되었다. 장한상은 군관의 보고 내용을 9월 2일자로 비변사에 제출했고, 자신의 조사 내용은 10월 9일 군관에게 도형(圖形)과 함께 비변사에 제출하게 하였다.²⁶

23 『서계집』 8권.

24 이원택, 2018, 앞의 글, 20쪽.

25 위와 같음.

26 『비변사등록』 숙종 20(1694) 10월 15일.

그러므로 두 문서는 작성 시기와 내용이 다른 별개의 문서다.

무엇보다 박세당의 미간행 문집²⁷과 『와유록』에 실린 『울릉도』는 구성이 다르다.²⁸ 그렇다면 『울릉도』의 필자는 누구일까? 남학명은 출전을 ‘지지(地誌)’라고 표기했고, 박세당은 출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지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삼국사기』와 『동국여지승람』을 인용한 부분까지로 신라 사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조선조 성종 2년 삼봉도 조사까지를 기술하였다. 남학명도 지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승려의 이야기까지 신고 있으므로 출전을 ‘지지’라고 밝힌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는다. 그런데 남학명은 장한상의 수도 사실을 신지 않았다. 박세당과 남학명 모두 지지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글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밑줄 친

<표 1> 지지 인용문에서 박세당과 남학명의 차이

지지	박세당(『울릉도』)	남학명(『울릉도』)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삼국사기)	新羅史曰 于山國 島名鬱陵 地名百里	新羅史曰 于山國 島名鬱陵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三峯岌嶮撐空 南峯稍卑 風日清明 則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則二日可到〕	鬱陵 或曰武陵 亦曰羽陵 登高望之 三峯岌嶮撐空 而南峯稍低 日初出時 風恬浪靜 則衆峯攢青 岩壑呈露 沙汀樹木 歷歷可指	鬱陵 或曰武陵 亦曰羽陵 登高望之 三峯岌嶮撐空 而南峯稍低 日初出時 風恬浪靜 則衆峯攢青 岩壑呈露 沙汀樹木 歷歷可指
一說于山鬱陵本一島 地方百里…)	없음	없음
新羅時 特險不服 智證王 12年…	新羅智證王 關於山國負險不服…	新羅智證王 關於山國負險不服…

27 『울릉도』가 실린 박세당의 문집은 『한국문집총간』으로 간행되기 이전의 필사본이다. 이를 『서계잡록』이라고 이름한 곳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그러므로 『서계잡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붙인 편의상의 제목일 뿐이며 문집의 제목이 아니다.

28 이 글에서는 박세당의 『울릉도』와 『와유록』에 실린 『울릉도』를 편의상 박세당의 『울릉도』와 남학명의 『울릉도』로 분류하여 기술했음을 밝힌다.

부분이 특히 다른 내용이다.

표에서 보듯이 박세당은 “新羅史曰 于山國 島名鬱陵 地名百里”라고 기술한 반면, 남학명은 “新羅史曰 于山國 島名鬱陵”이라고 기술하였다. 박세당은 ‘지방백리’를 ‘地名百里’로 오기했고, 남학명은 “울릉도가 사방 백리”라는 사실 자체를 인용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지지 인용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둘 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두 섬이 현의 동쪽에 있는데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고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으며, 날씨가 맑으면 봉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박세당과 남학명에 오면,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면,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해가 처음 떠오를 무렵 풍랑 없이 고요하면, 봉우리들이 질푸르고 바윗골이 드러나 모래톱의 수목을 역력히 볼 수 있다”라고 바뀌어 있다. 그 차이는 <표 2>와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에 있음을 전제한 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있다고 부연했는데 세 봉우리가 보이는 섬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뒤의 설명으로 보건대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울릉도』는

<표 2>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용에서 박세당과 남학명의 차이

신증동국여지승람	박세당, 남학명
二島在縣正東海中	없음
없음	登高望之
三峯巖巖撐空 南峯稍卑	三峯巖巖撐空 而南峯稍低
風日清明 則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日初出時 風恬浪靜 則衆峯攢青 岩壑呈露 沙汀樹木 歷歷可指
風便則二日可到	없음
一說于山鬱陵本一島	없음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에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면”이라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이어 “세 봉우리가 솟아 있”다고 기술하였다. 제목이 ‘울릉도’이므로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본”다고 한 것은 육지에서 바라본 울릉도를 기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육지의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울릉도의 수목이 또렷이 보인다고 말한 것이다.

〈표 2〉에서 보았듯이 『울릉도』에는 “해가 처음 떠오를 무렵 풍랑 없이 고요하면 봉우리들이 질푸르고 바윗골이 드러나 모래톱의 수목을 역력히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육지에서 울릉도의 봉우리를 볼 수 있음을 기술한 것이다. 우산도가 수목을 또렷이 볼 수 있는 섬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일러 울릉도에서 우산도를 바라본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고 한 것은 육지, 즉 울진현에서 이틀 만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박세당과 남학명은 이 문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박세당·남학명이 기술한 『울릉도』의 가장 큰 차이는 “一說于山鬱陵本一島”라는 문장이다. 박세당·남학명의 『울릉도』에는 이런 내용이 아예 없다. 당시는 조정 대신이나 무신, 역관,²⁹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거론하던 시대였다.³⁰ 그런데 『울릉도』의 저자들은 왜 이 내용만 삭제했을까? 그것은 우산도와 울릉도가 일도(一島)일지도 모른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당시의 인식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울릉도』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은 우산도와 울릉도가 한 섬일 수도 있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부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박세당 이전의 관찬 지리지인 『신증

29 역관이 왜관 관수에게 “울릉도는 원래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어 명백한 사실입니다”라고 직접 말한 바도 있다(『竹嶋紀事』 1698년 4월 10일).

30 『동국여지승람』은 ‘울릉도 쟁계’ 동안 양국이 서계를 왕복할 때마다 언급되었고, 쓰시마번은 이 문헌의 내용을 요약해서 막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장한상도 출장 후 군관을 시켜 먼저 비변사에 『동국여지승람』을 제출하게 했다.

『동국여지승람』은 본문에서 우산도와 울릉도라는 두 섬을 명기하여 동해에 있는 섬이 2도(二島)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분주에서는 “두 섬이 한 섬일지 모른다”는 1도설(一島說)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울릉도』에서는 ‘우산울릉 일도’설이 누락된 것이다. 의도된 누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박세당의 인식인가, 남학명의 인식인가?

2. 장한상 『울릉도 사적』과 박세당 『울릉도』, 남학명 『울릉도』의 관계

장한상과 박세당, 남학명 글의 차이를 알려면 구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대략 <표 3>과 같다.

박세당과 남학명이 지지와 승려에게서 들은 전문(①)을 신고 있는 점은 같다. 하지만 박세당은 군관의 사전 조사와 장한상의 보고를 기술한 반면, 남학명은 이 내용을 신지 않았다.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에도 군관의 사전 조사 내용은 실려 있지 않다.³¹ 이에 비해 박세당은 군관의 사전 조사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흔적, 10월 4일 귀항하기까지의 여정, 6일 삼척 대풍처로 돌아온 뒤의 소회, 군관을 시켜 지도와 『여지승람』을 제출한 사실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술하였다.

장한상의 보고는 세 번에 걸쳐 이뤄졌다. 첫 번째는 군관의 사전 조사, 두 번째는 9월 19일 삼척에서 울릉도로 떠나기 직전의 보고, 세 번째는 9월 19일부터 10월 6일 돌아온 뒤의 일정에 관한 보고다. 돌아온 뒤에 역관 안신휘와 군관을 보내 우선 복명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울릉도 사적』은 세 번째 보고 내용 가운데 중봉에 올라 살펴본 정황까지만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박세당의 『울릉도』는 첫 번째 보고와 세 번째 보고 내용을 신고 있으며 삼척으로 돌아온 뒤의

31 박세당의 『울릉도』는 ‘江原道三陟鎭營將 爲馳報事’라는 제목으로 군관 최세철의 조사 내용을 수록했고, 장한상의 수도 관련 보고도 함께 수록했다. 장한상의 후손이 장한상의 행적만 신기 위해 『울릉도 사적』에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표 3〉 장한상과 남학명, 박세당 글의 구성 비교

번호	『울릉도 사적』(장한상)	『울릉도』(남학명)	『울릉도』(박세당)
①	없음	新羅史曰 于山國 島名鬱陵…	新羅史曰 于山國 島名鬱陵地名百里…
②	없음	嘗遇一僧 自稱壬辰之亂俘入日本 丙午隨倭船 至鬱陵島 島有大山 三峰尤峻 發島三面皆壁立萬仞 南邊稍開豁然…	嘗遇一僧 自稱壬辰之亂俘入日本 丙午隨倭船 至鬱陵島 島有大山 三峰尤峻 發島三面皆壁立萬仞 南邊稍開豁然…
③	없음	蓋二島去此不甚遠 一飄風可至于山島勢卑 不因海氣極清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 鬱陵稍峻 風浪息 則尋常可見 麋鹿熊羆往往越海出來 朝日纔高三丈 則島中黃雀群飛來投竹邊串 一島中竹實 時時漂出 形如大博棊 海女拾之 爲雜佩 簞簞及竹 亦或漂出一節有數尺者 宜箭筒比多有之一	蓋二島去此不甚遠 一飄風可至于山島勢卑 不因海氣極清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 鬱陵稍峻 風浪息 則尋常可見 麋鹿熊羆往往越海出來 朝日纔高三丈 則島中黃雀群飛來投竹邊串 一島中竹實 時時漂出 形如大博棊 海女拾之 爲雜佩 簞簞及竹 亦或漂出一節有數尺者 宜箭筒比多有之一
④	없음	없음	江原道三陟鎮營將 爲馳報事
⑤	없음	없음	嶺東嶺南既□□海船隻乙仍于 不得已新造爲乎矣… 軍官崔世哲 回還言內…
⑥	甲戌九月日 江原道三陟營將張漢相馳報內	없음	江原道三陟鎮右營將 爲馳報事
⑦	蔚陵島被討事 去九月十九日巳時量…	없음	鬱陵島搜討事 去九月十九日巳時量…

정황까지 신고 있다. 따라서 이는 현전하는 『울릉도 사적』이 장한상의 최종 보고서를 필사한 것이 아닌 반면, 박세당의 『울릉도』는 최종 보고서를 필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게다가 『절도공 양세 실록』과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32 이원택 박사는 이 주제를 다룬 학술 발표 자료집에서 장한상의 보고서가 초안과 (최

『울릉도 사적』에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내용이 더러 있다. 하지만 박세당의 『울릉도』는 두 문헌에 비해 오기나 오류가 적어 이를 통해 두 문헌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 점도 박세당이 장한상의 최종 보고서를 옮겨 적었음을 의미한다.³³

그런데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에는 박세당이 기술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어 박세당이 『울릉도 사적』을 옮기면서 누락시킨 것이 아닐까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이는 박세당이 기술하지 않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박세당은 장한상의 보고 가운데 울릉도에 보루를 설치할 방도가 없으며 섬에 가까이 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굴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기술한 내용을 신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장한상의 최종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한상은 왜 이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했을까? 그 이유는 이들 내용이 수토 보고와 큰 관련성이 없으며 사실 관계에서 의심받을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박세당의 『울릉도』가 장한상의 최종 보고서를 필사한 것임은 장한상의 글을 비교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표 4>는 장한상 글과 박세당 글의 형식을 비교한 것인데, 『교동 수사공 만제록』은 “甲戌九月日 江原道三陟營將張某馳報內…”라고 한 반면, 『절도공 양세 실록』과 『절도공 양세 비명』은 “甲戌九月日 江原道三陟營將張漢相馳報內…”라고 하였다. 반면 박세당은 “江原道三陟鎮右營將爲馳報事…”라고 하였다. “馳報內…”라고 한 것은 비변사에 제출된 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변사에 제출된 보고서에 근거하여 인용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爲馳報事”라고 한 박세당의 글이 최종 보고서를 직접 인용한 것에 가깝다. ‘수토’에 관한 표현을 보더라도 『교동 수사공 만제록』은 ‘搜事’로, 『절도공 양세 실록』과 『절도공 양세 비명』은 ‘被討事’로, 박세당은

중) 보고서 두 종류가 존재하여 초안이 장한상 집안에서 『울릉도 사적』으로 전승되고 최종 보고서 등사본은 박세당 집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가 이를 수정하여 발표한 논문에서는 삭제했다.

33 이에 대해서는 유미림, 2013, 앞의 책 참조.

〈표 4〉 장한상과 박세당의 기록 형식 비교

	울릉도 사적(『고동수사공 만제록』)	울릉도 사적(『절도공 양세 실록』)	울릉도 사적(『절도공 양세 비명』)	울릉도(박세당)
보고서의 첫 줄	甲戌九月日 江原道三陟營將張某馳報內	甲戌九月日 江原道三陟營將張漢相馳報內	甲戌九月日 江原道三陟營將張漢相馳報內	江原道三陟鎮右營將 爲馳報事
내용의 첫 부분	蔚陵島搜事 去九月十九日十九日巳時量…	蔚陵島被討事 去九月十九日巳時量…	蔚陵島被討事 去九月十九日巳時量…	鬱陵島搜討事 去九月十九日巳時量…
내용의 끝 부분	緣由馳報事	緣由馳報狀	緣由馳報狀	緣由并以馳報事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	

‘搜討事’로 표기하였다. ‘搜討’라고 올바르게 표기한 이도 박세당뿐인 것이다. 이 역시 박세당이 최종 보고서를 인용했음을 의미한다.³⁴

그리고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박세당의 『울릉도』에는 실려 있지만, 남학명의 『와유록』에는 실려 있지 않다. 이는 박세당이 남학명의 『와유록』보다는 『와유록』이 박세당의 『울릉도』를 인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방증의 하나로 남학명의 일생과 학문 방식을 들 수 있다. 남학명은 주로 부친을 따라다니며 산수 유람을 하는 데 뜻을 두었던 자다. 그의 저작은 『명산기영(名山記詠)』, 『와유록』과 같이 기행문을 엮은 것에 지나지 않고, 사후에 나온 『회은집(晦隱集)』도 심오한 학문 세계와 철학을 엿볼 만한 글은 아니다. 그러나 남학명도 부친 남구만에게서 울릉도 쟁계와 관련된 정보를 들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가 『울릉도』를 『와유록』 안에 편철해 넣은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남학명이 박세당에게서 『와유록』 서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울릉도·우산도

34 이 문제 또한 의문이 남는다. 박세당의 글도 『울릉도 사적』이라는 표제로 되어 있다. 이를 장한상 집안에서 붙인 제목이라면 박세당의 글에 최종 장계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장한상의 집안에는 왜 최종 장계를 실은 문서가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논리를 세웠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와유록』은 『울릉도』의 출전을 ‘지지’라고 밝혔지만 지지에 관한 내용 외에도 다른 내용이 더 들어 있다. 그럼에도 남학명은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원택 박사는 『와유록』 편자가 박세당의 『울릉도』에서 내용의 일부를 가져왔다면 편자를 박세당으로 명기했을 것이며 장한상의 수토 기록도 함께 수록했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박세당이 『와유록』의 『울릉도』를 일부 필사했을 것으로 보았다.³⁵ 그러나 『와유록』 서문이 1692~1694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장한상의 1694년 10월 수토 기록을 『와유록』에 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임은 이원택 박사가 자인한 바다. 따라서 필자는 남학명이 박세당의 『울릉도』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한 채 앞부분만 보고 ‘지지’라고 출전을 밝힌 것이거나, 뒤에 실린 “蓋二島去此不甚遠 一飄風可至” 이하의 내용까지를 지지의 내용으로 보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와유록』에는 찬자(撰者)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글들이 많다. 따라서 이원택 박사가 언급한 남학명이 편자를 박세당으로 명기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모든 경우에 들어맞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와유록』은 『울릉도』에 이어 「유천축산록(遊天竺山錄)」³⁶이라는 글을 실었는데, 제목 아래에 ‘蔚珍’이라고 쓰여 있을 뿐 출전이나 찬자는 쓰여 있지 않다. 그런데 이 글 뒤에는 「불귀사(佛歸寺)」라는 다른 글이 실려 있다. 제목 아래에 ‘天竺山’이라고 쓰여 있으며, 찬자가 임유후(任有後)임이 따로 밝혀져 있다. 임유후는 광해군 때 동생 임자후의 역모에 연좌되어 한때 울진으로 가서 종적을 감추었던 자다.³⁷ 그러므로 「유천축산록」도 임유후의 글로 보인다. 그런데도 남학명은 찬자를 밝히는 대신 ‘울진’이라고만 밝혔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박세당은 『울릉도』에 지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군관의

35 이원택, 2018, 앞의 글, 19~20쪽.

36 『와유록』 권8.

37 『연려실기술』 제24권 「인조조 고사본말」.

사전 조사 및 장한상의 조사 내용도 실었다. 남학명 역시 지지와 군관 및 장한상의 조사 내용을 실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박세당의 글에 실려 있다면, 박세당은 남학명의 『와유록』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이므로 박세당이 남학명 『와유록』의 일부를 필사했을 것이라는 이원택 박사의 설은 성립하기 힘들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박세당의 『울릉도』에 보인 ‘울릉도·우산도’ 인식은 남학명의 인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지 및 수토 기록에 의거한 것이며, 따라서 박세당의 논리(〈표 3〉의 ③)는 자설(自說)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세당이 『울릉도』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침삭한 것은 자설의 정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표 5〉에서 보듯이, 세종 20년 남호가 수백 명을 거느리고 울릉도에 가서 도망간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³⁸ 원문은 “世宗大王二十年 遣縣人南顥 率數百人 往搜逋民 盡俘金丸等七十餘人 而還 其地遂空”이다. 박세당은 이 내용을 “世宗大王二十年 遣縣人南顥 率數百人 往搜逋民 盡俘金丸等七十餘人出來”라고 기술하였다. 즉 그는 남호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까지만 인용하고 ‘其地遂空’, 즉 수토 결과 울릉도가 공도(空島)가 되었다는 사실은 인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보더라도 박세당이 기술한 “蓋二島去此不甚遠…” 이하의 내용은 자설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다음에서 이를 다루고자 한다.

〈표 5〉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울릉도』의 차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울릉도』(박세당)	『울릉도』(남학명)
世宗二十年 遣縣人萬戶 南顥 率數百人 往搜逋民 盡俘金丸等七十餘人以還 其地遂空	世宗大王二十年 遣縣人南顥 率數百人 往搜逋民 盡俘金丸等七十餘人出來	世宗大王二十年 遣縣人南顥 率數百人 往搜逋民 盡俘金丸等七十餘人出來

38 “세종 20년 울진현 사람 만호(萬戶) 남호(南顥)를 보내어 수백 명을 데리고 가서 도망해 가 있는 백성들을 수색하여 김환(金丸) 등 70여 명을 잡아가지고 돌아오게 하니, 그곳 땅이 그만 비었다.”

3. 박세당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 인식 차이

이원택 박사가 필자의 글을 비판한 것 가운데 하나는 『와유록』에 실린 『울릉도』와 박세당의 『울릉도』 및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을 비교해볼 때, 박세당의 ‘우산도’ 관련 기술이 『동국여지승람』의 인식과 같으므로 필자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다.

문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盖二島去此不甚遠 一飄風可至 于山島勢卑 不因海氣極清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 鬱陵稍峻 風浪息 則尋常可見 麋鹿熊獐往往越海出來 朝日纔高三丈 則島中黃雀 群飛來投竹邊串³⁹ (이하 생략)

필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여기(영해 일대)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이를 수 있는 정도다. 우산도(于山島)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울릉이 (우산도 보다) 조금 더 높아 풍랑이 잦아지면 (육지에서) 이따금 사슴과 노루들이 바다건너 오는 것을 예사로 볼 수 있다. 아침 해가 세 길 높이로 떠오를 즈음이면, 섬 안의 누런 참새들이 죽변곶(竹邊串)으로 무리지어 날아와 앉는다.⁴⁰

이원택 박사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39 이원택 박사는, 박세당의 『울릉도』와 남학명의 『와유록』에 실린 『울릉도』가 글자에 출입이 있으므로 박세당이 『와유록』에서 인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세당이 “遂寢其議”라고 한 것을 남학명이 “遂寢”이라고 한 것을 제외하면, 글자의 출입이 거의 없다.

40 유미림, 2013, 앞의 책, 372쪽 참조. 다만 이번에 해석을 약간 바꿨다.

대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은 여기서(영해, 즉 육지)부터 그 거리가 멀지 않아 한 번 바람을 타면 도착할 수 있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바다 공기가 아주 맑지 않거나 (육지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영해, 즉 육지에서)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는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들면, (영해, 즉 육지에서) 늘상 볼 수 있다.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사슴, 곰, 노루 등이 간간히 바다를 건너 (육지로) 나오고, 아침에 해가 겨우 세 길쯤 떠오르면 섬 안의 피꼬리들이 무리지어 날아와 죽변곶에 내려와 앉는다.

이원택 박사는 “이 부분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우산도·울릉도조의 첫머리 언급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산도와 울릉도가 육지(평해, 죽변 등)에서 멀지 않아 순풍을 타면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육지에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까지의 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울릉도와 우산도 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⁴¹ 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와유록』에는 이산해의 「울릉도설(蔚陵島說)」도 「울릉도」와 함께 실려 있는데, 이산해 역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장한상의 「울릉도사적」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은 문리(文理)를 무시한 번역의 결과라고 생각한다”⁴² 고도 하였다. 과연 그러한가?

박세당이 언급한 위의 내용은 『울릉도』에 실린 네 가지 주제 가운데 두 번째 주제, 즉 승려의 전문(傳聞) 뒤에 나온다. 이 내용이 왜 지지를 인용한 내용과 근관 최세철의 조사 내용 사이에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승려 이야기를 기술한 뒤에 “蓋二島去此不甚遠”으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蓋’ 이하가 박세당의 견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위 문장을 해석하는 데 논란이 있는 이유는 저자가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 기술된 내용의 맥락으로 보건대, 두 섬이 육지(영해)에서

41 이원택, 2018, 앞의 글, 24쪽.

42 위와 같음.

그리 멀지 않다고 했으므로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날씨와 고도라는 조건이 맞으면 두 섬이 육지에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택 박사가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바다 공기가 아주 맑지 않거나 (육지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영해, 즉 육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박세당은 앞 문장에서 주어를 ‘두 섬이’라고 기술한 것과 달리, 뒤 문장에서는 주어를 ‘우산도는’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뒤 문장에서 날씨가 맑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인다고 한 섬은 우산도를 가리킨다. 다만 어디에서 우산도가 보이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아 해석에 혼란을 주는 것이다. 박세당의 문장대로 해석한다면, 우산도는 날씨가 맑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조건만 충족되면 보이는 섬이다. 그렇다면 이때 ‘보인다’고 한 곳의 기준은 어디인가? 필자는 우산도가 보이는 지점을 울릉도라고 해석했고, 이원택 박사는 영해나 육지로 해석하였다. 이원택 박사의 해석대로라면, 맑은 날 육지나 영해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산도가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택 박사는 박세당이 기술한 “蓋二島去此不甚遠 一飄風可至”를 “대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은 여기서(영해, 즉 육지) 그 거리가 멀지 않아 한번 바람을 타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을 한데 묶어 육지에서 보이는 섬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근거를 박세당의 글이 『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조 첫머리 언급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데 두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조 첫머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봉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를 만에 갈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 땅이 사방 백 리라고 한다….)

위 문장은 이원택 박사가 해석한 것처럼 두 섬 모두 육지에서 멀지 않은 섬

으로 해석할 수 없다. 위 문장은 두 섬이 동쪽 바다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두 섬 모두 육지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에 있다”고 한 내용 다음에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라고 한 것을 ‘두 섬’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이유도 없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라고 한 것은 두 섬의 ‘세 봉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의 세 봉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두 문장은 분리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울진현의 산천으로 ‘우산도’와 ‘울릉도’를 거론했지만, 본문에서는 ‘우산도’를 거론하고 공백을 둔 뒤에 ‘울릉도’를 거론했고, ‘울릉도’에만 () 형식의 분주가 붙어 있다. 분주는 ‘울릉도’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한 내용이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울진현의 속도로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을 거론했지만, ‘우산도’에 대해서는 기술할 내용이 없으므로 도서명만 기입하고 공백을 두고 ‘울릉도’에만 분주를 붙인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분주에서 “일설에는 우산·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 땅이 사방 백 리라고 한다”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즉 ‘일설’을 분주에서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날씨가 맑으면 봉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틀 만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은 육지에서 보이는 울릉도의 모습과 거리를 기술한 것이다. 그런데 박세당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이 내용을 계술하면서도 “一說于山鬱陵本一島”라는 내용만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 이는 그가 우산·울릉 1도설을 부정했음을 의미한다.

이원택 박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육지에서 두 섬까지의 거리가 이틀이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의 해석대로라면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이 모두 육지에서 보이는 섬이 된다. 그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연장선상에서 박세당의 글을 해석하여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바다 공기가 아주 맑지 않거나(육지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영해, 즉 육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우산도가 육지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산도가 육지에서 보이는가? 그가 말하는 우산도는 어느 섬을 말하는가? 죽도인가 독도인가? 우산도(독도)는 육지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울릉도는 육지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인다. 장한상도 울릉도 수토 후 삼척으로 돌아와 있는 동안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면 맑은 날에는 섬의 모습이 물위로 보일락말락 한다”⁴³고 하였다. 이원택 박사의 해석이 성립하려면, 장한상은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면 맑은 날에는 두 섬의 모습이 물위로 보일락말락 한다”(밑줄은 필자)고 기술했어야 한다.

우산도가 육지에서 보이는 섬이었다면 육지(영해든 삼척이든)에서 우산도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박세당 이전부터 그런 내용을 기술한 문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세당 이전의 문헌에서 울진이나 영해의 누대에 올라 울릉도를 목격했다고 기술한 문헌은 있지만, 육지에서 우산도를 목격했다고 기술한 문헌은 거의 없다. 울릉도를 일러 육지에서 보이는 섬으로 기술한 경우도 대부분 ‘높은 곳’이나 누대에 올라서 울릉도를 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박세당이 말한 우산도가 육지의 높은 곳에서 보이는 섬이라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섬은 현재의 ‘죽도’ 외에는 없다. 그러나 죽도는 울릉도 가까이 있는 섬이므로 굳이 두 섬을 분리시켜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박세당이 살았던 시대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널리 보급되어 ‘울릉도·우산도’ 2도 인식이 퍼져 있었다. 부도인 「팔도총도」에 두 섬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일본인이 인지할 정도였다. 「팔도총도」에 우산도가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으므로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육지 쪽에 가까운 섬이라고 오인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산도를 ‘죽도’로 인식할 수는 없다.

박세당은 우산도의 지세가 낮다고 했는데, 이원택 박사는 우산도가 육지에서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이때의 우산도는 지세의 고저와 상관없이 보이는 섬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산도는 육지에서 보이지 않는다. 『신증동국여지

43 원문에 결자가 있어 그 자신의 목격담인지 다른 사람의 목격담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승람』에 ‘역력히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육지에서 울릉도의 수목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세당이 ‘보인다’고 한 것은 울릉도에서 우산도가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 문헌에서 ‘보인다’는 표현의 문맥은 같지 않다. 이원택 박사의 해석은 ‘보인다’라는 자구에 얽매어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원택 박사는 “울릉도는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들면 (영해, 즉 육지에서) 늘상 볼 수 있다.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사슴, 곰, 노루 등이 간간이 바다를 건너 (육지로) 나오고, 아침에 해가 겨우 세 길쯤 떠오르면 섬 안의 피꼬리들이 무리지어 날아와 죽변곶에 내려와 앉는다”라고 해석하여 ‘늘상 볼 수 있다(尋常可見)’에서 끊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대상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끊는 것은 문리에 맞지 않는다. 그는 바다를 건너오는 짐승들을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짐승들로 해석했는데, 앞 문장에서 ‘울릉도’가 주어로 되어 있는데, 뒤 문장에서는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사슴, 곰, 노루 등이’라고 하여 주어를 애매하게 처리한 것도 맞지 않는 해석이다.

박세당이 군관 최세철의 조사 내용을 인용한 뒤에 장한상이 기술한 “동남쪽에…”라는 내용을 인용했음에 비취보건대, 박세당은 우산도를 울릉도와 별개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장한상은 군관을 시켜 울릉도 도형과 『동국여지승람』을 비변사에 먼저 제출했는데, 박세당은 “『지리지』와 『여지승람』에 ‘순풍이 불면 이틀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 참으로 근거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인용하였다. 여기서 말한 지리지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동국여지승람』 이전의 다른 지리지⁴⁴에서 울릉도를 일러 순풍이 불면 육지에서 이틀 만에 다다를 수 있는 섬으로 묘사한 사실을 박세당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가 울진에서 이틀 걸리는 거리에 있는 섬이라는 내용은 『동국여지승람』에 이어 『지봉유설』(1614)에서도 보인 바 있다.

44 『동국여지승람』 이전의 지리지로는 『신찬 팔도지리지』(인각이 안 돼 현전하지 않음)가 있었고 그 내용이 『세종실록』 지리지(1454)로 이어졌고 『경상도 속찬지리지』(1469), 『팔도지리지』(1478, 현전하지 않음)로 이어졌다.

박세당은 장한상이 보고한, “비 개고 구름 걷힌 날, 산에 들어가 중봉에 올라보니…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삼분의 일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때 장한상이 말한 동남쪽의 희미한 섬은 우산도를 가리키지만, 장한상은 이를 ‘우산도’라고 명기하지 않았다. 반면, 박세당은 ‘우산도’를 명기하였다. 따라서 박세당이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울릉도-역자)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술한 것은 장한상이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면 맑은 날에는 섬(울릉도-역자)의 모습이 물위로 보일락말락 한다”고 기술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안용복과 박세당, 그리고 남구만의 ‘우산도’ 인식

지금까지 고찰했듯이 박세당은 우산도가 울릉도와 다른 별개의 섬임을 밝히려 했으므로, 그가 우산도를 육지에서 보이는 섬으로 기술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날씨와 고도라는 두 조건이 충족되면 우산도가 육지에서도 보이는 섬이라고 박세당이 생각했다면, 굳이 우산도의 지세를 운운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우산도의 지세가 울릉도보다 낮아 날씨가 매우 맑거나 울릉도의 높은 곳에 오르지 않는 한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산도의 지세를 운운한 것이다.

이런 기술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했던 것에서 한층 진전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박세당에 와서 이처럼 진전된 인식을 보이게 된 데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 그의 생존 시에 ‘울릉도 쟁계’가 전개되어 장한상의 조사 정보뿐만 아니라 남구만에 대해서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당시의 국가적 현안인 울릉도 쟁계에서 울릉도와 우산도 관련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박세당은 남구만의 자형이지만 나이는 동갑이다. 어려서부터 함께 수학했고, 말년에도 남

구만이 그를 방문할 정도로 교유가 깊었다. 남구만은 1690년 11월과 1698년 8월, 박세당을 방문한 바 있다.⁴⁵ 남구만은 숙종으로 하여금 울릉도 수도제를 실시하도록 간했으며,⁴⁶ 울릉도 쟁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였다. 그는 영의정에서 물러난 후인 1696년 10월에도 영부사(領府事)로서 안용복의 처벌을 논하는 자리에 참여하였다. 이때 그는 1693년에는 안용복의 말과 행적을 믿지 않았지만, 1696년에 쓰시마번이 조선 측에 확인한 내용-호키주[伯耆州]에 소송을 제출한 사실-을 통해 안용복의 행적을 믿게 되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⁴⁷ 이후 남구만은 안용복을 사형에 처하는 일이 상책이 아니라 쓰시마번을 유쾌하게 해주는 일이 될 뿐임을 대신들에게 역설하였다. 그는 1697년 3월에도 영중추부사로서 조정의 논의에 참여하였다.

그렇다면 남구만은 울릉도 쟁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용복의 ‘우산도’ 언급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글은 안용복의 행적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그의 행적과 우산도 인식에 한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안용복은 1693년 울릉도에서 어로하던 중 ‘우산도’의 존재를 인지했고, 일본에서 심문받을 때도 우산도를 거론하였다. 1694년 가을 동래로 내려온 접위관 유집일은 안용복을 심문한 바 있고,⁴⁸ 강원도 관찰사는 장한상의 수도 사실을 접위관 유집일에게 알린 바 있다.⁴⁹ 이런 사실은 역관을 통해 부산왜관의 관수에게도 전해졌으며, 같은 해 12월 영의정 남구만이 교체된 사실도 왜관에 전해졌다. 더구나 접위관 유집일은 귀경 후인 1694년 12월 23일에 남구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사실도 역관에 의해 일본 측 정관(正官)의 귀에 들어갔다.⁵⁰ 이렇듯

45 『서계집』(『한국문집총간』) 해제와 연보.

46 『숙종실록』 20년(1694) 8월 14일.

47 『숙종실록』 22년(1696) 10월 13일.

48 『숙종실록』 20년(1694) 8월 14일.

49 『竹嶋紀事』 1694년 10월 14일. 다만 이 문헌에는 장한상이 ‘김 병사’로 오기되어 있다.

50 『竹嶋紀事』.

안용복의 행적과 조선 측의 동향은 왜관 측에 빠짐없이 전해지고 있었다.

안용복의 우산도 인식은 울릉도에 머무는 동안 형성되었다. 1693년 6월 5일 쓰시마번의 가로(家老) 스키무라 우네메[杉村采女]는 왜관에 체재하고 있던 역관 나카야마 가헤에[中山加兵衛]에게 다케시마(울릉도)와 부룬세미가 다른 섬인지, 다케시마의 크기와 방향은 어떤지 등을 조선인에게 은밀히 물어보도록 명했다. 이에 나카야마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부룬세미는 우루친토(울릉도)보다 동북에 있어 희미하게 보이는 섬이라는 것이다. 같은 해에 쓰시마번은 안용복에게서 “이번에 나간 섬의 동북에 큰 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그 섬에 머물던 중 두 번 보았습니다. 그 섬을 아는 자가 말하기를 우산도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대체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로 보였습니다”⁵¹라는 진술을 들었다. 1693년에 안용복에게 각인된 우산도는 울릉도 동북쪽에 희미하게 보이던 울릉도에서 하루 거리에 있는 섬이었다. 1696년 비변사에서 취조할 때에도 안용복은 자산도(우산도)를 여러 번 언급하였다.⁵²

또한 1696년 오키[隱岐]에서도 안용복은 1693년에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의 지경으로 정한 관백(關白)의 서계를 받은 적이 있다며 ‘자산도’를 언급하였다. 호키에서 안용복은 ‘울릉 자산 양도 감세장(鬱陵子山兩島監稅將)’을 가칭했다고 진술하였다. 일본 기록에는 ‘조울 양도 감세장 신 안동지 기(朝鬱兩島監稅將 臣 安同知 騎)’로 되어 있다. ‘조울(朝鬱)’은 ‘조선’과 ‘울릉도’를 줄여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깃발의 표식을 아오야[靑谷]의 관리가 옮겨 적은 것인데, 관리가 ‘자산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 안용복이 쓰시마번과 조선에서의 취조에서는 ‘우산도’, 호키에서는 ‘조·울’이라고 구분해서 언급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는 조선으로 돌아온 뒤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함께 언급하였고, 두 섬을 조선 땅으로 정한 관백의 서계를 받았음도 진술하였다. 울릉도와 우산도의 영유권

51 『竹嶋紀事』.

52 『숙종실록』 22년(1696) 9월 25일. 안용복이 조선에서 ‘자산도’로 언급한 것은 모두 『숙종실록』의 이 기사에 연유한다. 그러므로 『숙종실록』에 ‘자산도(子山島)’로 표기된 것은 ‘우산도(于山島)’의 오기이다.

을 일본 측에 주장했음을 조선 대신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1696년에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추격하면서 “마쓰시마는 바로 자산도이다. 너희들은 자산도도 우리 땅이란 말을 듣지 못했느냐?”라며 꾸짖었다는 내용이 『속중실록』에 보인다. 이 기사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용복의 진술로 알 수 있는 점은 그가 분명히 자산도(우산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안용복은 우산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취조 때마다 우산도를 언급했지만, 국왕이나 대신들은 우산도를 주목하지 않았다. 문헌에 늘 두 섬이 함께 언급되고 있었으나, 남구만이나 다른 대신들이 우산도를 언급한 기록은 보기 힘들다. ‘울릉도 쟁계’에서 우산도는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대신들이 우산도를 언급한 기록을 보기 힘들다고 해서, 당시 남구만을 비롯한 대신들이 우산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들이 ‘우산도’를 명기한 『동국여지승람』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여러 정황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박세당의 ‘우산도’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박세당이 『울릉도』에서 기술한 울릉도·우산도 관계는 이런 정황과 남구만과의 친분 등을 고려해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531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문구를 150여 년 후에 간행된 문헌을 해석하는 데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150년 넘게 전개된 역사적 변화 및 인식의 변화를 무시하는 것이다.

IV. 맺음말

『울릉도 사적』은 1694년 장한상 보고서의 초안 혹은 일부를 후손이 옮겨 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본을 새로 발굴하고 그 필사 연도를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울릉도 사적』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문헌이 『속중실록』의 장한상 수토 사실을 뒷받침하고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는 점이다. 『울릉도 사적』 이본의 발굴로 장한상 집안에 여러 형태의 『울릉도 사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이는 그만큼 후손들이 장한상의 행적

을 끊임없이 현창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울릉도 사적』은 울릉도에서의 행적에 한정되어 있고, 돌아온 뒤의 행적이나 군관의 사전 답사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 점은 『울릉도 사적』을 필사한 세 종류의 이본이 모두 같다. 『울릉도 사적』은 “갑술년 9월 모일, 강원도 삼척영장 장한상은 치료로, 지난 9월 19일 사시쯤 삼척부의 남면 장오리진 대풍소에서 배를 출발시킨 연유를 이미 보고한 바 있습니다”로 시작해서 “이상과 같이 연유를 치료하는 장계를 올립니다”로 끝맺는 내용을 신고 있다. 이에 비해 박세당의 『울릉도』는 두 개의 보고서를 신고 있다. 하나는 “강원도 삼척진 영장은 치료합니다”로 시작해서 “갑술년 9월 2일 영장 장한상이 비국(備局)에 치료합니다”로 끝맺는 수토 전의 보고서다. 이는 군관의 사전 답사 및 울릉도로 출항하기 위해 대기 중인 상황을 보고한 것이다. 또 하나의 보고서는 “강원도 삼척진 우영장은 다음과 같이 치료합니다”로 시작해서 “연유를 아울러 치료합니다”로 끝맺은 보고서이다. 이는 장한상의 수토 형적 및 10월 6일 삼척으로 돌아온 뒤의 상황을 보고한 보고서이므로 최종 보고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울릉도 사적』이 장한상의 보고서 초안⁵³ 내지 일부를 후손이 필사한 것이라면, 박세당의 『울릉도』는 비변사에 제출된 장한상의 최종 보고서를 구하여 다시 필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박세당은 울릉도에 가본 자가 아니었다. 그는 선대의 자료와 전문(傳聞), 조정에서의 논의, 각종 장계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 그리고 남구만에게서 얻은 정보에 의존해서 글을 지었다. 그런 만큼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에 대한 인식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당시는 장한상의 보고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

53 이것이 최종 보고서가 아님은 10월 3일 삼척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 및 이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이다. 이원택 박사는 『울릉도 사적』이 감영에서 비변사에 보고한 장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2018, 앞의 글, 21쪽, 각주 17)이라고 했지만, 필자는 비변사에 보고한 장계는 아닐 것으로 본다. 이전에 필자는 “『울릉도 사적』이 치료 형태인 것으로 보아 비변사에 보냈다는 보고서도 『울릉도 사적』과 동일한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2013, 『우리 사료 속의 울릉도와 독도』, 68쪽)고 했지만, 이번에 다시 검토해 보니 치료 형태임은 맞지만 비변사에 보낸 최종 장계와 동일한 내용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신들이 장한상의 수토를 의심할 정도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정보가 만연해 있던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박세당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물론이고 장한상의 보고서도 있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침삭을 가했다. 그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구절을 일부 누락시키거나 침삭했는데, 삭제한 것은 “一說于山鬱陵本一島”와 “其地遂空”이고 첨가한 것은 “登高望之”였다. 그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원래 한 섬이다”라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일설을 배척하고, 우산도가 울릉도에서 일정 조건 하에 보이는 섬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박세당 글의 가장 큰 차이이다. 박세당의 ‘이도(二島)’ 인식은 이후 이맹휴와 신경준의 시대에 이르러 더욱 공고해졌다.

이원택 박사는 『와유록』에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계승한 이산해의 「울릉도설」이 실려 있음을 들어, 박세당의 글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산해(1539~1609)와 박세당(1629~1703)은 동시대 인물이 아닐 뿐더러 글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글을 굳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박세당 시대에는 이산해 시대에 비해 더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박세당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1도’ 설을 부정하고 ‘2도’ 설을 전개한 자라는 점에서 이산해의 인식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원택 박사는 박세당의 글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식과 다름없다고 폄하하고 반면에 장한상의 글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식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장한상(1656~1724)은 박세당(1629~1703)과 동시대 인물이다. 장한상은 『동국여지승람』을 후대하고 울릉도를 수토했지만 ‘우산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하였다. 그는 “(울릉도)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라고 했지만 ‘우산도’를 거론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박세당은 “두 섬이 여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라고 하여 동해에 두 섬이 있고 그중 하나가 우산도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렇다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식을 넘어선 자는 누구인가?

한문 사료를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주어가 없거나 화자(話者)의 시점이 섞여 있는 등 불분명하게 기술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장한상이나 박세당의 글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해석에 매달리기보다 문맥 파악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박세당의 글을 해석할 때 그의 학문적 배경을 이해한 뒤에 문맥을 함께 파악한다면 그가 말한 ‘우산도’가 어디인지는 분명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喬桐水使公輓祭錄』(의성조문국박물관)
『節度公兩世碑銘』(의성조문국박물관)
『節度公兩世實錄』(의성조문국박물관)
『속중실록』
『盧尙樞日記』(『한국사료총서』 제49집)
『西溪集』(박세당, 『한국문집총간』 134)
『新增東國輿地勝覽』
『鬱陵島』(박세당, 필사본)
『臥遊錄』
『燃藜室記述』 제24권 「인조조 고사본말」
『竹嶋紀事』(1698년 4월 1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유미림, 2007, 『「울릉도」와 「울릉도 사적」 역주 및 관련 기록의 비교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_____,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유미림 번역 및 해제, 2016, 『鳥誌: 울릉도史』, 울릉문화원.
이원택, 2018,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16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독도연구(獨島研究)』.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도와 『울릉도』의 ‘우산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변석(辯析)

유미림

『울릉도 사적』을 둘러싼 논란은 필사 연대를 둘러싼 것이고, 『울릉도』를 둘러싼 논란은 ‘우산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다. 『울릉도 사적』은 기존에 신광박 필사본만 알려져 있었지만, 이 외에 다른 두 가지가 더 있음이 새로 밝혀졌다. 신광박 필사본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려 있으므로 신광박이 필사했다고 하는 임인년을 1722년으로 추정하던 필자의 설은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신광박이 필사한 해가 1782년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절도공 양세 비명』에는 『울릉도 사적』 외에도 『양대 비명』과 『사제문』이 실려 있다. 『울릉도 사적』에는 『양대 비명』과 『사제문』에 없는 열두 글자가 더 있으므로, 세 가지 문서가 같은 해에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울릉도 사적』을 필사한 해와 『절도공 양세 비명』을 편집한 해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박세당이 기술한 울릉도와 우산도 인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식과 다름이 없으므로 우산도를 독도로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박세당

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술된 “一說于山鬱陵本一島”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그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1도’설을 부정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보인다’고 한 내용과 박세당이 (우산도가) ‘보인다’고 한 내용의 차이를 밝혀, 박세당이 ‘보인다’고 한 것의 의미가 울릉도에서 우산도가 보인다는 것을 의미함을 논증하였다.

주제어: 『울릉도 사적(蔚陵島事蹟)』, 『울릉도(鬱陵島)』, 『절도공 양세 비명(節度公兩世碑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장한상, 박세당

ABSTRACT

An Explanatory Study of the Controversy Over the Copy-written Year of *Ulleungdo sajeok* and Usando in *Ulleungdo*

Yoo Mirim

The controversy regarding *Ulleungdo sajeok* (Record of Ulleungdo Mission, 『蔚陵島事蹟』) is about the transcribed year, and the contention over *Ulleungdo* (Ulleungdo) is about its interpretation. The *Ulleungdo sajeok* was once known to have Shin Kwang-bak's manuscripts only, but it is now clear that it includes two more things in addition to Shin Kwang-bak's manuscripts. Because Shin Kwang-bak's manuscript was written in *The Epitaph of the Two Generals* (『節度公兩世碑銘』), it turns out that the existing theory of Shin Kwang-bak's copy of 1722 was incorrect. But even if 1782 was proven to be the year that Shin Kwang-bak wrote *Ulleungdo sajeok*, it is rash to jump into a conclusion that *Ulleungdo sajeok* was copied in 1782. *The Epitaph of the Two Generals* contains *Epitaph and Funeral Poetry* in addition to *Ulleungdo sajeok*. However, there are 12 letters in the Record of

Ulleungdo Mission which were not in the *Epitaph and Funeral Poetry*, thus it is hard to say that the three documents were written in the same year.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year of transcribing *Ulleungdo sajeok* and the year of editing *The Epitaph of the Two Generals* may differ.

However, there is a controversy that Park Se-dang's writings of Ulleungdo and Usando are the same as those of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Revised and augmented edition of the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and therefore Usando cannot be interpreted as Dokdo. Park Se-dang intentionally deleted what he wrote in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Usan and Ulleung are one single island." This means that Park Se-dang denied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s theory. I have proved the difference of the meaning of the word "visible" in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and what Park Se-dang said in *Ulleungdo*.

Park Se-dang used the word "visible" to describe what humans can see with their eyes, meaning that Usando could be seen from Ulleungdo.

Keywords: *Ulleungdo sajeok* [Record of Ulleungdo Mission, 『蔚陵島事蹟』], *Ulleungdo* [『鬱陵島』], *Epitaph for the two generals, father and son* [『節度公兩世碑銘』],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Revised and augmented edition of the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新增東國輿地勝覽』], Jang Han-sang, Park Se-dang

이회영(李會榮)과 이상설(李相高)의 독립운동론과 독립운동 비교

박결순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독립운동 자금의 마련
- III. 무장투쟁론에 대한 인식
- IV. 고종에 대한 인식과 정체론
-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 독립운동은 다원적 이념하에 다양한 방법론으로 전개되었다. 독립운동가 가운데에는 이념과 활동 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회영과 류자명, 신채호는 아나키즘을 사상적 매개로 하여 의열투쟁 방략을 선택한 동지였다. 그러나 이들의 아나키즘 수용 과정과 한중연대론(韓中連帶論)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들의 아나키즘 활동과 투쟁 양태가 동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각한 대립 국면을 노정하거나 전혀 다른 길을 걷기도 하였다.¹

이회영과 이상설은 이념과 방법론이 거의 일치하는 대표적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혈연적으로 경주이씨 문중이자 어린 시절 이웃에서 동문수학한 죽마고우였다. 두 사람은 친족이기에 앞서 ‘독립운동 선상의 유일무이의 동지이자 지우(知友)였다.’² 이들은 경술국치 이전부터 무장투쟁론을 지니고,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을 처분하여 실천에 나섰다. 이상설은 1906년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했고, 이회영은 1912년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전쟁 준비에 나섰다. 서로 협의한 결과, 자신의 처분 재산을 이용하여 학교 설립과 독립군 양성, 무장투쟁에 나선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을 한국 근대사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한편 양인은 고종(高宗)에 대해서도 유사한 인식 구조를 지녔다. 당시 독립운동을 추구하던 대다수 사람들에게 고종은 점차 잊힌 인물이 되어 갔다. 그러나 이회영과 이상설은 고종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그의 망명을 추진하였다.

* 투고: 2018년 2월 7일, 심사 완료: 2019년 5월 21일, 게재 확정: 2019년 5월 21일

1 박결순, 2011, 「申采浩의 아나키즘 수용과 東方被壓迫民族連帶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8집; 2013, 「1920년대 北京의 韓人 아나키즘운동과 義烈鬪爭」, 『東洋學』 제54집.

2 李圭昌, 1992, 『運命의 餘燼』, 寶蓮閣, 30~31쪽.

1910년과 1915년에 먼저 이상설이, 1918년에는 이회영이 고종의 망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정체론(政體論)이 보황주의(保皇主義)나 심지어 복벽적(復辟的)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이회영의 독립운동론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었다.³ 이상설의 독립운동론에 대해서는 근래 주목되는 경향을 보인다.⁴ 그러나 두 사람의 독립운동 이념과 방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시도는 없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이들의 재산 처분과 독립운동 자금 마련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수행한 독립운동의 경제적 기반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 이들이 무장투쟁론을 실천해 나간 방법과 과정을 검토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종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이들의 독립운동론과 독립운동 전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II. 독립운동 자금의 마련

지금까지 독립운동사 연구는 투쟁 중심의 승리의 성과 찾기에 치중한 면이 있다. 이에 대한 학계의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독립운동의 구체적 실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금과 인력 수급을 밝히는 연구는 아직 만족할 만하지 못한 실정이다.

3 박환, 2002, 「이회영의 생애와 민족운동」, 『나라사랑』 104호; 이호룡, 2009, 「이회영의 아나키스트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8집; 김명섭, 2011, 「우당 이회영의 아나키즘 인식과 항일 독립운동」,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38집; 김명섭, 2017, 「이회영의 중국 망명생활과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9집; 최기영, 2013, 「이회영의 북경생활」, 『東洋學』 제54집.

4 박결순, 2009, 「溥齋 李相高의 독립운동론과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3집.

이회영 6형제는 ‘삼한갑족(三韓甲族)’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특히 막대한 전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8月 晦初間에 回還하여 여러 형제분이 일시에 협력하여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전답과 가옥, 부동산을 放賣하는데, 여러 집이 일시에 방매하느라 얼마나 極難하리오. 그때만 해도 여러 형제 집이 예전 대가의 범절로 남중, 여비가 무수하고 君臣座席이 분명한 시대였다. 한 집안 부동산 가옥을 방매해도 소문 이 자자하고 下屬의 입을 막을 수 없는 데다 한편 조사는 심했다. … 우리 시숙 穎石丈은 우당 둘째 從氏인데 백부 이유원 님으로 양자 가셨다. 養家 재산을 가지고 生家 아우들과 뜻이 합하셔서 만여 석 재산과 가옥을 모두 방매해 가지고 경술년 12월 30일에 대소가가 압록강을 넘어 떠났다…⁵

망명 당시 ‘살림 차가 수십 대씩 짐차로 군기(軍器)를 얼마씩 실어오니’ 추가가(趨家街)의 중국인들은 이들을 일본과 합하여 중국을 치려는 세력으로 의심할 만하였다. 당시 우당 형제가 급매하여 마련한 자금은 모두 4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비밀리에 급매를 하였으니 제값을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쌀 한 섬 가격이 3원 정도였으니, 13만 3천 섬이 넘고, 황소로는 1만 3천 두 값에 해당했다고 한다. 이를 현시가로 환산하면 6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⁶

이회영 형제의 막대한 자금 형성에는, 전술한 이은숙의 회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둘째 이석영의 역할이 컸다. 이석영은 이유원에게 출계하였는데, 이유원의 소유 토지는 『매천야록(梅泉野錄)』에 특기할 만큼 광대하였다. 이유원은

5 이은숙, 2017, 『西間島始終記』, 일조각, 63~65쪽.

6 이덕일, 2009, 『이회영과 젊은 그들』, 역사의 아침, 60~61쪽; 김삼웅, 2011, 『이회영 평전』, 책보세, 64~65쪽.

재상이 되어 임금의 총애를 받고 문전성시를 이뤄 사람들이 그를 ‘남촌세도(南村世塗)’라 부를 정도였다.⁷ 이석영은 양부로부터 상속한 상당한 토지와 가옥을 모두 팔아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낸 것이었다. 이는 신흥무관학교 설립의 기본 자금이 되었다.⁸

이 같은 이회영 형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실상을 대한제국기의 양안(量案)과 호적을 활용하여 파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주목된다.⁹ 양안 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에서 이유승과 6형제의 토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유승은 충주군(忠州郡) 감미면(甘味面)에서 18필지 2,71속을 소유한 부재지주였고, 이시영은 충주군 금생, 금천면에 16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양주군 토지조사부에서는 단 1필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이미 토지 처분을 끝내고 망명한 뒤였기 때문이다. 또한 남양주 지역 재산으로는 이유원의 토지를 인수한 인물의 토지조사를 통해 이유원의 별장터(화도면 가곡리 토지조사부 257번 필지, 4,959평) 등 183필지 33만 8,431평(약 113정보)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들 형제의 서울 거주지와 소유 토지도 확인되었다.¹⁰ 그러나 이 토지의 현재 공시지

- 7 임형택 외, 2005, 『역주 매천야록(상)』, 문학과지성사, 88~89쪽. 이유원의 별장은 서울에서 80리 떨어진 楊州 嘉梧谷에 있었는데, 왕래하는 길에 다른 사람의 땅을 밟지 않을 정도로 광대한 토지를 소유했다고 되어 있다.
- 8 박환, 1991,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한시준, 2011,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0집.
- 9 왕현중, 2017, 「이회영 형제들의 재산처분과 독립운동」, 『민국의 길, 자유의 길』 전시연계 특별강연(2017. 8. 17, 서울역사박물관) 원고 참조.
- 10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왕현중, 앞의 글).

소유자	주소	규모	비고
이회영	냉정동 7통 10호	538평	11.5칸 초가집
이석영	영락정 1정목 48번지	298평	
이시영	저동 64통 1호	591평	
이건영	저동 65통 11호	68평	이시영 주소지와 붙음
이호영	저동 69통 8호	30평	
이석영	남산 일대 토지	1,614평	

가가 일부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매매시기를 포함한 전체 규모가 파악되지는 않았다. 이회영 일가가 처분한 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상설 또한 독립운동을 위해 적지 않은 재산을 처분하여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06년 망명 직후 용정에 서전서숙을 건립하여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는 교사 매입비, 교원의 월급, 교재 구입비, 학생들의 지필묵 구입비 등 운영 경비 전체를 전담하였다. 당시 서전서숙에서는 1년간 최대 70여 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시켰는데 “유지 경비는 이상설이 사재를 털어 부담하였다”¹¹는 기록이 있으며 일제의 보고에서도 이상설의 자금임이 강조되어 있다.

資生, 李相高 一人이 부담한다고 말한다. 혹은 각 직원의 合資로서 李相高은 5千円, 全共達·王昌東은 각 5百円, 金東煥은 3百円, 洪昌燮은 1百円을 각각 준비하여 其 資金에 充當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金東煥은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전혀 각자의 자산에서 지출하고 결코 타의 원조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¹²

그렇다면 이상설은 이 같은 막대한 독립운동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을까? 그는 ‘극빈한 농가’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생부 행우(行雨)는 초가삼간만 남긴 가난한 시골 유생에 지나지 않았다. 이상설은 7세 때 이·호·예·병·형·공조 참의 및 동부승지를 역임한 용우(龍雨)에게 출계하여 상경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생애에 큰 전기(轉機)가 되었다. 이행우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양사(養嗣)한 그가 이를 상속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충청북도진

11 玄圭煥, 1976, 『韓國流移民史』(上), 語文閣, 465쪽.

12 『日本外務省文書』 135, 「問島版圖에 關한 淸韓兩國紛議一件(5)」(1907. 9. 16, 統監府派出所長 齋藤季治郎 統派發 第五號 報告).

친군양안(忠淸北道鎭川郡量案)』(양지아문, 1901)이 온전히 전하여 그의 고향 소유 토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 양안에 따르면 이상설은 진천군 내 남변면·북변면·초평면·월촌면의 4개면에 걸쳐 논 47필지에 7결 31부 5속, 밭 25필지에 3결 37부 4속, 대지 11필지에 70부 1속 등 총 83필지에 19.7정보 규모의 많은 땅을 소유한 부재지주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 진천군 내 지주 서열 18위에 해당하는 대지주로서 이를 현 시가로 환산하면 100억 원 전후로 산정된다. 그는 초평면 금곡리 금한 마을에 20칸짜리 기와집도 소유하고 있었다.¹³ 이 집은 그가 망명할 때 정인보에게 넘겨주고 떠났다. 이는 이회영이 최남선에게 가옥과 서책을 인계하고 망명 사실과 함께 독립운동가의 망명 시 재산 처분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¹⁴

한편 이상설이 양부로부터 물려받은 서울의 토지와 가옥도 상당액에 달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확인된 것은 저동 73통 2호의 508평 규모의 대지에 세워진 77칸의 와옥이다. 이 집은 이회영 형제의 집과 이웃한 것으로, 이상설이 1906년 2월 19일 이세직(李世植)으로부터 매입하였다가 이듬해 6월 1일 하야다[林田金次郎]에게 매도하였고, 1912년 3월 19일 무라카미[村上龍藏]에게 매각되었다.¹⁵ 이상설의 망명 시점이 1906년 양부의 기제(음 4. 18)를 지낸 직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집은 그가 불과 망명 3개월 전에 매입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이는 그의 망명 동기와 배경 및 독립운동 자금 마련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 지번의 부동산 시세는 평당 3억 원을 호가한

13 이상설의 고향 진천 토지 소유 현황은 필자의 「溥齋 李相高의 독립운동론과 독립운동」 참조.

14 현재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411번지 일원인 이 집은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시작할 때 査定(1912. 3. 20)한 문서에는 정인보 명의로 되어 있다(『土地臺帳』, 진천군). 그 후 3·1운동 직후인 1919년 3월 31일 유해준(이 지역의 대표적 衆姓인 광산김씨의 대표격인 김재찬의 사위)에게 양도되었다. 『土地臺帳』에 의하면 1910년대 초평면 일원에는 정인보 명의의 토지가 적지 않았다. 지금도 집터에서 당시의 기와가 다수 산견된다.

15 『漢城府統表』.

다고 하니, 이상설의 저동 소유 토지는 1,500억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액수다.¹⁶ 그가 망명한 바로 이듬해에 이를 매각하였다는 점에서 이 처분액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물론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토지의 경제적 가치나 환금액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회영 형제와 이상설이 매각 처분한 재산 가액이 거액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III. 무장투쟁론에 대한 인식

이회영과 이상설의 독립운동론은 무장투쟁론을 견지하고 실천하려 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회영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여, 다시 만주로 가서 무장투쟁론을 펼치려다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상설도 서전서숙을 통해 독립군을 양성하려 했고, 십삼도의군을 조직하고 나자구 사관학교를 설립한 것은 무장투쟁론의 실천 과정이었다.¹⁷

이는 신민회의 독립군 기지 개척 방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의 무장투쟁론과 관련하여 1908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물론 이회영 연구 논고에서 이 만남에 대해 논급하고는 있으나, 그 중대성에 비하여 의미 부여가 부족한 감이 있다. 자료에 따라 이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회영이 국제 정세에 밝은 이상설을 찾아가 헤이그 사행과 고종 강제 퇴위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은 틀림없다.¹⁸ 이회영은 이상설과의 이 만남을 계기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착수에 나선 것으로 이해된다.¹⁹ 그

16 이는 필자가 서울 소재 부동산중개소에 문의한 액수이다.

17 이에 대하여 이회영이 이상설을 북간도 용정으로 파견하여 서전서숙을 세운 것으로 설명하는 연구자의 견해도 있다.

18 서종석, 2002, 「이회영의 교육운동과 독립군 양성」, 『나라사랑』 104호, 80~81쪽.

19 박환, 2002, 앞의 글, 27~28쪽.

러나 이 것은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말았다.

이관직의 회고에 의하면 이때 이상설은 이회영에게 조만간 동아시아에서 전운이 일어날 것이며, 각지의 한인이 호응하여 모든 국력을 쏟아 좋은 기회를 잡아 의로운 깃발을 높이 들면 조국 광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요한 말을 하였다고 한다.²⁰ 이는 러·일전, 중·일전, 미·일전의 발발을 예상하며 이를 독립운동의 호기로 포착하여 활용하자는 기회포착론이었다. 기회포착론의 실행 방안은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어릴 적부터 친구이자 동지였던 이들은 토의 끝에 다음 네 가지 운동 방침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1. 동지들을 규합하여 국민교육을 장려할 것
2. 만주에서 광복군을 양성할 것
3. 비밀결사체를 조직할 것
4. 운동 자금을 준비할 것

이는 향후 독립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략이었다. 이회영은 비록 이상설이 세 살 연하였으나, 항상 “보재는 참으로 나의 스승”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²¹ 귀국한 이회영은 곧바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는 제국주의가 횡행하는 시기에 국제 여론이나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의 무용함을 인식하고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한 것이다.²²

이회영은 귀국 직후 동지들을 규합하여 국민교육을 위해 당시 설립되어 있던 기호학회 등을 통해 교육 문제를 협의해 나갔다. 그리고 신민회 동지와 서간도 일대 독립군 기지 개척과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대상지 물색에 나섰다. 이에

20 이관직, 1985, 「우당 이회영 실기」, 『우당 이회영 약전』, 을유문고, 135쪽.

21 李圭昌, 1992, 앞의 책, 30~31쪽.

22 김명섭, 2008, 『자유를 위해 투쟁한 아나키스트 이회영』, 역사공간, 40쪽.

소요되는 자금 마련을 위해 동지들과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6형제가 재산을 처분하여 도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회영과 이상설의 무장투쟁론은 이렇게 출발하였다. 두 사람의 무장투쟁론은 방략과 방법론에서 공통되며 일치한다. 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더 논급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양인의 무장투쟁론은 실천 과정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필자는 이를 활동 시기와 공간의 지역적 차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상설은 1910년대 연해주를 무대로 활동하였으며, 이회영은 1920년대 베이징을 무대로 활동하였다. 양인 활동의 시·공간적 차이는 사상과 방법론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초래하였다. 더구나 이회영이 재차 중국으로 망명한 시기는 이미 이상설이 연해주에서 사거한 이후였다. 그러나 이회영이 베이징으로 망명할 때 이상설과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한지 두루마리로 된 서신’이 상자에 가득 차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이 늘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이회영은 1919년 2월 베이징으로 재차 망명하였고, 이후 베이징과 톈진, 상하이에 거주하며 활동하였다. 그가 재차 망명한 시점은 고종이 급서한 직후였다. 그때는 인산(因山)을 이용하여 3·1운동과 같은 큰일이 예견된 시점이었다. 정황상 그의 베이징 망명은 3·1운동과 관련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회영이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던 한용운과 3·1운동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계획에 따라 중국 각지와 만주 연해주 등지에 독립선언에 대해 사전 연락하고 대비케 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간 것이라는 주장은 주목된다. 또한 독립선언 후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여 독립운동의 최고 지휘 기구를 조직하기 위해 망명한 것이라는 기록도 주목된다.²⁴ 이는 이회영도 3·1운동의 계획 단계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했다는 점, 그의 재차 망

23 李圭昌, 1992, 앞의 책, 29쪽.

24 李圭昌, 1992, 앞의 책, 31~32쪽.

명이 이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3·1운동사에서 이 사실은 전혀 논급되지 않고 있다. 이회영이 임시정부에 반대하여 곧 상하이로부터 베이징으로 돌아온 사실로 미뤄보면, 이들 주장의 신빙성은 그리 높지 않아 사실로 확정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그렇지만 이회영과 3·1운동 및 임시정부의 관련성은 향후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그가 망명지로 선택한 곳은 이전의 만주가 아니라 베이징이었다. 이회영이 베이징에 정착한 까닭은, 이곳에 조카 이규봉 부부가 미리 정착해 있었고, 국내와 만주, 중국 관내로 이동할 때 중간 연락과 기착지로 중요한 지점이며 일본의 경찰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²⁵

1920년대 베이징은 아나키즘의 선진장이었다. 그 중심은 베이징대학 교수들이었다. 이 같은 시대적 사조와 지역적 특성에 편승하여 베이징 거주 한인들도 아나키즘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 한인이 이회영·신채호·류자명 등이었다. 그들은 독립운동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 사상을 주체적으로 변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를 수용하였다.

이회영이 아나키즘을 수용한 것은 활동 시기나 공간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소 지니고 있었던 자유와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아나키즘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는 지배 없는 세상, 억압과 수탈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일관된 정견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정치사상은 사민(四民)이 평등하고 만인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독립운동도 이를 위해서만 빛이 나는 것이며, 혁명운동도 이것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상은 자유연합의 이상과 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²⁶

그런데 이회영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아나키스트가 되었다거나 아나키스트로 전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즉 자신이 이전에 지녔던 사상 체계가 잘못

25 최기영, 2013, 앞의 글, 134쪽.

26 李丁奎, 1985, 『友堂 李會榮 略傳』, 乙酉文化社, 17쪽.

된 것이고, 지금의 새로운 사상 체계가 옳다(覺今是而昨非)는 식으로 아나키스트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본래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자유주의사상이 아나키즘의 사상 체계와 일치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독립운동자의 견지에서 무정부주의의 자유의사와 자유연합 이론을 ‘가장 적절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였다.²⁷ 당시 젊은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베이징의 대학에서 일고 있던 신진 사조나, 중국이나 한인 아나키스트와의 교류를 통해 아나키즘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회영은 아나키즘 사상이 자신의 평소 사상 및 방책과 상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용하였던 것이다.²⁸

이회영의 아나키즘 수용이 독립운동 세력 간의 충돌을 배경으로 한다고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즉 앞서 그는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가 무력 충돌을 빚는 상황에 크게 상심했던 적이 있다. 따라서 그가 이 충돌을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일체의 권력욕을 배제하는 아나키즘을 수용하였다고 이해한 것이다.²⁹ 그가 아나키스트가 된 시점에 대한 이견도 있다. 이회영이 1920년에 방향 전환을 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³⁰ 그러나 그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1923년경에 아나키스트로 자립(自立)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³¹

이회영과 달리 이상설은 시기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아나키즘에 접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상설이 사거 직전 연해주 지역의 동지들에게 남긴 유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이 유언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상설은 임종을 앞두고 동지들에게 “...내 죽은 후에는 그대들은 상해로 내려가서 그곳 동지들과 합세하여 조국 광복을 이루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³² 그가 동지들에게 연해주라는 기반을 버리고 상하이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

27 李乙奎, 1963, 『是也 金宗鎭先生傳』, 韓興印刷所, 42쪽.

28 金明燮, 2011, 앞의 글, 124쪽.

29 이덕일, 2009, 앞의 책, 96~99쪽.

30 《중앙일보》1932년 11월 24일자.

31 박결순, 2013, 앞의 글, 109~110쪽.

32 尹炳奭, 1984, 『增補 李相高傳』, 일조각, 184~185쪽.

도록 한 것은 더 이상 연해주가 독립운동을 펼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1914~1917년까지 연해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가 일본과 동맹 관계가 되며 강압적으로 권업회와 대한광복군정부(大韓光復軍政府)를 해산시킨 것은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 연해주에서는 러시아 2월 혁명 이후에나 새로운 독립운동을 모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설은 러시아 2월 혁명의 와중에 사거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정세를 알 수 없었다.

이상설은 1915년 신한혁명당 활동을 위해 상하이로 왕래하며 그곳이 향후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해주를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개척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이상설이 사거 당시인 1917년에 사실상 연해주를 포기하고 상하이를 주목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독립운동 방략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곧 사거함으로써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만일 이상설이 1920년대에도 활동하였다면, 연해주가 아닌 중국으로 활동지를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 또한 새로운 사조인 아나키즘을 받아들였을 개연성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나키즘의 수용 여부를 양인의 독립운동론의 차이로 지적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요컨대 그들이 처해 있던 시대적·지역적 상황에 따라 사상과 독립운동론의 변용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IV. 고종에 대한 인식과 정체론

독립운동가 가운데 이상설과 이회영처럼 고종과 특별한 관계를 지녔던 인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인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고종의 망명을 추진하였다. 고종의 망명을 먼저 계획한 것은 이상설이며, 1910년과 1915년의 2차에 걸쳐 추진하였다. 이상설의 독립운동론과 독립운동의 내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닌 정체론(政體論)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상설의 정체론은 별로 논의되지 않은 주제이나, 그가 1910년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라는 사실을 전제하면 매우 중요한 논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설이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正統領)에 피선된 사실과, 박은식·신규식 등과 신한혁명당 활동을 펼친 사실에 주목하여, 그의 정체론을 공화정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그가 정통령에 피선되거나 추대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그를 국가나 정부 수반 격 위상의 인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³³

이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광복군정부와 정통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대한광복군정부는 한인의 시베리아 이민 50주년인 1914년에 맞춰 조직된 단체다. 이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치 후 최초의 망명정부’로 보는 견해³⁴와 명칭 그대로 군정부(軍政府)로 해석하는 견해³⁵가 있다. 그러나 대한광복군정부는 관련 자료가 거의 없고, 조직 직후에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일본과 동맹을 체결한 러시아의 탄압으로 해체되고 말았기 때문에 구체적 조직과 실상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대한광복군정부의 정체에 대해 다음의 계봉우의 기록은 중요한 시사를 한다.

…紀元 4247年 甲寅(1914年)에 至하여 俄國 境성으로부터 각 지방을 통하여 俄日戰爭 10年 紀念會된 결과로 복수열이 極頂에 달하여 다시 개전될 조짐이

33 이상설 순국 100주년 추모제전위원회가 추모제의 격식을 국가 수반에 준해 거행한 것은 그 사례의 하나다.

34尹炳奭, 1984, 앞의 책, 155쪽.

35趙東杰, 1989, 「臨時政府 樹立을 위한 1917년의 <大同團結宣言>」,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326쪽. 다만 軍政府는 民政도 管할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단순한 군사령관은 다른 首席(司令官)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자료가 없으므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非朝非夕에 在하매 李相高·李東輝·李東寧·鄭在寬 諸氏의 主謀로 俄中 兩領에 산재한 功지를 大韓光復軍政府를 組織하고 正統領을 選出하여 軍務를 總轄케 하니 첫째는 李相高씨요 그 다음은 李東輝氏가 되었었다. 군대를 극비리에서 편성하고 中領 羅子溝에는 사관학교까지 設하였으며 또 우리 민족의 俄領 이주한 50年 기념대회를 장차 開하고 그 시기를 이용하여 軍자금을 수취하기로 하여 俄官에게 그 기념 허가까지 득하였는데...³⁶

계봉우는 대한광복군정부 비서로 활동한 인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실체에 정통한 인물로서 그의 기록도 신빙할 만하다. 이 기록에 의하면 대한광복군정부는 무장투쟁을 위한 군사 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이상설을 정통령으로 선출하여 군무(軍務)를 총할(總轄)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대한광복군정부가 군무를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 단체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무엇보다도 이상설이 고종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를 제치고 공화정부를 수립하여 국가 원수로서 정부의 수반이 되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

한편 계봉우는 대한광복군정부와 정통령에 대해 상위(相違)한 기록을 남겼다. 그에 따르면 대한광복군정부는 러일전쟁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동휘가 주창이 되어 조직한 비밀정부로서 3군구(제1군구: 노령, 제2군구: 북간도, 제3군구: 서간도)로 나뉘었고, 군구의 통제권은 '정도령(正都領)'에게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정도령은 비결(秘訣)에 대한 조선 민중의 신앙 조건을 부합시킨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³⁷ 즉 정통령이 아니라 비결에 나오는 정도령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정도령이란 그 자신이 정통령이라고 한 다른 기록과 상위하며, 다른 사람들의 기록과도 다르므로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런데 동양 사회에서 '통령(統領)'이라는 용어는 무관 직책 또는 군사와 관

36 뒤바보, 「俄領實記」, 《獨立新聞》 1920년 3월 30일자.

37 桂奉瑀, 『꿈속의 꿈』(『北愚 桂奉瑀資料集(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171쪽).

련된 직책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³⁸ 우리 근대사에 통령이란 직책이 의미 있게 사용된 사례는 손병희(孫秉熙)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손병희는 동학혁명 당시 통령의 직에 있었다. 그는 3·1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일제에 피체되어 1919년 8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심문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직책인 통령은 정부를 대표하는 수반인 대통령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 단위의 지휘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그가 동학이 조선 왕조 정부를 전복하거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 답변을 주목해야 한다.³⁹

한편 계봉우의 기록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상설이 정도령을 ‘자퇴’하였다는 사실이다.

...통일을 표방한 대한광복군정부의 주석인 정도령으로 피선되었다가 인차 자퇴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에겐 그런 신망을 등지지 아니할 만한 능력도 없지 않았다...

대한광복군정부에 대해서는 워낙 기록이 불비하나, 이상설이 정도령에 피선되었다가 ‘자퇴’하였다는 것은 이 기록이 유일하다. 이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전혀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다. 계봉우는 이상설이 정도령을 자퇴한 까닭을 지방

38 갑신정변 당시 우리나라에 진주한 袁世凱의 상관 吳長慶의 직위가 통령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조운선 10척을 거느리는 벼슬을 통령이라고 불렀다.

39 李炳憲, 1959, 『3·1運動秘史』, 시사시보사, 85쪽.

문: 그때(동학혁명: 필자) 동학의 수령은 누구인가?

답: 최시형이었으나 연로하므로 나를 통령으로 추천하여 사실상 내가 수령으로 있었고 전라도 전봉준과 3인이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문: 그 때 피고는 신정부를 수립하려면 어떤 정체를 하려고 생각하였는가?

답: 그 당시 정부 체제를 논할 시대는 아니었고 착실한 사람을 택하여 정부를 다시 조직할 생각이었고 李朝를 전복할 목적은 아니었다.

문: 피고는 동학 통령으로 있을 때 정부를 없애고 자신이 정치를 할 포부를 지니고 있었는가?

답: 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 통솔하는 것을 명명한 것이지 정부를 전복하고 내가 정부를 조직한다는 것은 아니다.

색을 배경으로 한 계과 간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계봉우는 이상설이 《권업신문》 주필을 사퇴한 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하였다.⁴⁰

이 같은 계봉우의 기록은 이상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의도적 악평의 성격이 농후하다. 그러나 대한광복군정부 비서라는 그의 위치를 전제하면 소홀히 할 수 없는 기록이다. 신한혁명당을 대한광복군정부의 다른 형태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데,⁴¹ 그렇다면 더구나 정부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가설이기는 하나, 대한광복군정부를 1910년에 조직되었다가 해산한 십삼도의 군의 발전적 계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즉 대한광복군정부는 이전의 의병적 조직으로부터 독립군적 형태로 조직이 변화·발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대한광복군정부의 통령과, 조선혁명군정부(朝鮮革命軍政府)의 총령(總領)은 성격과 기능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조선혁명군정부는 관내에 있던 임시정부와 별개로, 국민부 조직과 조선혁명군을 통합하여 1934년 11월 남만주에서 조직되어 1937년 5월까지 존속한 자치·군사정부였다. 조선혁명군정부의 수반은 총령이었다. 일부 일제의 기록에는 총령을 대통령이나 통령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조선혁명군정부의 총령은 김동산(金東山)으로 군민위원장(軍民委員長)과 민사부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며, 주요 인사들이 군관 학교 졸업생이거나 무장투쟁에 종사한 군 출신이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⁴² 이는 조선혁명군정부가 군구(軍區)와 사(師), 특무부 조직을 위주로 한 군정부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광복군정부의 통령과 조선혁명군정부의 총령(통령)은 군사 활동을 위주로 자치 기능을 겸비한 군정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상설은 고종의 최측근 근신(近臣)이었다. 이상설은 고종에게 을사늑약에

40 桂奉瑀, 『꿈속의 꿈』(『北愚 桂奉瑀資料集(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172쪽).

41 尹炳奭, 1984, 앞의 책, 168쪽.

42 張世胤, 1997, 「朝鮮革命軍政府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1집, 223~260쪽.

반대하고 ‘순사직(殉社稷)’이라는 상소를 올렸다.⁴³ 그의 상소를 보도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국가 위난의 때를 당해 ‘진언불휘(盡言不諱)’의 직언을 하는 신하들은 많지만 임금에게 순사(殉社)의 뜻으로 간(諫)한 신하는 오직 ‘대충대의(大忠大義)’의 이상설뿐이라고 극찬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이상설의 ‘충언’은 고종의 ‘명확한 성단(聖斷)’이 아니었다면 들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 언론의 보도와 같이 이상설이 황제에게 ‘순사직’의 상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황제의 근신으로서 군신 간의 신뢰에 기인한 것이다. 고종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극비리에 추진한 헤이그 특사의 정사로서 이상설을 지명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상설은 보황주의적 정체론을 지녔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체론은 그가 1909년 《신한민보(新韓民報)》에 기고한 논설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자신은 금수나 초목이 아니어서 임금과 황실을 존중한다며, ‘이씨(李氏) 종사(宗社)의 만대(萬代) 상전(上典)하기’와, ‘황실의 만수무강’을 매일 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영국 의회 개회식에 참관하였을 때 에드워드 7세를 바라보는 수많은 영국 인민들이 만세를 외치는 광경을 보고 ‘하염없는 더운 눈물이 옷깃을 적심을 깨닫지 못하여 취한 듯이 미친 듯이 심신을 진정치 못한’ 일화를 소개하였다. 이상설은 영국 인민은 임금과 나라를 분별하여 임금이 직책을 다하도록 하여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나, 우리는 영국 인민과 달라 임금과 나라를 하나로 알아 임금으로 하여금 직책을 다하게 하지 못해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그 생각이 이상설로 하여금 울음이 나게 만든 것이었다. 그는 ‘임금-나라-인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슬프다. 우리 인민의 분간치 못하는 바는 님군과 나라이다. 님군과 나라를 분간치 못하면 님군을 욕되게 하며 나라를 망케 함을 면치 못하나니라. 무릇 님군은 나라를 위하여 둔 것이요 나라는 님군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니, 이럼으로 님군이

43 《大韓每日申報》1905년 11월 24일자.

란 것은 인민이 자기의 사무를 위탁한 공평된 중뿐이오, 인민이란 것은 남군으로 하여금 저의 직역을 전력케 하는 최초 상전이라. 중된 남군이 사무와 직역을 다하지 못할지면 상전된 인민의 책망을 도망키 어려우니...⁴⁴

이는 헤이그 사행 직후 그의 정체론을 잘 보여주는 논설이다. 연해주로 돌아온 그는 1910년 십삼도의군 조직에 참여하고 도총재 류인석과 연명한 상소문을 인편을 통해 고종에게 보냈다. 이 상소문에서 이상설의 직함은 ‘의군별지휘(義軍別指揮) 전종이품가선대부의정부참찬신이상설(前從二品嘉善大夫議政府參贊臣李相高)’이었는데, 그는 이 상소문에서 칭신을 하며 황제에게 내탕금의 지원과 연해주로 파천하여 독립운동을 영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상설은 고종에게 ‘폐하를 보호하고 중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이상설과 류인석이 고종의 망명을 계획한 것은 밖으로는 ‘세계만방의 공론을 제창’하고, 안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심을 고동(鼓動)’시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⁴⁵ 십삼도의군을 이끈 류인석과 이상설은 고종에 대한 군신의 의리론(義理論)에 입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분명히 보황주의적 정체론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설뿐만 아니라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민족지도자들의 정체론도 비슷한 사유였다. 1913년 이동휘·이중호·이강·이갑·정재관 등 권업회 지도자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강양호(姜良浩)의 집에 모여서 계파 간 반목과 불화를 극복하고 ‘동심협력(同心協力) 성의제휴(誠意提携)하여 훗날 군부(君父)의 원수를 갚자’고 결의⁴⁶한 것은 대부분의 연해주 지역 지도자들이 보황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44 창희각, 「皇室非滅國之利器」, 《新韓民報》 1909년 3월 31일자.

45 「上疏文草藁」(尹炳奭, 1984, 앞의 책, 130쪽).

46 『日本外務省文書』, 「大正 5년 6월 30일조 朝鮮人概況」(尹炳奭, 1984, 앞의 책, 154쪽).

성명회(聲明會)의 취지서에서도 그의 보황주의적 정체론이 확인된다. 성명회는 취지서에서 일본이 우리 황제를 폄박하고 정부를 위협하여 주권을 침탈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비판하였다. 당시 이상설은 각국 정부에 보내는 선언문을 직접 작성하였다. 그 가운데 「여청국정부서(與淸國政府書)」에서 성명회를 ‘한국국민의회(韓國國民議會)’라고 표현하는 한편, 존황실(尊皇室)의 입장에서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였다. 이상설은 명성황후 시해 등 일제가 우리 황실에 범한 ‘비문명적’ 행위를 지적하였고, 고종의 을사늑약 파기를 위한 외교 노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 황제의 존위를 폐치하고 일본 황족으로 편입하고, 우리 정부의 직책을 폐멸시키고 일본 총독의 이름으로 대신하는 등의 죄악을 저질렀음을 지적하였다.⁴⁷ 한편 또 다른 성명회의 취지서 초고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대한 황제의 신민’임을 강조하고 있다.⁴⁸

이상설의 신한혁명당 활동은 그와 고종의 관계 및 정체론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가 신한혁명당에 참여하기 위해 상하이로 간 것은 1915년 3월로, 대한광복군정부가 와해된 직후였다. 이상설은 본부를 베이징에 두기로 한 신한혁명당의 본부장으로 추대되었다. 신한혁명당은 고종을 당수로 추대하고자 하였는데, 성낙형을 국내로 들여보내 고종으로부터 「중한의방조약(中韓誼邦條約)」을 체결하기 위한 위임장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중한의방조약」이 실제로 중국과 체결이 추진되었다면 매우 주목해야 할 중요한 국제조약이다. 그러나 이 조약문은 일찍이 원문이 소개되었음에도,⁴⁹ 학계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다소 과도하여 실현 불가능한 조문이 있으며, 실제 성사되지도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조약문은 이상설 등이 고종의 승낙을 먼저 얻은 뒤 중국이나 독일과 협상에 나서기 위한 협상용으로

47 「與淸國政府書」(尹炳奭, 1984, 앞의 책, 138쪽). 이 글은 韓國國民議會(聲明會)會長 柳麟錫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상설이 초고를 작성하고 류인석은 ‘略加修潤’하는 정도였다.

48 러시아 극동문서보관소 문서(관리번호, 1-11-73).

49 尹炳奭, 1984, 앞의 책, 164~166쪽.

사전 협의 없이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조약문 제19조에서 한국혁명, 즉 독립 이전에는 한국·중국·독일의 중요 인물끼리만 ‘사결(私結)’해 둔다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조약은 이상설과 신한혁명당의 지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조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독일대황제(大獨逸大皇帝)를 중한 의방(中韓誼邦)의 연대보증국대황제(連帶保證國大皇帝)로 정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쌍방 군사동맹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 조약의 목적은 제1조에 명시된 바, 한중 간 4천년 역사상의 정의(情誼)와 순치적(唇齒의) 관계를 지닌 고로 양국의 원수는 동서의 대세를 관찰하고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체결 주체는 ‘양국의 원수’인데, 대중화민국대총통(大中華民國大總統)을 ‘의국대총통(誼國大總統)’으로 정하고 한국은 ‘한국○○○’을 ‘의방국(誼邦國) ○○○’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⁵⁰ 한국의 체결 주체인 ○○○은 한국대황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듯하다. 이처럼 신한혁명당이 고종에게 조약 체결 위임장을 받아오도록 성낙형을 파송한 사실에서도 고종을 염두에 둔 조직이었음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런데 조약문 가운데 ‘한국 혁명사업 착수’ 이전에는 이 조약을 비밀에 붙였다가 성공 후 정식으로 세계에 공포한다는 조항(제18조)과, ‘한국 혁명사업 착수’ 이전에는 한·중·독 3국의 중요한 인물 사이에 ‘사결(私結)’하고 성공 후 각 정부 원수가 이를 계승하여 공포한다는 조항(제19조)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시사한다. 즉 이 조약은 공포와 계승 시점을 ‘한국 혁명사업 착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국혁명’이란 독립을 지칭하는 것이고, 혁명사업의 착수는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망명정부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⁵¹

고종의 옹립과 망명정부 수립을 위한 신한혁명당의 보황주의는 1917년의

50 金正柱 編, 1970, 『朝鮮統治史料』 5, 東京韓國史料研究所, 629~671쪽.

51 박길순, 2009, 앞의 글, 56~57쪽.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 선언은 주권불멸설에 의한 국민주권설을 내세우고 융희황제의 주권 포기를 단정함으로써 왕실의 신국가 건설 참여를 원천 봉쇄하였다.⁵² 따라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대동단결선언」이 발표된 1917년은 정채론의 전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다. 그러나 이해에 이상설이 47세를 일기로 사거하였다. 이상설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민감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화제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나, 고종은 그의 영원한 주군이였다. 따라서 그가 망명정부를 추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종의 망명과 옹립 이상은 아니었다. 물론 신한혁명당이 고종을 받든 이유는 제정(帝政) 체제를 갖추는 것이 황제에 오를 예정인 원세개와 제정을 택하고 있는 독일의 지원을 받기에 유리했을 것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국내 동포의 지원을 받기 위해 황제가 지닌 상징성을 고려한 독립운동 방략의 일환이었을 수 있다.⁵³

그러나 이상설의 고종에 대한 군신의 의리는 무엇에도 앞서는 최고의 가치였다. 신한혁명당 활동은 이상설의 민족운동에서 최후의 활동이었다. 따라서 이상설은 헤이그 특사 사행을 비롯하여 고종의 근신으로서 황제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망명 이후 사거할 때까지 고종에 대한 충성심을 지니고 군신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설의 정채론은 입헌군주제의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상설 개인의 의리론으로 보아도 그러하다.

이상설의 두 차례에 걸친 고종 망명 추진 당시 이회영은 국내에 있었다. 이상설이 1910년 류인석과 고종의 망명을 추진할 무렵 이회영과의 사전 협의 등 관련성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1915년 신한혁명당을 조직하여 추진한 망명 계획은 이회영과 상의하였거나, 최소한 이회영이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설이 망명하며 국내의 모든 일은 오직 이회영에게 부탁할 뿐이라는 당부의

52 趙東杰, 1989, 앞의 글, 316~317쪽.

53 尹炳奭, 1984, 앞의 책, 166쪽.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기록을 보면,⁵⁴ 고종의 망명처럼 증대한 문제를 상의했을 것임을 추론키는 어렵지 않다. 당시 이회영은 1915년 8월 20일 일경에 체포되어 3주간 구류당한 바 있는데, 신한혁명당 외교부장 성낙형이 고종을 망명시키기 위해 귀국하였다가 붙잡힌 ‘보안법 위반 사건’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회영은 일경에게 이상설과의 관련에 대해 추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이회영은 이상설을 ‘죽마고우’라고 칭하였으나, 이상설과는 사람은 물론 서신 왕래조차 끊겨 소식을 듣지 못해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또한 구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피체된 사실을 알고 자신과 연관이 있나 걱정하며 비밀리에 그에게 ‘발설하지 않았다(我不言君)’는 메모를 전했다는 일화도 전한다.⁵⁵ 일제가 보안법사건 당시 이회영을 구속하고 이상설과의 관계를 추궁한 것은, 그가 고종의 망명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회영은 구류 3개월 만에 풀려났다. 일제가 그를 더 이상 가둬둘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의 일화가 사실이라면, 이회영은 이상설이 추진한 고종의 망명 계획과 연관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 정세가 크게 변하였다. 민족자결주의의 제창은 식민지 피지배 민족에게 희망의 복음이 되었다. 이회영은 이미 1916, 1917년경 고종에게 망명 계획을 알린 바 있었는데,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고자 추진하였다. 이것이 이상설과의 교감하에, 이전에 추진하였다가 실패한 망명 계획을 재차 시도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회영이 새로운 국제 정세의 변화를 감지하고 전년에 사거⁵⁶한 이상설을 떠올

54 李丁奎, 1985, 앞의 책, 28쪽.

55 이관직, 1985, 앞의 책, 167~169쪽.

56 지금까지 이상설의 사거일이 잘못 알려져 전혀 무관한 4월 22일에 추모식을 지내왔다. 이상설의 정확한 사거일은 1917년 4월 1일이다(박결순, 2009, 앞의 글, 66~68쪽).

리며 “참으로 뼈아프게 느껴졌고 애달프게 생각된다”고 말하였다는 사실⁵⁷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회영은 천도교의 오세창, 불교의 한용운, 기독교의 이승훈 등 종교계와, 김진호·유창환·강우 등 교육계 및 이상재·유진태·안확·이득년 등 동지들과 조석으로 만나 밀의를 하였다. 그는 세계적 변동기를 이용하여 고종 황제가 국외로 망명하여 일제의 합병이 강도적 폭력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직접 폭로하면 큰 반향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시종 이교영으로 하여금 고종에게 이 같은 상황을 재차 아뢰도록 하였다.

...이때는 마침 영친왕 李垠과 倭皇家의 芳子와의 혼담 결정으로 황제의 고민이 지극하였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이교영 시종이 부친의 생각을 상주하자 뜻밖에 쾌히 승낙하셨다. 부친은 황제께서 승낙하셨다는 소식을 이교영 시종으로부터 전해 듣자 흥중식을 데리고 민영달을 찾아가 고종 황제의 뜻을 전하며 그의 의사를 타진하였다...⁵⁸

고종이 쾌락하자 망명 계획은 더욱 구체적으로 진척되었다. 고종의 망명지는 우선 중국으로 하되 상하이와 베이징을 비교한 결과 베이징으로 결정하고, 행로는 선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가 고종의 망명지로 베이징을 선택한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중국의 수도로서 외국의 공관들이 있어 외교적 파급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회영은 민영달이 내놓은 자금을 베이징에 거주하던 동생 이시영에게 보내 고종이 거처할 행궁을 임차하고 수리하도록 부탁하였다.

이회영의 고종 망명 계획은 예기치 않은 고종의 급서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와 고종의 관계, 특히 고종의 망명을 추진한 사실을 근거로 그의

57 李圭昌, 1992, 앞의 책, 28쪽.

58 李圭昌, 1992, 앞의 책, 29쪽.

정체론을 복벽주의나 보황주의로 획일화하여 해석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⁵⁹ 또한 그가 임시정부를 반대한 이유를 고종과 연계하여 보황파로 해석하거나, 심지어 그 자신이 임시정부의 중심 인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오해⁶⁰도 있었다.

그는 임시의정원회의에 1~3회까지 잇달아 참여했고, 제3회 임시의정원 회의(1919. 4. 25)에서 국무원장에 추대되었으나 거절하고 끝내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그가 임시정부를 부정한 까닭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는 운동의 방법과 형태로서 ‘정부’의 조직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는 손정도·이동녕·조완구·조소앙 등에게 혁명당이나 독립운동 본부와 정부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를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⁶¹ 이 사실은 행정적인 정부로는 실질적인 독립투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그가 혁명당이나 독립운동 본부 형태를 주장한 것은 무장투쟁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그는 정부 조직에서는 파벌로 인해 파쟁이 있을 것이고, 신격화와 이상화 우려가 있는 개인 인물 중심의 독립운동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기에 부적당하며, 또한 당시 독립운동계의 분열과 대립 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회영이 희망한 독립운동의 형태와 방법은 ‘동학식(東學式)’이었다.⁶² 그가 구상한 ‘동학식’이란 민중이 운동의 주체가 되고 직접적인 무장투쟁을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회영은 인물 중심의 독립운동을 배격하고 민중이 변혁의 주체가 된 동학에 주목하였는데 이 사실은 그의 정체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를 한다. 곧

59 고종 망명 계획이 성사되었더라도 이회영이 전제군주의 부활이 아니라 입헌군주제를 추진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견해도 있다(한경구·한홍구, 「잊어서는 안 될 그날」, 『서간도시종기』, 36쪽).

60 李丁奎, 1985, 앞의 책, 63쪽. 그는 제1회 의정원 회의(1919. 4. 11)에서 현순에 의해 국무총리 후보로 추천되었으나 부결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2, 17쪽).

61 李丁奎, 1985, 앞의 책, 62쪽.

62 李丁奎, 1985, 앞의 책, 57~58쪽.

그가 고종의 사후 복벽이나 보황주의로부터 벗어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당시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아나키스트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명확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회영은 자신의 정치사상이 사민평등(四民平等)하고 만인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아나키즘은 그에게 가장 합치되는 정치이념이었다. 이회영의 유교적 소양이 아나키즘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가 아나키스트로서의 행동 지침을 유교적 가치에서 찾고자 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⁶³ 또한 이상설이 양명학을 수학한 사실을 전제로 이회영의 아나키즘 수용을 양명학적 요소의 발전적 수용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⁶⁴

사실 이회영과 이상설의 고종에 대한 군신 관계와 의리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상설이 지녔던 보황주의적 인식보다 이회영의 정체론이 민주공화정에 한발 더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회영은 본인이 정치이념 등을 밝히는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상설이 연해주에서 사거한 후 매우 짧은 시차에 불과하나, 정체론의 차이를 초래할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고종의 사거로 정체 결정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없어져 논의가 자유로워졌다는 점이다. 두 사람 모두 고종이 존재하는 한 그를 배제하는 새로운 정체를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그런데 고종의 망명을 추진하던 이회영에게 고종의 급서는 망명의 주체이자 정체론을 좌우할 주인공의 소멸을 의미하였다. 이회영은 더 이상 정체론을 구상하는 데 고종에 구애되지 않아도 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둘째, 국제 정세가 급변하였다는 사실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파리강화회의와 베르사유체제, 민족자결주의 제창과 국제연맹의 발족 등 1918년 이후 짧은 시간에 국제 정세가 급변하였다. 이 때문에 이회영은 인물 중심의 독립운동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63 이호룡, 2009, 앞의 글, 202~203쪽.

64 이덕일, 2010, 「우당 이회영의 아나키즘 수용 배경에 관한 연구」, 『우당 이회영일가의 망명과 독립운동』, 우당 이회영일가 망명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33~52쪽.

따라서 이회영의 정체론은 고종의 사망 이후 변화하였으므로 그 이전과 이
 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1910년대 전반기에도 이회영은 영웅이나
 개인이 건설한 국가보다는 국민이 합동하여 세운 국가의 운명이 장구하다고 생
 각하는 등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물상을 추구하고 있었다.⁶⁵ 그러나 고종의
 존재는 그의 정체론에 넘을 수 없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고종의
 망명 추진은 그 결과였다. 결국 고종의 사거 후 그가 아나키스트로 사상을 전회
 하고 새로운 정체론을 편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이상설이 고종
 을 중심으로 한 정체론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던 반면, 이회영은 당초의 정체
 론에 고착되지 않고 새로운 정체론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양인의 정
 체론 차이는 시대와 상황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할 듯하다.

V. 맺음말

이회영과 이상설은 죽마고우이자 동지로서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는 인물들이다. 이 글은 그간 파편적으로 논의되던 양인의 독립운동론
 과 독립운동의 전개를 비교사적으로 고찰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명하고
 자 한 것이다.

이들의 초기 독립운동의 방략은 독립운동 기지 개척과 독립전쟁 수행을 위
 한 독립군 양성 계획으로 일치하였다. 먼저 이상설이 가산을 정리하고 1906년
 망명하여 무장투쟁의 기틀을 닦았다. 이상설은 양부 이행우로부터 상속한 고향
 진천 소유의 방대한 토지, 서울 저동의 토지와 저택을 매각하여 독립운동 자금
 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회영의 재산 처분은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이다. 이 또한 신민회의 방략에 따르고 이상설과 협의한 결과이다. 근래에
 이회영 일가가 처분한 재산의 구체적 면모가 밝혀지고 있다. 이회영과 이상설은

65 이회영, 「한국은 어떠한 인물을 요구하는가?」, 《國民報》1914년 5월 30일자.

이상룡과 함께 막대한 운동자금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독립운동을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1908년 이회영과 이상설의 블라디보스토크 만남은 향후 독립운동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동이었다. 이회영은 이상설이 강조한 국제 정세를 이용한 기회포착론을 귀국 직후부터 실천에 옮겨 나갔다. 이는 두 사람의 무장투쟁론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무장투쟁론의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양인 활동의 시·공간적 차이는 사상과 방법론의 차이를 초래하였다. 이회영이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아나키스트로 전회한 것은 그가 처해 있던 시대적·지역적 조건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이회영과 이상설은 다른 독립운동가들보다 고종과 특별한 관계를 지닌 인물들이었다. 두 사람 모두 고종의 망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정체론이 보황주의나 근왕적 사고로부터 탈피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상설이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에 추대된 것을 두고 고종과 절연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한광복군정부를 최초의 망명정부라거나 정통령을 정부수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상설이 신한혁명당의 방략으로 재차 고종의 망명을 추진할 당시 국내에 있던 이회영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종의 사가와 베이징 망명 이후 이회영의 고종 인식과 정체론은 아나키즘의 수용으로 변화하였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즉 이상설이 고종을 중심으로 한 정체론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던 반면, 이회영은 당초의 정체론에 고착되지 않고 새로운 정체론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정체론의 차이는 시대와 상황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문헌

『漢城府統表』

《大韓每日申報》, 《獨立新聞》, 《新韓民報》, 《國民報》

국사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

桂奉瑀, 『꿈속의 꿈』(『北愚 桂奉瑀資料集(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김명섭, 2008, 『자유를 위해 투쟁한 아나키스트 이회영』, 역사공간.

_____, 2011, 「우당 이회영의 아나키즘 인식과 항일 독립운동」, 『한국동양정치사상사 연구』 제38집.

_____, 2017, 「이회영의 중국 망명생활과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9집.

김삼웅, 2011, 『이회영 평전』, 책보세.

金正柱 編, 1970, 『朝鮮統治史料』 5, 東京韓國史料研究所.

박걸순, 2009, 「溥齋 李相高의 독립운동론과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3집.

_____, 2011, 「申采浩의 아나키즘 수용과 東方被壓迫民族連帶論」,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38집.

_____, 2013, 「1920년대 北京의 韓人 아나키즘운동과 義烈鬪爭」, 『東洋學』 제54집.

박환, 1991,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_____, 2002, 「이회영의 생애와 민족운동」, 『나라사랑』 104호.

서중석, 2002, 「이회영의 교육운동과 독립군 양성」, 『나라사랑』 104호.

왕현중, 2017, 「이회영 형제들의 재산처분과 독립운동」, 『민국의 길, 자유의 길』 전시연계 특별강연(2017. 8. 17, 서울역사박물관).

尹炳奭, 1984, 『增補 李相高傳』, 일조각.

이관직, 1985, 「우당 이회영 실기」, 『우당 이회영 약전』, 을유문고.

李圭昌, 1992, 『運命의 餘燼』, 寶蓮閣.

- 이덕일, 2009, 『이회영과 젊은 그들』, 역사의 아침.
- , 2010, 「우당 이회영의 아나키즘 수용 배경에 관한 연구」, 『우당 이회영일가의 망명과 독립운동』, 우당 이회영일가 망명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 李炳憲, 1959, 『3·1運動秘史』, 시사시보사.
- 이은숙, 2017, 『西間島始終記』, 일조각.
- 李乙奎, 1963, 『是也 金宗鎭先生傳』, 韓興印刷所.
- 李丁奎, 1985, 『友堂 李會榮 略傳』, 乙酉文化社.
- 이호룡, 2009, 「이회영의 아나키스트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3집.
- 임형택 외, 2005, 『역주 매천야록(상)』, 문학과지성사.
- 張世胤, 1997, 「朝鮮革命軍政府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1집.
- 趙東杰, 1989, 「臨時政府 樹立을 위한 1917년의 <大同團結宣言>」,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 최기영, 2013, 「이회영의 북경생활」, 『東洋學』 제54집.
- 한시준, 2011,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0집.
- 玄圭煥, 1976, 『韓國流移民史』(上), 語文閣.

이회영(李會榮)과 이상설(李相高)의 독립운동론과 독립운동 비교

박걸순

이회영과 이상설은 인척 간으로 죽마고우이자 동지로서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이 글은 두 사람의 독립운동론과 독립운동을 비교사적으로 고찰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의 초기 독립운동의 방략은 독립운동 기지 개척론으로 일치하였다. 먼저 이상설이 가산을 정리하고 1906년 망명하여 무장투쟁의 기틀을 닦았다. 이상설은 고향 진천의 토지와, 서울의 토지와 저택을 매각하여 독립운동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이회영의 재산 처분은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이다. 이 또한 신민회의 방략에 따르고 이상설과 협의한 결과이다. 이회영과 이상설은 막대한 운동 자금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독립운동을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1908년 이회영과 이상설의 블라디보스토크 만남은 향후 독립운동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동이었다. 이회영은 이상설이 강조한 국제 정세를 이용한 기회포착론을 귀국 직후 실천에 옮겨 나갔다. 그러나 활동의 시·공간적 차이는 두 사람 간 사상과 방법론의 차이를 초래하였다. 이회영이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아나키스트로 전회한 것은 그가 처해 있던 시대적·지역적 조건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이회영과 이상설은 고종과 특별한 관계를 지닌 인물이었다. 두 사람 모두 고종의 망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정체론이 보황주의나 근왕적 사고로부터 탈피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상설이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에 추대된 것을 두고 고종과 절연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후 이회영의 고종 인식과 정체론은 고종의 죽음과 베이징 망명 이후 아나키즘의 수용으로 변화하였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즉 이상설이 고종을 중심으로 한 정체론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던 반면, 이회영은 당초의 정체론에만 고착되지 않고 새로운 정체론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이회영, 이상설, 독립운동론, 독립운동, 독립운동 기지 개척론, 무장투쟁론, 독립운동 자금, 고종, 정체론, 대한광복군정부, 아나키즘

ABSTRACT

A Comparison between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ory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Hoeyeong Lee and Sangseol Lee

Park Gulsun

Hoeyeong Lee and Sangseol Lee are related, and they are also friends who have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is research examines and compares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ory and independence movement of these two figures to identify the common grounds and differences.

Their initial direction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coincided as they bot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First, Sangseol Lee disposed of his family's fortune and fled the country in 1906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armed struggle. Sangseol Lee sold his land and house in Jincheon and Seoul to fund the independence movement. Disposition of Hoeyeong Lee's properties is one of the most famous stories in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is was a result of directions

given by Sinminhoe and his agreement with Sangseol Lee. Hoeyeong Lee and Sangseol Lee not only provided tremendous amount of funds to the movement, but also engaged themselve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y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noblesse oblige*.

The gathering of Hoeyeong Lee and Sangseol Lee in 1908 at Vladivostok was important as it determined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However, the time and locational differences in their activities caused discordance in their approaches. Hoeyeong Lee accepted anarchism and became an anarchist because of the periodical and locational conditions that he encountered at the time.

Hoeyeong Lee and Sangseol Lee had special relationships with Gojong (高宗). Since both planned and attempted Gojong's asylum,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their identities were free from the idea of protection of and loyalty to the king. The fact that Sangseol Lee was chosen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Liberation Army Government should be not interpreted that he repudiated his relationship with Gojong. However, Hoeyeong Lee's recognition and identities regarding Gojong should be understood in a sense that he accepted anarchism and changed his thoughts after the death of Gojong and exile to Beijing. That is, Sangseol Lee had not deviated significantly from the identity around Gojong whereas Hoeyeong Lee had developed a new identity instead of being fixated by his initial ideas.

Keywords: Hoeyeong Lee, Sangseol Lee, Independence Movement Theory, independence movement, establishing foundations for independence movement, armed struggle, fund for the movement, Gojong, Korean Liberation Army Government, anarchism

식민주의 역사학으로서 만주건국대학에서의 역사 연구

정상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조교수

- I. 머리말
- II. 1930년대 이래 일본 역사학계의 동향과 건국대학의 사명으로서 '만주국학(滿洲國學)'
- III. 건국대학의 역사 연구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화는 동시적이었으며, 이는 ‘학문’이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 서구 제국들이 구축한 이른바 근대적인 제도·문물을 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과 같은 근대적인 학술 제도들 역시 받아들였고, 이들 학문은 일본의 근대화·제국주의화에 복무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역사학에서도 마찬가지였던 바 서구를 통해 들어온 ‘근대 역사학’을 받아들인 일본의 역사가들은 일본과 일본 민족을 주인공으로 하는 역사를 서술하고, 제국 일본의 힘이 미치게 된 새로운 지역들의 역사를 제국 일본의 관점에서 연구하며,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변으로의 침략을 도모하던 일본은 러일전쟁 결과 남만주에 대한 이권을 획득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반관반민적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는 그 첨병이었다. 이렇게 만주에서 이권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만주와 그 일대의 역사는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만철 산하에 ‘만선역사지리조사부’와 같은 부서가 설치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제국대학에서 사학을 배운 당대의 엘리트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연구자로서 성장하였다. 이후에도 만주와 북방 민족 및 그 역사에 대한 연구들은 도쿄(東京)와 교토[京都]의 제국대학에서 수학한 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1930년대 만주사변의 발발과 만주국의 건국은 만주의 역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¹ 한편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의 성립·전개 과정은 ‘동양’의

* 투고: 2019년 2월 9일, 심사 완료: 2019년 5월 11일, 게재 확정: 2019년 5월 17일

1 外山軍治, 1967, 「日本における滿洲史研究」, 『歴史教育』 15-9·10, 75쪽. 글의 서두에서 外山은 일본에서의 만주사 연구를 1기 러일전쟁 이후, 2기 만주사변 이후, 3기 중전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 구분했다.

창출 과정이라고도 이야기된다.²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역사적 강자로 부상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로서 ‘동양’을 설정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세기 이래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는 이러한 과정 속에도 위치해 있다. 즉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는 제국 일본의 대륙 침략과 ‘동양’이라는 공간의 창출 과정이라는 두 가지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제국 일본의 만주 침략 결과이자 향후 대륙 침략의 발판이 되는 만주국의 수도 신징[新京]에서는 중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938년 5월 만주건국대학(滿洲建國大學, 이하 ‘건국대학’)이 개교하였다. 전장의 한복판이라 할 수 있는 만주라는 공간에 세워진 근대 학제의 최고 학부인 ‘대학’. 그렇다면 건국대학에서 이루어진 역사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이 진행한 역사 연구의 두 가지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곳에서는 어떠한 역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건국대학에서 이루어진 역사 연구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자료도, 알려진 것도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2000년대를 전후하여 건국대학의 면모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연구의 확대를 보고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건국정신(建國精神)의 신수(神髓)를 체득(體得)하고, 학문(學問)의 온오(蘊奧)를 구(究)하여 몸소 이를 실천해 도의세계(道義世界) 건설의 선각적 지도자로서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³는 건국대학령(建國大學令)의 제1조를 주목하였다. 즉 일본이나 조선, 타이완에 세워진 제국대학들과는 달리 국가 건설을 위한 인재 양성, 바로 만주국의 관리 양성 기관으로서 건국대학을 바라보며 건국대학의 개교를 둘러싼 상황,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교육 및 연구 방식의 특징, 건국대학의 학생 생활, 졸업생들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며, 그 실제

2 Stefan Tanaka, 1993,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박영재·함동주 譯,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3 建國大學, 1941, 「建國大學令」, 『滿洲建國大學要覽』, 9쪽.

에 접근하였다.⁴ 최근에는 이러한 기초적·종합적 연구에 기반하여 개별 분과학문이나 건국대학에 재직하며 연구 활동을 벌였던 개별 인물들의 차원으로 연구가 확대되었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건국대학에서 지리학, 심리학, 종교학 등을 연구했던 개별 교수들을 주목하며 각 분과학문이 만주국이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⁵ 한국의 연구자들은 건국대학에 몸담았던 최남선이나 조선인 학생들을 통해 건국대학에 접근하는 한편 건국대학의 산파 중 하나이자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사쿠다 쇼이치[作田莊一]나 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 등이 건국대학 재직 당시 제시한 도의국가론(道義國家論)에 대한 고찰도 진행하였다.⁶ 이 글이 비록 건국대학에서 이루어진 역사 연구에 대한 것이지만, 건국대학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자료가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선행 연구 성과들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한편 건국대학에서 이루어진 역사 연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하는 외부적 조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건국대학에 부임하여 역사를 가르치고 연구했던 이들은 제국대학에서 사학을 전공·연구하던 이들로 당시

-
- 4 宮澤惠理子, 1997, 『建國大學と民族協和』, 風間書房; 山根幸夫, 2003, 『建國大學の研究』, 汲古書院.
 - 5 小谷野邦子, 2003, 「『滿洲』における心理學—建國大學とその周邊」, 『茨城キリスト教大學紀要』 36; 志々田文明, 2005, 『武道の教育力: 滿洲國·建國大學における武道教育』, 日本圖書センター; 大澤廣嗣, 2007, 「宗教學研究者と『滿洲國』—建國大學の松井了穩」, 『佛教文化學會紀要』 15; 田村紀雄, 2010, 「井口一郎と建國大學の同僚達—王道樂土か日本脱出か」, 『コミュニケーション科學』 31, 東京經濟大學; 柴田陽一, 2011, 「建國大學における地理學者とその活動—宮川善造を中心に」, 『史林』 94(5), 史學研究會.
 - 6 전성곤, 2006, 「만주 「建國大學」 창설과 최남선의 <건국신화론>」, 『日語日文學研究』 56; 정준영, 2016, 「'만주 건국대학'이라는 실험과 육당 최남선」, 『사회와 역사』 110; 이정희, 2016, 「만주 건국대학'의 교육과 조선인 학생」, 『만주연구』 22; 강해수, 2016, 「'도의국가(道義國家)'로서의 만주국과 건국대학—사쿠다 쇼이치(作田莊一)·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최남선의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20.

학계의 자장 안에 있었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건국대학의 부총장이자 건국대학연구원의 원장으로서 건국대학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사쿠다는 건국대학의 연구 사명으로 ‘만주국학(滿洲國學)’(이하 ‘·’ 생략)을 누차 제시·강조하였다. 그렇다면 건국대학에서 이루어진 역사 연구 역시 당시 학계의 흐름 속에서, 또 만주국학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에서 이루어진 역사 연구가 갖는 의미와 가치는 1930년대 이후 일본의 역사학계, 특히 만주의 역사가 포괄되는 동양사학계의 논의 및 만주국학과 관련된 속에서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만주사변을 전후한 이래 일본에서의 만주사 연구와 학계의 분위기 및 만주국학에 대해 정리하겠다. 이후 건국대학에서 교수로서 재직하며 역사를 연구·강의했던 이들이 건국대학 재직 당시 발표한 글들을 통하여 이들의 연구 주제와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건국대학에서 이루어진 역사 연구의 시대적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1930년대 이래 일본 역사학계의 동향과 건국대학의 사명으로서 ‘만주국학(滿洲國學)’

1. 만주사 정립의 필요와 새로운 역사 서술의 지향

러일전쟁과 만주사변. 당시 연구자들 역시 이 두 사건이 만주사 연구의 큰 계기였으며, 만주사변 이후의 연구를 ‘만선사(滿鮮史)에서 만몽사(滿蒙史)로의 영역 확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⁷ 특히 만주사변 이후로는 외무성에서도 만주사 연구를 지원하는 가운데 젊은 연구자들이 만주사를 연구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연구 성과들은 과거 만철역사지리조사부에서의 연구, 바로 만주에 있었던 왕조들과 주요 사건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증에 그치지 않고 만주와 주변의 관계

7 三島一, 1936, 「滿洲史研究序說」, 歷史學研究會 編, 『滿洲史研究』, 1쪽.

등으로 시각의 확대를 이루었다고 한다.⁸

특히 만주사변을 전후해서는 만주에서 일본의 이권 확보와 관련하여 만주의 역사가 논의되었으며, 교토제대 사학과 교수 야노 진이치[矢野仁一]⁹는 그 선봉에 서서 만주에서 일본 이권의 근거로 만주가 중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¹⁰ 이후 그는 자신의 논의를 확대하며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제연맹이나 만주를 중국의 일부로 보는 중국 학자들의 논의를 비판하는 한편 역대 중국 왕조의 지배력이 만주에 미치지 못했음을 상세히 서술하였다.¹¹ 이에 대해 국학원대학(國學院大學) 교수였던 마쓰이 히토시[松井等]의 이견(異見)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그 역시 만주에서 일본의 이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¹² 이와 더불어 만주국 건국을 전후하여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만주사에 대한 몇 종의 통사들이 등장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 연구자들은 이 무렵 만주사 정립을 시도하였다.¹³ 즉 1930년대에 접어들어 만주에서 일본의 이권을 공고히 할 현실적 필요가 제기되자 만주사에 대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과 분리된 만주사 체계의 정립을 시도했던 것이다.

8 塚瀬進, 2011, 「戰前, 戰後におけるマンチュリア史研究の成果と問題點」, 『長野大學紀要』 32-3, 42~43쪽.

9 1945년 이전 矢野仁一의 활동과 중국인식에 대해서는 이형식, 2016, 「支那通」 야노 진이치(矢野仁一)의 중국인식과 對中政策, 『사림』 58.

10 矢野仁一, 1930, 「日本の滿洲に於ける歴史上の地位を論ず」, 『東亞』 3-1, 4~6쪽.

11 矢野仁一, 1933, 『滿洲國歴史』, 여기서 矢野는 만주를 중국의 일부로 보는 국제연맹과 중국 학자들을 비판한 이후 ‘滿洲國史概略’이라는 장을 설정하였다. 章名만 보면 만주에 대한 통사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과거 간략한 언급으로 끝냈던 만주에 중국 왕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史實을 상술한 것이다.

12 松井等, 1930, 「滿洲に於ける日本の地位(矢野仁一君の論文に因みて)」, 『東亞』 3-2, 6쪽.

13 주요한 것으로는 大原利武, 1933, 『概説 滿洲史』; 矢野仁一, 1933, 『滿洲國歴史』; 矢野仁一 等, 1935, 『朝鮮·滿洲史』; 南滿洲教育會, 1934, 『滿洲新史』; 及川儀右衛門, 1935, 『滿洲通史』 등이 있다.

하지만 일관된 역사 체계에 입각하여 만주사를 서술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그 어려움은 1936년 역사학연구회(歷史學研究會)에서 만주사 연구와 관련된 ‘종래의 제 업적을 비판적으로 섭취해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미개(未開)한 신분야(新分野)의 개척(開拓)’을 위해 발간한 『만주사연구(滿洲史研究)』¹⁴의 다음 구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만주사의 시대구분에 관해서는 동양사학자들 사이에 분명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다. 稻葉, 白鳥, 矢野 등 여러 박사의 諸作을 보아도 모두 支那 역대왕조와 대응시켜 만주사를 구분하는 태도를 취하며, 松井等씨는 만주사를 4기로 나누고 있지만 그 구분의 표준은 前者와 같다. 기타 최근 간행된 다수의 만주사에 관한 통속적 개설서에는…단지 書物의 體裁를 갖추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필경 만주사의 지나사로부터의 독립 곤란, 아울러 지나사와 마찬가지로 만주사에 서도 민족의 흥망성쇠 등의 정치적 諸象의 연구 성과는 상당히 알려져 있지만 다른 諸機構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¹⁵

즉 당시 만주사가 중국 역대 왕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것도 정치적 사건 위주로 연구되어 그 전체적인 조망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간의 만주사 개설서 역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⁶ 이처럼 만주에서 이권

14 이 책은 일본 歷史學研究會에서 1935년에 간행한 잡지 『歷史學研究』 5-2를 다음 해에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으로, 발간 목적은 책의 서문에 밝혀져 있다(「序文」, 『滿洲史研究』). 필진은 미시마 하지메[三島一], 미카미 츠키오[三上次男], 나카야마 하치로[中山八郎], 스즈키 준[鈴木俊] 등 주로 東京帝大 출신으로 당시 촉망받던 소장 동양사 연구자들이다.

15 百瀬弘, 1936, 「我國に於ける滿洲近世史研究の動向」, 歷史學研究會 編, 『滿洲史研究』, 279쪽.

16 『滿洲史研究』의 첫 번째 수록 논문으로, 책 전체의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는 「滿洲史研究序說」에서 三島一은, 矢野는 역사적 분석을 폐기했으며 傅斯年 역시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하면서, 만주사의 중심은 ‘滿洲族에 두어야’ 하지만 ‘만주족의 일관된 역사적 발달이 만주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주족)과 支那民族

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든 만주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정립하기 위해서든 당시의 학계에서는 만주사의 체계 정립을 요구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만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만주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편 1930년대 중반 일본의 역사학계에서는 메이지 이래의 연구사를 정리한다거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세계 각지-중국, 중앙아시아, 조선·만주는 물론 서유럽과 이집트-의 역사에 대한 종합적 서술이 시도되었다. 즉 일본의 학계는 만주 침략 이래 제1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가 동요하고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며 새로운 국제 질서가 모색됨에 따라 그간의 연구를 정리하며 새로운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⁷ 실제로 중일전쟁을 계기로 하여 일본에서는 동양사의 재건이 주창되었다고 한다. 즉 ‘동아신질서’의 건설은 동양만이 아니라 서양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세계 속에서 동양을 사 고할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새로운 동양사·서양사를 서술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서술이 모색되었으며, 이는 태평양전쟁의 발발 이후 ‘대동아’가 주창됨에 따라 ‘대동아시아(大東亞史)’, ‘동아시아(東亞史)’를 구상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다.¹⁸

이는 학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사업으로 기획되기도 하였다. 문부성(文部省) 교학국(敎學局)에서 이른바 『대동아시아개설(大東亞史概說)』 편찬을 계획한 것이

과 역사적 접촉 과정에서의 交互의 作用 속에서’ 또 ‘전쟁과 대외 교섭으로부터 확대해, 이를 기초로 사회경제적 관련을 재음미’함으로써 ‘고립된 만주사가 아니라 諸民族의 사회적, 문화적 접촉의 결과로서의’ 만주사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이것이 ‘미래(明日)의 만주사의 입장’이라고 천명하였다(三島一, 1936, 『滿洲史研究序說』, 歷史學研究會 編, 『滿洲史研究』, 4~5쪽).

17 1930년대 중반 일본 역사학계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정상우, 2017, 「일제 하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通史的 이해-1930년대 중반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4, 93~96쪽.

18 중일전쟁 이래 새로운 세계사 서술을 요청하던 일본 역사학계에 대해서는 남상호, 2008, 「대동아전쟁과 『대동아시아개설』 편찬」, 『한일관계사연구』 31, 244~266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다. 진주만 공습이 겨우 한 달 지난 1942년 1월 12일에 예산이 결정된 이 사업은 2년간의 계획으로 도쿄제대의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교토제대의 하네다 토오루[羽田亨]가 관여하여, 주로 제국대학 출신으로서 도쿄제대와 교토제대를 비롯하여 동방문화연구원(東方文化研究院), 동방문화학원(東方文化學院), 동양문고(東洋文庫), 동양문화연구소(東洋文化研究所, 도쿄제대), 인문과학연구소(人文科學研究所, 교토제대), 국민정신문화연구소(國民精神文化研究所) 등에서 연구 활동을 벌이던 연구자 37명을 선정하여 진행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¹⁹ 비록 이 사업은 미완으로 끝났지만 그 ‘서론’의 일부와 제1장의 일부가 남아 있어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大東亞史라는 것은 東亞 諸民族의 역사이다. 즉 東亞 諸民族이 어떠한 국가를 수립했고, 어떠한 문화와 종교를 가졌으며, 상호 어떻게 교섭하여 현재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역사이다. 이 역사를 더듬는 것에 의해 東亞 諸民族이 서로 고립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사명으로서 공동의 운명을 짊어지고 사명을 함께 하는 所以가 명시될 것이다. ...대동아공영권의 먼 유래를 보이는 것이 된다. 그 의미에서 대동아사는 대동아공영권으로의 역사라고 해도 좋다. ...세계역사의 발단은 동양이다. 그리고 서양사가 암흑의 중세라고 부르는 시대는 동양에서는 찬란한 唐의 세계제국이 發했고, 아라비아·몽고가 활약한 시대이다. 소위 세계사의 구상은 여기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세계역사의 중심은 일본을 중핵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의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대동아사가 세계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²⁰

19 『大東亞史概說』 편찬 경위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奈須惠子, 1995, 「戰時下日本における「大東亞史」構想—『大東亞史概說』編纂の試みに着目して」, 『東京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 35에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당시 촉탁으로서 관계한 이들에 대해서는 4쪽에 표로 제시되어 있다.

20 남아 있는 『大東亞史概說』의 원고는 2016년 발간된 『京都大學大學文書館研究紀要』 14에 그 해제와 함께 실려 있으며, 여기서는 이것을 참고했다. 富永望, 2016, 「〈資料紹介〉『大東亞史概說』」, 『京都大學大學文書館研究紀要』 14,

이렇게 정의된 대동아시는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인도를 넘어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까지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대동아사개설』은 대동아공영권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30년대 이래 만주국이 건국되고 건국대학이 개교하여 연구가 진행되던 당시 일본의 학계에서는 만주사의 체계화를 요청하고 있었으며, 침략 전쟁이 진행·확산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로서 ‘동아신질서’, ‘대동아공영권’이 주창됨에 따라 기존의 역사 서술을 비판하면서 일본이 구축하고자 했던 새로운 세계 질서를 합리화해 줄 수 있는 역사 서술을 모색·시도하고 있었다. 만주 침략의 결과물이자 전쟁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만주국, 그곳의 최고 학부였던 건국대학 역시 이러한 학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 만주건국대학의 학문적 지향으로서 ‘만주국학’

개교 1년을 바라보던 1939년 초, 사쿠다는 건국대학연구원 제1, 2회 전체연구회의에서 ‘현대 학문과 만주국학의 연구법(現代の學問と滿洲國學の研究法)’이라는 강연을 통해 건국대학에서 수행해야 하는 연구가 무엇인가를 제시하였다. 이 강연에서 사쿠다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연구 방법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강연 장소와 시점 및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건국대학에서의 학문적 사명이 ‘현대 학문’으로서 ‘만주국학’을 연구하는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대 학문’은 ‘근세 학문’을 넘어선 것으로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근세 학문’은 ‘감각적(感覺的) 실증(實證)’ 혹은 ‘객관적(客觀的) 실증(實證)’, ‘추상적(抽象的) 이론(理論)’을 통한 ‘보편적(普遍的) 진리(眞理)’를 추구한 결과 ‘역사망각증(歷史忘却症)’에 빠져 과거를 부정하였다. 즉 역사를 무시하고 추상에 빠져 버렸다는 것이다.²¹ 근세 학문, 특히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의 연장(延長)으로 성립

61~62쪽.

되어 ‘의지체(意志體)’인 국가를 인식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현대 학문’은 ‘초감각적(超感覺的)’, ‘주관적(主觀的) 실증(實證)’에 의해 ‘국가(國家)’에 대한 ‘구체적(具體的) 이론(理論)’을 수립하는 것, 곧 ‘국학(國學)’으로서 일본에서든 만주국에서든 향후 학문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²² 그런데 오랜 역사를 통해 강고한 국체(國體)와 명확한 국가정신(다른 용어로 國心)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달리 만주국은 신생 국가로 국학(國學)의 전제가 되는 국가정신이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쿠다는 만주국의 국가정신을 건국정신으로 등치시키고, 건국정신에 입각해 연구하는 것이 만주국학임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건국정신마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만주국의 현실이었다. 이에 사쿠다는 만주국 건국과 관련된 여러 조서(詔書), 포고(布告), 결의문, 교서(敎書) 등을 통해 ‘왕도정치(王道政治)’, ‘민족협화(民族協和)’, ‘도의세계건설(道義世界建設)’, ‘일만불가분관계(日滿不可分關係)’ 네 가지를 건국정신으로 정리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건국정신은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 바로 만주국이 이루어야 할 목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 이론’에 근거해야 하는 ‘현대 학문’으로서 ‘만주국학’에 충분치 않다. 여기서 사쿠다는 건국정신을 ‘원리(原理)’와 ‘본의(本義)’ 두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원리’는 ‘국가를 창건하는 바의 원리’, ‘국가를 지속시켜 나가는 바의 원리’이며, ‘주의(主義)’라는 말로도 대체될 수 있는 ‘본의’는 ‘만주국 창건을 이끈 바의 규범(規範)으로서의 힘’, ‘만주국이 의식적으로 일정한 목표를 향해 움직여 나갈 때 기본적 규범으로서 국운(國運)을 이끄는 바의 힘’이다.²³ 즉

21 作田莊一, 1940, 『現代の學問と滿洲國學の研究法』, 建國大學研究院, 5~10쪽. 이 책은 1939년 2, 3월에 있었던 作田莊一의 강연을 묶은 것이다.

22 作田莊一, 1940, 위의 책, 15~16쪽.

23 建國原理와 建國本義에 대해 宮澤惠理子는 ‘(建國)原理’를 ‘국가를 창건하여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에네르기의 源이 되는 힘’, ‘(建國)本義’를 ‘국가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범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宮澤惠理子, 1997, 앞의 책, 143~144쪽)로, 강해수는 ‘原理’ = 만주국 건국의 존재, ‘本義’ = 만주국 건국의 당위성(강해수, 2016, 앞의 글)으로 정리했다. 이러한 정리는 타당하지만 本義는 미래에 대한 지향으로서 原理가 천명됨에 따라 새로운 것이 더해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임을 잘 설

‘원리’는 만주국의 창건 과정과 현재의 만주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본의’는 만주국의 지향과 목표, 즉 미래로서 아직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²⁴ 건국본의(建國本義)만으로는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현대 학문’으로서 만주국학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 이에 건국원리(建國原理)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건국원리가 분명해짐에 따라 건국본의, 바로 미래를 향한 만주국의 지향에는 새로운 것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이다.²⁵ 즉 만주국의 건국 과정과 현실의 만주국이라는 구체적인 대상(건국원리)에 대한 규명을 통해 만주국의 미래, 나아가야만 하는 길(건국본의)에는 지금까지 건국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에서 제시된 네 가지의 건국정신 외에 새로운 것들이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국대학에서 학문의 출발점은 만주국의 건국원리를 규명하는 것이 되며, 이것이 분명해질 때 만주국의 미래(건국본의) 역시 구체화되어 만주국의 건국정신은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힘이 어떠한 이유에서 만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는가?

오랫동안 만주국은 러시아의 침략 대상이었다. 거기에 支那는 일본에 반대하여 以夷制夷의 常套策에 의존했다. 러시아의 침략과 支那의 서양 의존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 3번 만주에서 싸웠다. 日淸戰爭…日露戰爭…滿洲事變…이 3단의 排擊은 일본에 대한 유럽 세력의 압박을 反擊한 것임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러한 反擊은 필연으로 일본을 대륙으로 進出케 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日淸戰爭, 日露戰爭, 滿洲事變이라는 3단에 걸쳐 점차 反擊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3번째 進出의 尖端에 滿洲國이 탄생한 것이다.²⁶

명해 주지는 못한다.

- 24 本義는 만주국의 지향과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미래의 것으로 현재 성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네 가지의 건국정신은 모두 建國本義에 해당한다 (作田莊一, 1940, 앞의 책, 27쪽).
- 25 作田莊一, 1940, 앞의 책, 28쪽.
- 26 作田莊一, 1940, 앞의 책, 29쪽.

일본의 ‘대륙 진출(大陸進出)’은 물질적·정신적 양 방면에서 필연적인 것이었다.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아(東亞)’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대륙에서 구하는 것은 일본만을 위한 자원 이용이 아닌 ‘동아 전체(東亞全體)’를 위한 것으로 ‘세계 경제의 필연적 전진 과정’이었다. 또 대륙으로부터 전래된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유 문화의 기반 위에서 서양 문화를 배워 커다란 체계를 갖춘 일본 문화가 오랜 시간 동안 정돈(停頓)된 대륙문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 역시 ‘세계 문화 발전의 역사적 과정’이다.²⁷ 즉 만주국학의 출발을 위해서는 일본의 ‘대륙 진출’이라는 세계사적 필연을 가로 막은 장애물들, 바로 서구와 이에 의존한 중국의 압박에 지속적으로 ‘반격(反擊)’을 가하며 결국 만주국을 건국한, 만주국의 건국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했던 것이다.

Ⅲ. 건국대학의 역사 연구

그렇다면 건국대학에서는 어떠한 역사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건국대학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그렇듯이 이와 관련해서도 남겨진 자료가 그리 많지 않다. 더군다나 국가 엘리트 양성을 위해 ‘실험’에 가까운, 기존의 분과학문 체제와 매우 상이한 건국대학의 독특한 학과 구성과 교과과정²⁸은 과연 무엇이 역사학 관련 강의·연구인가를 파악하기조차 어렵게 한다. 다만 선행 연구 성과²⁹와 1941년

27 作田莊一, 1940, 앞의 책, 29~32쪽.

28 정준영, 2016, 앞의 글. 이에 따르면 건국대학은 기존 대학들이 문제점을 시정한다며 학과의 구성과 강의에서 ‘실험’이라 할 수 있는 독특한 편제와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국가 엘리트로서 현장에 바로 투입되었을 때 필요한 실용적·전문적 지식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학문 편제와 상당히 다른 양상—일례로 ‘국민편성론’, ‘국민조직법론’, ‘협화정책론’과 같은 강의—을 보인다는 것이다.

29 宮澤惠理子, 1997, 앞의 책. 이에 따르면 건국대학 개교 당시 교직원은 명예교수 6명, 교수 10명, 조교수 11명, 조수 4명, 屬官 7명으로 모두 38명이었다. 반면

판 『건국대학요람(建國大學要覽)』을 통해 볼 때 역사 교육·연구를 위해 건국대학에 부임한 이들은 10여 명으로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를 제외하면 대체로 건국대학 부임 당시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소장 연구자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만주건국대학에서 역사 관련 강의 담당자들

성명	출생 연도	학위(출신 대학)	직위	담당 강의
稻葉岩吉	1874	문학박사(京都帝大)	교수	만주사
瀧川政次郎	1897	법학박사(東京帝大)	교수	법제사
山本守	1906	문학사(京都帝大)	조교수	동양사, 만몽 문화
森克己	1903	문학사(東京帝大)	조교수	동양사
丹羽正義	1896	문학사(京都帝大)	교수	동양사, 중국 문화, 역사 이론
原田種臣	1897	문학사(廣島文理大)	교수	塾訓育, 일본어, 서양사
寺田剛	1912	문학사(東京帝大)	조교수	동양사
小野壽人	1913	문학사(東京帝大)	조교수	일본사
尾生正男	1905	법학사(京都帝大)	조교수	외교사
高橋匡四郎	1901	문학사(東京帝大)	조교수	만주사
上田又次	1912	문학사(東京帝大)	조교수	塾訓育, 서양사

※ 이는 1941년판 『建國大學要覽』과 宮澤惠理子, 1997, 『建國大學と民族協和』, 風間書を 근거로 작성하였다.³⁰

1941년 요람에는 명예교수 5명, 武道顧問 3명, 配屬武官 2명, 교수 35명, 조교수 42명, 강사 11명, 兼務講師 24명, 촉탁 13명, 조수 20명, 속관 21명으로, 교직원 의 수는 176명에 달한다. 건국대학의 교육과정은 예과에 해당하는 前期 3년, 본과에 해당하는 後期 3년, 총 6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41년은 건국대학 1회 입학생(1938년 입학)들이 후기에 진입하는 시기였으며, 이를 위해 1940년 이후 건국대학 교원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30 한편 丹羽正義의 출생 연도는 「偽滿洲國最高學府的覆滅」(<https://kknews.cc/history/n92zq.html>)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 기사를 알려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 건국대학 전체 교원에서 교토제대 출신이 도쿄제대 졸업자보다 많았던 것에 비해 사학 관련자들에서는 도쿄제대 출신들이 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쿄제대 국사과 교수로서 군부와 학계를 매개하며 건국대학 창립에 깊숙이 개입하고 건국대학의 명예교수가 된 히라이즈미 기요시[平泉澄]의 영향력 때문이었다.³¹ 한편 요람에서도 나타나듯이 건국대학에서 이들이 담당해야 했던 강의에는 일본사, 동양사, 서양사 외에 만주사 강의가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만주사의 체계화와 그 연구의 심화는 당시 일본 학계에서도 요구되던 사안으로, 만주사 강의와 연구는 만주국 최고 학부로서 건국대학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들은 강의 외에도 건국대학연구원에 소속되어 연구 활동도 벌여 나갔다. 이들이 건국대학에 재직할 당시 진행한 강의나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산발적이지만 강의에 근거하여 출판된 도서, 건국대학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研究報告)》와 《연구기보(研究期報)》, 강연문 등의 일부가 남아 있어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볼 때 건국대학에서 이들의 활동은 첫째, 만주사 정립을 위한 연구·교육, 둘째, ‘일만관계’를 부각하면서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는 것, 셋째, 19세기 후반 이래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한 역사적 의미 탐색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만주사 정립을 위한 연구·교육

만주국 건국 10년을 맞은 1942년, 경성제대 교수였던 도리아마 키이치[鳥山喜一]는 지난 10년간 만주국에서 이루어진 문화사업 중 첫 번째로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꼽았다. 도쿄제대의 이케우치, 교토제대의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우

31 宮澤惠理子, 1997, 앞의 책, 100~101쪽. 사학 관련 교수 가운데 森克己와 寺田剛은 平泉의 추천으로 부임하였으며, 小野壽人和 上田又次는 平泉의 문하생이었다고 한다.

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경성제대의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등이 조사한 고구려 고분과 벽화에 대한 발굴(성과는 이케우치의 명의로 『통구(通溝) 2책(冊)』으로 간행), 도리아마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도리아마 자신이 직접 발굴에 참여한 발해의 수도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에 대한 발굴, 경성제대 만몽문화연구회(滿蒙文化研究會)에서 진행한 금(金)의 수부(首府) 상경회령부(上京會寧府)에 대한 조사 등이 도리아마가 꼽은 만주국 건국 이후 주요한 발굴과 조사였으며, 이러한 활동 중 대다수는 만주국 측의 협찬을 받으며 이루어졌다.³²

만주 일대의 유적지에 대한 발굴 및 조사는 건국대학에서도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도리아마는 1939년 ‘흥경노성(興京老城)’에 대한 조사를 꼽았다. 이는 이나바와 다카하시 교우시로[高橋匡四郎]에 의한 것으로, 그해 12월에 『흥경이도하자(興京二道河子) 구노성(舊老城)』이라는 책자로 조사 결과가 발간되었다. 이 성은 누르하치가 건설한 4개의 도성(都城)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사료가 ‘현격하게 부족’한 데다가, 사료들에서는 두 번째 성(城)인 ‘허투아라[黑圖阿拉]’³³를 ‘노성(老城)’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³⁴ 하지만 ‘구노성(舊老城, 二道河子城)’은 누르하치가 29세 즈음에 흠어진 여진 민족을 규합해 가는 과정에서 축성한 것으로 청(淸)의 발흥을 해명하는 데에 중요

32 鳥山喜一, 1942, 「滿洲國文化事業の十年」, 『朝鮮』 328. 특히 1940년에 있었던 도리아마의 上京龍泉府에 대한 발굴조사는 만주국 民生部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경성제대 만몽문화연구회에 대해서는 이한결, 2014, 「경성제국대학 만몽문화연구회의 조직과 활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및 정준영, 2015, 「군기(軍旗)와 과학: 만주사변 이후 경성제국대학의 방향전환」, 『만주연구』 20을 참고.

33 이는 ‘赫圖阿拉’으로 쓰는 것이 맞지만 稻葉의 보고서 원문과 동일하게 표기하였다.

34 때문에 稻葉는 두 번째 성(老城)보다 오래된 성임을 나타내기 위해 ‘舊老城’이라고 명명했다. 그런데 稻葉는 이 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1596년 宣祖는 武官 申忠一을 이 성에 파견했는데, 당시 申忠一이 올린 보고와 성에 대한 그림을 李仁榮이 소장하고 있었다. 稻葉는 이 소식을 듣고 경성에서 이인영을 방문해 申忠一의 보고와 도록을 열람하였는데, 이 경험이 조사의 주요한 계기이기도 했다(稻葉岩吉, 1939, 『興京二道河子 舊老城』, 建國大學研究院, 9~11쪽). 이뿐만 아니라 稻葉는 1937년에 발간된 『靑丘學叢』 29에 「申忠一書啓及び圖記」라는 자료 소개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 유적이었다. 즉 건국대학의 교수로서 이나바는 청의 기원과 관련된 유적을 첫 번째 조사지로 선정된 것이다. 그는 주변의 지형과 자신이 확보했던 ‘신충일(申忠一)도록’을 참조하며 성내(城內) 몇 가지 유적을 조사하고 단 며칠간의 조사가 아닌 상당한 규모와 시간을 들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도하자(二道河子)의 구노성(舊老城) 근처 소자하(蘇子河)에 성지(城址)가 보일 뿐만 아니라 소자하 유역은 누르하치의 세력 강화를 위한 요충이라며 보고서를 마쳤다.³⁵

이나바가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소자하 유역에 대한 조사는 1941년에 이루어졌다. 이나바는 1940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때의 조사는 ‘구노성(舊老城)’을 함께 답사한 다카하시가 담당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소자하 유역의 고구려와 후여진 유적(蘇子河流域における高句麗と後女眞の遺跡)』이라는 이름으로 보고되었다.³⁶ 보고서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조사지는 소자하 유역의 유적으로 현토군(玄菟郡) 고구려현치지(高句麗縣治址)를 제외하면 모두 청의 유적지였다. 누르하치 조부와 그 형제들의 성(清朝六祖六城址), 누르하치의 외조부이자 부친의 상관이었던 건주도지휘사 왕고(王杲)의 성(吳勒城址), 1619년 사르후 전투 지역 일대 및 조선의 강홍립군과 전투를 벌였던 지역(薩爾滸城址, 界凡城址, 瓦爾哈什과 富察之野)이 그것이다. 즉 청조(清朝)의 기원 및 강성과 관련된 장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청의 발흥과 관련된 소자하 유역의 성지(城址)를 고구려의 성(城)과 연결시킨 것이다. 사실 ‘구노성(舊老城)’ 조사 당시에도 이나바는 ‘지형을 둘러보고 반도 북부에서 보았던 것, 일찍이 고구려의 고성을 떠올렸다’고 하면서,³⁷ 청의 고성(古城)에서 고구려의 성을 연상하였다. 그런데 1941년의 조사에서 다카하시는 살이호산(薩爾滸山)에서 채집한 십여 점의 고구려, 발해 시대의 기와와 성(城)의 형식을 근거로 이것이 청의 성일 뿐만이 아니라 고구려의 성이라고 보았다. 그는 여기서 더

35 稻葉岩吉, 1939, 『興京二道河子 舊老城』, 建國大學研究院, 31~45쪽.

36 이 조사는 건국대학연구원의 ‘滿洲史研究班’의 연구 과제로서 수행되었다.

37 稻葉岩吉, 1939, 앞의 책, 29~30쪽.

나아가 소자하 동방의 목기(木奇)에서도 고구려식 산성이 발견되며, 구노성 역시 고구려식 산성이라며, 이와 관련된 문헌들과 지형 관계상 살이호성(薩爾湖城), 목기성(木奇城), 구노성(舊老城)을 각각 고구려의 남소성(南蘇城), 목저성(木底城), 창암성(蒼巖城)에 비정하는 것을 조사의 최종 결론으로 제시했다.³⁸

만주국 건국 당시까지 일본인 연구자들이 대체적으로 만주사를 만주에서 활동했던 종족들, 곧 ‘고구려-발해-요-금-청’의 순으로 정리했던 것을 고려해 볼 때³⁹ 만주국 건국 이후 이루어진 고구려, 발해, 금의 유적에 대한 발굴과 조사는 만주사 연구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며, 건국대학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만주족에 직결되며 청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구노성(舊老城)’에서 조사를 시작해 그 범위를 청의 발흥과 전승지까지로 확장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의 유적들을 더욱 먼 과거인 고구려의 산성들과 연결시키며 만주사의 유기함과 계승 관계에 대한 확인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만주사 연구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건국대학의 학술 활동은 발굴과 실제 답사만이 아니라 문헌에 대한 소개, 강연, 강의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유럽의 학계에서는 알려졌지만 일본에는 소개되지 않았던 몽골어로 작성된 「성길사한담화록(成吉思汗談話錄)」을 소개하고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나,⁴⁰ 송(宋)·금(金)에서 시작하여 원(元)으로 이어진 역전제(驛傳制, 急遞鋪)에 대한 법령과 관련 기사들을 『영락대전(永樂大典)』에서 뽑아 제시한 것⁴¹은 만주사 연구의 진전을

38 高橋匡四郎, 1941, 『蘇子河流域における高句麗と後女眞の遺跡』, 建國大學校研究院, 29~32, 46~53쪽.

39 만주사 연구의 초기였던 1909년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만주의 역사를 ‘고구려-발해-여진-청’으로 계보화하였으며(『滿洲民族の過去』, 『東洋時報』 132), 이나바는 1915년 저작 『滿洲發達史』에서 ‘읍루-부여-고구려-발해-거란(遼)-금-원-明代의 만주-청’의 순으로 만주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또 대중서로서 1933년에 발간된 오히라 도시타케[大原利武]의 『概說 滿洲史』는 ‘만주의 고대 종족-고구려-발해-요-금-청’의 순으로 서술되었다.

40 山本守, 1941, 「成吉思汗談話錄の研究」, 『建國大學研究院 研究期報』第1輯.

41 瀧川政次郎, 1941, 『宋元驛制紀事-永樂大典所引「金玉新書」及「經世大典」逸文』(各班研究報告 第7號), 建國大學校研究院.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건국대학에서 이루어진 사학 관련 연구 활동으로 건국대학만의 특징이자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만주사 강의였다. 만주국 건국 및 대학 설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의 육군대학 시절의 은사로서, 건국대학 창립 당시 외국교수 초빙에도 간여했던 이나바는 건국대학 교수로서 1938년과 1939년 두 차례에 걸쳐 만주사 강의를 맡았으며, 이때의 강의록은 1940년 『만주국사통론(滿洲國史通論)』으로 출간되어 건국대학 생에게 교수되었던 만주사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⁴²

만주의 시원에서 러일전쟁기까지 다루며 만주에 대한 통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만주국사통론』은 만주사에 대한 시대 구분으로 시작한다. ‘한족(漢族) 왕조의 경질이 반드시 시대 구분의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나바는 만주사를 정리함에 있어 한족, 또는 만주에서 한족 세력의 신

〈표 2〉 『만주국사통론(滿洲國史通論)』에서의 만주사 시대 구분

	기원전 410	1800	1840	1932	
민족적 관점	滿洲民族 一元時代	滿主漢從時代	滿漢二元時代	現代	
	기원전 410	1800		1932	
생활적 관점	天產物 採集時代		農耕時代	農工時代	
	기원전 410	1689	1800	1890	1932
정치적 관점	滿洲族 本位時代	封禁時代	滿漢時代	國際時代	現代

42 한편 『滿洲國史通論』은 이나바의 마지막 저작이기도 하다. 최근 이나바의 초기 저작인 『滿洲發達史』와 최후 저작인 『滿洲國史通論』을 중심으로 이나바의 만주사 서술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정상우, 2019, 「지역사에서 민족사로－『滿洲發達史』(1915)와 『滿洲國史通論』(1940)을 통해 본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만주사 연구, 『만주연구』 27). 본 논문에서 『滿洲國史通論』에 대한 서술 역시 이에 기반한 것이다. 『滿洲國史通論』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글 참고.

장을 중심으로 만주사를 바라보는 것을 지양하며 민족적·생활적·정치적 관점에 따라 각각 시대 구분을 시도하였다.

이나바는 이를 ‘만주국사의 시대 구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제1 民族에 의한 시대 구분은, 지금 만주국 영토 내에 古來 생존해 온 諸民族에는 부분적으로 다소의 差別이 인정되지만 대체에 있어 同一民族이다. 그리고 이것은 支那의 漢民族과는 완전히 별개의 系統이 존재해 있다... (서양 학자들은 이 민족을 통구스라고 부르지만: 인용자) 지금은 滿洲民族이라고 하는 쪽이 가하다고 믿는다. 이들 민족의 대표적인 것으로 肅慎·夫餘·濊·貊·韓·烏丸·鮮卑·靺鞨·契丹·女眞·韃靼·蒙古 등이 있다. 모두 大同小異한 내용을 갖는다. 단 이들 滿洲民族과 대립하여 漢族이 있는데, 일찍부터 요하의 하류나 시라무렌 上源 地方에 나타났고, 장기간 半島에서도 정치를 편 사실이 있지만, 그것은 만주의 고유 민족이 아니며 外族의 植民經營이다... 제2 生活에 의한 시대 구분은 문화사적으로 고찰되는 것으로... 漢民族은 滿洲産 야생 인삼, 貂皮를 熱愛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역품으로 중시되었다... 농경시대가 나타나는 것은 민족적 시대구분에 의하면 滿主漢從時代에서 시작해 滿漢二元時代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발달... 漢民族의 문화 기능에 힘입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제3 政治에 의한 시대 구분인데 (엄밀하게 작은 구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인용자) 초기는 民族時代와 일치하여 약간 짧아 1689년 전후부터... 이 시기는 어느 쪽인가 하면... 靑露 國境이 네르친스크조약에 의해 획정되어 東亞全局에도 관계가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구분했다. 1800년대는 靑朝의 전성인 乾隆朝가 끝나고 嘉慶朝에 들어와 민란이 설 때가 없었고... 내란에 導入하여 漢民族의 만주 유입이 두드러졌다... 1890년은 靑露 제2차 劃境 당시로 소위 아이훈조약, 北京條約이 차례로 체결되어 만주는 國際政局의 와중에 던져졌다.⁴³ (밑줄과 강조는 인용자)

43 稻葉岩吉, 1940, 『滿洲國史通論』, 20~24쪽.

서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19세기 전후, 만주국 건국 전후를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점으로 삼고 있는 이들 시대 구분은 만주라는 공간에서 활동한 민족을 중심에 두고 만주에 미친 한(漢)과 러시아로 대변되는 외부 세력의 민족적·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만주민족’을 설정한 것이다. 이나바는 현재 만주국의 입장에서 만주국의 영토 내에 있던 모든 민족을 일괄하여 ‘만주민족’이라고 지칭하며 하나로 포괄하는 한편, 이것이 한민족(漢民族)과는 별개임을 재언하였다. 즉 이나바는 한족(漢族)과 대립하면서도 만주에서 활약한 모든 민족을 묶은 거대 사이즈의 ‘만주민족’을 설정하고, 만주의 역사를 ‘만주국사(滿洲國史)’로서 정리하여 강의했던 것이다. 『만주국사통론』은 19세기 중반까지의 만주의 역사를 ‘민족의 원시(原始)–민족의 성장–민족의 발전–민족의 신생(新生)–민족발전(民族發展)의 부현(復現)’이라는, 하나의 민족의 성장을 연상시키는 장(章)들로 구성되었는데,⁴⁴ 이들 각 장은 우선 만주를 차지했던 민족(혹은 왕조)들, 이나바의 표현을 빌리면 ‘만주민족’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의 경과를 서술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한(漢)·일본·러시아 등 ‘만주민족’ 이외의 세력들과의 관계를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⁴⁵ 이는 만주의 역사를 만주라는 공간에서 활동했던 민족을 일괄해 하나로 묶어내고, 이들과 한(漢)을 비롯한 여러 세력의 교섭

44 『滿洲國史通論』의 구성은 크게 서문에 해당하는 ‘前編’, 본문에 해당하는 ‘本編’, 19세기 후반에서 러일전쟁까지를 다룬 ‘建國前史’(만주국 건국의 前史라는 의미)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民族의 변화상을 7장으로 나누어 제시한 ‘本編’에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45 일례로 ‘第1章 民族の原始’는 ‘1節 肅慎 / 2節 夫餘族の神話 / 3節 破走せる東胡 / 4節 古朝鮮 / 5節 匈奴 / 6節 匈奴の左腕的勢力 / 7節 漢四郡問題 / 8節 樂浪郡開設と日本’, ‘第3章 民族の發展(上)’은 ‘1節 高句麗大いになる / 2節 麗隋戰爭及び日本 / 3節 渤海國創建’, ‘第5章 民族の發展(下)’은 ‘1節 金國興隆す / 2節 女眞人の生活 / 3節 金人の伐宋と漢人’과 같이 모든 章들은 만주에 있던 민족이나 왕조의 동향, 주요 정치적 사건이나 특징적 정책을 서술하고, 이들과 한의 관계 혹은 이들에게 미친 한의 영향력, 일본사와의 관련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로서 바라보는 것이었다. 또 ‘만주민족’을 설정하며 등장하는 ‘지금 만주국’이라는 표현과 만주국이 건국된 1932년이 모든 시대 구분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으로 설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만주국사통론』은 만주국이라는 현재의 입장에서 서술된 ‘만주국사’ 강의록이라 하겠다.⁴⁶ 즉 만주국이라는 입장에서 한민족(漢民族)과 대립되는 ‘만주민족’을 설정하고, 만주에 중심을 두면서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 한족(漢族)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력을 고려하며 만주국의 역사 체계를 세우려던 것이 건국대학 교수로서 이나바의 구상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이전 만주사 연구나 서적에는 잘 나타나지 않던 만주의 문화에 대한 서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나바는 만주민족의 기원으로 만주를 넘어 산둥(山東) 일대에 퍼져 있었던 숙신을 들며 이들이 ‘상(商)민족’이자 ‘동이(東夷)’로서 중국 문화를 창조했다고 하면서,⁴⁷ 만주민족의 유구함과 문화적 능력

46 역사를 대하는 이나바의 현재적 입장은 그가 1939년 9월 2일 建國大學創立記念 제1회 강연회에서 행한 네르친스크조약에 대한 강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39년 5월부터 이 강연이 있기 직전인 8월 말까지는 몽골과 러시아의 국경에서 소련군과 노몬한 전투가 한창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이루어진 강연에서 이나바는 네르친스크조약을 서구의 東進에 대한 ‘유일무이’한 ‘승리로 빛나는 조약’이자 19세기 중반(아이훈조약 이전)까지 만주의 평화를 이끈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 조약 체결 전후 오이라트 세력의 동향과 러시아와의 연결 가능성 등을 들며 네르친스크조약과 그 전후 상황을 몽골까지 포함하여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稻葉岩吉, 1939, 「東洋史より見たるネルチンスク條約の意義」, 『建國大學創立記念第壹回講演集(康德6年度講演集E第1號)』, 建國大學研究院). 역사적 사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몽골의 국경에서 만주국군과 일본군이 소련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던 당시에 주장하였다는 것은 역사를 사고하는 그의 입장을 잘 보여 준다.

47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25쪽. 이는 傅斯年이 1933년에 발표한 ‘夷夏東西說’로, 이나바는 이를 ‘支那 近代의 탁월한 一學者’의 견해라고 소개했다. 고대 중국이 동쪽의 夷와 서쪽의 夏의 대치와 투쟁을 통해 발전해 갔다는 傅斯年の 夷夏東西說에서 夷와 夏의 투쟁은 비중국과 중국의 투쟁이 아니라 중국을 이루는 요소들 사이의 대치와 투쟁을 의미했으며, 傅斯年은 이를 통해 ‘만주’가 중국 민족, 중국의 일부임을 이야기한 것이다(夷夏東西說에 대해서는 이유진, 2010, 「누가 왜 예를 말하는가—동이의 예에 관한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 활쏘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37~239쪽). 이나바는 夷夏東西說의 일부만을 따와 정반대의 맥락에서 거론한 것이다.

을 이야기하였다. 이후 이나바는 만주에 미친 한족(漢族)과 그 문화에 대한 영향력을 서술하였다. 만주에 한인(漢人)과 그 문화가 영향을 미쳤으며, 부여 이래 만주민족은 이를 섭취하며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인(漢人)과 한문화(漢文化)는 만주민족이 세운 왕조들의 체제 정비와 발달에 도움을 주는 한편 만주의 고유 문화를 훼손시켜 만주인들을 타락시키고 왕조의 멸망을 불러왔다. 이나바는 고구려 이래 만주민족에게 ‘국어’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며, 그 실체가 확인되는 거란과 여진의 문자, ‘향락적’이고 ‘사치’스러운 한문화(漢文化)에 대립하는 ‘순수’하고 ‘소박’한 유목 생활의 전통,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요(遼)와 금(金), 청(淸) 황실의 노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상찬하였다.

즉 이나바는 현재 만주국의 입장에서 민족적·문화적으로서 만주의 독자성을 상정하고, ‘만주민족’의 변천을 만주와 영향을 주고받은 한(漢)을 비롯한 여러 세력들의 관계 속에서 서술하였다. 그 가운데 ‘만주민족’만의 독자성을 그들만의 문자, 유목생활의 전통 등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으며, 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만주민족’의 미래를 기약하는 길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2. ‘일만관계’의 부각과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사적 위상

건국대학의 학문적 사명이자 지향으로서 ‘만주국학’이 제시되었음은 앞서 언급한 대로다. 만주국학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만주국의 건국정신으로 사쿠다는 ‘왕도정치’, ‘민족협화’, ‘도의세계건설’, ‘일만불가분관계’라는 네 가지 사항을 제시했지만, 이는 만주국의 건국원리가 천명되어 만주국이 유지·발전함에 따라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시된 네 가지는 사쿠다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만주국의 지향으로 아직 실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다만 ‘일만불가분관계’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되고 있지만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며 차이를 두었다.⁴⁸ 이는 이미 일본과 만주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확인되지만 장차 이를 한

48 作田莊一, 1940, 앞의 책, 24쪽.

단계 고양시켜 ‘불가분’의 차원으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만주 사이의 밀접한 역사적 관계에 대한 고찰은 이미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서 만주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개시된 이래 상당히 구명되어 왔다. 바로 발해와 일본의 교류에 대한 연구다. 특히 도리아마와 같은 일본인 연구자들은 1910년대 이래 발해사 연구를 통해 200여 년간 지속되었던 발해와 일본의 교류를 밝힘으로서 대륙-만주와 일본의 오랜 관련성을 제시해 왔으며,⁴⁹ 193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를 통해 문명화된 일본인들이 만주족을 개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이끌어냈다 것이다.⁵⁰ 앞서 만주국 건국 이후 진행된 발굴 조사 가운데 발해의 유적에 대한 사항들 역시 만주사에 대한 연구라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일만일체(日滿一體)’에 대한 역사적 확인, 바로 발해와 일본의 통교를 드러내어 만주국과 일본의 우호·일체화를 1,200년 전 발해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한다는 프로파간다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된다.⁵¹

이처럼 일본과 발해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규명은 만주국학의 차원에서도 만주사 연구의 차원에서도 요청되던 과제였다. 건국대학 교수였던 타키가와 마사지로우[瀧川政次郎]가 발해와 나라시대[奈良時代] 일본의 관계를 비교한 것은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발해법(渤海法)은 당법(唐法)에 대해 ‘자법(子法)’, 일본왕조법(日本王朝法)에 대해서는 ‘자매법(姉妹法)’의 관계에 있다며 발해와 일본의 관제(官制)를 비교·대조하였다.⁵² 타키가와가 보기에 발해의 관제는 ‘당제(唐制)의 직사(直寫)’로 ‘닭을 잡는 데 소를 잡는 칼을 썼다는 비방을 면키 어려운’, ‘대부분 명칭의 변경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49 정상우, 2016, 「20세기 전반 일본인 학자의 ‘북방사’ 연구 모습-도리아마 키이치(鳥山喜一)의 연구 궤적」, 『사회와 역사』 112.

50 박찬홍, 2014, 「‘만선사’에서의 고대 만주 역사에 대한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6, 156~159쪽.

51 井上直樹, 2013, 『帝國日本と‘滿鮮史’-大陸政策と朝鮮·滿洲認識』, 塙書房, 199~201쪽.

52 瀧川政次郎, 1941, 「日·渤海官制の比較」, 『建國大學研究院 研究期報』 第1輯, 223~224쪽.

는 당제의 모방'이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일본의 국정(國情)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고심이 역력한 것'으로 '특히 신기(神祇)를 숭상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습속을 존중'한 '온화한 우리(일본: 인용자) 국민성의 발로'였다.

日·渤 양국은 같은 唐法을 받아들였지만 그 繼受의 방식에서 하나는 無批判的인 直寫이고 하나는 왕성한 비판하의 自主의 模倣이다. 때문에 우리 왕조의 일본인은 적어도 외래문화 섭취 능력은 발해시대의 만주인보다 우수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일본인의 외래문화 섭취 능력이라는 것은 실로 東西의 文化를 融合하여 世界 新文化를 創造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³

타키가와와 결론은 일본인에 의한 만주인 계몽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본인의 문화적 우수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동서 문화의 융합 가능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동아신질서', '대동아공영권'이 선전되며,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 서술이 모색되던 1940년대 초, 건국대학 교수 타키가와는 '일만(日滿)'의 역사적 관계에서 이야기되던 일본과 발해의 역사를 통해 일본인의 문화 수입 능력을 확인하고 일본인에 의한 새로운 세계 문화 창조의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이다.

전쟁이 확대되고 이것이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던 당시, 일본의 학계에서는 기존의 역사 서술을 비판하는 한편 『대동아사개설』과 같이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를 서술을 시도했음은 앞서도 언급하였다. 모리 카츠미[森克己]는 건국대학에 재임하며 이러한 학계의 동향에 조응했다. 건국대학에서는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1942년부터 '신질서건설총서(新秩序建設叢書)'라는 이름의 짙막한 단행본들을 발간하였다. 건국대학의 교수들이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⁵⁴이라고 알려진 이 총서의 발간 이유에 대해

53 瀧川政次郎, 1941, 위의 글, 254쪽.

54 宮澤惠理子, 1997, 앞의 책, 125쪽.

사쿠다는 ‘대동아전쟁’의 개시로 ‘세계 공영의 신질서’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 방향으로 각 전문 분야에서 연구의 진전을 꾀함과 아울러 건국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련 교양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열두 권이 발간된 이 총서 중 하나가 바로 ‘대동아공영권’의 역사에 대한 모리의 저작이었다. 사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용어는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등장한 새로운 조어였다. 모리 역시 ‘대동아공영권’을 ‘단어[言葉]로서는 극히 새롭다’며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대동아공영권’이란 것이 그에 포함된 ‘제국가(諸國家)·제민족(諸民族) 사이에는 이미 먼 태고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며,⁵⁵ 이 새로운 조어에 역사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일본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이지만 바람과 해류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 갖추어졌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대륙과 연결되어 있어, 고대 이래 일본인들의 지식의 확충과 인식(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대에 따라 일본의 대외 관계가 확장되었음을 이야기했다. 자주정신에 의거해 국제 관계를 진척시키고 견수사(遣隋使)·견당사(遣唐使)를 파견한 쇼토쿠 태자의 외교 결과 일본의 세계 인식은 중국, 인도를 넘어 베트남, 인도네시아와도 접촉하게 되었는데, 특히 일본 상인들은 중국 상인들을 매개로 페르시아인들과도 거래하며 ‘동아무역(東亞貿易)’의 무대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모리는 송(宋)의 동전이 북으로는 일본과 고려, 금(金) 방면에서부터 남으로 남양(南洋) 일대부터 아프리카 동안(東岸)에 걸쳐 분포한다는 것을 근거로, ‘동아(東亞)는 이미 중세에 경제적으로 동일 권역에 포괄’되었으며, 문화적으로도 송의 불경을 매개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중국을 매개로 경제적·문화적으로 하나의 권역을 형성한 동아시아(東亞)는 몽고민족의 흥기에 따라 정치적으로도 교섭이 발생했으며, 일본 상인들은 쿠빌라이의 일본 원정 이후 왕성해진 ‘진취적 기상’을 바탕으로 무역을 더욱 확대해 16세기 말에는 대만은 물론 필리핀, 인도차이나, 자바,

55 森克己, 1942, 『大東亞共榮圈の歴史性』, 建國大學研究院 編, 新秩序建設叢書 第9冊, 1~2쪽.

스마트라 방면까지 진출했고, 이후 에도막부의 장려로 더욱 왕성해진 결과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지에 상당한 규모의 일본정(日本町)이 7개나 등장한다는 것이다.⁵⁶ 이처럼 쇼토쿠 태자 이래 일본과 인도차이나 방면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임진왜란에 대한 해석이다. 모리는 도요토미의 포부는 대륙을 넘어 남방으로 펼쳐졌다고 하면서, 도요토미가 임진왜란 직전 포르투갈령 인도 고아의 총독과 스페인령 필리핀의 태수에게 입공(入貢)을 요구한 것과 뒤이어 타이완, 인도, 필리핀 등에도 입공을 요청하려 했지만 병으로 이루지 못하였다고 서술했다.

이번 大東亞戰爭과 비슷한 壯大한 구상은 이미 350, 360년의 과거, 풍운아 秀吉에 의해서도 기획된 것이지만 결국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그러나 秀吉의 雄圖는 국민의 진취적 정신을 고무하는 데 큰 것으로...⁵⁷

‘대동아공영권’에 발맞춘 새로운 역사 서술에 대한 요구, 이에 호응하여 건국대학 교수 모리는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한창 전쟁 중이던 당시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역사적 관계를 ‘대동아공영권’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소재로서 재조명하는 한편 임진왜란까지도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전사(前史)로서 제시했던 것이다.

3. 19세기 후반 이래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한 역사적 의미 탐색

사쿠다는 만주국학을 이야기하며 만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만주국의 건국을 가져온 힘, 바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으로 이어진 만주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거론하고 이를 세계사적 필연으로 규정하였다. 건국대학에서 역사를 연구·교육했던 이들은 이러한 전쟁들을 중심으로 만주국

56 森克己, 1942, 위의 책, 3~48쪽.

57 森克己, 1942, 위의 책, 36~37쪽.

건국의 과정과 의미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다. 19세기 후반 이래 만주국 건국 이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일본의 대만주 정책에 대한 오노 히사토[小野壽人]의 연구와 만주사변의 발발 과정 및 만주국의 사명을 제시한 다카하시의 저작이 그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19세기 이래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일본과 아시아가 봉착한 위기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이권 추구, 서구에 의존하는 중국, 두 가지를 꼽았다.

오노는 특히 동인도회사가 철폐되고 인도가 영국의 직할령 식민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헤이룽장주[黑龍江州]를 설치하던 당시 태평천국운동으로 청의 권위가 더욱 쇠락하는 속에서 일본은 필연적으로 만주·중국·조선에 대하여 일정한 역사적 입장을 취해야 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지도에 기초한 ‘일만청선공동방위(日滿清鮮共同防衛)’였다고 보았다. 문제는 청이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즉 일본은 서구에 대항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 전환했으며, 아시아와 ‘순치보거(唇齒輔車)의 관계’ 수립, 곧 ‘서구 자본주의적 침략에 대한 일본의 방위=조선의 보전=만주의 안정=동양 평화의 확보’가 ‘동양의 대국(大局)’에서의 ‘공리(公理)’임을 인식한 데 반해 중국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상국의식(上國意識)’과 서구 의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공리’를 위한 일본의 ‘피의 희생’으로 표현되었다.⁵⁸ 이러한 입장은 다카하시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역시 19세기 이래 ‘구미침박(歐米侵迫)’에 대한 방위 수단을 마련한 것이 메이지유신이며, 서구에 대해 반격-제1차 반격으로서 청일전쟁, 제2차 반격으로서 러일전쟁-했지만, 중국은 오랫동안 유럽의 침략을 받으며 사대사상에 빠진 채 일본의 국력 발전을 무시하고 일본과 제휴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⁵⁹

58 小野壽人, 1942, 「滿洲建國と日本-日本の對滿行動に關する若干の歴史的回顧」, 『建國大學研究院 研究期報』 第3輯, 158~186쪽.

59 高橋匡四郎, 1942, 『滿洲事變とその歴史的意義』, 建國大學研究院 編, 新秩序建設叢書 第3冊, 2~15쪽.

이러한 입장에서 오노는 논의의 대부분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원인을 일본의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독점시장 요구에서 찾는 견해를 반박하는 데에 할애하였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설명은 ‘타(他)의 희생에서 자기를 성장(生長)시킨다’는 입장에 선 것으로, 서구의 침략에 대해 동아시아의 존립을 희구했던 일본의 입장을 오독시키기 때문이다.

일본의 만주 진출은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軍事的·政治的·精神的理由, 즉 국방적 견지에서 조선의 정치적 안정을 희구한 國家意志가 日淸戰爭을 감행시켰고, 그렇게 한 日淸戰爭 그 자체가 만주를 인식시켰으며, 露國의 기도는 자본주의적·제국주의적인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저 만주의 정치적 안정을 희구하는 國家意志가 對露전쟁을 감행케 한 것이어서, 경제적 진출은 그 能因이 아니며 결과였다… 전쟁 감행의 의지는 그 이상의 도의적 입장, 그칠 수 없는 정신적·정치적·이상주의적 입장에서 결의된 것으로, 그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결할 때에는 일본 근대 산업의 발전 그 자체가 실은 그와 같은 국가의지에 의해 유도되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는 公式論에 빠질 위험이 있다.⁶⁰ (밑줄은 인용자)

청일·러일전쟁은 ‘국가의지’의 발동이라고 하면서 전쟁에 대한 경제학-사회과학적 해석을 비판하는 것은, 사회과학이 ‘의지체(意志體)’인 국가를 망각했다며 새로운 학문으로 ‘국학(國學)’을 역설한 사쿠다의 논의를 방불케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청일·러일전쟁은 ‘조선’, ‘만주’의 ‘정치적 안정’ 추구라는 ‘국가의지’에 의한 것이었으며, 일본의 자본주의화 및 만주에서의 경제적 이윤 획득은 이러한 ‘국가의지’의 결과물일 뿐이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이 대독 선전포고를 한 것은 서구의 중국 침략을 막기 위한, 청일·러일전쟁에 이은 ‘서구제국주의에 대한 제3차 반격’인 것이다.⁶¹

60 小野壽人, 1942, 앞의 글, 191~193쪽.

61 高橋匡四郎, 1942, 앞의 책, 16쪽.

한편 만주 문제는 일본의 자성을 이끈 계기이기도 했다. 주지하듯이 일본의 자본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에 따라 일본에서는 정치·외교·경제적 문제들이 속출했다. ‘자유주의적 사조가 점차 만연한 데에 이어 대외외교정책(對支外交政策)에 일관성을 결여했다. 특히 정치에서 정당적 영향이 현저해지고 이 경향이 한층 조장되어… 워싱턴 회의를 정점으로 일본의 외교는 완전히 소위 영미(英米) 추종 외교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통일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는 한 일본의 실력에 의해 확보되는 특수 권익에 기초할 때에만 가능한’ 만주의 안정, 즉 일본의 방위이자 동양 평화의 확보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1920년대 이후 ‘경제계는 미증유의 혼란’에 빠져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일본의 민족적 의식이 계급적으로 분화’되었고, 만주로의 이민과 투자는 국방적·국가적 견지가 아닌 채산적(採算的)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진행되며 타락해 갔다. 이후에 닥친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일본과 만주 경제의 동요, 소련의 위협과 적화운동, 미국과 결탁한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배일운동 속에서 만주 문제는 일본인들을 자신에 대한 반성과 비판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다.⁶² 자신들의 자본주의 화에 따른 타락, 자유주의화와 사회주의로의 감염, 이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들, 이에 대한 자성과 비판은 군부의 등장을 의미하며, 그 귀결은 만주사변이다.

결국 만주사변은 일본에서 유행한 자유주의적·공산주의적 사조에 대한 일본주의적 혁신운동, 과거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과 만주의 관계, 즉 ‘만선(滿鮮)의 위기는 곧 일본 자신의 위기’라는 자각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만일덕일심(日滿一德一心)’의 완성을 위한 것이며, 청일전쟁·러일전쟁·제1차 세계대전 참전에 뒤이은 서구, 바로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반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 만주의 역사를 점철한—주로 한민족(漢民族)과 만주의 소수민족들 사이

62 高橋匡四郎, 1942, 앞의 책, 22~26쪽, 50~53쪽; 小野壽人, 1942, 앞의 글, 209~223쪽. 小野는 이러한 맥락에서 1차 대전 직후 일본의 對滿 투자가 투기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시데하라의 외교가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의-‘민족 투쟁’을 지양하고 현대적 대민족주의로 나아가는, 대민족주의와 근대적 민족주의의 투쟁의 출발점이었다. 더군다나 일본의 만주 경영 결과 만주의 경제와 인구는 급격한 성장을 보였고, 만주사변은 이와 같은 만주의 근대화를 단축시켜 일약 현대로 비약시키는 계기이기도 했으며,⁶³ 그 결과물은 만주국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건국대학의 교수들은 일본의 방위가 곧 동양의 평화라는 논리하에 19세기 후반 이후 일본의 자본주의화와 만주로의 침략을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 아시아를 지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제국주의 혹은 공산주의화한 서구 열강의 아시아 침략이 멈추지 않는 한 전쟁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서구 및 서구와 결탁한 중국으로부터 동양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도정에 만주국이 위치하게 된다. 즉 ‘만주국학’이 지향한 만주국의 건국정신이자 미래는 ‘동양 평화’의 수호를 위한 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태평양전쟁이라는 현실에 대한 무한 긍정이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건국대학에서 이루어진 역사 연구 활동을 만주사 연구를 중심으로 한 당시 일본 학계의 논의들과 건국대학에서의 연구 사명이었던 만주국학이라는 흐름 속에서 살펴보았다.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 학계에서는 만주사 연구가 붐을 이루었지만 이렇다 할 만주사의 체계가 정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만주는 여러 민족들에 의한 다수의 왕조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체계화하는 것은 순수하게 학문적으로도 어렵고 요원한 문제다. 그렇지만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는, 만주에서 일본의 이권 확보는 물론 신생 만주국의 역사적 정당

63 高橋匡四郎, 1942, 앞의 책, 55~79쪽; 小野壽人, 1942, 앞의 글, 223쪽.

성을 확인할 필요들과 결부되어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 정립은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한편 중일전쟁 이래 전선이 확대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모색하게 됨에 따라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기존의 역사학을 비판함과 아울러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사로서 ‘대동아시아’에 대한 지향을 보였고, 이는 국가사업으로서 『대동아시아개설』 편찬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건국대학 설립 직후부터 건국대학을 실질적으로 이끈 사쿠다는 건국대학 연구의 사명으로서 ‘만주국학’을 제시하였다. 이는 만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낸 힘을 규명하여 ‘왕도정치’, ‘민족협화’, ‘도의세계건설’, ‘일만불가분관계’와 같은 만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건국대학에서 역사를 연구·교육했던 이들은 대체로 제국대학을 졸업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은 건국대학에서 당시 학계와 만주국학에 조용하며 연구 활동을 벌여 나갔다.

그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만주사 연구와 그 체계의 정립과 관계된 것들이다. 이나바와 다카하시는 청조의 기원 및 강성과 관련된 유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를 고구려의 산성들과 연결시키며 만주사의 유구함과 계승 관계를 실재하는 유물을 통해 증명하려 했다. 이와 더불어 원(元)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문헌으로 일본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번역·정리하는 활동 역시 만주사 연구라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만주사 체계의 정립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건국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나바의 강의와 강연이다. 그는 공간으로서 만주에서 활동한 모든 민족들을 ‘만주민족(滿洲民族)’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어내어 만주를 공간적·민족적으로 한민족(漢民族)과 분리·대립시키며, 만주민족의 역사적 변천을 중심으로 이들에 미친 한(漢)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만주의 역사를 체계화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이나바는 만주민족의 고유 문화를 강조하여 민족에서만 아니라 문화면에서도 만주민족의 독자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일만관계’를 부각하면서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사적 위상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발해를 중심으로 한 만주와 일본의 관계에 대

한 탐색은 1910년대 이래 이루어진 사항으로, 만주국 건국정신의 하나인 ‘일만 불가분관계’를 역사적으로 실재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었다. 건국대학 교수였던 타키가와는 중국(唐) 문화의 수용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발해와 나라이대 일본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일만일체(日滿一體)’의 차원에서 이야기되던 발해와 일본의 관계를 넘어 일본인에 의한 새로운 세계 문화 창조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 건설이 주창되던 당대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세는 건국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 독자를 위해 모리가 서술한 ‘대동아공영권’의 역사성에 대한 저작에서 보다 명징하게 드러난다. 그는 유사 이래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조어였던 ‘대동아공영권’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에서 면면히 관철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건국대학에서 이루어진 역사 연구 활동으로서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만주 침략 과정을 만주국 건국의 전사(前史)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사쿠다도 만주국학을 설명하면서 그 필요를 언급한 사항으로 만주국의 건국정신을 천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오노와 다카하시는 19세기 서세동점의 세계사적 흐름에서 일본은 ‘일본의 방위=조선의 보전=만주의 안정=동양 평화의 확보’임을 자각했고, 이러한 자각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을 치루었다며 일본의 대륙침략사를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설명 과정에서 이들 전쟁이 일본의 자본주의화에 따른 독점시장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입각한 해석들과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정당정치와 사회주의의 유행, 국제연맹 체제를 수용하려 했던 일본의 외교 정책 등을 비판하는 한편 만주국 건국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만주사변 역시 19세기 중반 이래 서구의 중국 침략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방위가 곧 동양의 평화라는 자각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건국대학에서 이루어진 역사 연구 활동은 연구 주제의 설정과 연구의 결론 면에서 당시 일본 학계와 만주국학의 성립이라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19세기 이래 일본이 수행한 일련의 전쟁에 대한 평가는 물론, 민

족협화가 요청되고 대륙을 넘어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만주민족’을 설정하고, 일본인의 세계 문화 창조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대동아공영권’을 역사적 실체로 부각하고자 했던 것은 건국대학에서의 역사 연구가 현실에 대해 지극히 추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주변으로의 침략을 옹호하는 역사 연구·서술은 건국대학의 역사 연구가 가지고 있는 침략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별 사실들에 대한 발견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국대학에서의 만주사 정리는 만주사를 중국사로부터 떼어내고 만주에서 활동한 이들의 고유 문자와 문화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북방민족의 고유 문화와 문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현재 만주사 연구에도 유효한 자세라는 점이다. 또 청 초기의 산성과 전승지를 답사하고 이를 고구려의 산성에 비정한 다카하시의 결론은 현재의 백과사전에도 유력한 설(說)로서 제시되어 있으며,⁶⁴ ‘대동아공영권’의 역사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모리가 근거로 했던 에도시대 주인선(朱印船)과 동남아의 일본정(日本町)에 대한 논의는 당시 타이페이제국대학의 교수로서 남양사를 전공한 이와오 세이이치[岩生成一]의 연구 성과에 기반한 것으로 당대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침략의 현실을 긍정하기 위해 끌어온 개별 역사적 사실은 근대 역사학이 요구하는 실증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대동아공영권’을 합리화하는 성격이 강했던 일본에서의 『대동아사개설』 편찬 당시 편찬촉탁(編纂囑託)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제 원고 작성을 했던 교토제대 교수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는 1945년 이후에도 ‘대동아사’를 ‘아시아사’

64 다카하시는 청의 산성들을 고구려 산성이라고 비정한 답사 결과를 상당히 자신했다. 현재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을 보면 木底城의 가장 유력지로 蘇子河 유역의 木奇鎮 일대가 유력하다고 되어 있고, 蒼巖城의 경우도 蘇子河 일대 二道河子村의 舊老城이나 頭木砬子山城에 비정한 견해가 유력하지만 환인의 五女山城에 비정한 견해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유력하다고 하는 說들은 당시 다카하시에 의해 처음 주장된 것이다.

로서 전개했다고 한다.⁶⁵ 일본과 대륙의 관계를 넘어 남방 해양을 향한 일본의 진출은 유구하다며 왜구를 당시 일본 상인들의 불가피했던 무장(武裝)과 실력 행사라면서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대동아공영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시도와 ‘동아시아 세계론’이나 중국과 일본 학계에서 한창 논의되는 ‘해양사’류의 논의는 전혀 무관한 것일까? 이러한 사항들은 건국대학의 역사 연구가 침략성과 더불어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속성 역시 가지고 있었으며, 이 두 가지 성격이 뒤섞여 있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주지하다시피 제국 일본의 영역은 대륙 침략을 통해 계속해서 팽창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의 ‘국사’(일본사)의 범위가 새롭게 설정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인 연구자들은 자국사를 갱신해야 했음을 의미하며, 앞서 살펴본 ‘대동아시아’와 관련된 논의들 역시 그러한 과정의 중국적인 모습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식민지기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조선사(朝鮮史)』 편찬으로 대변되는 당시 총독부의 작업은 조선의 역사를 제국의 지방사로 전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식민지 말기 조선에서의 관찬 지방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 역사를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조명하여, 일본사가 없으면 역사적 특징을 드러낼 수 없는 제국의 지방사로 위치지우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⁶⁶ 이는 ‘민족사’로서 ‘조선’의 역사를 해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역사가들은 만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상반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이전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만주사에 대한 체계화가 시도되었음은 물론 1930년대에는 만주의 역사를 ‘만주사’라는 이름으로 묶어내고자 하는 통사 서술의 시도들이 대거 출현함과 아울러 만주국 건

65 奈須恵子, 1995, 앞의 글, 8쪽.

66 정상우, 2018,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편수회』, 아연출판부; 정상우, 2014, 「일제강점 말기 관찬 지방사에서의 지방 구현—『大丘府史』(1943)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5; 정상우, 2015, 「일제 하 ‘全州’ 지방의 지방사 편찬—『全州府史』(1942)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71.

국 이후로는 ‘만주국사(滿州國史)’라는 이름을 내세운 역사서가 등장하는 것이다. 즉 일본인 역사학자들은 제국 일본의 팽창 과정에서 ‘근대 역사학’이라는 이름과 방법론으로 조선, 만주 등지의 역사를 연구·서술하면서 자신들 고유의 역사 서술의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역사 인식 체계를 갖추며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조선에 대해서는 과거 조선인들에 의해 구성된 자국사 서술 체계를 해체하여 제국 일본의 지방사로 편입해 나아가는 방향을 취했던 반면, 여러 민족들에 의한 다양한 왕조들이 명멸했던 만주에 대해서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 서술의 단위로서 ‘만주’를 설정하여 그 역사의 체계화를 시도하며 하나의 국가사(민족사)를 구성하려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대 국가 만들기’의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만주국 건국과 함께 일본인 역사가들의 입장에서 ‘근대 역사학’에 입각하여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 단위로서 ‘만주’, ‘만주국’의 역사를 서술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는 식민주의 역사학의 양면성—근대 역사학과 침략에 복무하는 역사학—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역사 만들기’라는 식민주의 역사학의 다양한, 또 하나의 양상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 대상이다. 이 역시 추후의 과제로 삼겠다.

참고문헌

자료

- 建國大學, 1941, 『滿洲建國大學要覽』.
- 高橋匡四郎, 1941, 『蘇子河流域における高句麗と後女眞の遺跡』, 建國大學校研究院[各班研究報告 第11號(滿洲史研究班)].
- _____, 1942, 『滿洲事變とその歴史的意義』, 建國大學研究院 編, 新秩序建設叢書 第3冊.
- 大原利武, 1933, 『概説 滿洲史』.
- 稻葉岩吉, 1937, 「申忠一書啓及び圖記」, 『靑丘學叢』 29.
- _____, 1939, 「東洋史より見たるネルチンスク條約の意義」, 『建國大學創立記念 第壹回講演集(康德6年度講演集E第1號)』, 建國大學研究院.
- _____, 1939, 『興京二道河子 舊老城』, 建國大學研究院 歴史報告 第1.
- _____, 1940, 『滿洲國史通論』, 日本評論社.
- 瀧川政次郎, 1941, 「日・渤海官制の比較」, 『建國大學研究院 研究期報』 第1輯.
- _____, 1941, 『宋元驛制紀事－永樂大典所引「金玉新書」及「經世大典」逸文』, 建國大學校研究院.
- 白鳥庫吉, 1909, 「滿洲民族の過去」, 『東洋時報』 132.
- 富永望, 2016, 「〈資料紹介〉『大東亞史概説』」, 『京都大學大學文書館研究紀要』 14.
- 山本守, 1941, 「成吉思汗談話錄の研究」, 『建國大學研究院 研究期報』 第1輯.
- 森克己, 1942, 『大東亞共榮圈の歴史性』, 建國大學研究院 編, 新秩序建設叢書 第9冊.
- 小野壽人, 1942, 「滿洲建國と日本－日本の對滿行動に關する若干の歴史的回顧」, 『建國大學研究院 研究期報』 第3輯.
- 松井等, 1930, 「滿洲に於ける日本の地位(矢野仁一君の論文に因みて)」, 『東亞』 3-2.
- _____, 1931, 「滿洲史要項」, 『東亞』 4-8.

- 矢野仁一, 1930, 「日本の滿洲に於ける歴史上の地位を論ず」, 『東亞』 3-1.
 _____, 1933, 『滿洲國歴史』.
 歴史學研究會 編, 1936, 『滿洲史研究』.
 作田莊一, 1940, 『現代の學問と滿洲國學の研究法』, 建國大學研究院.
 _____, 1942, 『現代科學と滿洲國學』, 建國大學研究院 編, 新秩序建設叢書 第7
 冊.
 鳥山喜一, 1942, 「滿洲國文化事業の十年」, 『朝鮮』 328.

저서 및 연구 논문

- 강해수, 2016, 「'도의국가(道義國家)'로서의 만주국과 건국대학-사쿠다 소이치(作田
 莊一)·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최남선의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20.
 남상호, 2008, 「'대동아전쟁'과 『대동아사개설』 편찬」, 『한일관계사연구』 31.
 박찬홍, 2014, 「'만선사'에서의 고대 만주 역사에 대한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6.
 이유진, 2010, 「누가 왜 예를 말하는가-동이의 예에 관한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
 북아 할쏘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이정희, 2016, 「'만주 건국대학'의 교육과 조선인 학생」, 『만주연구』 22.
 이형식, 2016, 「'支那通' 야노 진이치(矢野仁一)의 중국인식과 對中政策」, 『사람』 58.
 전성곤, 2006, 「만주 「建國大學」 창설과 최남선의 <건국신화론>」, 『日語日文學研究』
 56.
 정상우, 2016, 「20세기 전반 일본인 학자의 '북방사' 연구 모습-도리아마 키이치(鳥山
 喜一)의 연구 궤적」, 『사회와 역사』 112.
 _____, 2017, 「일제 하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通史의 이해-1930년대 중반
 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4.
 _____, 2019, 「지역사에서 민족사로-『滿洲發達史』(1915)와 『滿洲國史通論』(1940)
 을 통해 본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만주사 연구」, 『만주연구』 27.
 정준영, 2016, 「만주 건국대학이라는 실험과 육당 최남선」, 『사회와 역사』 110.
 谷野邦子, 2003, 「『滿洲』における心理學-建國大學とその周邊」, 『茨城キリスト教
 大學紀要』 36.
 宮澤惠理子, 1997, 『建國大學と民族協和』, 風間書房.

- 奈須恵子, 1995, 「戦時下日本における「大東亞史」構想－『大東亞史概説』編纂の試みに着目して」, 『東京大學大学院教育學研究科紀要』 35.
- 大澤廣嗣, 2007, 「宗教學研究者と『滿洲國』－建國大學の松井了穩」, 『佛教文化學會紀要』 15.
- 山根幸夫, 2003, 『建國大學の研究』, 汲古書院.
- 外山軍治, 1967, 「日本における滿洲史研究」, 『歴史教育』 15-9・10.
- 柴田陽一, 2011, 「建國大學における地理學者とその活動－宮川善造を中心に」, 『史林』 94(5), 史學研究會.
- 田村紀雄, 2010, 「井口一郎と建國大學の同僚達－王道樂土か日本脱出か」, 『コミュニケーション科學』 31, 東京經濟大學.
- 井上直樹, 2013, 『帝國日本と‘滿鮮史’－大陸政策と朝鮮・滿洲認識』, 塙書房.
- 塚瀬進, 2011, 「戦前, 戦後におけるマンチュリア史研究の成果と問題點」, 『長野大學紀要』 32-3.
- Stefan Tanaka, 1993,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박영재·함동주 譯,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식민주의 역사학으로서 만주건국대학에서의 역사 연구

정상우

제국 일본의 만주 침략의 결과이자 대륙 침략의 발판이었던 만주국의 수도 신징 [新京]에서는 중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938년 5월 만주건국대학(滿洲建國大學)이 개교하였다. 전장의 한복판이라 할 수 있는 만주라는 공간에 세워진 근대 학제의 최고 학부인 ‘대학’. 그렇다면 건국대학에서 이루어진 역사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이 진행했던 역사 연구의 침략성과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속성을 함께 파악하는 데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과연 그곳에서 어떠한 역사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만주국이 건국되고 건국대학이 개교했을 당시 일본 학계에서는 만주사의 체계화를 요청하고 있었으며, 침략 전쟁이 진행·확산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로서 ‘동아신질서’, ‘대동아공영권’이 주창됨에 따라 기존의 역사 서술을 비판하면서 일본이 구축하고자 했던 새로운 세계 질서를 합리화해 줄 수 있는 역사 서술을 모색·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편 건국대학의 부총장으로서 실질적인 리더였던 사쿠다 쇼이치는 만주건국대학의 사명으로서 ‘만주국학(滿洲國學)’, 곧 만주국의 건국원리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아 있는 건국대학 관련 자료, 건국대학에서 역사를 담당한 교수들의 재임 시절 강의록, 연구물, 답사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건국대학에서 이루어진 역사 연구는 당시 이러한 학계의 요구와 건국대학의 사명에 조응하는 것으로서,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만주사 연구와 그 체계의 정립과 관계된 것들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만주의 역사는 ‘만주국사’로서, 만주에서 활동한 모든 민족들을 포괄하는 ‘만주민족(滿洲民族)’과 한민족(漢民族)으로 대변되는 외부 민족의 교섭·투쟁의 과정으로 정리되었다. 두 번째는 ‘일만관계’를 부각하면서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사적 위상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만주국 건국정신의 하나인 ‘일만불가분관계(日滿不可分關係)’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자 1910년대 이래 발해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건국대학 교수 타키가와와는 중국 문화의 수용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발해와 나라이대 일본의 관계를 비교하며 ‘일만일체(日滿一體)’를 넘어 일본인에 의한 새로운 세계 문화 창조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에 의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건설을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새로운 단어였던 ‘대동아공영권’에 역사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모리의 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만주 침략 과정을 만주국 건국의 전사(前史)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오노와 타키가와는 19세기 서세동점이 시작된 이래 일본은 ‘일본의 방위=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서구의 침략에 반격을 가했으며, 만주국 건국의 직접적인 계기였던 만주사변 역시 서구의 침략으로부터 동양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건국대학에서 이루어진 역사 연구 활동은 당시 학계와 건국대학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침략과 전쟁이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극히 추수적이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답사나 발굴의 결과물이나 자료들은 상당히 실증적인 것으로, 현재의 백과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현실추수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의 실증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 ‘만주사’ 또는 ‘만주국사’라는 개념, 용어의 등장과 그 체계화를 위한 시도는 이른바 ‘역사 만들기’와 관련하여 흥미로

은 연구 대상이다. 만주국 건국과 함께 일본인 역사가들의 입장에서 ‘근대 역사학’에 입각하여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 서술 단위로서 ‘만주’, ‘만주국’을 설정하고 그 역사를 연구·서술하게 된 것은 ‘역사 만들기’라는 식민주의 역사학의 다양한, 또 하나의 양상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 대상이다. 이 역시 추후의 과제로 삼겠다.

주제어: 만주건국대학, 만주사, 대동아공영권, 만주국학, 만주국사, 만주민족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y in Manchu Genkoku University as the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Jeong Sangwoo

This paper examines historical studies conducted in Manchu Genkoku University (滿洲建國大學, Genkoku University), the highest educational institution established in Manchukuo (滿洲國), a foothold for Japanese invasion of the continent.

At that time, Japanese academics demanded the arrangement of Manchurian history, and as the war “Greater East Asia Co-Prosperty Sphere (大東亞共榮圈)” was advocated, they were looking for a historical description to explain the slogan. In addition, Vice President Sakuda Soichi, the university’s core leader, emphasized that Genkoku university’s mission should be to find out the “National Study of Manchukuo (滿洲國學),” namely, the founding principles of Manchukuo (建國原理).

Historical studies carried out by Genkoku University responded to the demands of Japanese academics and the mission of Genkoku

University. These studi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1) research and edu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Manchurian history, 2) establishing Japan's historical position in Asia, emphas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Manchuria, 3)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exploration of the historical meaning of Japan's invasion of Manchuria. Through such studies, Manchuria's history by Manchurians (滿洲民族) distinguished from the Han (漢族) was organized into the Manchukuo-history (滿洲國史). Japan's ability to create culture was confirmed in the context of history, and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was described something not new but with historical grounds. On the other hand, the Manchurian Incident (滿洲事變), a direct trigger for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 was narrated as a measure to protect "the peace of the East" from the Western invasion of Asia that had continued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Historical studies conducted in Genkoku University not only responded to the demands of the academia and the university but also defended the reality of aggression and war. However, the results and materials of the survey and excavation conducted in that process were quite empirical, and are often included in the current encyclopedia. This raises new questions about how to evaluate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rocess of reaching a conclusion to defend the reality. On the other hand, the emergence of the terms and concepts called "the Manchurian history (滿洲史)" or "Manchukuo history (滿洲國史)" and attempts to systematize them are interesting subjects of research related to so-called "making history." Along with the invasion of Manchuria and the foundation of Manchukuo, Japanese historians studied and described the history of Manchuria or Manchukuo, which had not been

regarded as a unit of history in the past, in terms of “modern history.” This is notable in relation to another aspect of history of colonialism, namely “making history.” This will also be a topic of future research.

Keywords: Manchu Genkoku University (滿洲建國大學), Manchurian history (滿洲史),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大東亞共榮圈), National Study of Manchukuo (滿洲國學), Manchukuo history (滿洲國史), Manchurians (滿洲民族)

진중일지 속의 부대 운용과 일본군 위안소 제도

하종문 |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만주사변과 위안소의 등장
- III. 중일전쟁 발발과 위안소
- IV. 중일전쟁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 보병 제11연대
- V. 맺음말



I. 머리말

1990년대 이후 일본군 ‘위안부’(이하 위안부)와 위안소의 역사적 실태를 규명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작업이 다각도로 수행되어 왔다. 그 성과에 힘입어 위안부 피해자와 위안소는 망각의 어둠에서 헤어났고, 관련 활동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눈부신 진전을 이루었다.

아직까지 남은 과제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일본의 보수 세력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위안부가 전시 여성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후자의 문제를 놓고 일본 안팎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위안부가 현재의 성매매여성이며 위안소는 민간인이 경영한 성매매업소라고 부르짖는다. 또한 연구의 측면에서 피해자 증언과 발굴된 자료를 연계시켜 위안부와 위안소의 역사상을 명료하게 다듬는 작업이 요구된다. 2013년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이숲)가 간행되었지만, 버마 지역의 위안소와 피해자를 아우르는 연구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각국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위안소 체계의 전모 규명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위안소의 개설과 운용이 해당 부대의 작전 및 주둔 태세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으며 위안소가 해당 부대의 실질적인 부속 시설이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데 있다. 아울러 일본군의 위안소 출입은 주둔 태세에 들어간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통제하고 부여하는 ‘외출’에서부터 비롯되는 공식적인 행위, 즉 군사 행동의 일환이었음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요컨대 위안소는 일본군의 제도이자 시스템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근거 규정으로서 진중(작전)요무령과 군대내무서(령)의 내용에 주목하는 한편, 위안소 시스템이 만주사

* 투고: 2018년 12월 6일, 심사 완료: 2019년 5월 13일, 게재 확정: 2019년 5월 17일

** 2019년도 한신대학교 교내일반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번 시기에 출현하여 중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정교해지고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전면적으로 가동되었음을 밝힐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위안부 분석의 심화에 기여한다기보다 제도로서 구축되는 위안소의 특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 성과물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안소가 군의 부속 시설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중일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진중일지는 중대 이상의 부대가 동원된 날부터 복원된 날까지 날마다 작성해야 했던 일지 형식의 기록물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부대의 움직임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이 망라되어 있다.¹ 진중일지는 부대가 수행하는 이동과 주둔, 작전, 훈련 등의 통상적인 행동과 맞물리면서 위안소가 개설되고 운용되었음을 알려준다. 진중일지를 활용함으로써 점으로만 존재했던 위안소 관련 자료를 연결하여 전시 성폭력의 실체를 선으로 면으로 구체화해 나갈 수 있다.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의 『중군위안부(從軍慰安婦)』(岩波新書, 1995)를 비롯하여 진중일지는 많은 연구자에게 핵심 자료였으나, 연구 성과의 대부분은 단편적인 활용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 현황을 참작하여 본 연구는 위안소와 위안부를 언급한 진중일지 ‘전체’를 해당 부대와 관련된 여타 자료까지 접목시켜 전체적이고 입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1 현존하는 진중일지의 실물은 일본의 방위성 방위연구소가 소장하고 있으나, 국립공문서관 부설 아시아역사자료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많은 진중일지가 조직적으로 소각되거나 전투를 겪으며 망실되었으며, 잔존 경위는 육군성 보관, 개인 소장, 연합군의 노획 문서 등으로 대별된다. 당연히 진중일지가 없다고 해서 위안소의 개설과 이용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II. 만주사변과 위안소의 등장

1. 위안소와 관계되는 군의 법령

1) 진중요무령과 작전요무령

‘진중요무령(陣中要務令)’은 진중 근무와 여러 병과(참모, 헌병, 보병, 기병, 포병, 공병, 치중병, 항공병 등)의 전투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다. 1889년 제정된 ‘야외요무령 초안’이 출발점이었으며, 1915년 3월 야외요무령 제1부를 대신하는 진중요무령이 만들어졌다.²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과 사단 감축을 계기로 1924년 8월 진중요무령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며,³ 1929년 2월에는 실제 전투에 관한 교본으로서 ‘전투강요(戰鬥綱要)’가 작성되었다.

진중요무령의 구성은 전투 서열·군대 구분, 명령·통보·보고, 수색, 첩보, 경계, 행군, 숙영, 통신, 급양(給養)·보충·위생, 전장 정리, 철도 및 선박 수송, 헌병, 진중일지·유수(留守)일지 등의 항목과 부록 등이다.

먼저 명령은 작전명령과 일일명령으로 나뉜다(제18, 진중요무령의 번호, 이하 마찬가지로). 작전명령은 군대의 작전 행동을 규정하며(제19), 일일명령은 “군대의 내무, 인사, 인마의 보충, 전장 정리, 포로 처리, 여타 근무 중 직접 작전에 관계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한다(제20).

숙영은 사영(舍營), 노영(露營), 촌락 노영의 세 방식으로 구분된다(제321). 사영은 병영 이외의 가옥에서 숙박과 휴양을 갖는 것을 말하며, 후술하듯이 일본군은 사영 과정에서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사영에 들어가면 사영지와 그 아래의 사영구를 두어 내무, 경비, 식사 배당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제325),

2 「陣中要務令制定、野外要務令第1部廢止の件」, 『密大日記 4冊の内 2 大正3年』,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이하 인용하는 자료의 대부분은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소장하고 있으므로 표기를 생략한다.

3 「陣中要務令改定に關する件」, 『永存書類甲輯第4類 大正13年』.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이다.

주류가 길어지면 인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제333). 사영구의 상급 선임 장교 중에서 임명되는 사영사령관은 “사영구의 내무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통괄하는 자”이며, ‘사영명령’을 내리는 주체였다(제337). 한 지역에 길게 체류할 때는 위수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근무(방공, 위생 등) 규정을 만들어야 했다(제346).

그리고 각 부대는 진중일지와 우수일지를 작성하였다. 목적은 전사(戰史) 기록과 공적 심사에 참고하는 것과 군사상의 모든 경험을 기록하여 장래의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 두 가지였다(제622). 진중일지의 작성 의무는 대본영부터 중대(독립된 소대도 포함)까지 부과되었으며(제605), 동원명령을 수령한 날부터 기록에 들어갔다(제606).

중일전쟁에 돌입한 육군은 1938년 9월 진중요무령과 전투강요를 합친 작전요무령을 작성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총 4부 구성으로서 1부와 2부는 각각 진중요무령의 절반과 전투강요를 주축으로 삼았으며, 1939년 10월에 완성된 3부는 진중요무령의 나머지 분야인 수송, 보급, 병참 등의 항목을 내용을 담았다. 1940년 3월에 제작된 4부는 화학전과 상륙전투 등의 항목이 수록되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서 확인한 진중요무령과 큰 차이는 없다.

2) 군대내무서와 군대내무령

육군 부대 영내 거주자의 기초 단위는 내무반이었고, 이들의 일상을 아우르는 단어가 내무였다. 내무반은 ‘조장-군조-오장’의 하사관과 ‘병장(1940년 9월 신설)-상등병-일등병-이등병’의 병 가운데 군조 이하의 하사관과 병이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내무반의 행동 규범으로서 1872년 제정된 보병내무서는 1888년 군대내무서로 개정되었고, 1943년 군대내무령으로 재차 바뀌었다. 1888년 이후 군대내무서는 소규모 개정을 몇 차례 거쳤는데, 여기에서는 편의상 1934년 9월의 개정판⁴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군대내무령 또한 아래의 소

4 「軍隊內務書」, 『大日記乙輯昭和13年』.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이다. 참고로 작전요무령과 군대내무서는 천황의 재가를 거친 육군의 군령이었다.

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제10장 ‘명령 하달’이다. 명령의 하달은 연대장이 정하는 ‘회보(會報)’시에 실시하며, 부대 부관이나 조장 및 내무반장이 책임자였다(제57).

제20장은 ‘기거 및 용의(容儀)’이다. 매일의 일과 시한은 원칙적으로 연대장이 정했으며, 기상, 점호, 식사, 회보, 소등 등의 시각을 명시하였다(제173). 일석점호 시에는 명령과 훈시 등을 전달하도록 했다(제175).

제21장은 ‘휴일 및 외출’이다. 제일, 축일, 야스쿠니[靖國]신사 예대제일, 육군 시무식(陸軍始, 1월 8일), 육군 기념일(3월 10일)의 의식 종료 후, 연말연시, 일요일, 정해진 휴일에는 휴양하도록 했다(제194). 교육과 근무에 지장이 없는 영내 거주자는 휴일에 외출이 가능했다(제195). 외출 시한은 조식 후부터 병은 석식 시한까지, 하사관은 일석점호 시한까지였으며, 1월 1일, 기원절(2월 11일), 천장절(天長節, 4월 29일), 명치절(明治節, 11월 3일), 야스쿠니 예대제일에는 병은 일석점호 시한까지, 하사관은 자정까지 외출할 수 있었다(제196). 휴일의 근무자 등에게 대체 휴가를 줄 수 없으나, 훈련과 검열 등으로 부대 전체의 휴일이 없어진 경우에는 가능했다(제197). 일반 휴일에 외출하는 병은 내무반장에게 목적지를 알리고 외출증을 받고 귀영 후에 주변 하사관에게 반납해야 했다(제204). 외출증은 양식이 정해져 있었다(제213).

2. 만주사변과 혼성 제14여단

1) 혼성 제14여단의 ‘외출’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터졌다. 일본군은 중국 현지의 주둔군은 물론 조선과 일본 본토에서 추가로 병력을 파견하였다. 그중 하나가 혼성 제14여단(이하 14여단)이다.

14여단은 제7사단 병력의 3분의 1을 동원하여 1932년 9월 24일 편성되었다.⁵

5 「混成第14旅團將校同相當官職員表(昭和7年9月24日調)」, 『關東軍職員表 昭

핫토리 헤이지로[服部兵次郎] 소장을 여단장으로 보병 제25~28연대에서 각각 1개 대대씩을 차출하고, 기병 제7연대 제2중대, 야포병 제7연대 제2대대에다 여단 통신대, 자동차반, 위생반 등을 거느렸다.

10월 11일 조만 국경에 가까운 통화[通化]에서 첫 접전을 벌인 14여단은 일찍부터 ‘화류병’⁶ 대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통화 입성 후인 10월 18일 위생반은 ‘주군(駐軍) 간의 위생에 관한 주의 사항’을 하달했는데, 그 안에는 “화류가(花柳街) 지역”의 출입 금지, 화류병 예방에 대한 주의와 함께 소대장 이상의 간부가 위생 강연을 하도록 지시하였다.⁷ 10월 하순 화류병 환자가 발견되어 각 부대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11월 초순에는 야간의 외출 및 화류병이 있는 부락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10월 말부터 14여단은 ‘중양지구토벌대’로서 평톈(奉天, 지금의 瀋陽)과 테링(鐵嶺) 일대를 오가며 작전을 펼쳤다. 12월 7일부터는 후룬베이얼시[呼倫貝爾市]의 하이랄알(海拉爾) 일대에서 치안 유지 임무를 띠고 주류하다가, 해를 넘겨 1월 24~25일에 평톈으로 복귀하였다.

하이랄알에 주둔하는 동안 14여단이 ‘주류규정’을 운용했다는 언급은 1월 5일 처음 나타난다.⁸ 그리고 14시에는 여단회보를 실시하여 주요 정보와 지시를 하달하였다. 1월 7일 회보에는 ‘외출 복장’에 관한 주의가 언급되어 있는데,

和7年9月』.

- 6 이하에서는 화류병과 같이 위안소와 관련된 용어는 사료상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다.
- 7 「[衛生業務旬報]自昭和7年9月24日至昭和8年12月10日」, 『衛生業務旬報』. 『위생업무순보』 안의 「昭和七年十月自十一日至二十日衛生業務旬報」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하에서는 본문에서 1932년 10월 하순 등과 같은 형식으로 출처 표기를 간소화한다. 참고로 『위생업무순보』의 작성자는 여단사령부 소속 2등 군의정(軍医正), 즉 중좌 격인 나카노 오리지[中野織治]였다.
- 8 「1月5日 晴 海拉爾」, 『混成第14旅團 陣中日誌 昭8, 1. 1~8, 1. 31』. 이하에서는 지면 관계상 첫 번째로 진중일지를 인용할 때만 출전을 명기하며, 이후의 서술에서는 본문에서 날짜만 표기한다. 그렇지만 형태가 상이한 진중일지나 진중일지가 아닌 자료의 경우에는 문서명을 밝혀둔다.

여단일일명령에는 8일의 관병식(觀兵式) 종료 후에 전체 외출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절반씩 교대로 외출시키든가 반수만 외출시키든가 여부는 각 부대장이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외출 시각은 ‘하이랄얼 주류규정’ 제6의 2에 따르도록 했다. 주류규정의 운용이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이며, 병사의 외출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1월 8일 오후 전체 휴무가 집행되었다.⁹

1월 중순부터 평텐 복귀 준비에 들어간 14여단은 1월 하순에 속속 주둔지인 평텐, 테링, 랴오양(遼陽) 일대에 도착하였다. 평텐에서의 여단회보는 1월 26일부터 재개되었다. 1월 27일에는 ‘평텐 주류규정’(이하 주류규정)이 제정되었으며, 교부가 완료될 때까지는 하이랄얼에서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회보는 매일 열리던 하이랄얼과 달리 월·수·금 3회로 축소되었다. 1월 30일 회보는 여단 내에 화류병 환자가 없는 것을 여단장이 기뻐했다고 전했다.

주류규정의 목적은 “제14여단 내 부대의 내무 경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으며, 주류규정에 없는 사항은 진중요무령의 사영에 관한 조항에 의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¹⁰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일과시한 중 조식은 오전 7시 30분, 일석점호는 오후 8시 30분이다(5). 외출은 다음과 같이 요일별로 부대가 명기되어 있다(6).

〈표 1〉 평텐 주둔 훈성 제14여단 소속 부대의 외출일 할당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대	기병 (야포대)	28연대	기병 (통신반, 자동차, 위생반)	26연대 승마도벌대 여단사령부	야포병 (통신, 자동차, 위생반)	28연대	26연대 승마도벌대 여단사령부

9 참고로 12월 30~31일, 1월 1~2일, 5일 등에 오후를 휴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0 「昭和8年1月27日 奉天駐留規定 混成第14旅團司令部」, 『混成第14旅團 陣中日誌 昭8, 1, 1~8, 1, 31』.

각 부대의 반수를 대상으로 수 명이 조를 짜서 외출하며, 사령부는 일요일과 제일에는 반나절 근무였다. 외출 시각은 병은 조식 후부터 오후 4시까지, 하사관은 조식 후부터 오후 7시 반까지였으며, 임시 외출은 각 중대장(반장) 이상의 권한으로 부여했고, 대검을 찬 복장이었다. 공용증과 외출증의 양식은 군대내 무서에 준하여 각 부대(반)의 도장을 찍도록 했으며, 외출 구역은 평텐 시내 전체였다. 그리고 외출 당일에는 위생부원의 입회 없이도 간부를 지정하여 “화류병 예방의 견지에서 외출자에 대해 신체검사와 함께 국부 소독을 실시하게 했다”(7).

주류규정 말미에는 같은 날짜로 ‘주류규정에 근거한 사령부 내의 지시’가 첨부되어 있다. 여단사령부가 정한 외출의 세부 규칙이었다. 일직장교는 전체적인 군기 풍기의 취체와 화재 예방을 총괄하고, 일직하사관은 장교를 보좌하고 외출하는 반수를 지정하며, 임시 외출 허가권은 부관이 행사하였다. 외출 후의 신체검사 및 소독에 대해서는 사령부 소속 군의나 간호장(부재 시 일직장교·하사관)이 주재하는 소독소를 사령부 내에 준비하도록 했다.

주류규정에 근거로 각 부대별로 외출이 허가되었고, 외출 병사의 목적지로는 여성과의 접촉이 상정되어 있었다. 위안소에 가는 일본군의 근거 규정 혹은 ‘프로토콜’, 그것이 바로 주류규정이었다. 2월 초순 『위생업무순보』에는 화류병 환자가 적다는 보고와 함께 화류병 예방과 관련하여 평텐 위수지의 ‘검미(檢黴, 국부 검사)’ 상황을 조사하여 ‘주의서’를 각 부대에 배포했다고 되어 있다.

2월 20일 14여단 사령부는 러허[熱河] 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텐을 출발하였다. 3월 하순부터는 청더시[承德市] 동쪽의 평취안[平泉]에서 만리장성을 사이에 두고 중국군과 대치했으며, 5월 하순부터는 베이징 부근의 샤텐[夏店]에서, 6월 하순부터는 산하이관[山海關]에서, 10월 상순부터는 진저우[錦州]에서 주류하였다.

『업무위생순보』의 기술에 따르면, 14여단은 각 주둔지에서 화류병 예방에 신경을 썼다. 신규 환자 발생만 해도 3월 하순 1명, 4~7월은 3명씩, 8월 7명, 9월 6명, 10월 4명, 11월 1명 등이었다. 관련 조치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3월 27일 지시를 보면, 핑취안에 중국 유곽이 세 곳에 창기가 20명 내외 있는데, ‘유독자(有毒者)’가 많으므로 유곽을 출입 금지 가옥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조선인과 일본인 창기 38명이 핑취안에 들어와서 개업하므로 4월 16일 검미를 실시했으며, 향후 매주 1회 실시하기로 하였다.¹¹ 예창기에게는 건강진단표를 소지시켜 요구에 따라 제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사실을 병사들에게도 주지시켰다. 아울러 ‘성비고(星秘膏, 성병 예방약)’와 ‘삿쿠(곤뚝)’의 사용과 외출 후의 소독 철저를 하달하였다. 매주 검진이 계속되어 4월 23일 제2회 검미가 실시되었고, 동 30일에는 경찰서장의 입회하에 내선인 예창기 전원을 불러 화류병 예방을 설명하고, 경찰서장 및 헌병과 함께 각 기루(妓樓)를 찾아 화류병 예방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5월 1일 14여단은 4월 28일자로 제정된 ‘예창기작부건강진단실시요령’(이하 요령)을 각 부대 군의관에게 통첩하였다. 경찰관 또는 헌병과 협의하여 검사 방식을 정하며, 일반 검사는 월 1회, 검미는 매주 실시한다. 군의관은 검사 결과를 ‘건강진단 수검표’에 병명과 함께 기록하며, 예창기는 이 표를 항상 휴대하고 손님이 요구하면 제시한다. 환자 상황은 경찰관 또는 헌병에게 통보하며,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누주(樓主)를 ‘지도’하고, 기루가 화류병 예방 시설을 완비하도록 ‘지도’한다.

위 요령은 중일전쟁 이후 제도로써 위안소가 구축되어야 할 필연성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요령은 만주사변부터 일본군이 화류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주체는 14여단을 넘어 관동군이라는 최상급 부대였다고 판단된다. 치료 기관이 없을 경우 ‘관동군 지방민시료(施療)실시요령’에 따르도록 명기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만주사변 단계에서 민간의 성매매업소를 이른바 ‘군 이용’ 형태의 위안소로 전용하는 방안은 완비되었다. 검진의 실시와 사후 조치는 이후의 위안소와 거의 동일하다. 차이점은 1900년

11 일본인은 예기 1명과 작부 2명이며, 조선인은 예기 2명에 작부 33명이었고, 유독자는 조선인 작부 중에서 매독과 임질 각각 2명씩 발견되었다.

내무성이 제정한 ‘창기취체규칙’을 ‘참고 법규’, 즉 근거로 삼으면서도 강제가 아닌 ‘지도’라는 형식을 취한 것뿐이다.¹² 이에 따라 검진은 “어디까지나 인권에 관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실시”하라고 주문을 달았다.

6월 하순부터 산하이관에서 주둔하게 된 14여단은 이질과 함께 화류병의 예방은 “현하의 급무이므로 소홀함이 없도록 한층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6월 28일 치안유지회¹³ 회장과 의 간담회에서도 ‘창기 검미 실시에 관한 건’과 ‘위생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이 협의되었다. 하지만 현실에 떠밀려 14여단은 병사들의 성욕 해결을 우선시킬 수밖에 없었다. ‘주류규정’에 의해 금지했던 중국인 유곽의 출입을 7월 상순 들어 해금하자는 논의가 일었는데, “여러 관계로 각 부대에서 금지를 풀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7월 14일 실시된 검미에서 30퍼센트 이상의 발병자가 있었음에도 동 16일 “주류규정을 고쳐 출입을 허가”한다고 결정하였다.¹⁴

2) 보병 제27연대 제1보병포소대의 사례

이제부터는 14여단 소속 보병 제27연대 제1보병포소대(이하 포소대)의 진중일

-
- 12 후지나가 다케시(藤永壯)는 러일전쟁 기간 중에 랴오둥[遼東]수비군이 제정한 ‘다렌[大連]창기영업취체규칙’에는 다렌군정서의 관장 아래 창기의 등록과 검미가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日露戦争と日本による「滿州」への公娼制度移植』, 『快樂と規制: 近代における娯樂の行方』, 大阪産業大學産業研究所, 1998년). 다렌군정서 - 랴오둥수비군 등의 군정 조직이 직접 성매매업소를 통제한 것은 전쟁에 따른 조치였으며, 만주사변의 경우는 전쟁이 아닌 사변이었으므로 경찰관의 개입과 창기취체규칙이 원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보다 엄밀한 분석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 13 치안유지회는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현지의 중국인을 앞세워서 만든 행정 조직이었으며, 중일전쟁 이후에도 실시되었다.
- 14 해금과 관련하여 7월 15일 있었던 나카노 군의정의 강연은 흥미롭다. 출정 이래 14여단의 화류병 환자는 47명으로 관동군과 상하이파견군에 비해 낮다고 자평했다. “전투 행동이 급박하여 절화(折花)의 기회가 적었던 것은 이 병이 적은 것과 큰 관계가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8월과 9월의 화류병 환자는 각각 7명과 6명으로 늘어났다.

지를 통해 개별 부대의 동향을 짚어보기로 하자. 포소대는 동원령이 내려진 1932년 9월부터 청진을 통해 복원하는 1934년 3월까지 진중일지를 남기고 있다.

포소대의 외출 기록은 빈번하다. 가장 빠른 것으로는 1932년 11월 25일 평텐에 도착하여 근무자 이외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외출을 허가하였다.¹⁵ 하얼빈에 있던 12월 25일에는 하사관이 인솔하여 조식부터 석식까지 절반씩 교대로 외출을 허가하였다.

미산[密山]에 머물던 1933년 1월 16일에는 미산 경비대의 ‘내무규정안’을 배포했으며, 동 18일 내무 규정안에 따라 하사관과 병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내 산책을 허가하였다(‘미산 경비규정’도 배포). 1월 21일 포소대장은 다른 장교들과 대대장 숙소에서 경비 규정 및 내무 규정안을 ‘연구’했으며, 이튿날 ‘미산 경비 부대 내무규정’이 배포되었다.

1월 24일 오후 4시 30분부터 40분간 내무 및 위생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동 25일 오후와 26일(정월 대체, 대대 전체), 29일 휴양하였다. 2월 1일 오후 휴양과 더불어 저녁 6시부터 30분 동안 위생 교육이 실시되었다. 료오양에 있던 2월 20일에는 조식 후부터 오후 4시까지 대대 전체의 외출이 허가되었다. 포소대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2명 이상 동행하여 외출을 시켰다. 3월 중순부터 여단 주력과 함께 핑취안으로 이동한 포소대는 4월 5·18·24일, 5월 4·5·27일의 오전 혹은 오후를 휴양하였다.

6월 19일 포소대는 대대 주력과 함께 린저우[凜洲]에 도착하였다. 린저우 주둔 기간 동안 외출 체계가 정비되었다. 6월 25일에는 ‘린저우 성내 숙영 부대 내무에 관한 지시’에 따라 하사관과 병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수요일과 일요일은 일반 외출일로서 병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하사관은 정오부터 일석점호까지 외출하며, 월·목·토·일은 하사관의 ‘업무 간 외출일’로서 정오부터 일석점호까지 외출한다는 것이었다. 6월 25일부터 전체 외출일이어서 외출이 이루

15 「12月」, 『歩兵第27連隊 第1歩兵砲小隊陣中日誌 2/2 昭7. 9. 19~9. 3. 2』.

어졌고, 동 28일 오후와 7월 2일에도 오후에 외출이 허가되었다(7월 2일 외출자는 15명).

6월 26에는 한 일등병이 중영창(重營倉) 1일에 처해졌다. 4월 10일(외출 기록 없음) 차오양시[朝陽市] 베이파오[北票]의 '매창부'를 통해 화류병에 감염되어 동 15일 야전병원에 입원했는데, “평소 훈계를 게을리하여 군인의 체면을 더럽힌 것이 인정”되어 처분을 받은 것이다. 7월 6일에도 화류병으로 1명이 입원했는데, 감염 경로는 라오양 출장 중 조선 '매창부'와 교접하여 임질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7월 10일 포소대는 탕산(唐山)으로 이동하였다. 7월 11일 포소대가 수령한 명령 회보에는 향후의 내무 규정과 대대장의 주의 사항이 들어 있었고, 동 15일 오후 7시부터 30분간 화류병 예방에 대해 소대장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7월 17일과 20일의 '외출일'에는 각각 12명과 11명이 외출했고, 동 24일과 26일에는 '탕산 경비의 내무규정'에 따른 외출일이었지만 부대 개편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7월 31일에는 외출이 이루어졌다.

8월 3일 이동 명령이 떨어진 포소대는 동 7일 첸쑤(前所)로 옮겨갔고, 당분간 탕산 경비대의 내무규정을 준용하게 되었다.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40분간 내무 및 위생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고, 이튿날 첸쑤에서의 주류규정을 전원에게 주시시켰다. 그리고 8월 13일 주류(사료에는 留營) 규정에 따라 오후 1시부터 7명의 외출이, 동 15일에도 외출이 이루어졌다.

8월 19일에는 오후 6시 10분부터 8시까지 소대장이 주류규정, 경비규정, 여단장 훈시 및 주의 사항을 교육하였다. 이후 8월 20일 오후 전체 휴양, 동 21일 전체 휴양과 6명 외출, 동 27일 오후 외출 허가, 동 28일 12명 외출이 있었다. 8월 29일에는 주류규정 일부가 개정되어 외출 구역의 서쪽이 다소 넓어졌고, 일석점호가 오후 8시로 바뀌었다. 9월 들어 3일 외출, 동 10일 오후 전체 휴양, 동 11일 7명 외출, 동 17일 외출 등이 기록되어 있다.

9월 19일 포소대는 진저우 부근의 다후산[大虎山]에서 진영을 꾸렸다. 9월 24일 회보로 '경비유영(留營) 간의 내무규정'이 전달되었고, 외출일로는 일요일

이 배당된 듯하다. 10월 1일 전체 휴양일로 10명이, 동 8일 역시 10명이 외출 허가를 받았으며, 동 15일과 22일, 29일에는 외출을 허가했다고만 적시되어 있다. 11월에 들어서서는 3일의 명치절에 9명이 외출했으며, 신상제(新嘗祭, 궁중 제사)인 동 23일에도 오후 1시부터 전체 외출이 허가되었다. 일요일인 정기 휴양일로서 11월 19일, 동 26일, 12월 3일(6명), 동 10일, 동 17일(7명), 동 24일(7명)의 외출이 실시되었고, 12월 25일의 다이쇼[大正] 천황 제일에도 3명이 외출하였다. 해를 넘겨 1934년 1월에도 정기 휴양일인 7·14·21·28일에 외출이 기록되어 있으며, 원시제(元始祭, 궁중 제사)인 3일의 휴양과 8일의 외출이 이루어졌다. 2월 들어 4일과 11일을 휴양한 다음 동 15일부터 이듬해 들어간 뒤 본토로 귀환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포소대는 내무규정 내지 주류규정에 따라 휴양일이 설정되고 외출이 실시되었다. 병사들의 성매매업소 출입 또한 외출과 결부되어 이루어졌다.

Ⅲ. 중일전쟁 발발과 위안소

1. 야전중포병 제14연대의 사례

1) 주둔 태세 정비와 위안소 개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하였다. 8월 31일 북중국을 유린할 최상급부대로서 북지나방면군이 신설되었다. 제1군, 제2군 및 직할부대를 거느린 첫 방면군의 창설이었다. 남중국 방면에서는 8월 15일에 상하이파견군이 10월 9일에 제10군이 각각 편제되었고, 양 부대를 총괄하는 중지나방면군이 창설되었다. 12월 중순 난징[南京]이 함락된 뒤, 각 부대는 패잔병 소탕과 함께 점령지의 치안 확보와 경비 임무를 할당받았다. 해를 넘겨 2월 12일 중지나방면군은 중지나파견군으로 개편되었다.

제10군 예하의 야전중포병 제6여단(이하 6여단)은 야전중포병 제13연대(이하 13연대)와 동 제14연대(이하 14연대)를 거느렸다. 12월 28일 6여단은 송장[松江] 경비를 명령받아 타이후[太湖] 남쪽을 끼고 이동에 들어갔다.¹⁶ 상하이시 서쪽 황포강[黃浦江] 상류의 송장구 일대다. 같은 날 14연대는 송장의 베이차오진[北橋鎮]에 집결하라는 명령을 여단으로부터 받았다.

1938년 1월 10일 6여단은 경비지인 송장을 네 곳으로 나눴다. 6여단 사령부는 동북부에, 13연대는 동부, 여단 치중대는 서부에 자리를 잡았고, 14연대는 남쪽의 상하이현(縣), 즉 지금의 상하이시 민항구[閔行區] 서남부를 할당받았다. 4곳의 숙영지는 사영구(舍營區)를 이루며 해당 부대장이 사영사령관이 되었다.

주둔 태세가 갖춰지면서 위안소 개설이 추진되었다. 그런 정황은 14연대 제1대대의 진중일지가 증언해 준다. 14연대는 연대본부, 1·2대대, 연대단열(段列)의 네 단위로 나뉜다. 단열은 포병이나 전차 부대에서 작전에 필요한 보급과 정비 지원에 종사하는 인원을 가리킨다.

1월 7일 14연대는 1·2대대에 주보 한 곳씩을 개설하고 일과 시간을 정하였다(석식 18시, 일석점호 19시). 여단의 주보가 18일에 개설되었다. 연대회보는 11시, 대대회보는 14시로 정해졌다. 1월 12일에는 근기 풍기의 유지에 힘쓰라는 연대장의 훈시와 함께 지정된 구역 외의 출입을 금한다는 연대회보가 내려졌다.

위안소 설치의 움직임도 일찍부터 확인되는데, 1월 13일의 '위안회 위원' 임명이 그러하다. 연대회보는 아라이[新井] 대위와 노미야마[野見山] 군의소위가 위안회 위원에 임명되었으며, 각 본부와 중대단열에서 하사관 1명씩을 선정하여 14일에 연대본부에 집합하도록 하라는 통보를 담고 있다.

1월 16일에는 연대명령으로 1월 7일에 정해진 일과 시한의 변경이 전달되었는데, 일석점호가 19~20시 50분으로 늦춰진 것이 확인된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하사관의 위안소 이용 시간이 18~20시까지라는 점과 관련된 조치로 여

16 「陣中日誌第4號自昭和12年12月1日至昭和12年12月31日野戰重砲兵第14連隊第1大隊本部(3)」, 『支那事變 陣中日誌 第4號 昭和12年12月』.

겨진다.

1월 25일 대대회보는 26일 오전 9시부터 ‘위안회장’ 설비 공사에 종사할 하사관 2명, 병 10명(목공병 3명 포함)의 인원을 차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음을 전했다. 1월 27일의 대대회보는 27일부터 ‘특종위안소 가(假)규정’(이하 가규정)에 따라 위안회장이 개설된다는 것을 알렸다. 같은 통지가 연대 전체에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1938년 1월 27일 상하이시 서남방에서 야전중포병 제14연대는 위안소를 열었다. ‘가규정’이라는 명칭이 달린 것은 주로 위안소를 이용하는 군인에 대한 지시 사항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월 15일은 정기휴일이었고, 사병은 오전 10~오후 5시까지로, 하사관은 오후 6~8시까지로 이용 시간이 정해졌다. 1회 20분의 이용 요금은 일본인이 1엔 50센, 중국인이 1엔으로 설정되었고, 일본 화폐와 군표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할당된 부대는 오전 9시에 하사관 1명을 차출하여 위안소의 단속 및 요금 징수를 맡도록 하였다. 정해진 위안일 이외에 위안소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인 아라이 대위와 노미야마 군의 외에 각 부대장, 사영일직장교, 순찰장교, 군의로 한정하였다.¹⁷ ‘방독구(防毒具, 콘돔)’의 사용, 음식물 판매와 음주자 출입의 금지 등은 공통적인 사항이다. 아울러 아래 <표 2>와 같이 두 번째 정기휴일인 3월 15일까지 각 부대별로 이용 가능한 날을 배당하였다.

<표 2> 야전중포병 제14연대의 위안소 사용 배당일

	목(1월 27일)	금	토	일	월	화	수
이용 부대	연대본부 연대단열	1대대본부 1중대	2중대 3중대	1대대단열 2대대본부	4중대 5중대	6중대 2대대단열	타 부대

17 위에서 소개한 1월 13일의 위안소 위원과 위안소 출입이 가능한 위원의 이름이 일치하며, 이 점을 근거로 1월 13일의 위안소 위원 임명은 위안소 설치 작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일주일 중에 6일을 14연대의 각 부대들이 이용했고, 하루는 다른 부대가 이용하는 날로 정해졌다. 2월 15일(화)은 정기휴일이었으므로, 6중대와 2대대단 열은 다음날인 2월 16일(수)에 위안소에 가도록 안배되어 있다.

그런데 위안소 이용의 실태는 처음부터 원활하지 않았다. 당장 1월 28일부터 관련된 지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연대회보에는 정해진 시간 외에 특종위안장에 출입하는 사병이 있어 주의를 요하며 이름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여단회보는 특종위안회장에서 샷쿠를 사용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전했다. 다음날 마루야마 연대장은 부대 운영 전반에 걸쳐 주의 사항을 열거했는데, 술에 취해 특종위안장에 출입하여 처벌의 원인을 만든다며 주의를 요하는 한편, 특종위안장에 파견되는 각 부대의 하사관은 단순히 ‘티켓’을 파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위안장규정’의 실행을 감독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를 받아 대대회보는 ‘위안회’와 관련하여 술을 마시고 실시하면 안 되며 정해진 시간 외에 갔다가 발견되면 처벌될 것임을 하달하였다.

2) 위안소 이용의 본격화

1월 30일 1대대는 ‘베이차오전경비대 경비규정’을 개정하였다(2월 1일부터 시행), 그리고 이튿날에는 ‘상하이현 야전중포병 제14연대 경비규정’이 제정되었다. 쑹장에서의 주둔 태세가 완비된 것이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1월 27일의 ‘특종위안소 가규정’을 대체하는 ‘특수위안소 취체규정’(이하 취체규정)이 14연대 경비규정 바로 뒤에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위안소규정의 제정이 경비규정의 체계화와 연동하여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14연대의 위안소규정은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내용 또한 세밀하고 방대하다. 총론 격의 10개 조문에서 ‘영업 절차’, ‘영업 시설’, ‘위생’, ‘영업 방법’, ‘금지 제한 및 단속’의 5장에 부칙을 합쳐 41개조에 이른다. 이하에서 가규정과 비교하면서 초기 위안소의 실체를 파헤쳐 보자.

먼저 가규정에 비해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을 둘러싼 방침이 정교해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상하이현, 즉 5여단 경비구역 내의 특수위안소 설치 권한이 “쑹

장 지부장이 인정하는 사영사령관”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다. 송장 지부장은 다름 아닌 송장의 병참 부대 지휘관을 지칭한다고 추측된다. 1월 5일자 진중일지에는 ‘송장 병참부’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14연대의 위안소는 병참 부대가 준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특수위안소에는 통상의 위안소와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하 식당)의 두 종류가 설정되어 있다.

위안소와 식당을 관리하는 ‘전임장교’의 권한은 강력했다. 영업자의 퇴거와 영업장의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허가가 없이는 영업장을 폐지하거나 전부 혹은 일부의 휴업조차 불가능했다. 아울러 상하이현 경비구역 내에서는 특수위안소와 유사한 영업을 할 수 없었으며, 군인과 군속 외에 이용을 금지하였다. 정기 휴일은 매월 15일이었다.

취체규정은 위안소의 영업 절차를 자세하게 명기하고 있다. 먼저 영업자는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안부와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영사령관에게 제출하고 영업 허가를 받게 된다. 영업 허가를 받고난 후에는 전임장교의 검사와 군의의 검진을 거치며, 사영사령관은 제출된接客부 명부 중에서 검진을 통과한接客부에게 건강부(健康簿)를 교부하고 허가증을 발급하였다.

위안소의 개조는 전임장교에게 신고해야 했고, 내부 시설의 용도 변경은 허용되지 않았다. 영업자는 시계와 간이소화기, 규격과 색깔이 정해진接客부 명찰 등의 물품을 구비해야 했다.

위생에 관한 조항은 까다롭고 자세하다. 매주 토요일 실시되는 군의의 검진 결과가 관계자의 날인과 함께 건강부에 기록되었으며, 불합격자는接客이 금지되었다. 검진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했으며, 특히 화류병·결핵·트라코마·전염성 피부병 등이 대상이었다. 영업자는 자기 부담으로 화류병 예방용품을 준비하고, 침구의 청결함과 채광·환기 등을 준수해야 했다. 영업 방법도 마찬가지로接客부 명찰의 거는 위치와 방식까지 지정하였다. 요금과 시간은 가규정과 동일하다.

영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영사령관은 수시로 군의와 동행하여 검사를

하도록 했다. 접객부는 사영사령관의 허가 없이 지정 구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접객부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자는 영업 정지를 받게 되었다.

이상의 취체규정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취체규정의 실질적인 작성자 문제다. 이를 14연대 혹은 6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세세한 항목과 구체화된 관련 서류 등으로 보건대, 위안소 개설 및 운용에 관한 ‘매뉴얼’을 참조하여 14연대 나름의 수정을 가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 매뉴얼은 중지나방면군(혹은 중지나파견군) 차원에서 마련되었던 것이 아닐까?

두 번째로 위안소의 개설·운영과 경비 책임자와의 관계이다. 취체규정이 단언하고 있듯이 상하이현 특수위안소의 생사여탈권은 사영사령관이 쥐고 있었다. 점령지 경비를 맡은 부대가 주둔 태세의 구축과 연계하여 위안부의 ‘영업’과 위안소의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진 또한 ‘지도’의 형식으로 실시되던 만주사변 시기와는 결정적으로 달라졌다.

2. 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의 사례

1) 주둔 개시와 초기 위안소

상하이파견군 예하 부대의 경비지에서도 위안소가 잇달아 설치되었다. 난징과 상하이의 중간에 위치한 창저우[常州]에 주둔했던 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이하 2대대)는, 중일전쟁 초기 국면에서 부대의 활동과 위안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정보를 가장 풍부하게 전해준다. 2대대는 대대본부, 1중대, 2중대, 대대단열로 구성하며 임시로 배치된 제3견인자동차대를 거느렸다. 대대장은 만나미 시토미[万波薙] 소좌였다. 대대본부, 2중대, 대대단열은 중일전쟁 참전 직후인 1937년 7월 27일부터 진중일지를 남기고 있다.¹⁸

18 가장 빠른 진중일지만 예시하면, 대대본부의 「陣中日誌 自昭和12年7月27日至昭和12年8月31日 獨立攻城重砲兵第2大隊本部(1)」(『獨立攻城重砲兵第2大隊陣

2대대의 상급부대는 야전중포병 제5여단(이하 5여단)이었다. 보병 제3사단 소속인 기병 제3연대와 치중병 제3연대 등과 5여단 소속 포병대가 창저우 경비를 공동으로 맡았고, 경비사령관, 즉 사영사령관은 기병 제3연대장 호시 젠타로 [星善太郎] 중좌였다.

1937년 12월 25일 2대대는 창저우에 도착했고, 동 26일 석식 17시 30분, 일석점호 21시 등의 일과시한표가 만들어졌다(대대). 그리고 외출 시에는 공용 증과 외출증을 사용하라는 대대장의 주의 사항이 내려졌다. 이듬해 1월 5일에는 ‘1938년 1월 이후 창저우 주둔간 경비규정’(이하 경비규정)이 만들어졌다(대대, 단열에는 하달만 언급).

창저우 도착 직후인 12월 29일 창저우경비대가 내린 첫 회보에는 “오락소를 곧 병참에서 준비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대대). 이후 해를 넘겨 1월 3일은 ‘휴양일’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월 6일 단열장은 ‘술과 여자에 대한 군인의 자세’라는 제목의 훈시를 하였다(단열). 그리고 1월 9일, 창저우성 북쪽의 1대대 주둔지 부근에서 ‘오락장’이 열렸다(단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대대에게는 9일부터 매번 5일째 날에 10~19시까지가 할당되었다. “오락을 하는 자는 반드시 ‘삿쿠’를 사용”하고, “현재 화류병 환자는 출입을 금”한다는 주의 사항이 함께 내려졌다.

1월 13일에는 외출하는 일반 병사의 복장이 엄격하지 않으며 경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내려졌다(단열). 1월 14일에는 휴양에 관한 언급이 없으나, 1월 19일과 24일, 29일에는 “오늘 휴양일이라 조례 후 필요한 주의를 주고 휴양시켰다”라는 문구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단열).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규칙

中日誌 昭和12年7月27日~12年9月30日』), 2중대의 「陣中日誌 自昭和12年7月27日至昭和12年8月31日 獨立攻城重砲兵第2大隊第2中隊(1)」(『獨立攻城重砲兵第2大隊第2中隊陣中日誌 昭和12年7月27日~12年9月30日』), 대대단열의 「陣中日誌 自昭和12年7月27日至昭和12年8月31日 獨立攻城重砲兵第2大隊段列」(『獨立攻城重砲兵第2大隊 段列陣中日誌 昭和12年7月27日~12年10月31日』) 등이다. 이하에서 진중일지는 지면 관계상 출전을 생략하고 괄호 안에 각각 대대, 2중대, 단열로만 표기하며, 기타 문서는 출전을 명기한다.

적으로 외출이 실시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5여단장의 2대대 사열에 맞춰 작성된 대대장의 보고¹⁹에 따르면 1월 20일 시점에서 창저우의 ‘위안 설비’로는 병참이 경영하는 곳과 군 직할부대가 경영하는 곳으로 두 곳이 있었다(대대). 정해진 날에 각 부대는 간부의 인솔 하에 1시간 30분 동안 이용하며, 군의로 하여금 위생 검사에 입회시켜 점검하였다. 그리고 화류병 환자는 1명이 확인되었다.

위안소의 관리는 헌병 분견대가 맡았다. 1월 26일의 위수지회보에는 헌병 분견대장의 주의 사항 중 하나로 외출자의 복장과 경례의 엄격을 열거하고 있으며, 희망 사항으로는 외출증의 확실한 소지와 전체 외출의 통보 외에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된 창부에 대해 행위를 요구하지 말 것” 등이 나열되어 있다(대대). 이와 연동하여 경비대회보에는 부대가 외출할 때는 경비대에 통보하라는 지시와 더불어, 제4야전병원이 성폭행을 당한 9세 여아를 검사한 결과 화류병 감염이 확인되었으므로 “병참 창부 중 검사에 합격한 자는 합격표(목찰)를 지니도록 하므로 주의하라”는 전언이 첨부되었다(대대).

1월 29일의 단열회보 안에는 다음의 정보가 들어 있었다(단열).

종래 설치된 1대대 앞의 오락장은 현재 폐지되었다.

현재는 병참부의 오락장이 있다. 그 오락일은 부대에서 명시된 바 없으므로 오락을 희망하는 자는 근무일과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오후 1시부터 동 4시까지 가도 상관없다.

이에 관해 의무실에 매일 세정 설비가 있으니 이용해야 한다.

단 부대의 휴양일은 본부에서 명령이 없는 한 종래와 같이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자. 1938년 1월 창저우에는 병참 부대가 개설한 위안소와 군 포병대에서 마련한 위안소, 두 곳이 존재하였다. 대대단열이 휴양일에

19 1월 22일 5여단장의 2대대 사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했던 위안소는 포병대의 것으로 보이며, 휴양일인 29일에는 포병대 위안소가 이미 없어졌으므로 병참 부대의 위안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였다. 하지만 대대본부 내지 상급 부대로부터 위안소 이용 날짜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받지 못했으므로, 대대단열에서는 근무 상황을 판단하여 13~16시까지 이용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휴양일 또한 대대본부의 명령이 없는 한 종래대로 실시한다고 정리하였다. 주둔 초기인 1월 말까지 창저우에서는 휴양일은 물론 위안소의 개설과 이용 방식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월에 들어서면서 병참 위안소의 운용 체계는 조금씩 가닥을 잡아갔다. 2월 1일 대대회보를 통해 ‘오락소’의 할당 요일이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며, 외출증의 소지와 성병 예방약인 성비고의 배급과 사용 주의가 하달되었다(중대, 대대에는 성비고 배급만 기재), 바로 다음날인 2일 2대대는 1대대로부터 위안소 사용일이 매주 수요일로 정해졌다는 통보를 받았고, 각 중대에 시간을 배당하였다(대대), 10~11시는 대대본부, 11~12시는 1중대, 13~14시 반은 2중대, 14시 반~16시는 대대단열, 16~18시는 제3견인자동차대로 나뉘었다.²⁰ 2대대는 이제 정식으로 병참 위안소를 출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위안소 이용의 큰 윤곽이 마련되었다. 첫 병참 위안소 이용일인 2월 2일에 대대단열은 오전 9시 조례 후 병기 손질을 실시한 다음에 전체 휴양시켰고(단열), 2중대의 진중일지에도 처음으로 ‘휴양일’이 기록되었다(중대).

2월 9일은 대대본부의 ‘위안일’로 명기되었으며, ‘오락소’ 사용에 관해 주의를 주는 한편, 부관이 병참에 관련 연락을 취하였다(대대). 대대단열에서는 하루 전인 2월 8일 외출 희망자로 하여금 반드시 분대장을 통해 외출 신청서를 내도록 했으며, 2월 9일 ‘휴양일’에는 병기 손질을 검사한 다음에 외출지에서의 행동에 관해 주의를 준 다음 휴양시켰고, 외출자는 64명에 이르렀다(단열, 16일과 23일에 휴양일 명기). 2중대 역시 별도의 기술은 없으나 휴양일로 표시되어 있다

20 포병대 위안소의 이용 시간도 10~19시였으므로, 병참 위안소의 시간 할당 방식을 채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 16일과 23일에 휴양일 명기).

2월 11일 대대단열은 휴양일 이외의 위안소 출입을 금한다는 지시를 회보로 전달했는데(단열), 그 이유는 13일의 대대단열회보에 나온다. 휴양일이 아닌 날에 음주하거나 외출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하는 병사가 계속 적발되었던 것이다(단열). 이로 인해 2월 14일 외출자는 외출과 귀대를 위병소에 신고하고, 위병소는 외출자의 명부를 보관하도록 하였다(중대). 위안소 이용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던 것이다.

2월의 세 번째 ‘위안일’인 16일에는 순서를 바꿔 제2중대부터 위안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대대). 2월 24일 위안소 사용 시간 변경이 통보되었는데, 하사관은 10~11시로(대대, 중대), 사병의 다음 이용 시간은 15~16시로 바뀌었다(중대). 사흘 뒤인 2월 27일 하사관의 위안소 이용 시간이 정해졌으며 주의를 준 점을 참작한다면(중대), 2월 말에 이르러서야 하사관과 사병의 이용 시간대가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월 28일 2중대의 준위가 위안소 사용 감독자로 임명되었다(대대).

3. 내무 규정과 위안소

3월 10일 대대본부는 각 중대에 3월 5일 제정된 중지나과건군의 교육규정을 바탕으로 간부와 병의 교육을 실시하며(대대), 대대의 교육행사표를 토대로 행사예정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단열). 각 부대들도 3월의 계획표를 만들었다. 대대본부는 5개 반(관측반, 통신반, 무선반, 대공반, 자동차반)마다 매일의 일과를 설정했으며(대대), 2중대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사격 훈련, 군기 교련, 소총 전투법 등의 항목을 시행하겠다는 교육행사예정표를 작성하였다(중대). 대대단열도 마찬가지로 정신 훈화, 자동차 점검과 같은 일정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기입하였다(단열).

한편 3월 1일 대대회보는 2대대의 ‘위안일’이 매주 목요일로 바뀌었음을 알렸다(대대). 창저우 주둔 부대의 개편에 수반된 변화로 추측되며, 대대본부에는

사전에 통보되어 2월 28일 작성된 대대 교육행사에정표에 목요일이 휴양일로 명시되어 있다. 2중대와 단열의 계획표에도 목요일인 3월 3·17·24·31일이 휴양일로 표기되어 있다(육군기념일인 3월 10일은 별도 행사가 예정되었는데, 단열은 휴양일로 기재함).

3월 3일 단열의 진중일지는 위수지회보를 이어받아 외출증 소지와 위안소 할당일 외에 위안소에서 음주 금지, 성병에 대한 경각심 등을 전했는데(단열), 2중대의 중대회보에 다음의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중대).

五. 위안소 규정 중 필요한 사항 및 주의를 이하에 표시한다.

1. 하사관, 병의 입구는 남측 동문으로 한다.
2. 단가
지나인 1엔
조선인 1엔 50센
일본인 2엔
3. 돈은 반드시 지불할 것.
4. 시간은 대략 1시간 이내.
5. 방독에 주의할 것.
6. 음주자의 출입을 금한다.

위 내용을 통해 병참 부대가 창저우에서 개설한 위안소의 실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사관과 병뿐만 아니라 장교도 이용했으며, 요금이 차별화된 중국인·조선인·일본인을 위안부로 수용한 복수의 혹은 대규모 위안소가 존재하였다.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것도 특이하다.

3월의 첫 휴양일에 사고가 터졌다. 3월 5일의 대대회보에는 1중대 외출 병사의 복장이 불량했다는 소식이 창저우경비대를 통해 전달되었으며(단열, 중대), 향후 그런 통보를 받은 병사는 외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이 적혀 있었다(단열). 그럼에도 위안소 사용의 문제점이 꼬리를 물고 불거졌다. 3월 10일의 대대회보는

“부대의 명예에 관한 행동, 특히 위안소 등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외출증은 반드시 휴대할 것”과 위안소에 감시자를 배치하고 관등성명을 대대부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단월), “타 부대의 위안일에는 절대 위안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였다(대대).

3월 16일 ‘창저우 주둔간 내무규정’(이하 내무규정)이 제정되었다(대대).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 5여단으로부터 ‘내무규정’을 제출하라는 회보가 내려온 것이 직접적인 요인일 것이며(대대), 위안소 이용을 포함한 주둔 태세 전반에 대하여 재정비를 기하려는 의도 또한 위의 경과로부터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17개의 장과 100개 항목에 이르는 내무규정은 전투와 훈련을 제외한 부대의 제반 행위를 망라하고 있으며, 위안소에 관한 언급은 제8장의 ‘휴일과 외출출장’에서 시작된다.²¹ 휴일은 목요일로 정해진 위안일과 기타 공휴일로 정해졌으며, 사병은 휴일 외출 때 반드시 외출증을 휴대하도록 하였다. 위안소 외출을 특화해서 정리한 것이 제9장의 ‘위안소 사용 규정’(이하 위안소규정)이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안소 이용은 부대별로 요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할당되었다. 기병 제3연대인 호시[星] 부대는 일요일, 치중병 제3연대인 구리이와[栗岩] 부대는 월요일과 화요일, 독립공성중포병 제1대대와 제2대대를 합친 마쓰무라[松村] 부대는 수요일과 목요일(2대대는 목요일), 병참 관계 부대를 가리키는 나리타[成田] 부대는 토요일, 아치하[阿知波] 부대는 금요일 그리고 야전 창고 부대를 총칭한 무라타[村田] 부대는 일요일로 표시되어 있다.²² 임시 주둔 부대의 사용은 별도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2대대가 그렇듯이 창저우의 모든 일본군이 위안소에 가는 날을 휴양일로 설정했던 것이다.

21 「常州駐屯間内務規定 昭和13年3月 獨立攻城重砲兵第2大隊」, 『獨立攻城重砲兵第2大隊 關係資料 常州駐屯間内務規定警備間教育規定』.

22 「常州地區警備(衛戍服務)規定 昭和12年12月 常州地區警備隊」, 『獨立攻城重砲兵第2大隊 陣中日誌 昭和12年12月1日~13年1月31日』.

하사관과 사병은 9~18시까지 출입하도록 했고, 1시간 이내의 이용에 요금은 중국인 1엔, 조선인 1엔 50센, 일본인 2엔으로 차별화하였다(장교는 2배). 이른바 ‘티켓’이 없이 위안소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위안소의 감독은 1월에 위안소를 설치할 때부터 그랬듯이 헌병 본진대가 담당한다고 명기되었다. 영업자로 표기된 ‘위안부’는 지정 장소 이외의 외출을 불허했으며, 위안소의 휴일은 매월 15일이었다. 군의 전용이라는 의미에서 중국인을 받지 않도록 했다.

위안소는 닛카[日華]회관 남쪽에 있었으며, 회관 부속 건물과 하사관·병의 건물로 구분되었다. 하사관과 병은 남쪽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8~10시에 검사를 받았으며, 금요일에는 정례적으로 성병을 검사하였다. 제4야전병원 군의가 검사 주임관이었고, 병참예비병원과 각 부대 군의가 보조를 담당하였다. 검사 주임관이 검사 결과를 각 부대에 통보하였다.

내무규정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앞서 3월 3일자 2중대의 진중 일지에서 확인한 위안소의 사용 실태가 위의 위안소규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위안소규정의 작성 주체는 틀림없이 병참 부대였으며, 위수지인 창저우를 경비하는 모든 부대에도 적용되었을 것이다.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는 위수지, 바꿔 말하면 경비사령부의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두 번째로 2대대의 내무규정 속에 위안소규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의 함의다. 위안소를 출입하는 2대대 병사들의 행동은 일과시한과 각종 근무, 명령 하달, 연락, 기밀의 보호·방첩 등을 포함한 부대의 본래적이고 공식적인 업무와 직결되어 수행되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것을 매개하는 것은 ‘외출’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위안소에 관한 간단하고도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위안소의 이용과 관리는 처음부터 부대의 운용이라는 틀 속에서 계획되고 실행에 옮겨졌으며, 병사들은 외출을 통해 부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식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위안소를 출입하였다. 따라서 군대내무서에 근거를 둔 ‘외출’은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장교를 포함한 병사와 위안소 및 ‘위안부’를 연결시켜 주는 바꿔 말하면 일본군 성노예 시스템을 발생시키는 공식적·제도적 행위였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3월 20일에 대대장은 조례 석상에서 엄정한 군기, 차기 작전의 준비, 건강 관리 등에 관해 훈시를 하였다(대대, 중대). 그리고 대대회보는 다음과 같이 엄명을 내렸다(단열).

1. 위안일의 단속을 엄중히 할 것.

특히 시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 것.

2. 위안일에는 반드시 단속 책임자를 정하고, 그 교대를 확실히 할 것.

3.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어떤 휴양일이라도 하사관은 사용할 수 있다.

[하략]

IV. 중일전쟁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 보병 제11연대

1. 중일전쟁 시기의 상황

보병 제5사단의 주력 보병대는 11·41연대를 거느린 9여단과 21·42연대가 소속된 21여단이었다. 그중에서 9여단의 진중일지는 중일전쟁에 투입된 때부터 1940년 3월까지의 진중일지를, 11연대 소속 1대대의 포소대와 3중대, 2대대의 7중대는 중일전쟁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걸쳐 진중일지를 남기고 있다. 그 속에는 중국에 이어 동남아로 확대되는 전황 속에서 부대의 움직임과 연동된 위안소 이용 체계의 변화를 알려주는 실마리들이 들어 있다.

상하이와 난징 전투가 종료된 후 9여단은 1938년 1월 10일 칭다오로 이동을 명령받고 동 14일 도착하였다.²³ 9여단장 구니사키 노보루[國崎登] 소장은

23 「陣中日誌 自昭和13年1月1日至昭和13年1月31日 歩兵第9旅團(2)」, 『歩兵第9旅團陣中日誌 6/12 昭和13年1月1日~昭和13年1月31日』.

동지구경비대장에 임명되었다.

1월 22일 9여단은 칭다오 경비를 망라한 첫 규정으로 ‘칭다오에서의 경비 및 군기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²⁴ 군기 유지 항목 중에는 “공용 및 목욕 이외의 일반 외출은 당분간 금지한다”라고 정해졌다. 이튿날에 각 부대의 부관이나 장교 1명이 모인 첫 경비대회보가 열렸는데, 논의된 사항 중에 “병의 외출 건”이 들어 있다. 사병의 외출이 경비 태세 구축의 초기 단계에서 기초적인 요소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월 31일 5사단의 외출 지침이 9여단에도 전해졌다. “명에 따라 2월 1일 이후 각 부대장은 일반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는 통첩이 있었다. 이는 위안소 개설 결정에 수반되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대별로 외출일을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5사단은 사령부 차원에서 위안소 개설을 결정하고 이에 맞춰 부대별로 일반 외출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9여단 소속 부대들은 칭다오 일대의 경비에 종사하는 한편, 간헐적으로 특별 작전을 벌였다.

11연대 1대대 소속인 3중대와 포소대의 진중일지에서 외출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다. 3중대와 포소대의 칭다오 도착은 1월 19일이었으며,²⁵ 3중대만 1월 31일 오후에 휴양했다고 되어 있다.²⁶ 2월 1일부터 3중대와 포소대가 속한 1대대는 특별 작전에 출동하여, 2월 8일 새벽에 복귀하였다. 3중대는 오후를 휴양했고, 190여 명 중대원의 대부분인 147명에게 외출이 허가되었다. 포소대는 종일 휴양을 실시했으며, 13명에게 외출이 허가되었다. 2월 1일부터 외출을 허가하도록 한 5사단의 방침에 맞춰 실시된 첫 외출이었다. 2월 14일부터 3중대와

24 「青島に於ける警備並に軍秩維持に關する規定 昭和13年1月」, 『歩兵第9旅團陣中日誌 6/12 昭和13年1月1日~昭和13年1月31日』.

25 「陣中日誌 自昭和12年7月27日至昭和13年12月31日 歩兵第11連隊第1大隊砲小隊(5)」, 『歩兵第11連隊第1大隊砲小隊 陣中日誌 昭和12年7月27日~13年12月31日』.

26 「陣中日誌 昭和13年度 歩兵第11連隊第3中隊(1)」, 『歩兵第11連隊第3中隊陣中日誌 昭和13年1月1日~13年12月31日』

포소대는 출동하여 작전을 벌인 다음, 2월 24일 칭다오로 귀환하였다. 이튿날인 2월 25일 3중대와 포소대에 오후부터 외출이 허가되었다.

이후 5사단은 쉬저우[徐州] 전투, 광둥[廣東] 작전, 난닝[南寧] 작전에 참가한 다음,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하였다. 1940년 11월에는 상하이 인근으로 이동하여 1년 동안 경비와 작전 출동, 훈련 등에 임했다. 이 시기에 11연대 1대대 소속인 3중대와 포소대의 진중일지가 1941년 1월분부터 현존한다. 이동 직후 11연대는 현재 상하이 중심지에서 북쪽으로 20킬로미터 떨어진 양푸구[揚浦區]의 우쑹[吳淞]에 병영을 확보하였다. 이후 4월 말부터 상하이 남쪽의 닝보[寧波] 인근에서 주둔하다가 10월 재차 우쑹으로 돌아와서는 동남아 전선에 투입되었다.

1차 우쑹 주둔 시절에는 외출 방식이 일찍부터 가동되었다. 1월 1일과 2일 모두 3중대와 포소대에서 상하이와 우쑹으로의 외출이 장교나 하사관의 인솔 아래 행해졌다. 120명 전후의 3중대는 매번 상하이와 우쑹 양쪽에 외출자를 보냈으며, 50명을 조금 넘는 규모의 포소대의 경우 이따금 우쑹만 외출지로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3중대와 포소대 모두 정규 외출일로 금요일이 할당되었으며, 연대본부 등은 토요일을 휴일로 삼았다(2월 13일 포소대 진중일지). 이런 외출 방식의 근거로 짐작되는 기록이 5사단 회보에서 발견된다. ‘외출에 관한 규정’(1월 2일, 9일) 혹은 ‘주류규정’(9일) 등이다. 내용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단독 외출이 근절되지 않자 이와 관련된 주의가 하달되었다(9일). 주류규정은 2월 28일자 포소대의 진중일지에 나오는 1941년 1월 제정된 ‘상하이 부근 마쓰[松]제3부대 주류규정’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쓰제3부대는 11연대의 이른바 ‘통상명칭’에 해당된다.

금요일의 정기 외출은 철저하게 지켜졌다. 3중대의 경우에 3월 23일 훈련과 작전을 위해 우쑹을 떠나기까지, 포소대는 대대 주력과 함께 3월 26일부터 특수 훈련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금요일에 외출을 실시하였다. 훈련에 따른 외출일 조정 또한 안배되었다. 1월 20일 독가스 교육을 받을 병사로 선정된 3중대원 14명은 2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연대본부에 집결하였다. 정기 외출을 하루 앞

둔 1월 23일, 연대는 1대대의 독가스 교육 훈련 참가자에게 24일 휴일을 25일로 대체하라는 일일명령을 내렸다. 1월 25일 참가자 중 1명을 뺀 13명은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우쑹으로 외출하였다. 2월 1일에는 1월 31일 정기 휴일에 관측과 자동차 교육을 받은 포소대원 13명에게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쑹 외출이 허가되었다. 3월 14일 3중대와 포소대는 훈련과 점검으로 인해 다음날인 15일(토)에 외출을 실시하였다.

3중대와 포소대의 외출 관련 기록에서 위안소에 갔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하지만 위안소 출입이라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다. 성병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먼저 1월 17일 포소대의 한 일등병은 연성하감에 걸려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영창 1일에 처한다는 처분을 받았다(일등병은 영창 대신에 18일 21연대 환자요양소에 보내짐). 연성하감의 잠복기가 1~7일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1월 10일의 정기 외출일 또는 1일과 2일의 특별 외출일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록은 전날인 16일에 있다. 일등병의 처벌을 포함하여 ‘정신훈화’가 행해졌으며, 항목 중 하나로 “위안소 〇출입”(〇은 판독 불능, 이하 마찬가지)이 명기되어 있다.

3중대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2월 16일 한 상등병에게 성병 감염이 확인되자 중영창 1일이 부과되고 곧바로 입감되었다. “1월 31일(외출일) 외출이 허가되어 우쑹 위안소(新上海)에서 창부(이름 불명)와 아무 예방법도 강구하지 않은 채 접촉하여 성병에 걸린 것은 평소 중대장의 훈계에 저촉”된다는 설명이 덧붙여 있다.

2.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의 상황

중국 남부의 하이난섬(海南島)에서 대기하던 5사단은 12월 8일 태국에 상륙한 뒤 남하를 거듭하였다. 해를 넘겨 1942년 2월 15일 영국군이 항복하였다. 싱가포르에 입성한 25군 사령부는 5사단에게 18사단이 맡은 조호르주(Johor州)를

제외한 말레이시아 전역을, 싱가포르 교외를 근위사단에게 할당하였다. 싱가포르 시내는 5사단 9여단 소속 2개 대대(11연대 3대대와 41연대 1대대)를 주축으로 싱가포르경비대가 편성되어 주둔하였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전역에 화교 학살이라는 ‘치안숙정’ 임무 명령이 내려졌다.

9여단 소속 11연대는 남경비대로서 쿠알라룸푸르 남쪽의 느그리슴빌란(Negeri Sembilan)과 므라카(Melaka), 두 주(州)를 떠맡았다. 남경비대, 즉 11연대의 본부는 느그리슴빌란의 주도(州都) 스펀반(Seremban)에 자리하였다. 므라카 주를 책임진 1대대는 남지구경비대로서 주도 므라카에 주력을 두고, 느그리슴빌란주 최남단의 탐핀(Tampin)에 4중대를 보냈다. 1대대 소속인 3중대는 3월 2일부터 연대 직속이 되어 스펀반으로 이동하였다. 북지구경비대를 할당받은 2대대는 본부를 스펀반에 두고 바하우(Bahau), 쿠알라필라(Kuala Pilah), 쿠알라클라왕(Kuala Klawang)에 1개 중대씩을 파견하였다.²⁷ 쿠알라필라의 담당 부대는 7중대였다.

이후 1942년의 주둔 상황은 1대대의 3중대와 포소대, 2대대의 7중대가 각각 남긴 진중일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속에는 중국 전선에서 축적된 위안소 이용의 경험을 동남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일본군의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1) 므라카의 상황

2월 26일 1대대장은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공용을 제외한 모든 외출을 금지하였다(포소대). 이튿날 ‘므라카 경비 및 주류규정’이 정해졌는데(3중대, 포소대), 이를 통해 일과시한과 더불어 휴일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스펀반 이동 직전인 3월 1일(일) 3중대가 영내에서 쉬는 휴양일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3월 20일의 대대일일명령인데, 위의 ‘므라카 경비 및 주류규정’ 중 제5장 18항을 삭제하고 위안소 사용 배당일에 따라 휴

27 「陣中日誌 第4號 自昭和17年2月1日至昭和17年2月28日(2)」, 『歩兵第11連隊 第7中隊 陣中日誌 昭和17. 1. 1~17. 6. 30』

무한다는 것이 골자였다(포소대). 제5장 18항은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포소대의 진중일지에는 관련 기술이 없는데, 3월 3~8일까지와 3월 12~13일까지 두 차례나 특별 작전에 종사했기 때문이라 보인다. 다만 육군 기념일인 3월 10일에 포소대원 37명에게 플라카 시내 외출이 허가되었다.

전술한 대로 3월 20일에 위안소 이용 체계가 갖춰졌다. 대대일일명령으로 ‘위안소에서의 규정’이 통보되었으며, 포소대의 휴일은 위안소 배당일인 금요일로 정해졌다. 첫 금요일인 3월 27일, 37명의 병사들이 ‘고쿠라쿠엔(極樂園)’ 및 위안소에 다녀왔으며, 이틀 뒤인 3월 29일에는 27일 근무자 11명이 위안소 및 ‘오락장’에 외출하였다. 파견 근무자를 제외한 포소대원 거의 전원의 외출이었다.

4월 3일은 두 번째 휴무일이었다. 오전 11시에 하사관 인솔 아래 35명이 “시내 오락장 및 위안소에 외출을 했”으며, “오후 2시에 오락원(娛樂園)에 집합”하여 말레이와 중국의 연극과 말레이 춤을 관람한 뒤 오후 7시에 귀대하였다. 이틀 뒤인 4월 5일에는 10시부터 3일 근무자 6명이 “시내 위안소 및 오락장에 외출”하였다. 3월 27일의 고쿠라쿠엔은 4월 3일의 ‘오락원’과 4월 29일의 “고쿠라쿠엔에서의 행사” 등의 기술과 결부시켜 추측한다면 극장으로 여겨진다.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의 논문에 따르면, 플라카에 세 곳의 위안소가 있었다.²⁸

이후 날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휴양일이 바뀌었다. 4월 9일자 기사에 ‘휴양일(목요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4월 9일의 출동 명령으로 인해 4월 11일이 대체 휴일로 부여되었고, 35명이 시내에 외출하였다. 다음날에는 근무자 5명이 시내에 외출하였다.

4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인도네시아의 자바로 이동하게 될 때까지 포소대의 휴양일은 목요일이었고, 한 주도 빠짐없이 행해졌다. 근무자의 외출은 휴양일

28 林博史, 「マレー半島における日本軍慰安所について」, 關東學院大學經濟學部 一般教育論集『自然・人間・社會』15호, 1993년 7월. 인용은 동명의 인터넷 논문을(<http://www.geocities.jp/hhhirofumi/paper09.htm>, 2018년 7월 16일 조사)을 바탕으로 했다.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의 1~3일 뒤에 허가되었다. 5월 28일자 회보에서 군인 군속의 ‘댄스홀’ 출입이 금지되었으나, 위안소 이용에 관한 지시는 9월 8일의 회보에서 ‘믈라카 군인구락부(倫敦위안소, ‘倫敦’은 런던)’는 8일자로 폐업시켰으므로 이후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뿐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몇 차례의 휴양일 변동과 임시 외출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10일(수)의 외출은 12~13일의 신임 사단장 순시에 앞서 11일 대대장의 점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7월 15일(수)과 8월 12일(수), 10월 14일(수)은 이튿날의 출동으로 인해, 7월 22일은 대대장 순시로 인해 각각 앞당겨졌다. 11월 19일의 휴양일은 말레이 상륙전의 영화 촬영으로 인해 이틀 뒤로 대체되었다. 임시 외출은 4월 29일의 천장절, 4월 30일의 야스쿠니 예대제일, 9월 23일의 추계황령제, 10월 17일의 신상제(神嘗祭), 10월 23일의 야스쿠니 예대제일, 11월 3일의 명치절 등 황실과 관련된 기념일 외에 8월 15일의 싱가포르 함락 반(半)주년, 12월 8일의 ‘대동아전쟁 1주년’ 등의 특별한 날에 허용되었다. 위 임시 외출의 근거는 군대내무서(제196)였으며, 상급 부대인 1대대는 일일 명령의 형식으로 하달하였다.

위안소 이용을 포함한 외출과 주둔의 원칙은 전술한 2월 27일의 믈라카 경비 및 주류규정에서부터 마련되었다. 4월 26일에는 대대일일명령으로 ‘믈라카 주류규정’ 제정의 통보가 있었다. 이에 3월 20일의 위안소규정이 첨가되었음은 물론일 것이다. 그리고 9월 2일 주류규정 중에서 휴무일이 바뀌었다. 여기에는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8월 22일 5사단의 이동 계획을 담은 11연대의 작전명령과 관련된 일일명령이 내려왔다. 다음날 1대대는 대대본부(23일), 기관총중대와 포소대(24일), 4중대(25일)의 임시 외출을 대대일일명령으로 허가하였다. 그런데 8월 30일에 이동을 연기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뒤이어 9월 2일 주류규정의 ‘휴무일 배당표’는 대대일일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휴무일 개정의 이유는 수요일에 근보(近步), 즉 근위보병 소속 이가쿠라(猪鹿倉) 부대가 새로 배속된 데서 찾아진다. 8월 30일의 11연대명령 중에는 사와

〈표 3〉 보병 제11연대 제1대대의 휴무일 배당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무 부대	기관총중대	1중대	猪鹿倉隊(近歩) 헌병대	대대포소대	4중대		경비대본부 대대행리반

* 행리반은 군대에서 탄약과 식량 등의 물자를 운반하는 부대를 말한다.

무라[澤村] 지대의 보병 2개 중대가 연대에 배속될 것임을 알리고 있으며(3중대), 8월 31일의 제1대대명령은 8월 31일 0시에 보병 1개 중대가 배속된다는 것을 전했다. 사와무라는 근위사단의 보병 제5연대장 사와무라 슌스케[澤村駿甫]를 가리키며, 보병 1개 중대는 이가쿠라 부대로 봄이 타당하다. 경비 부대 운용의 이른바 ‘매뉴얼’의 일환으로 새 부대의 배치에 맞춰 위안소 이용을 포함하는 휴무일의 배당이 바뀌었던 것이다.²⁹

9월 3일(목) 포소대원 30명이 10시부터 시내에 외출하였다. 3일 근무자(일직하사관, 일직상등병, 소대당번) 3명은 4일 시내에 외출하여 오후 7시에 복귀하였다. 그리고 앞서 서술했듯이, 12월 중순 인도네시아의 자바로 이동할 때까지 외출이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실시되었다.

2) 스흘반의 상황

• 외출과 위안소 이용

3중대는 스흘반에 도착한 3월 2일부터 느그리슴빌란주 동쪽 접경의 게마스(Gemas)로 옮겨갈 때까지 훈련과 토벌 출동을 거듭하였다. 7중대는 내내 쿠알라필라 한 곳에 머물렀으며, 4월 22일부터 15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바하우에 1개 소대를 파견하였다.

29 이가쿠라 중대와 4중대는 10월 27일 이동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휴무일 변화는 진중일지에 담겨 있지 않다. 대규모 주둔지에서 일시 주둔하는 부대에 위안소를 할당하는 방식은 여타 부대에서도 관찰된다.

3중대의 진중일지에는 3월 15일(일)과 22일(일)에 휴무일로 되어 있으나 외출했다는 기록은 없다. 첫 외출은 3월 26일(목)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다. ‘특별공용외출’이라는 명칭으로 30명의 병사들이 병영을 나섰는데, 이는 3월 24~25일 11연대 병력이 대거 동원되어 실시된 물라카와 스펀반 시내의 ‘숙정 공작’, 즉 화교 학살에 대한 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3중대의 진중일지는 스펀반을 떠나 게마스로 이동할 때까지 매주 목요일에 18~75명의 외출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목요일 외출의 변경은 세 차례 확인된다. 먼저 5월 28일 10시 15분 40명에게 외출이 허가되었는데, 새 연대장의 부임으로 인해 외출 시한이 오후 3시까지로 제한되어 전원 귀대하였다. 연대장의 도착은 오후 5시 50분이었다. 6월 11일은 “휴무일이어도 격리 중대가 됨에 따라 외출을 허가받지 못”했다(11일 전후로 격리를 짐작케 하는 전염병에 관한 기록은 없다). 7월 1일은 게마스 출발에 앞서 2일의 휴무일을 앞당겨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75명이 외출하였다. 물라카의 포소대와 마찬가지로 4월 29일과 30일에 임시 외출이 허가되었다(7중대도 마찬가지).

하야시 히로후미가 청취한 일본군의 증언에 의하면 스펀반 소재 위안소는 2곳 이상이었다고 한다. 현지 주민은, 그곳 정문에 가로로 ‘청풍장(淸風莊)’, 세로로 ‘일본군인위안소’라는 간판이 있었으며 7~8명 정도의 일본어를 말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증언을 남겼다(주민은 조선인 혹은 타이완인으로 추정).

7중대 진중일지에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 가장 빠른 기록은 3월 23일의 남경비대회보에서 전달한 것으로, “병참에서 지정한 위안소 외에 사창 가옥의 출입을 엄금한다”라는 내용이다. 다음날 남경비대회보는 태도가 불량한 외출자가 있음을 들어 주의를 주고 있다. 3월 27일의 남경비대회보 역시 ‘장교구락부’에서 마음대로 하사관이 사병을 인솔하여 식사하거나 오락하는 것을 엄금하며, 병참 지부의 한 하사관이 실내화 차림으로 외출한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3월 28일 2대대는 회보를 통해 “오랜만의 주둔이라서 외출상의 비위 행위가 빈발”하므로 간부들이 군기와 풍기를 엄수하도록 감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4월 10일자 남경비대회보는, 향후 휴무일에 외출을 허가한 경우 제2중 순찰뿐만 아

나라 자체적인 순찰도 실시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3중대, 7중대). 4월 24일의 남경비대회보는 표 없이 위안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표를 구입하도록 하는 한편, 순찰장교에게도 철저히 순찰하고 위반자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3중대).

이후에도 외출 내지 위안소에서의 군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5월 20일과 22일의 남경비대회보는 외출자들의 복장과 태도 불량을 지적하고 있다(7중대). 3중대장은 9월 13일 외출지에서의 경례와 태도의 엄정을, 11월 30일에는 외출에 따른 주의 사항으로 ‘군인구락부 지정 식당’ 이외에서는 식사하지 않을 것과 경례 엄정, 시간 엄수 등을 지시하였다. 12월 3일의 연대회보는 인솔외출이 아니라 단독으로 외출하는 사례, 지정된 식당 외에서 식사하는 사례, 위안소와 식당 등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 등을 엄금하라는 명령을 전했다(7중대).

앞에서 확인한 대로 3월 23일 시점의 남경비대회보에서 “병참에서 지정한 위안소”가 언급되어 있는 만큼 위안소 이용에 관한 규정 또한 시급히 제정되어야 했다. 3월 29일 7중대 진중일지는 ‘북지구경비대 휴무일 예정표’가 아래와 같이 준비되었음을 전한다.

〈표 4〉 북지구경비대의 휴무일 예정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무부대	연대포중대 5중대 2대대포소대	속사포중대 6중대 2기관총중대	통신대 7중대 2방역급수부	3중대 8중대 공병	4야전 병원 철도대	병참 건축대 군통신대	경비대본부 2대대본부 헌병

비고: 이 표와 같이 예정하지만 숙정 공작 기타 관계에 따라 각 대에서 서로 협정한 후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속히 경비대본부에 보고하기로 한다.

〈표 4〉가 ‘예정’인 이유는 주둔규정이 미정이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스름반 주류규정’은 4월 20일 제정되었다. 두 가지 증거가 있다. 하나는 쿠알라필라 경비대의 책임자인 7중대장이 스흘반 주류규정을 근거로 4월 25일 ‘쿠알라필

라·바하우 주류규정’(후술)을 제정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³⁰ 다른 하나는 5월 22일자 남경비대일일명령에 “1942년 4월 20일 남경비대본부 ‘스름반’ 주류규정 중 13(부표 제2) 부대별 휴무일 할당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5〉 스름반 주류규정 속의 부대별 휴무일 할당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무 부대	2대대본부 5중대 2기관총 중대	속사포중대 (6중대) 연대포중대	통신대 (7중대) 2방역급수부 4야전병원 주력	3중대 (8중대)	제4야전 병원 일부 철도대	헌병 병참 군통신대	경비대본부 2대대포소대 우편대

비고: 이 표와 같이 정하지만 숙정 공작 기타 관계에 따라 각 대에서 서로 협정한 후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속히 경비대본부에 보고하기로 한다.

비고의 문구 중에 3월 29일에 ‘예정한다’고 기술된 데 비해, 5월 22일자에는 ‘정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5월 22일의 변경은 건축대·공병 대신에 우편대가 주둔하게 된 것과 연계된 조치로 여겨지며, 6~8중대의 괄호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전술한 대로 3월 29일 7중대의 휴양일은 수요일로 정해졌다. 3월의 휴양일은 두 차례 가졌는데, 24일과 27일 출동을 전후하여 외출 없이 영내에서 머물렀다. 4월 1일(수) 역시 영내 휴양이었다. 4월 3일 쿠알라팔라에 위안소가 개설되었다. 첫 위안소 사용은 4월 8일이어야 하지만, 신임 대대장의 순시로 인해 이튿날 “오전 중에 병기·자전거의 손질을 마친 다음 외출지에서의 혼시를 주”고 나서 특별 외출을 허가하여 37명이 오후 6시에 귀대하였다. 4월 15일의 외출은 정찰 임무 중이어서 불가능했고, 그 대신에 4월 20일 임시 외출이 부여되

30 「クワラピラ・バハウ駐留規定 昭和17年4月25日」, 『歩兵第11連隊第7中隊 陣中日誌 昭和17, 1, 1~17, 6, 30』.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었다. 5월 6일(수)은 콜레라와 중두의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고, 역시 이튿날 대체 외출 허가가 내려졌다. 이후에도 수요일의 외출과 근무자의 익일 외출은 거의 빠짐없이 실시되었다.

7월 3일 3중대는 동지구경비대로서 게마스 주둔에 들어갔다(병참지부, 헌병대, 군통신대가 체재). 2소대는 별도로 현재 게멘체(Gemench) 시내인 캄퐁텡가(Kampung Tengah)에 자리를 잡았다. 게마스와 캄퐁텡가 사이의 거리는 직선으로도 20킬로미터가 넘는다.

게마스에 진주하는 동안 위안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11월 30일 진중일지에 ‘군인구락부 지정 식당’이라는 표현이 유일하다. 앞의 하야시 논문에 위안소가 있었다는 병사의 증언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외출했던 병사들은 분명 위안소에도 출입했을 터이다.

3중대의 첫 외출은 7월 7일(화)이었고, 32명은 10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게마스 시내에 다녀왔다. 이튿날에는 전날 근무자 5명이 외출하였다. 7월은 주변 지구에 대한 숙정 공작이 잦아서 두 번째 외출은 7월 27일(월)에 이루어졌다. 이후 8월은 18일(중대 전원의 피복 검사와 병기 손질) 외에는 월요일 외출과 이튿날의 근무자 외출이 지켜졌다. 8월 말에는 포소대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이동 계획과 보류라는 해프닝이 있었다. 9월부터는 교육 훈련에 전념하는 한편, 일요일로 변경된 외출이 한 번도 빠짐없이 허가되었다(근무자는 익일 외출). 임시 외출도 빈번하게 시행되었다.

게마스에서의 외출 중에서 특기할 사항은 캄퐁텡가에 분주(分駐)하던 2소대의 행동이다. 7월 12일(일)은 ‘2소대의 외출일’이므로 외출자를 맞이하기 위해 자동차가 배당되었다. 11시 20분 경비대 본부에 도착했고, 오후 6시 30분 역시 자동차로 귀대하였다. 2소대 진중일지에도 외출이 허가되어 6명이 자동차로 외출했다가 귀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³¹ 2소대의 두 번째 외출은 3중대 주력이 속

31 「『カンポンテンガー』警備日誌 自昭和17年7月2日至昭和17年7月31日』, 『歩兵第11連隊第3中隊 陣中日誌 昭和17. 6. 1~17. 12. 31』.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정 공작 중이던 7월 23일(목)이었으며, 외출자 10명의 이동 또한 자동차로 이루어졌다. 7월 31일(금)에는 8명의 외출자가 자동차로 게마스까지 왕복하였다. 8월 1일 2소대는 1중대가 지키던 아에르쿠닝(Ayer Kuning)으로 이동했는데, 보름 동안의 짧은 주류 기간인 탓인지 게마스로의 외출은 실시되지 않았다.³²

• 주둔규정과 위안소

앞서 소개했듯이 7중대는 4월 25일 ‘쿠알라필라·바하우 주류규정’(이하 주류규정)을 정했다. 4월 20일 6중대와 교대하기 위해 7중대 병력 일부를 바하우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22일부터 1소대의 바하우 주둔이 개시되었다. 당시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주류규정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내용을 통해 상급 부대 규정과의 층위 및 위안소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구성은 총칙, 경비 및 제반, 군기 풍기, 내무, 비상 및 화재, 위생의 항목과 그림 등이다.

그중 휴무일에 관한 사항은 내무 항목에 적시되어 있다. 양 경비대의 외출일은 매주 수요일이고, 외출 구역은 경비대의 경비 지역 내로 한정되며, 휴무일의 외출에 관한 사항은 모두 ‘스름반 주류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공용 및 일반 외출자는 당분간 시내에서의 음주와 음식을 엄금했으나, 위안소 내에 설치된 음식점에서의 음식은 허용하였다. 위생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바하우 경비를 맡은 1소대의 진중일지는 주류규정대로 외출이 실시되지 않았음을 전한다. 8월 15일 쿠알라필라로 복귀하여 중대 주력에 합류할 때까지 4월 30일, 5월 14일(목), 6월 10일(수), 7월 14일(화) 총 4회 휴무일을 가졌다. 휴무일이 부족한 데다 불규칙하기까지 하였다. 유일한 외출은 야스쿠니대제인 4월 30일이며, 오후에 특별 외출을 허가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자동차까지 보내어 외출을 독려했던 3중대와는 판이한 상황이다. 부대의 규모가 작을수록

한 마찬가지다.

32 「『アイエルクニン』警備日誌 自昭和17年8月1日至昭和17年8月16日」, 『歩兵第11連隊第3中隊 陣中日誌 昭和17. 6. 1~17. 12. 31』.

외출 시행의 여부는 단위 부대장의 의향이 결정적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하야시 히로후미는 쿠알라필라의 위안소는 두 곳으로 중국인 18명(장교·헌병 5명, 사병 13명)이 있었다고 하는데,³³ 사병용 위안소의 이름은 ‘쇼와파크(昭和park)’로 추측된다. 외출지로서 5월 27·28일, 7월 9일에는 ‘파크’가, 6월 8·22·24일에는 ‘쇼와파크’가 명기되어 있다. 쿠알라필라 외출 구역은 현재의 쿠알라필라 시내 한복판으로서 사각형의 한 변은 500미터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원이 있기에는 좁으며, 관련 명칭도 없다. 따라서 (쇼와)파크를 위안소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스름반 주둔 부대의 외출 규정이 위계적으로 정립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7중대의 주류규정 위에는 상급부대인 11연대의 ‘스름반 주류규정’이 있었는데, 총칙에 관련된 서술이 명시되어 있다. 주류규정은 ‘스름반 주류규정’을 토대로 “경비 및 육군의 질서, 군기 풍기의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주류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수령과 동 근무령, 작전요무령, 군대내무서 등에 준거”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제5사단이 설정한 ‘말레이 주류간 외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였다. 두 차례의 남경비대일일명령이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먼저 4월 28일 외출지에서 하사관의 행동이 좋지 않다면서, 각 부대에 ‘말레이 주둔간 외출에 관한 규정’ 중 제3의 단서 조항과 같이 외출자 선발에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사전 교육과 더불어 부대별로 순찰을 실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3중대, 7중대). 6월 22일에는 ‘스름반 주류규정’ 중에서 일석점호 시간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말레이 주류간 외출에 관한 규정’ 중에서 하사관 부분이 수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7중대).

말레이 반도의 일본군 중 최상급 부대는 제25군이였다. 싱가포르에 자리한

33 林博史, 「マレー半島の日本軍慰安所」, 『世界』 1993년 3월호, 岩波書店. 인용은 동명의 인터넷 논문(<http://www.geocities.jp/hhhirofumi/paper08.htm>, 2018년 7월 16일 조사)을 바탕으로 했다.

25군 사령부는 ‘군회보’를 통해 각지의 부대에 지시를 내렸는데, 5월 14일의 경우 군인·군속 중에서 위안소 등의 왕복에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이 통보는 11연대 소속 7중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던 독립자동차 제 42대대의 진중일지에도 수록되어 있다. 유류 절약이 요점이지만, 외출 내지 위안소 이용이라는 부대의 행위와도 맞물려 있다.

반복하지만 위안소 이용은 일상적인 부대의 운용 체계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다. 6월 1일자 연대회보가 그런 상황을 알려준다(3중대). 향후 부대 명칭을 ‘고이[鯉]제5173부대’로 사용하게 되므로 6월 10일까지 공용증 및 외출증을 조제한 다음 날인을 위해 연대에 제출하며, 이외의 부대 호칭을 기록한 공용증 및 외출증은 6월 15일 이후 사용을 금한다고 지시하였다. 부대 명칭이 바뀌면 위안소 관련 서류도 바뀌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군대의 기본 틀을 담은 진중(작전)요무령과 군대내무서(령)에서 출발하여, 만주사변,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아우르면서 진중일지를 바탕으로 위안소의 개설과 운용이 관련 부대의 주둔 태세 구축과 어떻게 결부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간단히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주사변의 개시와 더불어, 성매매업소와 병사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이 가동되었다. 개별 부대의 주둔 태세가 갖춰지면 외출을 위한 휴양일이 설정되고, 병사들이 성매매업소를 출입하면서 성병 환자가 발생하였다. 성병에 걸린 여성과 업소에 대한 통제는 경찰과 헌병을 통한 간접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위안소 시스템이 본격화되었다. 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의 사례가 전형적이듯이, 설치 직후 불안하던 위안소 운용은 주둔 체계가 안정되고 휴양일 설정이 계획화되면서 안정되어 갔다. 각 부대는 정해진 휴양일을 시간대별로 나눠 하급 부대로 하여금 ‘인솔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위안소 출

입을 허가했으며, 사병과 하사관의 이용 시간이 구분되었다. 위안소 이용 방식은 ‘내무규정’과 연동되어 정식 규정으로 제정되었으며, 전투 및 훈련에 따른 위안소 이용의 변동은 회보나 일일명령과 같은 부대의 공식 명령을 통해 전달되고 수행되었다. 위안소의 개설과 운용은 철저하게 ‘툽다운’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한편 야전중포병 제14연대가 제정한 위안소규정은 두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를 제시해 준다. 먼저 41개조라는 세세한 항목과 위안소 개설에 관한 규격화된 서류 등을 통해 중지나방면군(혹은 중지나과전군) 차원에서 위안소규정의 ‘매뉴얼’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이다. 또한 위안소규정은 상하이현에서 특수위안소의 영업 허가를 사영사령관이 쥐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점령지를 총괄하는 부대가 주둔 태세 구축과 연계하여 위안소의 존재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보병 9여단 소속 보병 제11연대와 하급 부대의 진중일지는 중국 지역에서 만들어진 위안소 체계가 동남야로 확대되어 가는 실태를 드러내준다. 위안소 이용을 포함한 외출과 주둔의 원칙은 주둔(혹은 주류)규정 속에 일체화되어 수행되었다. 아울러 외출에 관한 규정이 위계적으로 정립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7중대의 주류규정 위에는 상급부대인 11연대의 ‘스름반 주류규정’이 있었으며, 별도로 제5사단이 설정한 ‘말레이 주류간 외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였다.

이상을 통해 위안소에 관한 간단하고도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위안소의 이용과 관리는 처음부터 부대의 운용이라는 틀 속에서 계획되고 실행에 옮겨졌으며, 병사들은 외출을 통해 부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식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위안소를 출입하였다. 작전요무령에 따라 부대가 주둔 태세에 들어가면 군대내무서를 근거로 외출이 이루어지는데, 그 외출은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장교를 포함한 병사와 위안소·위안부를 연결시켜 주는 바퀴 말하면 일본군 성노예 시스템을 발생시키는 공식적·제도적 행위였다.

참고문헌

- 김정일 외, 2017, 『동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김윤미, 2015, 『일제시기 일본군의 대륙침략 전쟁과 부산의 군사기지화』,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정애, 2009, 「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관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연옥·김귀옥 외, 2017, 『식민주의, 전쟁, 군‘위안부’』, 선인.
- 송연옥·김영 저, 2012, 박해순 역, 『군대와 성폭력』, 선인.
- 안병직, 2013,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숲.
- 윤명숙, 2015,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 吉見義明, 1992, 『從軍慰安婦資料集』, 大月書店.
- _____, 1995, 『從軍慰安婦』, 岩波新書.
- 吉見義明·林博史, 1995, 『共同研究 日本軍慰安婦』, 大月書店.
- 鈴木裕子, 2006,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2, 明石書店.
- 林博史, 1993, 「マレー半島の日本軍慰安所」, 『世界』3月號, 岩波書店.
- _____, 1993, 「マレー半島における日本軍慰安所について」, 東學院大學經濟學部
一般教育論集自然·人間·社會』15號(1993年 7月).
- 倉橋正直, 2010, 『從軍慰安婦と公娼制度－從軍慰安婦問題再論』, 共榮書房.
- 千田夏光, 1973, 『從軍慰安婦－“聲なき女”八万人の告發』, 雙葉社.
- 秦郁彦, 1999, 『慰安婦と戦場の性』, 新潮社.

진중일지 속의 부대 운용과 일본군 위안소 제도

하중문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일본군 위안소의 개설과 운용이 해당 부대의 작전 및 주둔 태세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으며, 위안소가 해당 부대의 실질적인 부속 시설이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데 있다. 아울러 일본군이 위안소를 출입하는 행위는 ‘외출’에서부터 비롯되는 공식적인 군사 행동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진중일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진중일지는 중대 이상의 부대가 동원된 날부터 복원된 날까지 날마다 작성해야 했던 일지 형식의 기록물을 가리키며, 거기에는 부대의 움직임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이 망라되어 있다. 진중일지를 활용함으로써 점으로만 존재했던 위안소 관련 자료를 연결하여 전시 성폭력의 실체를 선으로 면으로 구체화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해 위안소에 관한 간단하고도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위안소의 이용과 관리는 처음부터 부대의 운용이라는 틀 속에서 계획되고 실행에 옮겨졌으며, 병사들은 외출을 통해 부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식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위안소를 출입하였다. 외출은 병사와 위안소·위안부를 연결시켜 주는 바퀴 말하면 일본군 성노예 시스템을 발생시키는 공식적·제도적 행위였다.

주제어: 위안소, 일본군 '위안부', 진중일지, 작전요무령, 군대내무서, 휴일, 외출, 주둔, 만주사변,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

ABSTRACT

Japanese Military Actions in War Diaries and the Comfort Station System

Ha Jongmoon

This paper highlights close connections betwee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comfort stations with military actions, and identifies that these stations were part of the facilities of a specific troop. Thus, this paper focuses more on the comfort stations than the comfort women.

This paper is based on a detailed analysis of war diaries (陣中日誌, jinchunisshi) as an evidence to confirm the fact that the comfort stations were ancillary facilities of the military. War diaries refer to daily records which were written by units higher than company throughout the mobilization period and contain general related with military operations.

Operations of the comfort stations complied with every troop actions such as stationing, operation and drill. In this respect, the comfort stat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ivilian brothels, which were sought by soldiers during their personal leaves. Soldier's

leave was an official and institutional act, which connected the soldiers to the comfort stations and the comfort women—in other words, these stations were the product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Keywords: comfort stations, comfort women, war diarie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tanding order, rest day, leave, stationing, Manchurian Incident, Sino-Japanese War, Asia-Pacific War

3·1운동에서

민주주의 시민문화 원류를 찾다

-『오늘과 마주한 3·1운동-민주주의의 눈으로 새롭게
읽다』, 김정인, 책과함께, 2019

김형목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I. 한국 근대사에서 민주주의 기원을 밝히다
- II. 전국화와 일체화로 시민사회에 부응하다
- III. 3·1운동의 올바른 '역사상'에 주목하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한국 근대사에서 민주주의 기원을 밝히다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한국 근현대사 흐름 속에서 찾고 있다.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성과물은 역사학계에 ‘신선한’ 충격파이자 자극제였다. 첫 번째 성과물은 공노비 해방이 시작된 1801년부터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1919년까지 다루었다. 제목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시대의 건널목, 19세기 한국사의 재발견』(책과함께, 2015)이다. 세도정치, 굴욕적인 개항, 외세의존적인 지배층의 무능, 강제병합에 의한 식민지화 등 기존의 부정적인 역사인식과 달리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하였다. 즉 19세기 역사를 자생적인 민주주의 사상의 발전과 더불어 서구 민주주의가 수용된 것으로 보면서 어떻게 양자가 결합하였는가에 주목하였다. 김옥균 등 개화파와 전봉준 등 인민의 만남을 주선하려는 의도가 이를 반증한다. 이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이나 맹아를 찾으려는 노력과 맞물려 있었다.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로 한국 근대사를 정리한 역작이라는 평가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¹

저자는 시계열적인 서술방식이 아니라 주제, 즉 개념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인민, 자치, 정의, 문명, 도시, 권리, 독립 등이 주요 의제다. 이는 우리 역사의 진전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 동시에 당대사 이해에 크게 도움을 준다. 역사적인 사실을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벗어나, ‘현재와 대화’할 수 있는 역사 현장으로 다가서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

1 박찬승, 2016,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로 본 한국근대사—김정인,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책과함께, 2015)—, 『역사와현실』 99, 283·289쪽; 최우석, 2017, 「민주주의의 맹아를 찾아서—김정인(2015),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시대의 건널목, 19세기 한국사의 재발견』, 책과함께, 『인문논총』 74-3, 368쪽.

은 서술방식이나 내용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² 그러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역사에서 어떻게 진전되는가를 파악한 노력은 높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복잡한 이념적 편향성에 의한 잣대는 역동적인 한국사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다.

지은이는 제2탄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해방 정국까지를 다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민주주의 개념으로 독립운동을 새로 쓰다』(책과함께, 2017)를 출간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학계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는 성실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외형적인 민주화와 달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폐’가 저자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으리라 짐작된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래 거리로 뛰어나와 촛불을 들었다. 가히 시민혁명이 전국을 강타하는 순간을 맞았다.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 현장에 동참하거나 바라보면서 저자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였으리라. 식민지배라는 암울한 상황에서 독립과 독립운동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새삼 되묻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자치, 주체, 권리, 사상, 정의, 연대, 해방을 주요 개념으로 한 목차 구성에는 시대 상황을 바라보는 저자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독립운동 관련 인물, 단체, 사건, 운동, 사상 등은 주요 키워드였다.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역사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조화로운 서술은 이러한 역사인식에서 기인하였다.³

2 박찬승, 2016, 위의 글, 287-289쪽에서 다섯 가지로 지적하였다. 이는 학문적인 심화를 위한 제언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함께 열정적인 연구로 점차 극복되리라 생각된다.

3 홍종욱, 2017, 「김정인 지음,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민주주의 개념으로 독립운동을 새로 쓰다』(책과함께, 2017)」, 『역사교육』 143.

II. 전국화와 일체화로 시민사회에 부응하다

2019년은 3·1운동 일어난 지 꼭 100주년을 맞이한다. 그 결과로 중국 상하이에서 최초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도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나 학술회의 등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되었거나 현재 진행형이다. 2015년 광복 70주년과 너무나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오늘이다.

지은이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현재 시각에서 바라본다. 이미 19세기 초반부터 해방까지 내재적인 발전론과 서구 사조의 유입에 의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담은 두 권의 저서를 이미 내놓았다. 서구 이론에 경도되는 것을 지양하는 동시에 일국사 중심에서 탈피한 역작은 많은 호평을 받았다. 시간적이거나 계열적인 흐름에 의한 서술이 아닌 개념화에 의한 역사 서술은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저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역사의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지나간 과거사가 아닌 오늘의 관점에서 3·1운동을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이 특징적이다. 저자는 저서를 발간하게 된 배경이 ‘자기와의 약속’임을 언급하였다.

3·1운동 100주년을 기약하며, 앞으로 민중의 삶과 문화의 역동성을 형성화하는 3·1운동 연구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해본다. 90주년의 시점에서 새삼 기억과 기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박제화되어 관성적으로 재생되고 있는 3·1운동에 대한 기억과 기념을 해체하고 민중적 시선에서 3·1운동의 기억을 그야말로 생생하게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⁴

4 김정인, 2009, 「기억의 탄생: 민중 시위문화의 근대적 기원」, 『역사와 현실』 74, 172쪽.

결국 10년 전 약속은 민중적 시선에서 3·1운동 기억을 재구성하였다. 저자에게 민주주의 관점에서 3·1운동은 근대와 현대로 가를 만큼 획기적인 ‘분기점’이었다. 전국적으로 만세시위가 한창이던 1919년 4월 11일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는 문구와 민주주의 논리로 쓰인 <독립선언서>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⁵ 공간, 사람, 문화, 세계, 사상, 기억이라는 개념을 화두로 삼았다. 공간은 그동안 분단의식에 가려진 북부지방이 3·1운동 전국화를 도모하는 거점이었음을 밝혔다. 특히 문화에서는 저항문화의 기원인 비폭력 평화시위로서 만세시위와 한국인만의 독특한 연대문화, 그리고 인권 변론을 통한 법정투쟁에 주목하였다. 각 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공간’은 ‘북부, 그리고 도시에서 발화하다’라는 부제를 달았다. “3·1운동을 잉태한 서울의 3월 1일 시위, 3월 1일의 만세시위: 평양, 진남포, 선천, 의주, 원산, 안주, 7개 도시 만세시위의 의미, 만세시위의 발상지-북부지방, 도시가 시위를 촉발하다, 시위가 농촌으로 번지다” 등을 다루었다. 이른바 민족대표 33인에 의하여 서울에서 만세시위운동이 계획·추진되었다. 그럼에도 3월 1일 만세시위는 평양을 위시하여 북부지역 6곳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이는 전국화와 일원화로 발전·계승되는 기반이었다. 신앙공동체와 생활공동체에 기반한 만세시위는 주민들에게 일체감과 연대감을 심화시킨 요인 중 하나였다.

북부지역 만세시위에 주목한 점은 분단사관을 극복하려는 저자의 역사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곳 만세시위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인 사실과 달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대한제국기 ‘대부흥운동’으로 개신교세는 널리 확산되었다. 3월 중순 이후 만세시위가 이들에 의하여 파급·확산될 수 있었던 점에서 이들 지역에서의 만세시위는 밀거름이나 마찬가지로였다. 더욱이 북부지역은 개신교도뿐만 아니라 천도교와 연합한 만세시위도 적지 않았다. 도시에서 시작된 연대

5 전상숙, 2017, 「“민주공화국” 건설 지향의 분화·갈등에 내재한 식민지 국가와 민족문제」, 『한국인의 근대 국가관 ‘민주공화국’ 재고』, 도서출판 선인 참조.

에 의한 연합시위는 신분이나 계층을 떠나 평화적인 만세시위문화를 창출하는 에너지원이었다. 철도연선을 따라 동심원을 그리며 농촌지역으로 퍼져나가 독립분산적인 차원을 벗어나 성숙하고 평화적인 시위문화도 일구었다. 이와 같은 자율적인 만세시위는 참여자들에게 자긍심과 자기존재성을 각성시켰다. 저자는 특히 농촌지역으로 만세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폭력적인 투쟁 양상으로 귀결되었다는 기존 논리는 역사적인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유력한 증거로 만세시위 동안 일본인에 대한 인명살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비폭력화와 일체화는 자유와 평화에 근거한 민주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증거라고 강조하였다.

제2장 ‘사람’에는 ‘스스로 나서 함께 싸우다’라는 부제로 구성하였다. “천도교-주류로 부상하다, 학생-역사에 등장하다, 새로운 풍경-여학생의 만세시위, 만세시위에 나선 노동자와 농민, 누구든지 조직하고 선언한다”라는 키워드로 상황을 설명하였다. 민족종교로서 대중적인 기반을 가진 천도교주 손병희를 비롯한 교단 지도자들은 종파를 초월하여 주도면밀하게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다. 천도교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시기부터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려는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지도자들은 중앙교당 설립을 구실로 ‘성미헌납’을 독려하는 한편, 막대한 독립운동자금을 비밀리에 모금하였다. 천도교계를 대표하는 최린과 오세창 등은 기독교계와 불교계 인사들과 접촉하여 행동 통일에 합의하였다. 동시에 독립선언서 인쇄는 물론 국외 항일 세력과의 연대도 모색하는 등 일체화에 만전을 기하였다.

학생들은 만세시위운동에서 전위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서울 시내는 물론 지방 중등학교 재학생들은 종교계 인사를 비롯한 지역명망가 등과 빈번한 접촉을 통하여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지하신문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주민들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특히 여학생들 참여는 새로운 시위문화를 창출하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깨우는 존재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자극을 받은 노동자나 농민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노동자들은 민족적인 멸시와 학대에 맞서 파업하거나 동조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임금 인상, 근로환경 개선, 민족차별 철폐 등과 언론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요구하였다. 이 소중한 경험은 1920~193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등 부문별 민족해방운동을 진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농토에서 배제된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향촌공동체적인 생활원리가 만세시위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들은 도로 공사나 치수(治水), 사방(砂防) 사업 등에 강제로 동원되었으나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농민들은 인근 야산에 올라가 햇불시위로 상호간 연대감을 표출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리하여 햇불시위는 조국독립을 염원하는 시위문화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만세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머슴이나 기생 등도 동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약 80일간의 만세시위에서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진기록을 남겼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던 거지나 백정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남 진주의 걸인동맹단이나 백정 부인들의 참여는 시위군중에게 일체감을 느끼게 하였다. 1920년대 신분해방운동인 형평운동은 만세시위 참여라는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민족해방운동의 주요 영역이 되었다. 상호간 연대감은 전국화와 일원화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었다.

제3장 ‘문화’에는 ‘저항문화의 기원을 이루다’라는 부제를 붙였다. “3·1운동의 발명품-만세시위, 지하신문-3·1운동을 복돋우다, 만세시위 확산의 수단-등사기, 시위의 신문화-태극기와 애국가, 연대의 문화가 수립되다, 독립투사를 위한 법정투쟁이 시작되다”라는 소제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세시위에 당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인적 수단이 총동원되었음을 의미한다.

부당한 간섭이나 억압에 대한 반발은 연대적인 저항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저항투쟁을 전개할 수 있게 하였다. 3·1운동은 단순한 만세시위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자유와 평화를 요구하였다. 각지 여건을 고려한 독립선언서가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활동가들은 대동단결과 투쟁의지를 복돋우기 위하여 다양한 지하신문을 발간·배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고발하거나 일제의 잔학상을 폭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한국인에게 만세시위 소식을 알려주는 ‘전령사’였다. 지하신문에는 “독립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일로서 모든 동포는 이에 적극 참여하자”라는 내용을 담았다. 다양한 지하신문들은 시위군중에게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국외 항일운동 세력의 동향을 비롯한 새로운 소식들을 알렸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는 3월 7일부터 만세시위를 보도하였으나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무차별적이고 폭압적인 일제의 탄압을 비난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7월에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하면서 한국어 신문이나 잡지 발간을 허용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맞물려 있었다.

등사기를 활용한 격문 배포와 독립선언서 인쇄는 일시에 군중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시위문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대량으로 인쇄된 태극기와 애국가는 시위군중에게 일체감을 북돋우는 한편, 구심체로서 기능하였다. 지하신문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구호를 적은 전단·포스터·낙서, 시위계획이나 투쟁방침을 알리는 격문·사발통문, 관리의 사퇴나 일본인 퇴거를 요구하는 경고문·협박문 등의 유인물이 사람들을 거리로 이끌었다. 서울에서는 학생에 대한 압제를 고발하는 〈우리 동포여〉, 자치론을 배격하고 완전독립을 이루자는 〈경고문〉 등 각종 유인물도 등장하였다. 전북 금산군(현 충남 금산군)에는 다음과 같은 격문이 뿌려졌다.

바야흐로 세계열강은 각각 적극적인 행동으로 성립하고 있다. 아, 조선이 건국 4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문명의 자격과 인의의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강제정치에 온갖 신산고초를 맞보고 있는 연유는 무사안일을 탐하고 우매한 사상과 매국적자가 발호함에 있으니, 동포 청년들은 이들 간흉한 적자의 행동을 분반지 말고, 인도를 주창하여 압제정치하의 금수생활을 모면하고 독립적 자유 활동을 하겠다는 뜻이 있는 동포는 오늘 하오 2시 반 장터로 나와 함께 행동하자.⁶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독립운동사』 3, 550쪽.

유인물 내용은 대단히 선동적이었다. 시위운동이 확산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단체도 조직되었다. 대구에서 조직된 해성단의 경우, 10명의 단원으로 인쇄책·배달책·출납책 등의 조직망을 만들어 선전물 11종 2천여 매를 인쇄·배포할 정도였다. 등사기의 빠른 인쇄 속도는 대량의 독립선언서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 만세시위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근대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에 있는 등사기는 만세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도구로서 주목을 받았다.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애국가와 종소리나 휘날리는 태극기도 만세시위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개성에서는 뒷산에 태극기를 꽂아 놓고 밤마다 봉화시위를 벌였다. 추풍령역에서는 3월 말 30여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독립의 상징인 태극기를 앞세운 시위대가 일본 지배의 상징인 일장기를 불태우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다양한 창가인 독립운동가 등도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연대문화라는 시위방법의 진전은 이러한 인식과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인 변호사들은 독립운동가들과 더불어 법정투쟁을 전개하였다. 변호사가 처음으로 세상의 이목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3·1운동 재판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민족대표 33인 중 31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보안법과 출판법 적용은 불법이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은 식민지배에 대한 정면 도전장이나 마찬가지였다. 허헌 변호사는 7월에 공소불수리론을 제기해 커다란 파란을 일으켰다. 3·1운동 이후 한국인 변호사의 독립운동가 변호는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변호사들은 심문 과정에서 벌어진 고문과 인권 유린 등을 문제삼았다. 이러한 연대투쟁은 부분별 영역에 그치지 않는, 공동체적인 목표를 향한 힘찬 진군이었다.

제4장 ‘세계’에는 ‘만세시위를 바라보는 세 개의 눈’이라는 부제가 있다. “서양 열강이 주목한 제암리 학살사건, 5·4운동 발발의 자극제가 되다, 일본의 눈에는 폭동이었다”라는 관점에서 3·1운동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주지하듯이 제암리 학살사건은 서구인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요인을 안고 있었다. 3월 31일 발안리 장날에 만세시위대는 소학교, 우편국, 면사무소 등을 습

격하였다. 보복에 나선 일제 군인들은 발안리, 수춘리, 화수리 등지를 방화하거나 다치는 대로 주민들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주민들을 제암리교회에 모이도록 회유하였다. 교회를 포위한 군인들은 창문으로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는 동시에 쪼더미에 석유를 끼얹어 불을 질렀다. 이날 학살로 29명이나 사망하는 ‘대참극’이 벌어졌다. 소식을 접한 외교관이나 선교사 등이 비밀리에 현장으로 달려와서 실상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비극적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본국으로 전송하여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렸다.

한편 중국인들은 파리강화회의를 지켜보며 국망의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들은 한국의 절대 독립을 강조하는 한편,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을 맹비난하였다.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신보》는 확인되지 않은 끔찍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폭력 평화시위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일제가 한국 민중의 무기 소지를 엄금함으로써 한국인은 맹수를 만나도 일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한국 민중은 모두 맨손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 중에는 단지 구호와 전단 살포만 있었을 뿐 폭력행위는 없었다.⁷

이처럼 중국인 지식인과 학생 등은 중국 상황과 혁명운동을 성찰하는 차원에서 3·1운동에 관한 많은 논설을 발표하였다. 3·1운동에 감동한 중국인은 5·4운동을 일으켰다. 2개월 동안 22개 성과 200여 개 도시로 파급되면서 전국을 뒤흔들었다. “조선인은 조선이 독립될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외쳤다. 지금 중국은 나라가 존망에 처해 있고 영토가 뺏기는 긴급한 처지에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원하려는 굳은 결심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20세기의 인간이 아니라 망종(亡種)이다.”

반면 일제는 언론을 통하여 3·1운동의 폭력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일본

7 강수옥, 2016, 「근대 중국인의 한국 3·1운동에 대한 인식과 5·4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9, 134쪽에서 재인용.

인 피해를 과장하여 보도하면서 조선인의 불법성과 야만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조선인들을 선교사들의 꾀임에 속아 부화뇌동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손병희는 ‘혹세무민하는 무도한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무력 진압에 대한 옹호는 제암리 학살사건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일본인 지식인들 대다수도 이러한 보도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제5장 ‘사상’에는 ‘민주주의, 평화, 비폭력을 외치다’라는 부제를 붙였다. “독립선언서-민주주의를 말하다,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 민주공화국의 탄생, 독립이 곧 평화다, 비폭력의 저항정신이 빛나다”라는 내용으로, 3·1운동을 기점으로 민주공화제를 탄생시킨 역사적인 의미를 조명하였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는 독립·자주·인류 평등·생존의 정당한 권리 등 민주주의의 가치로 독립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이른바 민족대표들은 독립운동을 일으킨 이유를 민주주의를 박탈했기 때문이라고 응수하였다. 이후 국내외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이 염원의 불길처럼 국내외로 확산되는 가운데 탄생하였다. 이는 강제병합으로 대한제국이 역사 무대에서 사라진 직후부터 새로운 정체가 모색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리하여 대한제국의 신민이 아닌, 민주공화제 속에서 국민(시민)이 역사 주인공으로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는 초석이 되었다. 물론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는 잠시도 중단되지 않았다.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8년간 떠돌아야 하는 운명이었다. 상하이를 떠난 임시정부는 항저우, 난징, 광저우, 류저우, 창사, 충칭에 안착할 때까지 기나긴 시련기에 직면하였다. 이 와중에도 임시정부 요인들은 중국과 국제적인 연대를 통하여 독립군 양성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3·1운동과 상하이의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을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마침내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이념을 초월한 좌우 합작에 의해 임시정부가 확대·개편될 수 있었다. 또한 카이로회담에서 한국 독립도 인정받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마지막 보론 ‘기억’은 ‘교과서로 익힌 상식을 짚어보다’라는 부제에 “교과서로 배운 3·1운동, 3·1운동의 배경, 3·1운동의 전개, 3·1운동 의의, 북한은 3·1운동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3·1운동에 대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 천편일률적이라고 비판하였다. 해방 이후 만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3·1운동에 대한 인식은 각자의 경험이나 역사교육을 통하여 획일적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서 3·1운동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주제는 향후 남북통일을 위하여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한다.⁸

필자는 저자의 3·1운동에 대한 관점에 동감한다. 물론 개념에 의한 분류에는 약간 의견이 다르다. 만세시위에 조직적인 주민들 동원은 종래 향촌공동체나 신앙공동체에 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장 많은 시위군중이 모인 강화도는 신앙공동체에 의하여 섬마을 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경우다.

III. 3·1운동의 올바른 ‘역사상’에 주목하자

3·1운동의 직접적 원인은 중앙에서는 무단통치·경제적 침략, 그리고 세계사조로서 월슨의 민족자결의 원칙, 광무황제 승하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에서는 농민에 대한 경제적 약탈과 지방행정상의 문제, 그리고 광무제 승하에 대한 신민적(臣民的) 통분과 독살설에 대한 민족감정의 폭발 등이 원인이었다. 이는 1919년 6월 각도 헌병대장 회의석상에서 강원도 헌병대장이 지적한 바와 같다. 교통이나 지리 조건과 민도(民度) 등을 생각하면, 월슨의 자결주의니 헌정운동이니 하는 세계사적 조류가 들어오기에는 그 기반이 미약하였다.

일제의 경제적 착취와 지방행정상의 문제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으로

8 홍종욱, 2018, 「북한 역사학의 3·1운동 인식-주요 통사류의 관련 서술 분석-」, 『서울과 역사』 99 참조.

나눌 수 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을 끝내고 경제 수탈의 기초를 완성한 것, 또 그에 따르는 문제들이 당시 우리나라 지방경제의 일반적인 문제였다. 연초세도 농민에게 가혹한 수탈이나 마찬가지로였다. 연초세법은 원래 1909년에 공포·시행하다가 1914년 전법을 폐지하고 〈연초세령〉을 공포하였다. 경작세·판매세 외에 제조세와 소비세 신설은 과중한 부담이었다.

연초 경작의 경우에 일본인이 지주로서 연초 재배를 하며 우리 농촌 경제를 침식하였다. 더욱이 아편을 재배하여 농업노동자를 착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초 재배가 광초(光草)일 경우라도 다른 농작물에 비하여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아편일 경우에는 재배특권(栽培特權)이나 공해(公害) 문제를 야기시켰다. 일본인의 직접노동에 의한 재배가 아니라 한국인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기업적 농업 형태를 띠면서 이에 따른 저임금 등의 이유로 주민들과 충돌이 잦아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었다.⁹

3·1운동이 확산되는 시기는 신작로를 만들고 있던 때였다.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으로 혹사시켰는데 이조차 부역으로 메꾸는 경우가 많았다. 도로공사에서 각 동리별로 담당구역을 정하여 부역시켰으니 농민들에게 실로 과중했다. 고조된 반일감정을 헌병·경찰은 폭정으로 억압·탄압하였다.

3·1운동은 삼시간에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서울과 북부지역에서 시작된 시위운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투쟁 양상도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인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사적 차원에서 3·1운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전개된 점이다. 3월 1일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른바 민족대표와 연계된 지역은 3월 1일부터 곧바로 만세시위운동으로 나타났다. 반면 항일운동이 미진한 지역은 4월 중순

9 김형목, 2018, 「전국 최대 규모의 강화 3·1운동이 천지를 진동하다」, 《중부일보》 2018년 11월 2일자.

경에야 나타나는 등 지역적인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수원 지역 만세시위운동을 주동한 김세환(金世煥, 1889~1945)의 회고는 이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던져준다. “본래 합병을 싫어하였으나 대세에 어찌하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나도 독립운동에 진력하려 하였더니, 이번의 전쟁(제1차 세계대전-필자주)이 처음에 민족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으나 미국이 전쟁에 참가한 뒤에는 군국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에 대한 평화주의의 전쟁이니까 우리도 독립을 하자 함이오”라고 회고하였다. 그는 3·1운동 준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서 이미 2월 말경에 상업강습소에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병헌(李炳憲, 1870~1940)도 천도교 수원교구에서 활동하다가 상경하여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 교정과 운반을 담당하였다. 시위는 시기적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전체 시위 중 90% 이상이 이때에 전개되었다.

둘째는 다양한 계층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청년·학생·종교인·교사·유림·노동자·농민과 심지어 기생까지 가세하는 양상이었다. 수원·개성·안성·진주·대구·평양 등지는 기생들이 독자적인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경북 김천 개령의 경우에는 머슴들에 의한 햇불시위가 있었다. 물론 천도교와 기독교 지도자와 교인 들의 참여도 많았다. 초기 조직화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중등교육기관 학생들은 물론 서당 생도나 야학생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지방관리나 이장 등도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정도였다.¹⁰

셋째는 투쟁 양상이 3월 중순 이후 격렬하게 전개된 점이다. 초기 도시 중심으로 전개된 만세시위는 비교적 평화적이었다. 농촌지역으로 만세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점차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지세·호세를 비롯한 지세부가세·시장세·도장세·연초세·주세·학교조합비·기타 각종 조합비 등 조세 부

10 이윤상·이지원·정연태, 1989, 「3·1운동 전개양상과 참가계층」, 『3·1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이정은, 1993, 「3·1운동기 학생층의 선전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담 증가와 주재소를 통한 주민 탄압은, 이에 대한 폭력적 저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¹¹ 식민통치기관인 면사무소·경찰서·주재소·우편소·금융조합 등 관공서는 공격 대상이었다. 수원 제암면 화수리주재소 가와바타[川端] 순사에 대한 살해나 안성 원곡·양성 면민의 면사무소와 우편소 방화 등은 식민지 한국인의 분노를 그대로 보여준다.¹²

넷째는 향촌공동체에 의한 주민들 동원이었다. 조선 후기 이래 마을 단위로 조직된 두레나 계 등이 변혁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로 변화하였다. 연락을 받은 이장이나 구장 등은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다. 만약 시위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주민들의 단결력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현실에 대한 실상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요인이었다.¹³ 심화된 현실인식은 이후 민족해방운동을 추진시키는 역동적인 원천이나 마찬가지였다. 가열찬 활동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소산이었다.

마지막으로 일제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보복행위이다. 만세시위운동에 당황한 일제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체포 과정은 물론 심문 과정에서 옥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안성 원곡·양성의 경우에는 600여 명을 체포하여 200명을 법정에서 세웠다. 화성 제암리에서 3·1운동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도 자행하여 외국인들까지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는 저들의 당황함을 은폐한 채 두려움과 공포로서 시위군중을 억압하려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11 정태현, 1989, 「1910년대 식민농정과 금융수탈기구의 확립과정」, 『3·1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12 김선진, 1983,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3 이정은, 2009, 「향촌공동체의 전면적 투쟁」, 『3·1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조선표류일기』의 회화자료에 대하여

이근우 |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19세기 초 조선의 풍습
- III. 송환 해로
- IV. 조선의 포구
- V. 맺음말



I. 머리말

1819년 충청도 비인현(庇仁縣) 앞바다에 이양선이 나타났다. 연도를 거쳐 마량진의 안파포로 예인된 배는 일본 규슈 남단에 위치한 사쓰마번[薩摩藩, 현재의 가고시마]에 속한 관선이었다. 이 배에는 사쓰마번의 사무라이 3인을 비롯하여 도합 25인이 타고 있었다. 3인의 사무라이 중 한 명이 야스다 요시카타[安田義方]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한문으로 필담을 할 수 있고 그림에도 능했다. 야스다는 필담으로 조선 관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한편, 자신이 본 것을 그림에 담았다. 그가 주고받은 필담과 소회 및 그림을 담은 책이 바로 『조선표류일기(朝鮮漂流日記)』다.¹

이 자료에 대하여 이미 일본에서 그 개요와 의의를 소개한 책자가 간행된 바 있다.² 이 글에서는 주로 『조선표류일기』의 그림, 즉 회화자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조선표류일기』에는 다양한 그림이 실려 있다. 인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기물, 자신이 향해한 경로, 배가 머문 포구까지도 그림으로 남겼다. 19세기 초 당시 조선의 모습을 활사(活寫)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 회화자료 중에서 조선의 풍습에 관한 새로운 내용, 야스다 일행이 충청도 마량진에서 부산의 우암포에 이르는 해로, 그리고 중간에 머문 포구의 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일본 神戸大學 부속도서관 住田文庫에 유일본으로 소장되어 있으며, 전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공개하고 있다(www.lib.kobe-u.ac.jp/directory/sumita/5B-10/index.html).

2 池内敏, 2009, 『薩摩藩士朝鮮漂流日記』, 講談社選書×チエ447.

II. 19세기 초 조선의 풍습

야스다는 관찰력이 예리하였다. 단지 지세나 풍경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인물들의 얼굴 모습과 복장, 관인 복장의 차이점, 일상적인 풍습까지 빠짐없이 살피고 자세하게 그림으로 남겼다. 문인화의 전통이 강한 조선의 양반이었다면 한 폭의 산수화로 그렸을 대상을 도화원에 속한 화원이라도 되는 양 정밀하게 묘사한 점이 『조선표류일기』의 특징이다. 『조선표류일기』의 전체 분량은 표지와 속표지를 포함해서 315장이고, 그중에서 그림은 37장이다. 표지를 제외하면 287장 중 37장으로 전체 분량의 12.9%에 해당한다.³

〈표 1〉 『조선표류일기』의 본문과 그림 비율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계
전체	51	41	45	43	40	48	47	315
내용	47	37	41	39	36	44	43	287
그림	7	3	1	3	9.5	4.5	9	37
비율(%)	14.9	8.1	2.4	7.7	26.4	10.2	20.9	12.9

조선을 그린 그림은 7월 3일에 시작된다. 그 날 동틀 무렵 야스다가 탄 배는 여러 날의 표류 끝에 큰 섬 입구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닻을 내렸다고 한다.⁴ 야스다 일행이 운항이 불가능해진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불태우고, 대신 조선이 제공한 배를 타고 부산을 향해 출발할 때까지 머문 마량진 안파포 일대를 그린

3 그래픽으로 제공되는 좌면과 우면을 아울러 1장으로 계산하였다. 좌우면을 각각 언급할 때는 25장의 우면, 좌면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1〉은 장수만을 따진 것이고 그 속에 그려진 畫題로 따지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한 면에 2개 이상의 畫題를 다룬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4 『조선표류일기』 1권 A118~10(파일번호 5B10-1018 왼쪽 면과 5B10-1019 오른쪽 면). 『조선표류일기』에는 책 자체에 도서정리 과정에서 부여된 면수가 있고, 그래픽 파일의 일련 번호가 있다.

그림이 당시의 조선을 보여주는 첫 그림이다. 이어서 일본인과 가장 눈에 띄게 구별되는 조선인들의 상투와 의관을 그렸다. 조선은 유교적인 신체관, 즉 우리의 몸과 터럭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므로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출발이라는 관념에 입각하여 머리카락조차 함부로 자르지 못했다.⁵ 그래서 상투를 틀고 망건으로 머리카락을 고정하고, 그 위에 다시 탕건을 썼다. 이에 비해 일본은 앞머리를 깎고 뒷머리를 모아 올렸다. 야스다가 조선의 상투와 망건·탕건에 주목한 것은, 머리카락의 형태야말로 두 문화를 나누는 중요한 지표였기 때문일 것이다.

제25장의 우면은 <조선관인말두도(朝鮮官人抹頭圖)>로서 말두(抹頭), 즉 망건을 그린 것이고, 좌면은 사모(紗帽), 즉 탕건을 그린 것이다. 망건은 말총으



그림 1 『조선표류일기』 조선인의 상투와 탕건

5 『孝經』「開宗明義」,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로 만드는데 귀 위에 옥환이 있는 것은 비인태수(윤영규)가 쓰는 것이라고 하였다. 옥환은 다른아닌 관자다. 한편 탕건에 대해서는 관인 상하가 모두 망건 위에 쓰며, 귀 위에 금환이 있는 것은 고군산진 가선대부가 쓰는 것이고, 그밖에는 관인이라고 하더라도 반지처럼 생긴 낫쇠로 고리를 쓴다고 하였다.

야스다의 관심은 다시 관인들이 갓을 갖추어 쓴 모습으로 옮겨갔다. <한인 대관도(韓人戴冠圖)>는 비인태수 윤영규의 실제 모습이다. 조선인은 모두 망건 위에 탕건을 쓰고 다시 죽피관(竹皮冠)을 썼는데, 관은 검게 칠했으며 그 가늘기가 마치 천을 짠 것 같았다. 갓끈에는 옥을 꿰었는데, 노란 것은 호박(琥珀) 같고 무늬가 있는 것은 대모(玳瑁) 같다고 하였다(제1권 A1-26 우면). 또 수영우후 최화남(崔華男)을 그렸는데, 이는 관모뿐만 아니라 복장까지 전체 모습을 그린 것이다(제1권 A1-26 좌면). 이 복장은 수영우후를 비롯하여 연막종사, 절충장군이 모두 같으며, 갓끈에 수정을 매달았다고 하였다.

제2권에서는 다시 죽피관, 즉 갓만을 그리기도 하고, 하졸들의 관모를 그리기도 하였다. 조선 관모에 대한 야스다의 관심을 집요하다고 할 정도다. 죽피관, 즉 갓을 아래에서 본 모습을 그렸고, 갓끈이 풀려 있는 상태와 매여 있는 상태도 그렸으며, 갓끈의 재료가 남색으로 염색된 가는 모시라는 점도 밝혀 놓았다(제2권 A2-14 우면). 또한 보리(步吏), 즉 태수 등을 호위하는 하급 관인들의 관모도 자세히 그렸다(제2권 A2-14 좌면). 관의 중앙에 ‘용(勇)’이라는 한자가 쓰여 있고, 관 위의 양쪽에 공작 꼬리깃털을 세웠으며, 뒤쪽으로는 붉은 털이 늘어뜨려져 있다. 이 붉은 털은 코끼리털을 붉게 물들인 것이라고 한다. 관의 바깥은 비단천 같고, 안은 왜단(倭緞)⁶ 같다고 하였다.

또한 ‘졸관도(卒冠圖)’라는 제목으로 갓 위에 공작 깃털을 뒤로 넘긴 것과 갓 옆에 공작 깃털과 붉은 털이 함께 있는 관모를 그리고, 그 정면도도 그려 놓았다. 그런데 그 관모의 모양이 군현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스다 일행은 조선 서해와 남해 연안에서 여러 차례 배를 갈아타고 갔기 때문에 각 지역의

6 『天工開物』 제2권 倭緞. 緞은 일반 비단보다 두껍고 광택이 있는 것을 말한다.

관인들과 접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작깃털과 붉은 털을 사용하는 것은 같지만, 다는 위치나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제2권 A2-15 우면 및 좌면 상도). 또한 겨울에 방한용으로 쓰는 남바위를 ‘모도(帽圖)’라는 제목으로 그렸다(제2권 A2-15 좌면 하도).

관인의 관모와 복장에 관심을 가졌던 야스다는 다시 일반 서민들로 시선을 옮겼다. 서민들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짐을 지고 있는 백성의 모습이다. ‘비부도(卑夫圖)’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물건을 지거나 뭇 때 등에 지는데 대나무로 만든 도구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실제 그림에서도 대나무로 광주리처럼 만든 것을 지고 있다. 흔히 물건을 담아 등에 지는 도구가 지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색다른 자료다.

제3권에 실려 있는 유일한 그림은 <태달죄인도(答撻罪人圖)>로, 죄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모습을 그렸다. 마량진 첨사 이동형의 하인 한 명이 일본인의 빗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문하는 모습 또는 죄를 확인한 후에 태형을 가하는 모습으로 생각된다. 죄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옆에는 첨사 이동형이 앉아 있고, 그 좌우에서 하급 관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죄상을 알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태형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작 깃털과 붉게 물들인 코끼리털 장식을 단 관을 쓰고 있다. 그 밖에도 야스다가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단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장 그림(印章圖)

인장의 재료는 화석(花石) 같다. 인면에는 ‘비인현감지인(庇仁縣監之印)’이라고 새겨져 있다. 조선의 인주 색깔은 누렇고 엷은 붉은색을 띠고 있다. 아마도 인주가 최하품이라서 그런 것 같다.

연초갑 그림(薦匣圖)

연초갑은 쇠로 만들었으며, 금이나 은으로 사감(絲嵌)하였다. 그 측면에 부구정(浮漚釘)이 있어서 누르면 열린다.

담뱃대 그림(煙管圖)

대는 화살대(箭筈)를 닮았고 초화문을 그렸다.

가마 그림(輻圖)

목재이며 겹게 칠했고, 호피로 전체를 걸쳐 덮었다. 앞에는 층계가 하나 있으며 작은 줄을 걸었다. 쌍다리가 이곳에 달려 있다.

일산 그림(蓋圖)

푸른 종이를 사용하고, 그 끝에 푸른 비단을 둘렀다. 그 안쪽으로 보라색 조각 몇매를 늘어뜨렸는데, 그 끝을 가죽으로 둘러싼 것 같다. 자루는 등나무로 장식하였다.⁷

가죽 신발(革履)

그림은 비인태수의 신발이다. 대체로 신발코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버선코가 그곳으로 튀어나온다.

하급 관인 이하는 모두 짚신을 신는다.

버선과 신발 그림(足衣着履圖)

버선의 끝은 부리처럼 생겼다. 버선끈은 발목에서 묶고, 버선은 무릎(跗)에 이른다.

타호

늦쇠로 만들었으며, 남색으로 물들인 가는 모시끈으로 만든 그물로 감쌌다. 변기로도 쓴다.

7 자루의 표면을 등나무 껍질로 감쌌다.

붓통

대나무로 만들고 구리로 고리를 만들었다. 그 속에 붓을 넣는다. 자루 먹은 없고, 먹을 부수어 넣어두고 침을 뱉어 붓끝으로 비벼 글을 쓴다.

동백기름을 먹인 종이 주머니

조선인은 상하 모두 이를 차고 있다. 부싯돌, 쑥 혹은 연초 등을 넣는다.

III. 송환 해로

『조선표류일기』는 야스다 일행이 배를 타고 지나온 경로를 붉은 선으로 직접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섬 사이의 좁은 수로와 주변 풍경까지 함께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 사료적인 가치가 높다. 야스다 일행은 자신들이 타고 온 배가 풍랑 등으로 손상을 입어 운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배를 이용하여 부산까지 가게 되었다. 이때 조선은 체송(遞送)이라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즉 일정한 지점까지 배로 이동한 후, 그 지점에서 다른 배로 옮겨타고 다음 지점으로 가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다. 야스다 일행을 송환하는 방식과 수로상의 거리에 대해서는 『충청병영장계』에 보인다.⁸

8 『各司膽錄』7 忠淸道篇 2. 『忠淸兵營啓錄』“…越海糧段, 前路邑中, 預爲等待供饋之意, 已爲枚移, 而供饋式例, 亦爲膽送爲乎跡, 自本鎮, 距舒川介也召島, 水路爲三十里, 自介也召島, 至全羅道古群山, 爲七十里, 故每名二日糧及饋物, 磨鍊上下爲乎跡. 當日巳時量, 差使員舒川浦萬戶領率發行, 而亦自邑鎮, 多發人船, 指路護送, 轉向舒川浦爲有跡, 虞候當日還鎮是如…”

水路里數

自馬梁鎮, 距舒川郡介也召島, 三十里.

自介也召島, 距全羅道萬頃縣古群山鎮, 七十里.

自古群山鎮, 距扶安縣蝸島鎮, 六十里.

自蝸島鎮, 距靈光郡法聖鎮, 七十里.

自法聖鎮, 距羅州牧芝島鎮一百十里.

여기에 야스다 일행이 머무르고 있던 마량진 안파포에서 동래부까지의 수로 상의 거리가 명기되어 있다. 『조선표류일기』를 확인해 보면, 야스다 일행이 대체로 이 경로를 따라서 체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여정에서는 차이가 난다. 우선 마량진에서 서천군 개야소도를 거쳐 고군산진까지는 서천포 만호인 박태무가 차송관이 되었고, 고군산진부터는 고군산진 첨사 조대영이 교대하였다. 그런데 조대영은 위도진이나 법성진에서 교대한 것이 아니라, 위도를 거쳐 수도(水島)라는 곳에서 지도진 만호 오자명, 임자도 첨사 박국량과 교대하였다. 즉 고군산진 첨사인 조대영이 위도진과 법성진을 거쳐 지도와 임자도 사이에 위치한 수도에 이르러 비로소 박국량 등과 교대한 것이다.

〈표 2〉 회송 과정과 항해 상황

출발지	도착지	거리(里)	운항 일시	직선 운항 거리	호송관
馬梁鎮	舒川郡 介也召島	30	7월 26일 낮 해질 무렵 착	11.3km	舒川浦 만호 박태무
介也召島	萬頃縣 古群山鎮	70	27일 오전 오후 미시	28km	박태무
古群山鎮	扶安縣 蝸島鎮	60 ⁹	8월 2일 진시 정오	27.2km	古群山鎮 첨사 조대영
蝸島鎮	靈光郡 法聖鎮	70 ¹⁰	3일 진시 출발, 해시 경 해상 정박 ¹¹	30km ¹²	조대영

自芝島鎮, 距靈巖郡莞島鎮, 八十里。
 自莞島鎮, 距康津縣馬島鎮, 五十里。
 自馬島鎮, 距長興府鹿島鎮, 一百十里。
 自鹿島鎮, 距樂安郡蛇島鎮, 八十里。
 自蛇島鎮, 距順天府方踏鎮, 一百里。
 自方踏鎮, 距慶尙道古[固]城縣統營, 一百十里。
 自統營, 距東萊府, 一百十里。

- 9 조선의 관인은 고군산에서 위도까지가 50리라고 하였다(『조선표류일기』 6권 23쪽).
- 10 고군산진 첨사 조대영은 위도에서 아침에 출발하여 밤 10시(2경)쯤에 정박한 곳

출발지	도착지	거리(里)	운항 일시	직선 운항 거리	호송관
法聖鎮	羅州牧 智島鎮 ¹³	110	4일 아침 출발, 水島 도착 ¹⁴ 5일 오시 출발, 수도 주변 도착	39km ¹⁵ 수백 m	조대영
智島鎮	靈巖郡 莞島鎮	80	9일 巳時 水島 출발, 신시 팔금도 도착	31.5km	임자도 첨사 박국량 ¹⁶ 智島鎮 만호 오자명
莞島鎮	康津縣 馬島鎮	50	10일 平旦 팔금도 출발, 二家島 착 ¹⁷	(70~80리) ¹⁸	박국량 오자명

까지 150리라고도 하고 200리라고도 하여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하였고, 그 장소 역시 어디인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답하고 있다(『조선표류일기』 6권 29쪽).

- 11 법성진 주변으로 생각된다. 닭 울 무렵에 야스다가 조대영 고군산진 첨사에게 보낸 편지에 대하여 해 뜰 무렵 답신이 왔고, 또 조선 측에서 쉽게 조대영과 연락이 된 점, 또한 對岸의 여러 곳에 불을 피워 올렸다고 한 점을 생각하면, 그 일대의 중심적인 구역이자 육지에 속한 지역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12 위도와 법성포 앞바다 사이의 직선거리다.
- 13 『충청병영계록』에는 芝島鎮이라고 되어 있으나 智島鎮이 옳다.
- 14 『조선표류일기』에서는 水島라고 하였으나, 현재 임자도와 지도 사이에 있는 수도는 항해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 우선 임자도와 지도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굳이 수도에 정박했다는 점이 의문스럽고, 또한 수도를 출발하여 30리 정도를 가서 비로소 좁은 해협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 지도가 있다고 하였으나(『조선표류일기』 제7권 7쪽), 수도와 지도진 사이는 15리 정도에 불과하고, 수도를 나서면서부터 좁은 해협을 이루고 있다. 수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15 일본 측 배사람은 8월 3일 밤에 정박한 곳에서 4일에 도착한 곳까지 일본 거리로 7~8리, 즉 28~32km 정도일 것이라고 하였다(『조선표류일기』 6권 30쪽).
- 16 박국량은 절충장군 행수군첨절제사라는 무산계와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 17 팔금도 주변에 도착한 이후 야스다는 병으로 쓰러져 더 이상 항로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남해안의 항로는 표류선의 선장이었던 마쓰모토의 기록 등에 의거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다.
- 18 『조선표류일기』에서는 팔금도를 출발하여 7~8리(조선의 70~80리) 정도를 항해하여 이 섬에 도착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이름을 말해주지 않아서 야스다

출발지	도착지	거리(里)	운항 일시	직선 운항 거리	호송관
馬島鎭	長興府 鹿島鎭	110	12일 巳牌 이가도 출발, 薄明 巨島 ¹⁹ 착 13일 朝 거도 출발, 斜日 巨島 ²⁰ 14일 一島 착 15일 전라좌도	200리 ? 100리 ?	박국량 오자명
鹿島鎭	樂安郡 蛇島鎭	80	16일 小島 착 17일 小島 착, 未時 小島灣 ²¹ 18일 津 19일 晨 출발 日暮 一島 20일 雞鳴 출발 朝 港村落 착 21일 午間 출 小島 22일 사패 일도	20리 ²² 10리 + 20리 20리 40리 30리 + α ²³ 20리 30리	교대 교대 전라·경상 경계
蛇島鎭	順天府 方踏鎭	100	8월 23일 사패 출발, 2경 得津 순천 착 ²⁴	80리	24일 移船
方踏鎭	固城縣 統營	110	25일 옥포 착 28일 晡時 거제도 주변	60리 200리	
統營	東萊府	110	29일 가덕도 30일 다대포	100리 80리	교대
		980	30일 다대포 9월 30일 우암포		다대에서 1개월간 체류

가 두 집이 있는 것을 보고 二家島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19 『조선표류일기』 7권 11쪽 1~3행.

20 『조선표류일기』 7권 11쪽 5~8행.

21 『조선표류일기』 7권 12쪽 6~8행.

22 『조선표류일기』 7권 12쪽 2~4행.

23 『조선표류일기』 7권 12쪽 9~12행.

24 『조선표류일기』에는 경상도 순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지났다고 한 이후에 순천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어 착오가 있는 듯하다.

한편 구체적인 항로는 역시 포구와 항로를 나타낸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군산진에서 위도로 들어갈 때는 두 섬 사이를 동북쪽에서 진입하였고, 위도에서 빠져나올 때는 서쪽 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부안위도진지도>에 의하면, 위도에 동쪽으로 나오는 항로와 서쪽으로 나오는 항로가 표시되어 있다.²⁵ 서쪽 항로는 하왕등도와 안마도 사이로 뻗어 있다. 이를 『조선표류일기』 <위도도(鰐島圖)>와 연결하여 생각하면, 송환선은 고군산진에서 남하하여 동쪽에서 위도진에 도착한 다음,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해안 방향이 아니라 외양 쪽인 하왕등도 쪽으로 나와서 안마도 방향으로 남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외양 항로를 택한 것은 고군산진 침사 조대영이 야스다 일행에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조선의 해방(海防) 상황이나 해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우선 범성진 근처에서 거의 의도한 것처럼 야스다가 탄 배를 바다 가운데 정박하게 한 점, 야스다가 여러 차례 지명 혹은 목적지 등을 물어도 조대영이 대답하지 않은 점, 또한 조대영이 항해 거리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실제 항해 거리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특히 야스다가 『조선표류일기』의 글에 부산 도착한 이후 쓰기 시작했지만, 그림의 경우는 항해 과정에서 이미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글의 경우도 필담 때 주고받은 초안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듯이 그림도 스케치와 같은 초벌 그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는 방향이나 포구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대영은 이러한 야스다를 보고 해로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없도록 노력하였을 수 있다. 야스다가 여러 차례 도착한 곳의 지명과 거리 등을 물었으나 조대영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²⁶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부안위도진지도> 청구기호 奎 10435.

26 “故問今日水路幾里 而到泊于何之地耶? 船未發前 告示之爲好. 僉使不答”

임자도 첩사 박국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8월 9일 수도를 출발하여 100여 리를 남하한 다음 야스다가 박국량에게 지명을 물었으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²⁷ 그래서 야스다가 타고 온 배의 선장에게 다시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를 묻자 그도 전라도라고만 답하였다. 야스다가 이번에는 시를 쓰려고 한다면서 지명을 또 묻자 나주의 여러 섬이라고 하였다. 마침내 섬 이름을 또 묻자 겨우 팔금도라고 알려주었다.²⁸

비슷한 예를 <수도도(水島圖)>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⁹ 위도의 경우와 달리 수도에서는 동북쪽에서 수도 앞의 작은 섬을 돌아서 동북쪽으로 수도에 진입하여 정박한 다음, 출발할 때는 그대로 동북쪽으로 빠져나가서 크게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내려갔다. 거리상으로 보면, 바로 동북쪽에서 수도로 들어간 다음 그대로 빠져나오는 것이 가까운데도, 수도 앞의 섬을 크게 우회하는 항로를 택하여 진입한 것이다.

또한 조대영은 위도에서 수도까지 200리라고 하였는데, 위도에서 바로 남쪽으로 향해하였다면 그 거리는 150리 정도일 것이다(직선거리 65km). 그러나 하왕등도와 안마도 사이로 우회하여 남하하였기 때문에 실제 향해 거리는 200리에 가까웠을 수 있다.

9일 수도를 출발한 송환선이 지도를 거쳐 팔금도에 이르렀다. 팔금도에서 다시 20리를 향해하여 야스다가 ‘이가도(二家島)’라고 이름붙인 섬에 닿았다. 이가도는 팔금도를 서쪽으로 향해하여 십자 수로로 보이는 곳을 지나 서쪽으로 빠져가는 입구에 있었다. 지도에서 남하한 송환선은 당사도와 암태도를 지나 팔

(『조선표류일기』 6권 29쪽),

“今日水路幾里而此處何道 地名何如? 幸望詳記示也”(30쪽).

“余問地名已再三, 僉使終不答. 蝸島水島地名, 皆問諸他人”(33쪽).

“以地名與路程示之於客, 令客安心焉. (중략) 彼又不答”(33쪽).

27 『조선표류일기』 7권 4쪽.

28 『조선표류일기』 7권 5쪽.

29 『조선표류일기』 제6권 29~30쪽, <水島圖>.

금도의 남쪽 수로에 진입하였다. 이곳에서 서진하여 현재의 노대섬이나 상사치 도로 추정되는 이가도에서 머무른 다음 다시 서진하여 비금도와 도초도 사이의 물길을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³⁰ 이곳에서 야스다가 병이 나서 이후 다대포까지의 기록이 대단히 성글다.

IV. 조선의 포구

『조선표류일기』에는 야스다 일행이 오랫동안 머문 포구의 그림이 들어 있다. 대표적으로 충청도 비인현 마량진의 안파포, 경상도 부산의 다대포, 초량, 우암포 등이다. 초량 주변은 다대포에서 우암포로 가는 과정에서 해상에서 목격한 광경을 그린 것이라 자세하지 않지만, 안파포와 다대포, 우암포는 상당 기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자세한 그림을 남겼다. 안파포의 경우는 내부의 상황이나 해안 마을의 모습뿐만 아니라, 방위·거리 등도 표시하였다. 다대포의 경우도 다대진의 모습을 비롯하여, 포구 주변의 상황까지 자세하게 그렸다. 또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초량왜관에 상주하는 대마도의 관인들이 야스다 일행의 표류 상황 조사 및 송환을 위해서 타고 온 배의 모습까지 그려 놓았다.

야스다 일행이 마지막으로 머문 곳은 부산의 우암포였다. 우암포는 현재 부산만의 동쪽 기슭인데, 그 북서쪽에 조선 후기의 부산진이 있었다. 『조선표류일기』에도 우암포 북서쪽으로 부산포와 부산진이 보인다. 부산진은 성벽과 건물의 윗부분이 푸르게 칠해져 있는데, 이는 기와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초가를 열은 황색으로 나타낸 것과 구별된다. 우암포 앞바다에는 배의 측면을 흰색과 검은색을 칠한 것처럼 보이는 배가 정박해 있는데, 이는 초량왜관의 대마도 하급 관인들이 탄 배다. 흰색과 검은색으로 장식된 막포(幕布)라는 천을 드리운 것이다. 그 아래로 동서남북의 방위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야스다 일행이 가지

30 『조선표류일기』 7권 7~8쪽, 〈八金島及二家島〉.

고 있던 나침반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암포 포구가 남서쪽을 향해 열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진에서 1리 정도 떨어진 우암포에 민가가 백여 호 있다고 하였다.

야스다 일행이 초량왜관에 머무르지 않고 우암포에 머무르게 된 것은 초량 왜관의 대마도 사람들이 왜관 내부의 사정이 바깥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9월 그믐에 이곳에 도착한 야스다 일행은 그 다음해 정월 14일까지 머무르게 되었다. 두 달 보름 가까이 머문 곳이자 여러 포구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우암포의 그림은 매우 실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우암포 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1592년 9월 1일(음력)에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부산포해전 현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포해전 당시, 부산에는 1만 명 정도의 지상 전투 병력과 8천 명의 수군, 500여 척의 군선이 집결해 있었다.³¹ 한편 일본군은 정발이 지키고 있던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다음, 성의 내부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성 밖의 동서쪽 산기슭에도 300여 채의 건물을 지어 병력의 주둔 및 방어 거점으로 삼고 있었다.

“독전기를 휘두르며 나아갔는데, 우부장 녹도 만호 정운, 거북선 돌격장 군관 이 언량, 전부장 방담 첨사 이순신(중략) 등이 앞장서서 곧장 나아가서 선봉에 선(일본의) 대선 4척을 우선 깨뜨리고 불태우자, 적도들이 헤엄쳐 육지로 오르므로, 뒤에 있던 여러 장수들이 곧 이긴 기세를 타서 깃발을 올리고 북을 치면서 장사진(長蛇陣)으로 앞으로 돌격하였습니다.”³²

31 『李忠武公全書』卷之二, 狀啓二, 「釜山浦破倭兵狀」, “(진략) 乃令小船, 馳送釜山前洋, 探審賊船, 則大槩五百餘隻, 船滄以東邊山麓岸下至列泊.”

32 『李忠武公全書』卷之二, 狀啓二, 「釜山浦破倭兵狀」, “(진략) 乃指旗督赴, 右部將 鹿島萬戶鄭運, 龜船突擊將臣軍官李彥良, 前部將防踏僉使李純信(중략)等, 先登直進, 先鋒大船四隻, 爲先撞破}滅, 賊徒遊泳登陸時, 在後諸將, 仍此乘勝揚旗擊鼓, 長蛇突前.”

이에 대하여 일본군은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자 부산성 동쪽 산에서 5리쯤 되는 언덕 밑 3개소에 선박 470여 척을 정박시켜 놓고, 군선과 성안, 산위 굴속에 있던 병력이 총통과 활을 갖고 모두 산으로 올라가 여섯 군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응전하였다. 그리고 간혹 대철환을 쏘는데 크기가 모과 크기만 하였다고 한다.³³

이른바 부산포해전이라고 부르는 전투다.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 앞바다에 적선 100여 척을 침몰시켜 일본 선박에 대한 전과로서 최대 규모의 승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임원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일본의 조선 침략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포까지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일본군의 조선 침략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평양에 있던 일본 선봉 지상군은 명나라의 파병 조짐으로 앞으로 진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후방의 사령부 격인 부산포까지도 공격받게 되는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선의 영토를 장악하기 위한 지상군의 진격 작전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조선 수군으로부터 침략의 교두보인 부산포를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³⁴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산포해전의 현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우암포 일대 앞바다를 중심으로 전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사학자인 최해군은 부산포해전의 현장이 동천 하

33 『李忠武公全書』卷之二, 狀啓二, 「釜山浦破倭兵狀」, “(전략) 同鎮城東一山五里許岸下, 三處屯泊之船, 大中小并大槩百七十餘隻, 而望我威武, 畏不敢出爲白如乎. 及其諸船直擣其前, 則船中·城內·山上穴處之賊, 持銃筒挾弓矢, 舉皆登山, 分屯六處, 俯放丸箭, 如雨如雹. 至於發射片箭 一如我國人, 或放大鐵丸, 大如木果者, 或放水磨石, 大如鉢塊者, 多中我船爲白良置, 諸將等益增憤惋, 冒死爭突, 天地字將軍箭, 皮翎箭, 長片【箭】, 鐵丸一時齊發. 終日交戰, 賊氣大挫, 而賊船百有餘隻量, 三道諸將, 竝力撞破後, 逢箭死倭, 曳入土窟者, 不知其幾數是白乎矣, 急於破船, 斬頭不得.”

34 임원빈, 2016, 「병법의 관점에서 본 부산포해전」, 『이순신연구논총 25』 봄·여름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구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최해군은 우선 동천 하구가 매립되기 전에는 서면 쪽으로 훨씬 깊이 만입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무렵에는 지금의 부산시민회관과 평화시장, 심지어 옛 제일제당(현 포스코 더샵아파트) 자리까지 바다였을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해전은 지금의 동천 하구에서 위쪽으로 한참 올라온 동천 어귀의 바닷가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중략) 임진왜란 당시의 부산으로 지금의 동구 좌천동과 범일동 지역에 한정되고, 부산포 역시 그 바닷가에 국한된 말이다. 장계에서 진성 동쪽 5리쯤의 산기슭 아래 세 곳이라 한 진성은 지금의 좌천동에 있었던 우리의 부산진성을 말하고, 그 5리 동쪽은 지금의 동천 하구쯤이 될 것 같다. 그러나 그 하구는 자연 매축과 인공 매축 이전의 바다였을 것으로 보인다.

산 위 여섯 군데로 나누어진 적군이란 말도 그렇다. 이 부산포해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4개월 보름 뒤의 일이다. 당시 부산은 왜적에 점거된 상태였다. 적들은 부산포 주위를 요새화하여 병참기지를 삼고 자성대와 황령산 기슭에 여섯 군데로 나누어 주둔해 있었다.³⁵

그런데 최해군은 부산포해전의 현장이 우암포 일대가 아니라 동천 하구일 것이고, 그 하구는 현재의 하구보다 2km 가까이 내륙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필자 역시 최해군의 견해에 찬동하는 바다. 그 근거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산파왜병장(釜山破倭兵狀)」의 기록이다. 두 번째는 바로 『조선표류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암포 지도의 지리 정보다. 우선 일본군의 선박이 있던 위치다. 앞의 자료에 따르면, 배들이 부산진성 동쪽의 한 산에서 5리 정도의 언덕(岸) 아래, 세 곳에 나누어 정박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순신의 선단은 초량에서 일본의 대선 4척을 격파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영도와 초량 사이를 통

35 최해군, 2013, 「동천의 기억-부산포대첩과 동천 살리기」, 《국제신문》 2013년 7월 10일자 6면.

과해서 부산진성 앞까지 도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 부산진성의 위치는 현재 정공단 일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동쪽에 있는 산은 현재의 증산일 가능성이 크다. 그곳에서 2km 범위에 있는 산지는 자성대(약 700m), 배정고등학교(약 1.4km), 오선파라곤아파트 예정지(1.6km), 우암도시숲(2.09km), 문현삼성아파트(1.5km) 등이다.

또한 배 안(船中)과 성안(城內), 산 위의 굴속(山上穴處)에 있던 일본군들이 모두 총통과 활·화살을 들고(持銃筒挾弓矢) 산 위로 올라갔다(登山)고 하였다. 그리고 산 위에서 조선 수군을 내려다 보면서(俯放丸箭) 공격해 왔다고 한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즉 일본군이 해안의 높은 언덕 위에서 조선 수군에게 반격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우암포 일대는 물론 그 좌우에 산지가 있지만, 포구가 완만한 경사지이고 그곳에 <우암포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00여 호의 마을이 위치하고 있었다. 즉 마을이 위치할 정도로 완만한 경사지는 산 위에 올라가서 조선 수군을 내려다 보면서 공격하였다는 지점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즉 우암포에서는 포구의 양끝을 제외하면 산지라고 할 만한 지형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우암포도>에서는 우암포 북서쪽에 높은 언덕을 그려 놓았다. 또한 부산포와 우암포 사이에 후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후미야말로 동천의 하구에 해당한다.

조선 후기의 부산진은 바로 부산왜성의 자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성대왜성이 있었던 곳이다. 또한 동천 하구가 현재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하였다면, 자성대가 위치한 산, 배정고등학교가 위치한 산의 세 군데, 문현삼성아파트가 위치한 산 등이 모두 해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언덕을 이루는 곳이다.

이순신 장군은 부산을 입은 일본군들을 토굴 속으로 피신시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했는데, 토굴을 팔 수 있고 또 해면에서 토굴로 들어가는 상황을 볼 수 있으려면 급한 경사면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우암포의 완만한 경사면은 부산포해전의 현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우암포 포구의 북단에 위치한 산지가 그 후보일 수 있다. 우암포 포구의 남북에 위치한 산지 사이의 거리가 500m에 달한다. 만약 조선 수군이 우암포구 내에 정박한 일본 군선을 공격하



그림 2 『조선표류일기』 우암포

였다면, 정운 등이 총상을 입고 전사하는 상황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당시 화기의 유효 사거리가 250m에 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군의 배가 세 군데로 나누어 정박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우암포에서 주로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성립하기 어렵다. 당시 일본군 함선이 500척에 가까웠으므로 분산시켜 정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세 곳은 조선 후기 부산진성이 위치한 영가대 주변, 자성대 및 동천 하구, 우암포 등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성대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왜성으로, 증산의 부산왜성과 더불어 이미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전투 시설을 갖춘 부산왜성이나 자성대왜성 주변에도 일본군 선박이 정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V. 맺음말

『조선표류일기』는 표류 당사자가 한문을 구사할 수 있는 유식자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다른 표류 사례와 달리 조선의 관인들과 많은 필담을 나누고 기록한 책이다. 조선 측의 표류 사정 청취와 관련된 내용을 비롯하여, 표류인에 대한 음식물과 땀감의 지급 및 부산으로 송환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서해상의 송환 경로 상당 부분을 그림으로 남겼고, 그 경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위도에서 연안 쪽을 향해하지 않고 외양 쪽으로 돌아서 남하한 경우와 팔금도에서 바로 남하하지 않고 외양으로 나간 다음 남하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 이유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항로를 일본인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것인지는 앞으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표류일기』의 회화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나,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조선표류일기』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충청병영장계』 등과 연관시키면 19세기 초반 당시 조선의 행정 시스템을 알 수도 있고, 대마도 측 자료를 연관시키면 일본 측의 자국 표류인 송환 시스템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화자료 자체도 다양한 색상과 정밀한 묘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논총』 연구윤리규정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논총』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논총』의 발간을 위해 수행되는 모든 연구 활동에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은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데이터, 연구체계, 연구과정,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과정 또는 결과 도출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중복 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으

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연구자의 의무)

1. 연구자는 『동북아역사논총』 투고 시 연구윤리준수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2. 본 규정에 저촉되어 제소된 연구자는 『동북아역사논총』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발표 및 학술지 투고, 게재, 서적 출판 등에서 이루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그리고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및 기타 편집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1. 심의위원회는 『동북아역사논총』 발행 또는 기계재된 연구와 관련하여 제4조에 저촉되는 사안을 발견하거나 제보를 받을 경우, 해당 사안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2. 심의위원회는 『동북아역사논총』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3. 편집간사는 서기로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단, 의견권은 갖지 않는다.

제6조(심의)

1. 『동북아역사논총』 발행과 관련하여 제4조에 저촉되는 사안을 발견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접수자는 이를 곧바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을 심의하고, 심의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3. 심의위원회는 편집위원의 과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의 과반 의결에 따라 판정한다.
4. 편집위원장은 심의 이전 또는 심의 과정 중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단, 초빙된 외부 전문가는 의결 권한을 갖지 않는다.
5.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편집위원 중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7. 편집위원장이 심의 안전을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제소자와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1. 제소자의 권리 보호: 제소자의 신원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단,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심의 과정 중 피제소자의 명예·권리·인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피제소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의견진술·이의제기·변론 등과 같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재심의)

1.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때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그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
2.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최초 심의와 동일한 과정 및 절차를 걸쳐 재심을 진행하며 결과를 통보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재심의 위원은 최초 심의위원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3. 재심의 결과가 최초 심의 결과와 동일할 경우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
4. 재심의 결과가 최초 심의와 달라지고 패소한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와 동일한 과정 및 절차를 걸쳐 진행한다.
5. 세 번째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 결과는 번복할 수 없으며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지 않는다.

제9조(결과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제소의 내용(조사 대상 연구결과물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 내용)
- 나. 심의 절차와 논의 내용
- 다. 심의 결과
- 라. 심의 결과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마. 심의 결과에 따른 제소자 혹은 피제소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0조(판정 및 징계)

1.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한다.
2.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가. 기계재된 『동북아역사논총』 투고문 게재 취소.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해당 논문 삭제
 - 나. 향후 5년간 『동북아역사논총』 투고 금지
 - 다. 판정 이후 처음 발간되는 『동북아역사논총』에 판정 내용 공시
 - 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관련 사실 통보

제11조(기록의 보관·공개)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부터 5년간 보관한다.
2.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13조(예외사항)

이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19. 5. 17)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개정 2015. 12. 23. 규칙 제105호

타규개정 2017. 12. 27. 규칙 제180호

[시행 2018. 9. 3] [규정 제92호, 2018. 9. 3., 타규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실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5. 12. 23, 2017. 12. 27, 2018. 9. 3>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80호,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83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92호, 2018. 9. 3>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등)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직제규정과 관련된 재단의 다른 내규는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이 규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정책실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논문원고(그림 또는 별도의 표가 있을 경우 첨부파일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심사 통과 후의 최종원고 제출시에는 nonchong@nahf.or.kr로 제출하고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장세운 동북아역사재단 운영기획실장

● 편집위원

강성호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경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홍보실장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영옥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재운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간사

양인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4호(2019. 6)

초판 1쇄 인쇄 2019년 6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19년 6월 30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